#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입법평가 연구 14-17-(4)

##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박 영 도

#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범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A Case Study of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Checkup Model in Switzerland's Building Legislation연구자 : 박영도(선임연구위원) Park, Young-Do

$$
\text { 2014. 10. } 15 .
$$

> < 집필분야 >

- 제 1 부~제 3 부 : 박영도
- 부록1 [규제-검토 핸드북] : 이진국(번역 및 검수)
- 부록2 [건축법상 규제비용] : 김현우(번역 및 검수)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스위스에서는 어떠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부 담(administrative burden)이 되는지에 관해 실무 및 학계에 서 이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검토
$\square$ 특히, 2000년 이후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의 양적 추산을 가 능하게 하는 비용측정 기법으로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과 규제비용모델(Regulatory Cost Model)을 개발, 적용 하였으며, 2011년에는 규제-검토(Regulatory Checkup)제도를 개발
$\square$ 규제-검토제도는 기업에게 많은 규제비용을 가져오는 중요 한 15 개 분야에서의 규제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 으로서, 규제비용을 감축하여 기업에게 비용절감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내지 권고사항을 도출 하려는 기법
$\square$ 이 연구는 스위스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을 위한 입문서 와 이 제도를 건축법분야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검토함으 로써, 우리의 규제개혁 내지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 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참고자료를 제공

## П. 주요 내용

$\square$ 규제-검토제도는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현행 규제의 비용을 사후적으로 추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사하는 방법론
$\square$ 규제-검토제도는 해당 법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규제비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추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법의 목 표는 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인식의 제고와 행정부문 및 기업 차원에서 한정된 자원투입을 고 려하는 가운데 활용가능한 간소화 방안을 제시
$\square$ 규제-검토제도는 기업에 대한 규제의 직접적인 비용을 조 사하며, 직접적 비용을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기초하여 규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소화 방안을 도출
$\square$ 규제-검토제도의 전체적인 측정절차는 연방정부가 조정하 며, 절차는 크게 7 개의 주된 부문( A 부터 G )으로 구성되어 있고, 13 개의 개별 단계로 구분하여 측정
$\square$ 건축법 조사에서는 오로지 기업이 부담하고, 스위스 현 경 제상황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규제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 화재보호 분야, 시민보호 분야 및 건축허가신청 분야에서 많은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

## III. 기대효과

$\square$ 스위스의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정책에 초점을 둔 규제개혁 방법론은 해당 법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 완화 및 간소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이용
$\square$ 입법평가에서 규제-검토제도의 도입은 평가대상 법령이 특 히,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많아 기업의 행정비 용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행 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최적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

2 주제어 : 규제비용, 행정부담, 표준비용모델, 규제비용모델, 규제-검 토제도, 규제개혁, 입법평가, 선진규제, 규제영향분석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Since the 1990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Switzerland by people in business fields and scholars in earnest, to examine whether a certain regulation imposed an administrative burden that adversely affected business activities.
$\square$ In particular, the Standard Cost Model and the Regulatory Cost Model had been developed and applied since 2000 as methods for measuring costs so as to enable the quantitative estimation of the regulatory costs incurred with respect to businesses, and the Regulatory-Checkup process was developed in 2011.
$\square$ The Regulatory-Checkup process was developed as a means for measuring the regulatory costs in 15 sectors in which a great amount of the regulatory costs was incurred with respect to businesses so as to formulate detailed and practicable proposals or recommendations that could help businesses save costs consequently by reducing the regulatory costs.
$\square$ This study provides reference data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for measuring the regulatory costs in regu-
latory reform and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by reviewing introductory books for the application of Switzerland's Regulatory-Checkup process and cases to which such process has actually been applied in the context of building legislation.

## П. Major Contents

$\square$ The Regulatory-Checkup process is a research methodology that a group of experts in relevant fields can apply for the ex post facto estimation of the costs of current regulations that impose a heavy burden on businesses and for the formulation of plans for improvement.
$\square$ The aim of the Regulatory-Checkup process is not to precisely and accurately estimate the regulatory costs incurred due to a specific statute, but to propose plans for enhancing reasonableness in the conception of the costs incurred by regulations and for the practicable simplification of regulations,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vestment of limited resources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and the business sector.
$\square$ The Regulatory-Checkup process is to formulate a plan for the simplification of regulations so as to reduce the regulatory costs by conducting surveys on the direct costs of regulations to
businesses and by examining the direct cost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The overall measuring process of the Regulatory-Checkup is adjus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such process is composed of seven main sections (A to $G$ ) and divided into 13 respective steps.
$\square$ The regulatory costs calculated in the research on building legislation were borne only by businesses and assessed as negative to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of Switzerland, and as a result of such calculation it was found that a large amount of the regulatory costs were incurred in protection from fire, protection of citizens, and applications for building permits.

## III. Expected Effects

$\square$ The methodology for regulatory reform focused on the Switzerland's policy for alleviating administrative burdens to businesses can be used as objective data with which it can be determined whether the regulation imposed due to a specific statute may be alleviated or simplified.
$\square$ The Regulatory-Checkup process can be introduced to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and can be applied particularly to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costs to
businesses, since the statute subject to such evaluation contains many provisions applicable to businesses, and can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the optimum alternative for the alleviation of administrative burdens to businesses.

D Key Words : regulatory cost, administrative burden, standard cost model, regulatory cost model, regulatory-checkup, regulatory reform, evaluation of legislation, better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부 서 설 ..... 13
I . 규제개혁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 ..... 13
ㅍ. 규제-검토제도 개요 ..... 15

1. 도입경과 ..... 15
2. 방법론 ..... 17
3. 측정절차 ..... 21
4. 프로젝트의 실시 ..... 24
제 2 부 건축법 측정 사례 ..... 33
I. 조사경과 ..... 33
ㅍ. 조사결과 ..... 36
제 3 부 입법평가에서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 ..... 49
[부록-1]
규제-검토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위한 핸드북55

## [부록-2]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제 1 부 서 설

## I. 규제개혁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

스위스는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정책의 적극적 추진, 규제 관련 법제의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기업활동을 저해하 는 관료주의 부담의 과감한 축소 등 규제개혁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 도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현재의 스위스의 경제상 황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지만, 이 기업들 에 대해 더욱 매력적인 경제환경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각종 부 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고 강조한다.1)

스위스에서는 어떠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부담이 되는 지에 관해 실무 및 학계에서 이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인 과제로 되어 있다. 1990년대 말에는 증가하는 규제들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 와 도구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규제비용 통제를 시작하였다.2) 예컨대, 1999년에는 중소기업 포럼(KMU-Forum)이 의회외부의 위원회로 설치 되었으며, 2006년에는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었다. 도구차원에서는 규 제영향평가(Regulierungsfolgenabschätzung : RFA)가 도입되었으며, 2006 년에 적용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평가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중소기 업 호환성심사(KMU-Verträglichkeitstest) 및 유럽연합 등에서 채용된 비 용측정기법인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을 개발하였다. 이

1)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 Die Administrative Entlastung von Unternehmen. Bilanz 2007-2011 und Perspektiven 2012-2015, Bern 2011, S.8ff.
2) 스위스의 규제개혁을 위한 도구에 관한 상세한 것은 박영도/원소연, 표준비용모델 적용사례 연구-스위스 소방법의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2011, 15 면 이하 참조.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비용 측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행 정부담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로서 활용되고 있다.3) 그러나 표 준비용모델은 좁은 의미의 행정비용(법령상 행정기관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비용)의 측정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기업에 대 한 규제비용의 양적 추산을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비용측정 기법으 로 2009년에 규제비용모델(Regulierungskostenmodell : RKM)을 개발하 였다.4)

한편 연방정부에서는 2011년에 관료주의 기압계(Bürokratiebarometer) 에 대한 심사제도의 도입을 천명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규제로 인한 부담을 체감하는지에 관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를 말한다.5) 이 제도는 향후 기업에 대한 부담과 가능한 간소화와 관련되는 양적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연방정부에서는 특정한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전반적인 비용을 측정하여 규제 간소화 및 비용감축을 위한 근 거를 제시하는 기법으로서 후술하는 규제검토(Regulierungs-Checkup)제 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각종 규제관련 제도는 규제비용을 추산하고 규제개선의 잠 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선진규제(Besser Regulierung)를 위한 작업의 전체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제도는 연방 행정기 관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는 규제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해준다. 아울러 그 밖에 Kanton, 단체 또는 기타 담당자들도 독자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들 제도를 통해 행정부와 정치권도 현존하는 규제와 새로운 규제의 규제비용에 유의하여 편익문제를 고려하는 가 운데 규제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3) 자세한 것은 박영도,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참조.
4)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 a.a.O., S.33f.
5) Ders., Ebd., S.33f.

## ㅍ. 규제-검토제도 개요

## 1. 도입경과

규제-검토제도는 스위스의 규제개혁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경제부(Eidgenössisches Volkswirtschaftsdepartement : EVD) 산하의 경제사무국(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 SECO)에서 개발한 규제비용측정 기법이다. 이 측정도구의 개발은 규제비용의 추산과 간소화 및 비용감축의 잠재력 을 확인하기 위한 2 개의 권고안에서 비롯되었다. 즉, '규제비용의 조 사(Erhebung der Regulierungskosten)에 관한 Jean-René Fournier 권고안’") 및 ‘규제비용의 측정(Messung der Regulierungskosten)에 관한 Bruno Zuppiger 권고안'7)이 그것이다. 이들 권고에 따라 연방정부에서는 3 가지의 의견표명을 하였다.8)

즉, 연방정부는 (1) 2103년까지 스위스 기업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규 제의 비용을 측정하도록 한다. (2) 모든 규제비용을 측정할 것이 아니 라, 기업과 관련되는 15 개 분야에서의 규제비용만 측정하되, 각각 가 장 중요한 법령에서 발생하는 비용효과만 측정하도록 한다. (3) 장기 적으로는 규제의 편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비용을 감축시 킬 목표를 추구한다.9) 연방정부의 의견표명에 대해 연방의회에서는 이를 승인하는 한편 연방경제부로 하여금 이들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 고, 관계 연방정부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경제부의 경제사무국 $(\mathrm{SECO})$ 에서는 민간컨설팅회사 (KPMG)가 개발한 "규제비용측정 입문서(Handbuch zur Messung von Re-
6) http://www.parlament.ch/suche/seiten/geschaefte.aspx?gesch_id=20103429 참조.
7) http://www.parlament.ch/suche/seiten/geschaefte.aspx?gesch_id=20103592 참조.
8) Stellungnahme des Bundesrates vom 08.09.2010. ; Stellungnahme des Bundesrates vom 17.09.2010.
9) http://www.parlament.ch/d/suche/seiten/geschaefte.aspx?gesch_id=20103429
gulierungskosten)"10)에 의거하여, 독일의 "법안의 이행비용측정 가이드 라인(Leitfaden zur Ermittlung und Darstellung des Erfüllungsaufwandes in Regelungsvorhaben der Bundesregierung)" ${ }^{11)}$, SCM 네트워크에서 개발한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12), 네덜란드의 규제개혁그룹에서 개발한 "실질이행비용 측정을 위한 표 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for Substantive Compliance Costs)"을 참고로 하여 규제-검토제도의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1년 6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전문가그룹과 연방통계청(Bundesamt für Statistik : BFS)이 참여하여, 2011년 12월에 방법론을 개발하였다.13)

규제-검토제도는 스위스 기업들에게 특히 관련되어 있는 15 개 분야 에 대해서 현행 규제의 비용을 사후적으로 추산하고, 규제비용을 감 축하여 기업에게 비용절감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내지 권고사항을 도출하려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당 규제의 질적 및 양적인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사는 해당 규제에 대한 개요차원의 연구(Übersichtstudie)라 할 수 있다.14) 법 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에게 발생한 비용은 일차적으로 전문가에 의하여 추산하는 한편 비용감축에 관한 제안들은 기업들에 대한 설문 조사로 이루어지는 비교적 간소화된 방식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비용추산의 정확성과 실용성간의 타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규제-검토제도는 해당 법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0]14) Ders., Ebd., S.9f.

규제비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추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그 대신에 이 기법의 목표는 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인식의 제고와 행정부문 및 기업 차원에서 한정된 자원투입 을 고려하는 가운데 활용가능한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15）

## 2．방 법론

규제－검토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제비용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나，일부 방법론에 대해 수정을 하고 있다．즉，규제비용모델에서는 규제비용의 측정을 위해 해당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한편 전체 경제계에 대한 규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수 범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추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6）

그러나 규제－검토에서는 비용추산을 위한 주된 정보원（情報源）은 전 문가들이다．주된 정보원을 전문가들로 정한 이유는 기업들은 시간적 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로 인해 부담을 받는다는 점，일정 자격을 갖 춘 전문가들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는 추산을 할 수 있다는 점，기업 에 대한 한정적인 설문조사로 인한 산정은 전문가 추산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다．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전문가 추산과 기업설 문조사의 경우 결과의 규모가 동일하고，이에 따라 결과로부터 아무 런 정책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견해가 규제－검토 진행과정에서 반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추산을 검증하고 질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간소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정적인 기업설문조사를 실시한 다．물론 전문가들이 필요한 추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기업설문조사의 과정에서 흠결된 수치를 평가하고，검토할 수 있다．

15）Ders．，Ebd．，S．9f．
16）Ders．，Ebd．，S．9f．
17）Ders．，Ebd．，S．9f．

규제-검토제도의 중점은 기업에 대한 규제의 직접적인 비용으로서, 이 직접적 비용은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 있다. 이 방법론은 표준비용모델과는 달리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한 행정비용뿐 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무(요구사항들)의 비용도 고려한다. 즉, 직접비 용으로서 인건비(Personalkosten), 투자비용(Investionkosten), 기타 물적 비 용(Sonstige Sachkosten) 및 재정적 비용(Finanzielle Kosten) 등 4개의 범 주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 안도 조사하는 한편 그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적으로 간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 }^{18)}$

규제-검토제도는 기업의 인식에 보다 더 강하게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 강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접비용(indirekt Kost)도 규제-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다.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간접 비용은 양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질적으로 고려한다.19)

이 방법론은 시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쟁효과(Wettbewerbseffekt) 와 혁신효과(Innovationseffekt) 등과 같은 그 밖의 영향들은 조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와 시민에 대한 규제의 비용도 고려하지 않는다. 분 석을 함에 있어서는 수범자가 규범에 합치되게 행동한다는 점에서 출 발한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서는 규제의 간소화에 관한 모듈을 포함 하고 있다. 이는 비용추산의 절차와 간소화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원래의 규제비용모델에서는 편익이 고 려되지 않음에 반해 이 방법론에서는 편익(Nutzen)이 개선방안에 통합 되어 있다. ${ }^{20)}$
18) Ders., Ebd., S.10f.
19) Ders., Ebd., S.10f.
20) Ders., Ebd., S.11f.

그 밖에 규제-검토 방법론은 기회비용 및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상세한 내용들이 이미 공적인 회계에 존재하 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의 경우 이전지불로서 사회를 위한 자 원 활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에서는 대부분 기업들(Unternehmen)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수범자(Normadressaten)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다른 수범자도 관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요양시설, 보험회사, 단 체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되어 야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범자도 조사연구에서 고 려해야 한다. 그 밖의 수범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문조 사와 워크솝을 포함한 복잡한 절차가 된다.21)

그러나 규제-검토제도의 방법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규제비용 의 산정은 평균적인 기업의 표준화된 비용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이 표준화된 비용은 전문가에 의하여 추산되지만, 만약 전문가 추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수의 기업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대 상이 된 사람들의 경험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전문가나 기 업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응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과거에 특별하게 부담을 받았던 개별적인 극단적 인 사건에 처한 기업의 경우에는 응답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 론 워크숍에서의 검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추산이고 정확한 비용측정을 예상할 수 없다. 즉, 기업의 경우 비용발생원인이 다양하므로 규제로 유발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로 많은 것인지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그 다음 단계 에서 비용을 감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 }^{22)}$
21) Ders., Ebd., S.11f.
22) Ders., Ebd., S.11f.
[규제-검토에서 고려되는 규제비용]


규제-검토제도의 방법론은 현행 규제의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 로서 사후적(ex post) 추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적(ex ante) 분석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 다. 다만, 사전적 분석의 경우 전문가나 기업은 효과적인 시간 내지 비용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수치를 추산 해야만 한다. 이로 인하여 결과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또한 이행가능 성과 수용성 및 가능한 간소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하기 어 려울 것이다. ${ }^{23)}$

## 3. 측정절차

규제-검토제도의 전체적인 측정절차는 연방경제부의 경제사무국(SECO) 이 조정한다. 절차는 크게 7개의 주된 부문(A부터 G )으로 구성되어 있고, 13 개의 개별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내용에서 출발하여, 이에 이어 참여한 담당기관을 언급하고 그 과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개별적인 프로젝트 단계에서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마 지막으로 예상되는 산출물의 목록을 요약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젝 트 진행단계가 각각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 다. 이전의 프로젝트 단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의 프로젝트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24)
23) Ders., Ebd., S.12f.
24) Ders., Ebd., S.12f.
[프로젝트 진행과정]
A) 준비 : 행정기관
B) 준비 : 위탁자
C) 자료조사
D) 문제점 확인 및 검증
E) 규제비용 산정
F) 간소화
G) 문서작성

$\downarrow$
7a. 기업 대상 설문조사

8a. 표준치의 산정

8b. 검증을 위한 워크솝

5. 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할 것(분할)

위탁자 미팅


8. 기업 대상 설문조사
$\downarrow$
9. 비용산정
$\downarrow$
10. 문제점과 간소화에 관한 질문의 평가
11. 개선방안 작성을 위한 워크솝
$\downarrow$

| 12.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위탁자 미팅 |
| 13. 문서작성 및 최종보고서 작성 |  |  |  |

행정기관
위탁자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선, (A) 행정기관의 준비(Vorbereitung der Verwaltung)에서는 조사대상 분야를 정의함으로써 개시된다(1). 이 는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 법령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프로 젝트 공고(2) 이후에는 위탁자는 그 이후의 프로젝트 진행단계의 중요 한 부분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개별 프로젝트 진행단계의 경우 행정기관의 협력은 필요치 않다.
(B) 수탁자의 준비(Vorbereitung der Auftragnehmer)는 가장 중요한 부 담을 주는 행위의무를 결정함으로써 개시된다(3). 한정된 비용과 시간 으로 인하여 기업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의무(Handlungspflicht)만 고려한다. 이어서 행위의무를 그룹화(Gruppierung)한다 (4). 그 이유는 실무에서의 진행과정은 종종 행위의무에 의해서가 아 니라 행위의무의 그룹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문가추산을 행하기 전에 동일한 규제가 다양한 기업들에게 상이한 비 용을 초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 판단해 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등급을 분류한다(분할)(5).
(C) 자료조사(Datenerhebung)는 한편으로는 사례수의 조사에 활용한 다(6). 이러한 확인은 전체 경제계에 대하여 추산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추산을 행한다(7). 전문가추산 은 규제비용의 조사를 위한 결정적인 정보의 기초가 된다.
(D) 문제점인식과 검증(Problemidentifikation und Validierung)은 기업 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행한다(8). 문제점인식과 검증은 질적인 정보의 조사에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간소화가능성과 전문가추산의 검증에 도움을 준다. 한편 대체적 산정방식(Alternative Berechnungsweise)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추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기업설문조사 를 하는 과정에서 흠결된 수치를 조사해야 하고(7.a), 표준치의 산정을 통하여 평가해야 하고 검증워크숍(8.b)에서 검토한다.
(E) 규제비용의 산정(Berechnung der Regulierungskosten)은 모든 요구 되는 변수들이 존재한 이후에는 전체 스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다 (9). 이에 따라서 기업에게 오로지 규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비용 을 기재해야 한다.
(F) 간소화(Vereinfachungen)도 규제비용 이외에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기업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간소화에 관한 쟁점들을 평가(10)한다. 개선을 위한 제안(11)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솝은 비용추 산, 기업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등 다양한 투입에 기초한다. 규제 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간소화 가능성을 위하여 연방 행정 기관은 개선방안에 관한 간략한 규제영향평가(12)로써 편익에 관한 문 제를 가능한 경우 질적으로 또는 최소한 양적으로 문제삼아야 한다.
(G) 문서기록(Dokumentation)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이다. 행정 기관은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프로젝 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사된 자료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 로 수탁자는 작성된 문서와 최종보고서(13)를 상세한 자료들과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간소화를 위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종료하기 까지는 4 주 $\sim$ 주 정도 소요된다.
4. 프로젝트의 실시

연방경제부의 경제사무국(SECO)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건의 규제-검토제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25) 13 개 부문에서의 규

제비용조사에서는 개별 각 영역별로 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사 항을 특정하는 한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 번호 | 프로 젝트명 |
| :---: | :---: |
| 1 | - 통계부문(Breich Statistik) <br> [http://www.bfs.admin.ch/bfs/portal/fr/index/news.html] |
| 2 | - 제 1 차 실업보험(Erste Säle) <br> [http://www.bsv.admin.ch/praxis/forschung/publikationen/index.html?lang= de\&lnr=08/13\#pubdb] |
| 3 | - 제 2 차 실업보험(Zweite Säle, BVG) <br> [http://www.bsv.admin.ch/praxis/forschung/publikationen/index.html?lang= de\&lnr=04/11\#pubdb] |
| 4 | - 회계 및 감사법(Rechnungslegung, Revisions-und Revisionsaufsichtsrecht) [http://www.bj.admin.ch/content/bj/de/home/aktuell.html] |
| 5 | -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Zulassung von auslädischen Erwerbstäigen zum schweizerischen Arbeitsmarkt) [http://www.bfm.admin.ch/content/bfm/fr/home/dokumentation/berichte.html] |
| 6 | - 법인세(Unternehmenssteuern) [http://www.estv.admin.ch/] |
| 7 | -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 [http://www.estv.admin.ch/] |
| 8 | - 수출입통관절차(Zollverfahren bei der Ein- und Ausfuhr) [http://www.ezv.admin.ch/] |
| 9 | - 직업훈련(Berufliche Grundbildung) [http://www.sbfi.admin.ch/berufsbildung] |
| 10 | - 근로안전, 건강 및 산재보험(Arbeitssicherheit, Gesundheitsschutz und Unfallversicherung) [http://www.seco.admin.ch/] |
| 11 | - 건축법(Baurecht) [http://www.are.admin.ch/] |
| 12 | - 환경법(Umweltrecht) [http://www.bafu.admin.ch/] |
| 13 | - 식품위생(Lebensmittelhygiene) [www.bag.admin.ch] |

이들 제안은 대부분 연방법률이나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주나 업계에 의해서 구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6}$ 주요한 부문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결과를 간 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계(Statistik) 부문에서의 규제비용

연방통계법(Bundesstatistik-gesetz : BstatG) 및 시행령(Verordnung vom 30. Juni 1993 über die Durchfü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에 서 규정된 기업에 대한 각종 통계조사로 인해 기업에게 발생되는 규 제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통계청(Bundesamts für Statistik : BFS)이 St.Gallen 대학의 스위스 중소기업연구소(Schweizerischen Instituts für Klein- und Mittel-unternehmen der Universität St. Gallen)에 의뢰하여 수행되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 규제비용(CHF) |
| :--- | ---: |
| 기업의 환경보호지출에 관한 조사 | 65,000 |
| 최종에너지소비에 관한 조사(총에너지통계) | 639,000 |
| 고용현황통계 | $1,596,000$ |
| 수익구조설문조사 | 627,000 |
| 주의 소비자물가지수(임대료지수 제외) | 179,000 |
| 임대료지수(주의 지수의 하위지수) | 231,000 |
| 제조 및 수입물가지수 | 359,000 |
| 스위스 건축비통계 | 247,000 |
| 업계 및 기업의 사업자등록 조사갱신 | 560,000 |

26) Ders., Ebd., S.7ff.

| 조사내용 | 규제비용(CHF) |
| :--- | ---: |
| 대기업 및 기업집단의 프로파일 | 22,000 |
| 업계의 생산, 주문 및 판매통계 | 438,000 |
| 건설업계의 생산, 주문 및 판매통계 | 318,000 |
| 소매업 매출통계 | 79,500 |
| 기타 서비스부문의 판매통계 | 323,000 |
| 부가가치통계 | 876,000 |
| 숙박시설통계 | $1,011,000$ |
|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 37,000 |
| 기업의 직업훈련조사 | 87,000 |
| 기업선행지수(KOF) 설문조사 | 665,000 |
| 기업선행지수(KOF) 투자조사 | 95,000 |
| 기업선행지수(KOF) 혁신조사 | 143,000 |
|  | 계(전체조사) |

(2) 회계 및 감사법(Rechnungslegungs- und Revisions(aufsichts)rechts)

연방법무부(Bundesamts für Justiz : BJ)의 위탁으로 취리히응용과학 대학(Zürcher Hochschule für Angewandte Wissenschaften)의 공공관리연 구소(Institut für Public Management)가 수행한 것이다. 비용분석은 연간 10 만 스위스프랑의 매출을 올리는 등록기업인 주식회사(AG)와 유한책 임회사 $(\mathrm{GmbH})$ 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대상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에 초점을 두어 비용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대상법률은 '2012년 회계 및 감사법'이었다.

| 조사내용 | 규제비용 <br> (CHF, 백만) |
| :---: | :---: |
| - 회계의무 <br> 다음의 직무활동으로 발생하는 총비용 <br> - 손익계산서작성 <br> - 관리보고서작성 <br> - 대차대조표작성 <br> - 부록 작성 <br> - 리스크평가와 ICS <br> - 기 타 | 1042 371 53 371 64 97 86 |
| - 감사의무 <br>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총비용 <br> - 제한 감사 <br> - 전체 감사 <br> - 기 타 | 617 406 176 35 |
| - 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 <br>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총비용 <br> - 감사보고서의 검수 <br> - 감사법인에 제출 | 5.8 4.6 1.2 |
| 계 | 1,666백만 CHF |

(3) 법인세

연방세무청(Eidgenössischen Steuerverwaltung : ESTV)의 위탁으로 민 간회사인 PricewaterhouseCoopers AG 가 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스위스 는 연방헌법상 연방정부가 독점적으로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세목을 소관한다. 대표적인 세목은 원천소득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 으며, 소득세나 법인세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세에 관해서는 연방과 Kanton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연방차원 Kanton차원의 2단계로 과세되 나, 조사를 포함한 집행권한은 Kanton에게 있다.

| 조사내용 | 법적근거 | 규제비용 (백만, CHF) |
| :---: | :---: | :---: |
| 소득세/양도소득세(공동평가) |  |  |
| 납세의무 | Kanton 및 자치단체의 직접세 조화 에 관한 연방법 $(\mathrm{StHG})$ 제 20 조 이하 연방직접세법(DBG) 제 50 조 이하 | 5.4 |
| 조세환급 | StHG 제42조 DBG 제124조 | 192.0 |
| 정보제공의무 | StHG 제43조 <br> DBG 제 123 조, 제 126 조, 제 129 조 | 148.5 |
| 이의제기 | StHG 제 48 조, 제 50 조, 제 51 조 DBG | 재량 |
| 계 |  | 345.9 |
| 기타 세금 |  |  |
| 부동산양도소득세 | StHG 제12조 | 미산정 |
| 증권거래세 | StHG 제5조 | 1.3 |
| 인지세 | StHG 제13조 | 21.2 |
| 임금원천징수세 | StHG 제 32 조 DBG 제83조 | 249.3 |
| 원천소득세 | StHG 제4조 | 73.7 |
| 보험료인지세 | StHG 제21조 | 47.0 |
| 계 |  | 392.5 |
| 총 계 |  | 738.6백만 CHF |

(4) 부가가치세

연방세무청(Eidgenössischen Steuerverwaltung : ESTV)의 위탁으로 민 간회사인 PricewaterhouseCoopers AG 가 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스위스 의 부가가치세는 연방간접세로서 대부분의 물품과 역무에 과세되며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로 징수된다. 개인이나 법인, 조 직, 법적능력없는 협회나 기관 등이 사업을 운영하고 스위스에서 과 세매상이 연간 100,000 스위스프랑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가 있다. 연간 과세매상이 100,000 스위스프랑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 는 발생하지 않으나, 납세의무의 면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

| 조사내용 | 법적근거 <br> 규제비용 <br> (백만, CHF) |  |
| :--- | :--- | ---: |
|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MWSTG) 제10조 | 16.4 |
| 부가세계산 | MWSTG 제71조 | 61.2 |
| 급부자격 <br> (과세대상, 비과세 <br> 대상, 선택사항, 면 <br> 제혜택, 차등세율) | MWSTG 제18조 | 291.2 |
| 청구서 및 세금증명 | MWSTG 제26조 |  |
| 공제액 산정 | MWSTG 제28조 | 151.6 |
| 신고절차 | MWSTG 제38조 | 118.6 |
| 환급오류 정정 | MWSTG 제72조 | 5.0 |
| 정보제공의무 | MWSTG 제68조, 제70조 | 307.2 |
| 절 차 | MWSTG 제69조, 제78조, 제83조 | 350.7 |
| 자료요구 | MWSTG 제70조 | 89.6 |
| 총 계 |  | 367.9 |

(5) 수출입 통관절차

연방관세청(Eidgenössischen Zollverwaltung)이 민간회사에 의뢰하여 상 품의 수입과 수출과 관련한 관세절차의 규제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 조사내용 | 규제비용 (백만, CHF) |
| :---: | :---: |
| 작성 및 서명 | $\begin{aligned} & \text { 수입 } 230.0 \\ & \text { 수출 } 105.9 \end{aligned}$ |
| 검사 및 시험 | $\begin{aligned} & \text { 수입 } 2.9 \\ & \text { 수출 } 0.4 \end{aligned}$ |
| 수입관세 지불 | 수입 19.6 |
| 데이터보관 및 백업 | $\begin{gathered} \text { 수입 } 12.9 \\ \text { 수출 } 7.5 \end{gathered}$ |
| 대외무역통계 | $\begin{aligned} & \text { 수입 } 39.4 \\ & \text { 수출 } 16.1 \end{aligned}$ |
| 원산지증명 | $\begin{aligned} & \text { 수입 } 16.7 \\ & \text { 수출 } 27.4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총 수입 } \\ & \text { 총 수출 } \end{aligned}$ | 321.5 157.3 |
| 계 | 478.8백만 CHF |

(6) 환경법

연방환경청(Bundesamt für Umwelt)이 민간회사에 위탁하여 환경법상 의 각종 규제 가운데 기업(특히, 중소기업)에게 높은 규제밀도를 가져 오는 규제와 비교적 많은 사례가 존재하는 규제, 기업에게 높은 비용 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대기오염, 수자원보호, 건 축유해폐기물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 규제비용 <br> (복만, CHF, 애용 |
| ---: | ---: |
| •대기오온) |  |
| 홤재방지 |  |
| 복구의무 |  |

제1 부 서 설

| 조사내용 | $\begin{gathered} \text { 규제비용 } \\ \text { (백만, CHF, 연간) } \end{gathered}$ |
| :---: | :---: |
| - 수자원보호 <br> 회사내 폐수처리 <br> 폐수처리장에서의 하류폐수처리 | 290 450 |
| - 유해폐기물 <br> 유해폐기물보관장으로의 운송 <br> 폐기물처리회사의 유해폐기물 운송 <br> 유해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및 소유자의 비 용에 대한 의무 | 4 1 360 |
| - 건축폐기물 <br> 건축현장에서의 건축폐기물의 분리 <br> 건축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및 소유자의 비 용에 대한 의무 | 109 470 |
| 계 | 579백만 CHF |

## 제 2 부 건축법 측정 사례

## I. 조사경과

2013년 연방지역개발청(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 ARE)에서 는 건축법 분야에서 규제비용을 추산하고 규제비용의 감축조치를 위 한 접근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에게 프 로젝트를 위탁하였다. 연방지역개발청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처내에 전담팀(Spiegelgruppe ARE)을 설치하여 건축법상 각종 의무 를 검토하는 등 프로젝트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이 전담팀에는 연방, Kanton 및 자치단체의 대표자들, 입법관련 단체들, 이익단체들 및 그 밖의 기관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27)

이 프로젝트에서는 진행과정과 결과의 정합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규제-검토'(Regulierungs-Checkup) 핸드북의 방법론에 따 라 절차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인 '건축법(Baurecht)' 분야에서는 다양 한 법규정이 있으며, 이들 법규정은 연방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Kanton과 자치단체(Gemeinde)에도 적용되는 것도 있다. 이 조사 에서는 연방, Kanton 및 자치단체 등 3 가지 차원에 모두 관련되는 법 규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Kanton과 자치단체 차원의 법규정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예시만을 선택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전담팀의 설문조사 결과 Zürich, Bern, St.Gallen, Wallis, Genf 등 5 개 Kanton만 이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규제비 용을 추산하기 위하여 이들 Kanton에서 각각 최대 3 개의 자치단체(이 들 각각의 자치단체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를 선정하였다. 이

[^1]들 자치단체의 자치규정들은 개별적으로 분석되었다.28)
[조사에서 고려된 Kanton과 자치단체]

| Kanton | 자치단체(Gemeinde) |
| :---: | :---: |
| Zürich | - Zürich(대도시) <br> - Basserdorf(집단 자치단체) <br> - Hausen am Albis(시골형식의 자치단체) |
| Bern | - Bern(대도시) <br> - $\operatorname{Brügg}$ (집단 자치단체) <br> - Hasliberg(시골형식의 자치단체) |
| St.Gallen | - Wil(지역센터) <br> - Wittenbach(집단 자치단체) <br> - Benken(시골형식의 자치단체) |
| Wallis | 건축법 분야가 Kanton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 로 개별 자치단체에 대한 분석 불필요 |
| Genf | - $\operatorname{Sion}($ 지역 센터) <br> - Zermatt(여행 센터) <br> - Fully(시골형식의 자치단체) |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건축법 분야의 수많은 행위의무 가운데 다음 의 11 개 행위의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건축허가(Baubewilligung)
- 화재보호(Brandschutz)
- 에너지(Energie)
- 장애없는 건축(Hindernisfreies Bauen)
- 주차(Parkierung)
- 시민보호(Zivilschutz)

28) Ders., Ebd., S. 18 ff .

- 지진안전(Erdbebensicherheit)
- 보건 및 위생(Hygiene- und Gesundheit)
- 소음보호(Lärmschutz)
- 근로안전(Arbeitssicherheit)
- 공공조달(Öffentliches Beschaffungswesen)

위의 주제 분야별로 분석대상인 연방, Kanton 및 자치단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를 조사하였다. '건축법'(Baurecht) 분야의 연구조사는 Kanton의 계획법령과 건축법령(Planungs- und Baugesetz)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뿐만 아니라 '건물의 건축(Bauen eines Gebäudes)'과 관련된 모든 규제들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가장 큰 비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법규정들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하였 다. 관련되는 법적 근거들의 많은 부분이 연방차원이 아니라 Kanton과 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분석을 위하여 분 석대상 Kanton과 자치단체의 법령을 원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오로지 경제계가 부담하고, 따라서 스위스 현 경제상 황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규제비용만 고려하였다. 규제비용은 주거 분야(신축과 재건축), 공공건축물 분야(신축과 재건축) 및 사무용 건축 물 분야(신축과 재건축) 등 6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 산정되었 다. ${ }^{29)}$ 조사된 비용의 계산은 경제계의 지상건축규모에 근거하여 이루 어졌다. 전체적으로 건축규모에 대한 비용이 약 300 억 스위스 프랑 (CHF)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수치는 스위스 전체 건축규모의 $2 / 3$ 에 상응하는 것이다. 지하건축(Tiefbau)은 고려하지 않았다. 스위스의 경 우 지하건축은 거의 완전히 국가에 의하여 위탁되기 때문이다.

이 조사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 여하여 수행되었다.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과 문제제기들 및 차이점들

로 인하여 이 조사연구는 '개요연구' 차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였 다. 이 조사연구에서의 분석설계 개요는 다음과 같다.30)

## [‘건축법, 규제-검토의 분석설계]



## П. 조사결과

건축법 분야에서 규제비용을 추산하고 규제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조사의 결론 중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31)}$

- 스위스 경제계에서 지상건축의 규제비용은 조사대상 연도인 2011 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160 억 스위스 프랑 $(\mathrm{CHF})$ 내지 고찰된 지상건축규모의 약 $6 \%$ 에 해당하였다.

30) Ders., Ebd., S.24ff.
31) Ders., Ebd., S.7ff.

- 신축건축물의 경우, 규제비용은 건축비의 약 $2 \sim 5 \%$ 로써 적게 나 타났다. 이에 반해 재건축 및 개축의 경우 규제비용은 약 $32 \%$ 까 지 달했다.
- 규제비용은 대부분 건축주 내지 부동산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건축경제는 일반적으로 규제로부터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건축 주의 비용은 대부분 동시에 건축경제의 추가수익으로 되기 때문 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스위스의 건축경제가 일반적으로 규제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지만, 건축경제 이외의 나머지 경제계 (수출주도적 경제를 포함)와 소비자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신축건축물의 경우, (고찰의 대상이 된 11 개의 행위분야들간의 중복을 제거한 이후에 계산된) 규제비용은 일차적으로 화재보호(Brandschutz) 분 야에서 2 억 3700 만 CHF , 시민보호(Zivilschutz) 분야에서 1 억1900만 CHF, 건축허가신청(Baugesuch) 분야에서 1 억 3700 만 CHF 에 달했다. 재건축 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특히, 건축허가신청 분야( 5 억 100 만 CHF), 화재 보호 분야( 1 억 1700 만 CHF ), 에너지 분야( 1 억 6700 만 CHF ) 및 보건/위생 분야(Gesundheit/Hygiene)(9000만 CHF)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규 제비용이 비교적 많이 측정된 항목과 해당 항목의 규제비용을 개관하 면 다음과 같다.

| 항 목 | 개 요 | 규제비용 <br> (백만, CHF) |
| :--- | :--- | :--- |
| 건축허가 | 건축설계의 법적합성 심사, 이해관계자의 <br> 동의 등 법적수단의 보장 | 637 |
| 화재보호 | 화재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화재방지대책 | 354 |
| 에너지 대책 | 에너지의 환경친화적, 경제적 및 효율적 <br> 이용 대책 | 175 |


| 항 목 | 개 요 | 규제비용 <br> (백만, CHF) |
| :--- | :--- | ---: |
| 장애없는 건축 | 건물 외부 차단벽설치금지, 건물에 대한 <br> 접성보장 | 48 |
| 주 차 | 교통구상 주차공간의 설치 및 제한 | 32 |
| 시민보호 | 주민을 위한 이용가능한 대피소 설치 및 <br> 제공 | 123 |
| 지진안전 | 지진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 44 |
| 보건 및 위생 | 건물이용자 보호 및 이용자를 위한 휴게 <br> 시설과 위생시설 | 113 |
| 소음보호 | 공중에게 유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br> 방지 | 11 |
| 근로안전 | 건물의 사용주와 거주자 보호 | 66 |
| 공공조달 | 재화, 서비스 및 물품의 조달 경쟁 | 6 |
| 계 |  | $\mathbf{1 , 6 0 8}$ |

한편 규제비용의 3 분의 2 는 재건축분야와 개축분야에서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보다 많은 규제비용이 발 생하는 이유는 편익과 관련된 요구사항 내지 요건의 변경이나 법령상 의 규정의 변경 때문이다. 30 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그 당 시와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따라서 현재 건축물에 대한 건축 상의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요건에 상응하는 재건축 또 는 개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축의 경우 규제비용은 일차적으로 화 재보호, 시민보호 및 건축허가신청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재건축과 개 축 건축물의 경우 특히 건축허가신청, 화재보호, 에너지 조치 및 보건 /위생 분야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 }^{32)}$
32) Ders., Ebd., S.114ff.

|  | 주거용 주택 |  | $\begin{aligned} & \text { 사무용 } \\ & \text { 건축물 } \end{aligned}$ |  | 학교용 <br> 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축 | 개축 | 신축 | 개축 | 신축 | 개축 | 신축 | 개축 | 총 계 |
| 건축허가신청 | 78 | 283 | 53 | 207 | 5 | 10 | 137 | 501 | 637 |
| 화재보호 | 98 | 19 | 134 | 90 | 5 | 9 | 237 | 117 | 354 |
| 에너지조치 | - | 67 | - | 88 | 7 | 13 | 7 | 167 | 175 |
| 장애없는건축 | 10 | 9 | 11 | 11 | 3 | 4 | 24 | 24 | 48 |
| 주 차 | 1 | 5 | 10 | 16 | - | - | 11 | 21 | 32 |
| 시민보호 | 119 | 3 | - | - | - | - | 119 | 3 | 123 |
| 지진보호 | - | 21 | - | 22 | - | 2 | - | 44 | 44 |
| 보건/위생 | - | 4 | 16 | 75 | 6 | 12 | 23 | 90 | 113 |
| 소음보호 | - | 0 | - | 3 | - | 8 | - | 11 | 11 |
| 근로보호 | - | 12 | 0 | 48 | 3 | 2 | 4 | 62 | 66 |
| 규제비용(B-W) | 306 | 422 | 226 | 560 | 30 | 59 | 562 | 1,040 | 1,602 |
| 공공조달 | 0 | 0 | 1 | 1 | 1 | 2 | 2 | 4 | 6 |
| 공공조달의 국민 경제적 비용을 포 함한 규제비용 | 307 | 422 | 226 | 561 | 31 | 61 | 564 | 1,044 | 1,608 |

한편 이 조사와 관련하여 분석된 건축분야에서의 규제비용의 최적화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33)

-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전환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비용 을 야기함이 없이 어떻게 증가된 요건 내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대규모 건축물 과 복잡한 건축물의 경우 향후 계속적으로 건축상의 조치나 귀 속가치(kalkulatorischen Werten)에 관한 지침에 초점을 맞추기 보 다 측정된 소비목표치(Verbrauchszielwer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33) Ders., Ebd., S.7ff.

- 특히, 화재보호 분야의 경우 노동법(Arbeitsgesetz)과 중첩되는 규 정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상이한 법령에서 나타나는 모순점 들을 제거해야 한다.
- 건축 행정기관의 활동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하고, 조화시키며 자 동화(즉, 디지털화)시킴으로써 집행의 질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건축허가신청, 화재보호, 에너지 조치 및 공 공조달제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 화재보호 분야에서는 해석의 여지 내지 변화되는 입법이 하나의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획의 안전을 증대시킬 바람직한 조치 로는, 한번 제출된 - 특히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 화재보호설계 만으로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축허가의 유 효성을 건축물의 검사시까지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 현재 전체적인 건축행정의 집행은 행정기관이 강력하게 수행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것은, 이러한 집행을 - 승용차 의 경우 배기가스 검사나 회계제도와 관련한 수정활동에서와 같 이 - 승인된 전문가에게 이양하여 효율성증대와 중앙집중화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여지를 창설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복잡한 대규모 건축대상물의 경우 구체적인 조치들 을 이행하게 하는 규제 보다는 보호목표들(Schutzziele)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옵션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화재보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성에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Opting-out' 조항을 통하여 개별 사례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공공조달제도(öffentlichen Beschaffungswesens)의 분야에서 이 조 사는 사용된 개념정의에 따라 규제비용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분명한 것은, 기업들이 공개입찰 작업의 형식으로 당해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사는 특히 공공조달제도를 이행함에 있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 별적 절차나 디지털 절차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보다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문자와 제공자의 편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이미 잘 기능하고 있는 현재의 simap.com 플랫폼을 분명하게 개편하여 보다 더 매력적 으로 구성할 수 있다.
[건축허가분야의 규제비용의 최적화 가능성]

| 건축허가 1: 지역단위의 결합을 통한 전문화 <br> (Professionalisierung durch Zusammenzug von Gebietseinheiten) |  |
| :---: | :--- |
| 취 지 | 적은 지역단위를 결합시킴으로써(예: 자치단체를 일정한 행 <br> 건축허가신청시 전문인력을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많 <br> 은 사례를 통한 최대한의 활용)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적음 : 버용절감은 과오를 최제보화용과 사는 당관이 도움을 준고다는 검에 촉점을 맞춘다. |
| 제3자에 <br> 대한 비용 | 일회성의 구조개편비용 |
| 규제의 <br> 효용에 대한 <br> 영향 | 전문화는 과오릉 최소될 괏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용이 오히려 |
| 이 행 | 자치단체의 권한에 있고 Kanton에는 간접적으로(예: 재정상 <br> 의 동기부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건축허가 2: 입법의 표준화
(Standardisierung der Gesetzgebungen)

| 취 지 | (자치단체와 Kanton의) 건축법령들은 그 구조와 내용 및 집 <br> 행에 관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투명성을 개 <br> 선하고 다양한 법령의 취급이 간소화된다. |
| :---: | :---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많음 : 비용절감은 규제비용과 상관이 없고 건축가격의 수준 <br> 을 낮춤으로써 비용절감을 추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 제3자에 <br> 대한 비용 | 입법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
| 규제의 <br> 효용에 대한 <br> 영향 | 규제의 편익에 아무런 연향은을 가지고 있다. |
| 이 행 지 아니하는 간소화와 |  |
| 자치단체와 Kanton의 권한하에 있다. |  |


| 건축허가 3: 절차의 자동화(e-정부 시스템) <br> (Automatisierung des Verfahrens. eGovernance) |  |
| :---: | :---: |
| 취 지 | 건축허가신청자는 필요한 양식을 직접 온라인으로 기재하 여 관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로써 정보교환이 간소화 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언 제든지 관련 문건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떠한 기관에서 현재 당해 건축허가신청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br> 예: Luzern Kanton은 이와 관련하여 'eBAGEplus'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2014년에는 전체 건축허가신청절차가 전자 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비용감축의 잠재성 | 중간정도 |
| 제 3 자에 대한 비용 | 국가에게 발생하는 투자비용, 절차의 재구축화 |
| 규제의 효용에 대한 영향 | 규제의 편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간소화와 관 련되어 있다. |
| 이 행 | 규제는 Kanton과 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다. |

[화재보호분야의 규제비용의 최적화 가능성]

| 화재 1: 화재보호구상과 건축허가절차의 결합 (Einfrieren des Brandschutzkonzepts mit der Baubewilligung) |  |
| :---: | :---: |
| 취 지 | 준공검사를 할때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건축 허가시의 상황과는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 보호구상을 건축허가와 결합시켜야 한다.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특히, 개별 건축물의 경우 새롭게 설 정된 요구 내지 계획에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비용은 우리의 방법론을 통하여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비용절감의 잠재성을 표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제 3 자에 대한 비용 | -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규제의 편익을 줄이지 않는 집행에서 의 절차간소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
| 이 행 | 원칙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규제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의미있게 정의하 고,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화재보호부담사항 을 상이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응하는 조치를 검사함에 있어 일정한 역할도 담당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

화재 2: 연방노동법과 그 밖의 화재보호규정들간의 중복의 제거
(Beseitigen von Redundanzen zwischen dem Eidg. Arbeitsgesetz und den weiteren Brandschutzvorschriften)

연방노동법은 대상물과 관련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화재보 호의 지침을 제공한다. 다른 법령에서는 대상물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법원(法源)은 중 복을 담고 있고, 일부는 화재보호에 대한 상이한 요건을 설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순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양한 법 령에서 나오는 이러한 요건들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거나 적 절한 조치(예: 법률의 보충적 적용)를 통하여 모순을 방지해 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Kanton화재보험협회의 입장 참조.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중간 정도 |
| :---: | :---: |
| 제 3 자에 <br> 대한 비용 | -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 |
| 이 행 | 법령들간의 충돌점을 분석해야 하고 조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br> 읜다. 연방과 Kanton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br> 가장 의미있다. |


| 화재 3: 화재보호검사의 승인된 화재보호공학자에의 위임 |
| :---: | :--- |
| (Brandschutzabnahme an zertifizierte Brandschutzingenieure delegieren) |$|$| 관청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적화의 여지와 해석의 여지를 |
| :--- |
| 최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민간영역에 |
| 서 승인된 화재보호공학자들이 준공검사와 같은 제출시 화재 |
| 보호구상의 준수를 심사해야 한다. |

화재 4: 집행의 조화를 간소화하기 위한 Kanton 차원의 화재보호의 중앙 집중화(집행의 전문화)
(Zentralisierung des Brandschutzes auf kantonaler Ebene, um die Harmonisierung des Vollzugs zu vereinfachen. Professionalisierung des Vollzug)

| 취 지 | 화재보호의 집행을 중앙집중화함으로써 요건에 대한 단일한 <br> 해석을 할 수 있다. |
| :---: | :---: | :---: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없 음 |


| 제3자에 <br> 대한 비용 |  |
| :---: | :---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집행의 전문화는 - 실수를시킨다. 최소화함으로써 - 편익을 오히려 <br> 이 행규제는 일차적으로 Kanton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Kanton에서 <br> 시작해야 한다. |

화재 5: 대규모 또는 복잡한 건축프로젝트의 경우 조치에 관한 지침을 대 신하는 보호목표이행
(Schutzzielerfüllung statt Massnahmenvorgaben bei grossen und komplizierten Bauprojekten)

|  | 표준부담사항이 건축시에 추가적인 편익을 유발함이 없이 명 <br> 백히 추가비용을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표준부담사 <br> 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션(즉, 차선 <br> 의 방법으로)으로서 기준이 되는 법령에 있는 화재보호와 관 <br> 련한 보호목표를 이행할 가능성을 확정한다. |
| :---: | :---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중간정도 : 특히 대규모의 건축물과 복잡한 건축물의 경우에 <br> 을 절감할 수 이씼다. |
| 재3자에 |  |
| 대한 비용 | 모든 경우에 구체적인 건축상의 조치의 이행을 심사하는 것 <br> 에당응하는 관청의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만 한다. 관 <br> 청의 활동이 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집중화되는 경우에 <br> 는 이러한 비용은 결손이 덜 발생한다.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법령에서 옵션의 형식 <br> 으로 건축주가 법령상에 명시된 조치를 대신하여 독자적인 |
| 화재보호구상을 입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  |
| 규정함으로써 강단하게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무 |  |
| 에서 가능할 수 있기 위해는 한편으로는 회재보호의 목표 |  |
| 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관청이 화재보호구상을 판단할 수 |  |
|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에너지조치분야의 규제비용의 최적화 가능성]

$\left.$| 에너지 1: 운영단계의 포함(명령을 대신하는 측정) <br> (Einbezug der Betriebsphase. Messen statt Verordnen) |  |
| :---: | :--- |
|  | 건축물 소유자는 운영시 에너지관련 면적당 특정한 에너지소 <br> 비를 초과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통하여 건축물이 <br> 효율적으로 건축될 뿐만 아니라 운영도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br> 확보하게 된다.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br>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br> 이러한 모델은 예컨대, Genf시에서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br> 이미 적용되고 있다. 최초의 시험은 Basel시의 Novartis캠퍼스 |
| 에서 시행된다. |  |$\quad$| 중간정도: 수단들은 건축물 소유자의 관점에서 목표를 가장 |
| :--- |
|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조치로 흘러들어간다(혁신의 |
| 허용). 또한 계획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에너지증명을 작성하 | \right\rvert\, | 고 통제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막대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
| :--- |
| 잠재성 |

에너지 2: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증명의 이분화
(Zweiteilung des Energienachweises bei Nichtwohnbauten)

| 취 지 | 건축주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을 위하여 에 너지증명에 관한 개괄적인 구상만 제출해야 하는 반면, 그에 관한 상세한 구상은 건축이 개시된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요건이 설정된다. <br> 두 단계에 걸쳐서 제출하게 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첫 번째 단계 에서 계획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특히 전문 적인 건축주에 의한 복잡한 프로젝트인 경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국한시킬 수 있다. |
| :---: | :---: |
| 비용감축의 잠재성 | 없음: 건축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예: 제공자가 활동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개시할 때) 또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한 이후에 새로운 구상 또는 에너지증명의 수정이 요구되는 기 존의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비용은 절감된다. |
| 제 3 자에 대한 비용 |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아무런 영향 없음: 규제의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 집행에 있 어서의 절차간소화에 관한 것이다. |
| 이 행 | 이 조치를 단순하게 이행할 수 있다. 오로지 현존하는 증명 을 시점별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권한은 개별 Kanton에 있고, 따라서 Kanton의 다수의 절차규 정들이 관련되어 있다. |

스위스의 경우 건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주제 분야에서 보다 강력 한 중앙집중화, 건축주와 건축경제계 및 규제기구로서의 국가간의 절

제 2 부 건축법 측정 사례

차의 자동화 및 표준화를 통하여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고, 따라 서 주어진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축법의 이러 한 절차가 보다 전문화되고 표준화되면 될수록, 건축경제계는 보다 더 간편하게 지역을 초월하여 조직하고, 따라서 보다 효율화된 구조 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제 3 부 입법평가에서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

스위스는 1990년대부터 입법평가(Gesetzesevaluation)와 정책평가(Politikevaluation)를 다양한 기법에 따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 }^{44)}$ 당시에는 평가에 대한 이해도 동일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관념이 부족 하였고, 평가구조의 조직과 평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차이 가 났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는 이들 평가를 제도화하는 한편 각 종 법률에서 다수의 평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35) 아울러 정부뿐 아 니라 의회, Kanton 등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내용적으로 논리적인 기준 에 따라 측정할 적극적 의지가 표명되면서 평가제도가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세련된 방법론을 갖추어가고 있다.

스위스는 2000 년대에 이르러 국제경제환경의 변모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규제개혁관련 제도도 시대흐름에 부합하도 록 개편하기도 하였다. 특히, OECD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높은 우선 순위로 제기한 기업의 행정부담경감정책(administrative Entlastung von Unternehmen)에 초점을 둔 규제개혁에 본격적인 작업을 착수하였다. 스위스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의 지표에서 규제관련 법적토대나 기업의 행정부담의 측면에서 매우
34) 스위스의 입법평가에 관한 것은 박영도/장병일,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V)-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참조. 또한 Werner Bussmann, Institutionalisierung der Evaluation in der Schweiz, Verfassungsauftrag, Konkretisierungsspielräume und Umsetzungsstrategie, in : Heinz Schäffer(Hrsg.), Evaluoerung der Gesetz/Gesetyesfolgenabschätzung(I) , Wien 2007, S.1ff [박영도/김명아(역), 법률평 가와 입법평가(II), 한국법제연구원 2008, 3 면 이하 참조. 스위스의 정책평가에 관 한 상세한 것은 Werner Bussmann/Ulrich Klöti/Peter Knoepfel(Hrsg.), Einführung in die Politikevaluation, Basel 1997 참조.
35) 스위스의 법률에서의 평가조항 유형에 관한 것은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211면 이하 참조.

제 3 부 입법평가에서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

양호한 국제지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규제-검토(Regulierung-Checkup)도 이러한 정책 적 배경에서 개발된 규제개혁 방법론의 하나이다. 특히, 스위스는 법 령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심사절차 및 방법 을 개발하여 입법절차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규제비용의 측정(Schätzung der Kosten von Regulierung)을 위한 규제-검토제도는 기 업의 규제부담완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비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 완화 및 간소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법령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의심의 여지없이 좋은 법 령을 판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령에 대한 평가에서 비용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 }^{36)}$ 스위스에서 는 법령상 규제비용의 경감과 관련하여 규제영향분석(Regulierungsfolgenabschätzung : RFA)을 제도화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법령상 규정된 정보제공의무나 각종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측정을 위해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 : SKM)이나 규제비용모 델(Regulierungskostenmodell : RKM)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에 대 한 효과예측과 심사(Wirkungen vorsehen und prüfen)를 위한 입법평가 내지 법률평가제도도 확립되어 비용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36) Daniel Janett, Evaluation wird als Kontrollinstrument des Bundesparlament immer wichtiger, LeGes 2003, S.165f.
[입법절차에서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심사도구]


그러나 입법평가에서는 제공되는 정책적 대안과 결부된 모든 비용 과 장점이 조사된다. 이에 반해 표준비용모델이나 규제비용모델, 규제 -검토제도는 특히, 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면, 입법평가는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인 비용측정을 수행하며, 후자의 3 개 측정도구는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비용산정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적 산정도구는 그 목적에 상응 하게 투입되고 법령의 효과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부차적인 접근방식). 또한 이들 3 가지 도구는 다음과 같 이 분석범위나 측정방식 등에서도 약간 다르다.

제 3 부 입법평가에서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

|  | 규제비용모델 <br> (RKM) | 표준비용모델 <br> (SKM) | 규제-검토제도 <br> (Regulierung-Checkup) |
| :---: | :---: | :---: | :---: |
| 분석범위 | 법령상 요구되는 모 든 의무(정보제공, 지 불, 협력, 감독, 자격 확보, 기타 지시사항 이행의무 등) | 법령상 요구되는 정 보제공 의무에 국한 | 해당 법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규제비용 |
| 비용범위 | 모든 비용(인적, 물적, 재정, 추가, 기회비용 등) | 행정비용 | 행정비용(인적, 물적, 투자비용, 재정적 비용) |
| 측정방식 | 사전적, 사후적, <br> 미시적, 거시적 | 사전적, 사후적 | 사후적 |
| 부담의 <br> 범위 | 주관적 부담도 측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란효과, 의무의 수 용부족, 실행 가능성 부족 등) | 객관적 행정비용만 측정 | 객관적 행정비용 측 정 및 부담간소화방 안 제시 |

이들 3 개 제도는 공통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 정비용을 감축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 력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기간내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규제-검토(Regulierung Checkup)제도 는 규제비용모델(RKM)과 표준비용모델(SKM)의 중간적인 비용측정기

법이라 볼 수 있다. 규제-검토제도는 비용과 관련된 실제조사를 실시 하지 않고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는 간소화된 방법론 을 채용하여, 비용을 측정하는 한편 행정비용감축의 가능성 발견을 위한 기초자료(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규제-검토제도나 표준비용모델, 규제비용모델은 행정부담 내 지 행정비용의 산정에 국한된 모델로서 비용측정뿐 아니라 법령의 효 용성과 집행가능성 및 이해가능성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평가하는 입법 평가의 적용방식보다 협소한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의 입법평가의 범주에서 비용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규제-검토제도를 도 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입법평가에서는 법령의 적절성과 효과에 관한 경제적 평가에 즈음 하여 기업뿐 아니라 전체 경제 및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나, 규제-검토제도는 기업에 한정한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므로 입법평가 에서 규제-검토제도는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법평 가에서 규제-검토제도의 도입은 평가대상 법령이 특히, 기업을 대상으 로 적용하는 부분이 많아 기업의 행정비용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최적대안을 마련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법평가에서 규제-검토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적 입법평가에서 보다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또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즈음하여 규제-검토제도를 동시에 적용 하게 되면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되어 평가목표가 흐트러질 수도 있으 므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3 부 입법평가에서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

입법단계 도구 결과 또는 산출물


##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Regulierungs-Checkup

Handbuch zur Schätzung der Kosten von Regulierungen sowie zur Identifizierung von Potenzialen für die Vereinfachungen und Kostenreduktion
2011.12.21

## 연방경제부 경제사무국

(Eidgenössisches Volkswirtschaftsdepartement EVD,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

## 서 문

‘규제-검토'(Regulierungs-Checkup) 방법론은 규제비용을 추산하고 간 소화하며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핸드북은 스 위스연방 경제사무국(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이 개발한 것 이다.

특히, Bertelsmann 재단에 감사를 드린다. Bertelsmann 재단은 스위스 연방 경제사무국(SECO)로 하여금 KPMG 주식회사가 만든 '규제비용 측정 핸드북'을 규제-검토의 중요한 기초로 활용하도록 해주었다. 게 다가 국내 및 외국의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대화도 거쳤다. 이념들은 독일의 '연방정부의 입법에서의 이행비용의 조사와 서술에 관한 지 침', 표준비용모델 네트워크의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 및 네덜란 드에서 개발된 '핵심 준수비용을 위한 표준비용모델'에서 따왔다.

또한 2011년 Bern에서 개최된 방법론워크솝에서 방법론 초안에 관 하여 토의하여 중요한 자극을 제공해주었던 독일, 네덜란드와 오스트 리아의 국제 전문가들과 스위스 연방통계청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 력을 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
2011년 여름에 경제정책위원회의 위원조직이 협의를 하였다. 이 협 의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방법론의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는 정부간 연구그룹의 지원이 있었다. 정부간 연구그룹은 스위스 연방경제사무국(SECO), 연방직업교육 및 기술부 (BBT), 연방보건청(BAG), 연방법무청(BJ), 연방이민청(BFM), 연방지역개 발청(ARE), 연방사회보험청(BSV), 연방통계청(BFS), 연방환경청(BAFU), 연방회계감독청(RAB), 연방국세청(ESTV), 연방관세청(EZV)의 대표자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핸드북은 2011년 12월 5일 정부간 연구그룹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정부간 연구그룹의 제안으로 가장 최근의 수정이 개시되었다.

문의처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 Direktion für Wirtschaftspolitik, Regulierungsanalyse, Holzikofenweg 36, 3003 Bern Tel.: +41‘31‘322‘21‘16

E-Mail : nicolas.wallart@seco.admin.ch

## 목 차

개 요 ..... 61

1. 서 론 ..... 65
2. 프로젝트 진행단계 ..... 77
A) 준비 - 행정기관(Vorbereitung - Verwaltung) ..... 77
2.1 분야의 정의 ..... 77
2.2 프로젝트 공모 ..... 78
B) 준비 - 수탁자(Vorbereitung - Auftragenehmer) ..... 80
2.3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의 확정 ..... 80
2.4 행위의무의 그룹핑 ..... 84
2.5 기업등급의 분류(분할) ..... 86
C) 자료조사(Datenerhebung) ..... 89
2.6 사례수의 조사 ..... 89
2.7 전문가추산 ..... 91
D) 문제점확인과 검증(Problemidentifikation und Validierung) ..... 100
2.8 기업설문조사 ..... 100
E) 규제비용의 산정(Berechnung der Regulierungskosten) ..... 103
2.9. 비용산정 ..... 103
F) 간소화(Vereinfachungen) ..... 106
2.10 문제점 및 간소화에 대한 질문의 평가 ..... 106
2.11 개선방안 작성을 위한 워크숍 ..... 107
2.12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 109
G) 문서작성(Dokumentation) ..... 111
2.13 문서작성 및 최종보고서 작성 ..... 111
3. 대체적 산정방식 ..... 113
3.1 프로젝트 단계 7.a: 기업설문조사 ..... 113
3.2 프로젝트 단계 8.a: 표준치의 산정 ..... 116
3.3 프로젝트 단계 8.b: 검증워크숍 ..... 119
4. 첨부부록 ..... 121
4.1 사항색인 ..... 121
4.2 설문지 ..... 122
4.3 요금(Tarif) ..... 133
4.4 검증워크숍을 위한 지침 ..... 134
4.5 산정된 비용의 모범작성방식 ..... 135
4.6 규제영향평가의 모범목차 ..... 136
4.7 최종보고서 작성의 모범목차 ..... 137
4.8 참고문헌 ..... 138

## 개 요

이 핸드북은 국가적 규제가 민간경제계에 발생시키는 비용의 추산 과 간소화조치를 서술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래의 요약과 [그림 1]은 조사연구절차에 관한 개요를 제시한 것이다. 이 핸드북은 크게 7 개의 주된 장 $(\mathrm{A}$ 부터 G$)$ 으로 구성되어 있고, 13 개의 요구되는 프로젝트단계 로 구분된다. [그림 1]은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단계가 내용적 및 시간 적으로 어떻게 상호 결부되고 누가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지 개략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준비(A)는 분야를 정의함으로써 시작한다(1). 이것은 가 장 중요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프로젝트 공모(2) 이 후에는 위탁자는 그 이후의 프로젝트 진행단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몇몇 프로젝트 진행단계의 경우 행정기관 의 협력은 필요치 않다.
수탁자의 준비(B)는 가장 중요한 부담을 주는 행위의무를 결정함으 로써 시작한다(3). 한정된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기업에 대하여 가 장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의무만 고려한다. 이에 이어서 행위의무를 그룹화 한다(4). 그 이유는, 실무에서의 진행과정은 종종 행위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의무의 그룹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가추산을 행하기 전에 동일한 규제가 다양한 기업들에게 상이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지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등급을 분류한다(분할)(5).

자료조사(C)는 한편으로는 사례수의 조사에 활용한다(6). 이러한 확 인은 중요하다. 전체 경제계에 대하여 추산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 이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추산을 행한다(7). 전문가추산은 규제비용 의 조사를 위한 결정적인 정보의 기초가 된다.

문제점인식과 검증(D)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행한다(8). 문제 점인식과 검증은 질적인 정보의 조사에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간소화 가능성과 전문가추산의 검증에 도움을 준다.

대체적 산정방식 : 전문가들이 필요한 추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기업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흠결된 수치를 조사해야 하고 (7.a), 표준치의 산정을 통하여 평가해야 하고 검증워크숍(8.b)에서 검 토해야 한다(제3장 참조).

모든 요구되는 변수들이 존재한 이후에는 전체 스위스에 대한 규제 비용을 산정한다(E). 비용산정(9)에 따라서 기업에게 오로지 규제에 의 하여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규제비용 이외에 간소화(F)도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간소화에 관한 쟁점들을 평가(10)한다. 개 선을 위한 제안(11)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은 비용추산, 기업의 문제 점 및 그 개선방안 등 다양한 투입에 기초한다. 규제의 편익에 영향 을 미치는 각각의 간소화가능성을 위하여 연방 행정기관은 개선방안 에 관한 간략한 규제영향평가(12)로써 편익에 관한 문제를 가능한 경 우 질적으로 또는 최소한 양적으로 문제삼아야 한다.

전체 프로젝트의 좋은 문서기록(G)은 필수적이다. 행정기관은 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 는 동안에는 조사된 자료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탁자는 작성된 문서와 최종보고서(13)를 상세한 자료들과 함께 행정기관에 제 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간소화를 위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보 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종료하기 까지는 4 주 $\sim 6$ 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 다음 단계로는 행정공무원, 연방정부 또는 의회가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는 것인데, 이 단계는 이 핸드북의 서술대상이 아니다.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그림 1: 프로젝트 진행과정


## 1. 서 론

## 내 용

스위스의 현 경제상황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에 의하여 유지되 고 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주위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매력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요건은 바로 국가적 규제로 인하여 기업이 떠안게 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비 교적 능률적인 행정은 스위스의 현 상황에서 중요한 장점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상 부담완화는 지속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행정상의 부담완화 (administrative Entlastung)에 관한 주제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늦어도 1990년대 말에는 항상 증가하는 규제들이 행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제 도와 도구를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 (행정상으로나 그 밖의) 비용을 통제하여 기업들이 수 천가지 조문과 수많은 통제에 숨통이 막히게 함이 없이 각종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이 받 아들여졌다. 그래서 예컨대, 스위스에서 1999년에는 중소기업(KMU)포럼이 의회외부의 위원회로 설치되었고 2006년에는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었다.

도구차원에서는 규제영향평가(RFA)가 도입되었다. 규제영향평가는 법 조문을 그 제정 이전에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는 입법의 개선 을 위한 도구이다. 규제영향평가도 2006년에 '심화된 규제영향평가 (vertieften RFA)'의 도입과 연방정부의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강 화되었다. 이 규제영향평가는 매우 광범위한 도구이다. 규제로 인한 가장 중요한 영향들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규제영향평가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미 존재하는 규제에 대한 도구로 서도 발전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순수하게 질적인 방법론들(예컨대, 약 10 개의 중 소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문의하는 중소기업 친화성심 사)에서부터 양적인 방법론과 비용측정이 개발되었다. 유럽에서는 다 수의 국가들이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표준비용모델(Standard Kosten Modell : SKM) 을 원용하였다.1) 이 표준비용모델은 측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로서 활 용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다수의 규제분야에 대하여 이러한 표준비용 모델의 방법론을 가지고 행정비용을 측정했다. 그렇지만 표준비용모델 은 좁은 의미의 행정비용(즉, 기업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정보제 공의무의 비용)의 측정에 국한되어 있다. 규제비용을 광범위하게 측정 하기 위하여 2009년에 Bertelsmann 재단의 위탁으로 KPMG 주식회사가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규제비용모델(Regulierungskostenmodell : RKM) ${ }^{2}$ ) 을 개발하였다. 규제비용모델은 이 핸드북의 본질적인 기초로서 기업 에 대한 규제비용의 양적 추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 밖에 2011년에는 연방정부가 관료주의 기압계(Bürokratiebarometer) 에 대한 심사를 천명하였다. 관료주의 기압계는 향후 기업에 대한 부 담과 가능한 간소화에 관한 관련되는 양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다. 관료주의 기압계란 기업이 규제로 인한 부담을 체감하는지에 관 한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본적인 조사를 말한다.3)

외국에서도 경제계의 현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Normenkontrollrat), 네덜란드의 ACTAL, 스웨덴의 Regelradat 또는 영국의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는 정부에 대하여 '진화된 규제(intelligenten Regulierung)'를 자문하고 있 으며 규제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규

1) SCM Network (Hrsg.), 2005 참조.
2) Handbuch Bertelsmann/KPMG, 2009 참조.
3) 연방경제사무국 관료주의 기압계의 도입을 검토한다.

제영향평가를 헌법 차원에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행정 의 부담경감과 '스마트 규제 아젠다(smart regulation agenda)'가 2020 유럽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들의 효과로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각종 권고를 내 놓았는 데, 이들 권고가 시행되면 유럽의 기업들이 매년 380억 유로를 절감 하도록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비용을 추산하고 개선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은 '선진 규제(besseren Regulierung)'를 위한 작업의 전체적 맥락에 함 입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연방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들 이 행하는 규제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논의하 게 해준다. 게다가 규제-검토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제공된다. 즉, 그 밖의 연방행정기관, Kanton, 단체 또는 기타 담당자들도 독자적 인 관점에서 그 밖의 분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내 놓을 수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행정기관과 정치권도 프로젝트가 종료 된 이후에 현존하는 규제와 새로운 규제의 규제비용에 유의하여 편익 문제를 고려하는 가운데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더 나은 규제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 어야 한다.

## 위 탁

규제비용의 추산과 간소화 및 비용감축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Fournier(10.3429 - 규제비용의 조사)4)와 Zuppiger(10.3592 규제비용의 측정(5)가 설정한 명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명 제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2011년 말까지 스위스 기업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규제의 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4) http://www.parlament.ch/suche/seiten/geschaefte.aspx?gesch_id=20103429 참조.
5) http://www.parlament.ch/suche/seiten/geschaefte.aspx?gesch_id=20103592 참조.

연방정부는 3 가지 고려사항과 함께 이들 명제의 가정을 신청하였다. 첫째, 비용측정의 종료를 2013년까지 미룬다. 둘째, 모든 규제비용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되는 15 개 분야에서의 규제비용만 측 정하되, 각각 가장 중요한 법규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효과만 측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편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비 용을 감축시킬 목표를 추구한다.

2010년 9월 21일 스위스 상원(Ständerat)은 Fournier의 명제를 수용하 였고, 국민의회는 2010년 10월 1일에 Zuppiger의 명제를 수용하였다. 연방경제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정부간 연구그룹 속에서 연방경제부가 이 작업을 지휘하기 위하여 나머지 연방부처와 교섭하도록 명받았다.

## 이 핸드북의 목표

간소화가능성의 조사와 비용추산은 스위스 기업들에게 특히 관련되 어 있는 15 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별 분야별로 진행하는 연구 들은 다양한 연방 행정기관들의 주도하에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수탁 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정합적이며 비교가능한 연 구의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핸드북이 필요하다.

이 방법론은 비용추산의 정확성과 실용성간의 타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경제에 관한 표본적 비용조사는 프 로젝트의 재정적이고 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기업들도 이러 한 비용추산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부담을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최상의 목표는 추산의 상세성과 정확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프로젝트의 목표는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인식과 행정과 기업 차원에서 한정된 자원투입을 고려하는 가운데 활용가능한 간소화방안 을 제시하는데 있다.

## 정보원（情報源）

이 핸드북은 원칙적으로 Bertelsmann재단의 규제비용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다만，몇몇의 중요한 변경을 행하였다．규제비용모델의 특징은 규범수범자의 강력한 구속으로 나타난다．이와 관련하여 Bertelsmann재 단의 방법론은 몇몇의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도움으로 전체 경제계에 대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수범자6）에게 등장하는 비용을 추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규제－검토에서는 비용추산을 위한 주된 정보원이 바로 전 문가들이다．주된 정보원을 전문가들로 정한 이유는 특히，다음과 같 다．기업들은 시간적으로 덜 집중적인 설문조사로 인하여 부담을 받 는다．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는 추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적은 설문조사로 인한 계산은 전문가추산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전문가추산과 기업설문조 사의 경우 결과의 규모가 동일하고，이에 따라 결과로부터 아무런 정 책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견해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추산을 검증하고 질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간소화가능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기업설문조사를 실시한다．그렇지만 Bertelsmann재단의 원 래의 방법론에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적은 기업설문조사가 필요할 뿐 이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추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기업설 문조사의 과정에서 흠결된 수치를 평가하고，검증워크숍에서 검토해 야 한다（대체적 산정방식）．

6）이러한 접근방식은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업무（SCM Network（Hrsg．），2005，S．10） 를 기초적인 관념으로 이해하는 표준비용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다．따라서 그 활동 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게 경쟁으로 이행하는 기업들을 고려하는 것이다．특별 하게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분석범위

국제적인 경험에 의하면, 양적인 관점과 질적인 관점을 결합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행위의무, 그 중에 서도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spflicht)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반해 수인의무와 부작위의무는 고찰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분석의 초점은 기업에 대한 규제의 직접적 비용(direkten Kosten)이다. 이러한 직접적 비용은 양적이고 질적으로 고려된다([그림 2] 참조).
표준비용모델과는 달리 규제비용측정은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한 행 정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무(요구사항들)의 비용도 고려한다. 이 핸드북은 발생한 직접비용을 인건비, 투자비용, 기타 물적 비용 및 재 정적 비용 등 4 개의 범주로 세분화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을 대상으 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안도 조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에서는 간소화방안을 작성한다.

Bertelsmann재단의 원래의 모델에 대하여 이 핸드북에서 행한 보완 사항으로는, 기업의 인식에 보다 더 강하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기업에의 질문을 포함하는 부분을 쉅게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적시할 가능성을 가지고,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보조자료로 가능 한 간소화의 목록을 제공한다. 그 밖에 종종 기업에 대한 강력한 부 담으로 작용하는 간접적 비용도 규제-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외시하 지 않는다. 수량화는 종종 개별사례에서만 가능하지만 매우 복잡하거 나 심지어 수량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 간접적 비용은 양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질적으 로 고려한다.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그림 2: 규제검토에서 고려된 규제비용


시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쟁효과와 혁신효과 등과 같은 그 밖 의 영향들은 조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와 시민에 대한 규제의 비용 도 고려하지 않는다.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수범자가 규범에 합치되 게 행동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추가적으로 이 핸드북에서는 규제의 간소화에 관한 모듈을 포함하 고 있다. 이는 정부간 연구그룹(IDA)이 규제의 간소화에 관한 모듈을 이 핸드북에 포함시키는 것이 비용추산의 절차와 간소화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7) 원래의 규제비용모델에 서는 편익이 고찰되지 않음에 반해 이 방법론에서는 편익이 개선방안 (프로젝트 단계 12)에 관한 규제영향평가를 통하여 통합되어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는, 규제의 편익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강하게 침해 되지 않는 개선을 일차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밖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회비용 및 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기 회비용은 규제비용모델에서 부분적으로 추산되고 이 핸드북에서는 질 적으로 고찰되지 않는다. 기회비용과 세금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상세한 내용들이 이미 공적인 회계에 존재하 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의 경우 이전지불로서 사회를 위한 자 원 활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핸드북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 로 수범자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범자도 관련되어 있는 경우(예 : 요양시설, 보험회사, 단체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것은 모든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러한 수범자도 조사연구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 밖의 수범
7) 규제의 간소화는 Hochreutner의 발의(07.3681 - Vereinfachung der Regulierungen in sämtlichen Departmenten)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는 국민의회에서 2009.9.17에 채택되었고 스위스의 상원에서 2010.6.17. 채택되었다.

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분할이 이루어진다. 이 는 특히 추가적인 설문조사와 워크숍을 포함하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의미하게 된다.

## 방법론의 한계

이 자리에서 방법론의 한계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규제비용의 계 산은 평균적인 기업의 표준화된 비용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이 표준 화된 비용은 전문가에 의하여 추산되지만, 만약 전문가 추산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소수의 기업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경험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전문가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응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한편 으로는 기업이 과거에 특별하게 부담을 받았던 개별적인 극단적인 사 건에 대한 기업의 응답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이어서 행해 지는 기업 내지 워크숍에서의 검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추산이고 정확한 비용측정을 예상할 수 없다. 즉, 기업의 경우 비용발생원인이 다양한 기업범주에 있고 유 발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로 많은 것인지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비용을 감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부정확한 수치의 문제는 다수의 기업인터뷰를 통하여 비용을 조사 하여 이를 통하여 표본적 결과로 삼음으로써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도한 효용과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조사연구 비를 유발한다. 질통제를 위해서는 조사된 자료도(Bottom-up 방식) 현 존하는 자료와 통계(Top-down 방식)와 비교할 수 있다.

## 절 차

연방경제부는 정부간 연구그룹을 지휘하고 전체 절차를 조정한다. 이 핸드북에서는 각각의 연방부처가 외부의 수탁자에 대하여 개별적 인 조사연구과제를 발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수

탁자는 조사연구의 수행에 책임을 진다. 이 핸드북은 개별적인 프로 젝트 진행단계를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 핸드북은 참여한 기관(수 탁자, 정부부처, 연방경제사무국)간에 있을 수 있는 과제의 분배에 관 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업무를 경감하고 15 개 분야에서의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핸드북의 목표는 정부부처 와 수탁자가 가능한 한 폭넓게 이 핸드북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 에 있다.

이 핸드북의 [그림 1]에서 제시된 13 개의 프로젝트 진행단계는 항상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내용에서 출발하여, 이에 이어 참 여한 담당기관을 언급하고 그 과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 어서 개별적인 프로젝트 단계에서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 로 예상되는 산물의 목록을 요약한다. 방법론을 가능한 한 독자적으 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프로젝트 진행단계는 이 핸드북에서 상 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이로써 수탁자는 하위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 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진행단계가 [그림 1]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각각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 해야 한다. 종종 이전의 프로젝트 단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그 다음의 프로젝트 단계를 처리할 수 있다.

과거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준비단계 $(\mathrm{A}$ 와 B$)$ 는 한편으로는 비용이 많이 요소되지만 특별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주었다. 연속적인 준비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결을 쉽게 해주고, 특히 프로젝 트 단계 C 부터 G 까지는 수탁자에게 매우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분할의 경우 어떠한 기준이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문가추산과 설문조사에 따라서 분할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


## 지역적 차이

유의할 것은, 일정한 분야에서는 Kanton의 법과 Kanton의 집행이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업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Kanton의 법과 집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이한 입법과 상이한 집행으로 인 하여 Kanton간의 강한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2 개 내지 3 개의 Kanton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질적 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Kanton의 차원을 고려한다.

Kanton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는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 일정한 프로젝트 단계는 모든 Kanton에 대하여 진행되어야 하 고,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워크숍과 더 많은 인터뷰가 불가피하다.

## 사전적인 비용추산의 실시

이 핸드북은 현행 규제의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 - 즉, 사후적 추산절차 - 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전적 분석, 다시 말해서 -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 새로운 규제에의 비용을 추산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후적 측정과는 반대로 사전적 측 정의 경우에는 조정비용(Anpassungskosten)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이 핸드북에 서술된 방법론은 현재 준수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의무에 대 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적 분석의 경우 전문가나 기업 은 효과적인 시간 내지 비용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수치를 추산해야만 한다. 이로 인하여 결과의 신빙성은 떨 어진다. 이행가능성과 수용성 및 가능한 간소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서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 2. 프로젝트 진행단계

## A) 준비 - 행정기관(Vorbereitung - Verwaltung)

## 2.1 분야의 정의

## a) 내 용

프로젝트를 공고하기 전에 분석할 분야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 다. 이어서 구분된 조사분야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련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법률, 법규명령, 지침 등). 가장 중요한 규제를 확인하 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의무의 결정하는 기초를 제 공해준다. 행위의무(Handlungspflicht)란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규범 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정부부처

분야의 개념정의와 구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책임을 진다. 필요 한 경우에는 관할 정부부처는 유사한 분야를 관할하는 다른 관청을 참여시킨다. 연방경제사무국 $(\mathrm{SECO})$ 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c) 진행방식

처음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이미 유사한 조사연구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미 유사한 조사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연구에서 나온 정보들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구한 결과들과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수치 관련 자료들이 조화되는 등 조화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모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젝트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결정 해야 한다. 조화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추산절차 와 간소화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되는 법령의 확인은 현행 행위의무를 확인함에 있어 첫 번째 단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어떠한 절차가 이미 알려져 있는 부담가중적 절차이며, 이러한 절차를 정의하고, 이에 이어서 이 러한 절차에 관한 법령의 목록 작성을 숙고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이 경우 각각의 주제분야별로 외부의 전문가를 개입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경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개별사례에서는 적은 비 용이 유발되지만 많은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거나 매우 자주 준수해야 하는 행위의무도 이를 합계해보면 많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이다(예 : 급여의 변화).
사적인 규제(Private Regulierungen)는 국가 또는 Kanton의 법령이 이 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고려한다. 예컨대, 국제법에 근 거하는 등 거의 변경할 수 없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덜 상세하 게 하거나 보다 강하게 한꺼번에 묶어서 실시할 수 있다(개별적 행위 의무의 추산을 대신하는 집합적인 추산).

부분적으로 상이한 분야에 있는 다수의 규제들이 동일한 임무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분야 내부에서 뿐만 아 니라 분야를 초월하여 비용이 이중계산되는 점을 조기에 유의해야 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분야에 대한 분명한 정의
- 관련되는 법령 목록(존재하는 경우에는 SR-번호 포함)


## 2.2 프로젝트 공모

## a) 내 용

범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이후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이어서 조사연구를 바로 계속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법령분석을 종료하기 전에 공모가 개시되어야 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정부부처

당해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는 프로젝트 공모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관할한다. 이 경우 정부부처는 연방경제사무국(SECO) 의 관련 문건들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초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방경제사무국이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8)

## c) 진행방식

연방의 주무부처는 이 핸드북의 치침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공모한 다. 개별적인 조사연구들이 전체프로젝트에 포함되도록 서술한다. 프 로젝트 공모에서는 주어진 방법론을 가능한 한 폭넓게 따라야 하고,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연방경제사무국도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접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사의 대상과 목표설정은 가능한 한 상세하 게 서술한다.

수탁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특징을 지울 수 있다. 즉, 수탁자는 다 루어야 할 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방 법론적인 요소들(경제학적 분석과 경영학적 분석, 워크솝과 설문조사 의 실시)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탁자가 다루어야 할 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론적인 요소들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 렇지 않으면 수탁자는 추가적인 조사연구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전 문적 또는 방법론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 이다.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처해지게 되는 수탁자를 구해서는 아니된다.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는 워크숍과 기업설문조사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워크숍이나 기업설문조사에 필요한 수는 다양한 분야간에 차
8)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WTO 공모와의 공동위탁의 이념이 언급되었다. 이 러한 이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공동의 WTO-공모에 대한 대안으로 3 개~4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방법론을 학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가 날 수 있다. 워크숍이나 기업설문조사의 필요 수는 전문가들이 모든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용추산을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의 과정에서 실시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비용에 대 해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관련 수범자들과 기업등급의 분류(분할)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설문조사의 수를 유보해서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유보해서 기재하는 것이 주는 장점은 예컨대, 기업의 응답내용이 바꿔거나 추가적인 분할(Segment)을 고려해야 할 경우 전문가가 아무런 추산을 해 줄 수 없음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에는 계약에 서명하고 수탁자, 정부부처 및 연 방경제사무국간의 킥오프 미칭을 조직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수탁자와의 계약에 서명한다.
- 킥오프 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 B) 준비 - 수탁자(Vorbereitung - Auftragenehmer)

## 2.3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의 확정

## a) 내 용

비용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행위의무에 대하여 비용추 산을 실시할 수 없고, 기업에 대하여 중요한 행위의무를 전문가추산 의 전(前)단계에서 조사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 단계는 정부부처가 확 인한 관련되는 법령의 목록에 기초한다.

프로젝트 단계 3과 4(행위의무의 그룹핑)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종종 이 두 개의 프로젝트 단계를 상호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의 미가 있을 수 있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그 밖의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수탁자

이 프로젝트 단계에 책임을 지는 담당자는 수탁자이다. 법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 단계 는 전문적인 수준이 요구되고 시간적으로 집중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각종 경제단체들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경제단체들은 관련되는 법령과 특히 기업의 실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 c) 진행방식

정부부처가 확인한 관련되는 법령(프로젝트 단계 1)에 기초하여 수 탁자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들의 목록을 작성 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범위마다 부담의 다양한 수가 중요한 비용 유발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확인할 중요한 행위의무 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10 개의 중요한 행위의무와 30 개의 중요한 행위의무들 간에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9) 선정한 행위의무의 수와는 무관하게, 기업에 대한 부담의 대부분이 질문된 행위의무들을 통하여 일치하게 되도록 선정해야 할 것이다.

행위의무의 예로는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예: 허가의무, 신 고의무, 자료작성의무 또는 보고의무 등), 제 3 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예: 번호판게시의무), 지불의무(예: 세금납부의무 또는 비용부담의무), 협력의무(예: 공동작업의무, 위원회설치의무, 담당자선정의무 등), 감독 의무(예: 정기적인 감독의무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하는 감독의 무), 자격의무(예: 교육훈련의무, 보수교육의무, 지도의무 등) 및 목표 부담사항이행의무와 그 밖의 부담사항이행의무(예: 표준) 등이 있다.
9) 입법에서는 각각의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수백만 개의 행위의무들이 있을 수 있다.

## 행위의무 사례

- 정보제공의무(출처: 가격표시령, Preisbekanntgabeverordnung, PBV, SR 942.211):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불할 가격을 스위스 프랑으로(상세한 가격) 표시해야 한다"(제 3 조 제 1 항).
- 허가의무(출처: 생필품 및 일용품령, Lebensmittel- und Gebrauchs gegenständeverordnung, LGV, SR 817.02): "동물원료로 생필품을 제조, 가공, 처리, 보관 또는 교부하는 기업은 Kanton의 관할 집행청으로부터 허가 를 받아야 한다"(제13조 제1항).
- 자격의무(출처: 위생령, Hygenieverordnung, HyG, SR 817.024.1): "책임자 는 생필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그들의 활동에 상응하게 감 독받고 생필품의 문제에서 지도 또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 다"(제23조).
- 목표이행의무(출처: 대기보존령, Luftreinhalte-Verordnung, LRV, SR 814. 318.142.1): " 10 메가와트 이상의 정격열입력 장치를 가진 설비에서는 산 화질소의 배출은 세제곱미터당 150 밀리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제726조 제2항).
금지는 행위의무가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 금지(출처: 대기보존령, Luftreinhalte-Verordnung, LRV, SR 814.318.142.1): "주택지폐기물과 특수폐기물은 350 킬로와트 이하의 정격열입력 장치를 가진 설비에서는 연소해서는 아니된다"(제 718 조 제 1 항).

행위의무는 종종 기업(회계기관, 계획자, 건축가 등도 포함)에 대한 것이지만 그 밖의 부문에 특수하게 중요한 수범자들도 관련될 수 있 다(예: 요양시설, 건강보험사, 협회 등). 시민이나 국가에 관련되는 행 위의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수탁자가 기업의 실무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예: 법률가, 기업가, 경제단체의 대표, 재산이나 권리의 수탁자, 정부부처의 대표자, 실무가, 특정분야 전문가 등)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한 연구에서 상응하는 주제분야를 분석한 외국의 연구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어떠한 수범자가 행위의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정의하여야 한다.

두 가지 유형의 행위의무가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례수가 많은 행위의무
- 건당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행위의무

과거에 수행된 프로젝트를 보면, 개별 기업에서는 적은 비용이 발생 하였으나, 많은 사례수를 가지는 행위의무가 있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기업이 당해 행위의무에 관련되어 있어 개별 기업에서 보면 적 은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행 위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행위의무를 확정하는 시 점에서 사례수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들을 확정하는 것은 연 구과제 수탁자와 위탁자의 의지에 따라 전문가 워크숍의 과정에서도 행할 수 있다. 전문가 워크숍이 주는 이점은, 최종적으로 수탁자가 가 장 많은 부담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을 전문가와 공동으로 한다는 점이다. 워크숍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 중 요한 행위의무들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 에게 미리 그들의 견해에 따라 가장 부담을 주는 행위의무를 선정하 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수탁자는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토 론을 위한 기본자료가 되는 순위를 매긴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들을 확정함에 있어 각 각의 분야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제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 은 이후에는 이들 경제단체들은 서면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기 회를 가진다. 관련 경제단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간 소화절차 속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경제단체들

의 서면 의견은 추후 개선방안의 작성에 관한 워크숍을 위한 투입물 로 활용된다.

## d) 예상되는 산물

-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들의 목록
- 각각의 행위의무에 대하여 관련되는 수범자의 확인


## 2.4 행위의무의 그룹핑

## a) 내 용

이 프로젝트 단계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의 확인에 기초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기업의 과정들이 종종 하나의 행 위의무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의무들을 그룹핑(Gruppierung)함으로써 규율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행위의무들을 그룹핑함으로 써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의무들에 대한 연결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례에서는 개별적인 행위의무 들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그룹핑을 해서는 아니된다. 확인된 행위의무 또는 행위의무들의 그룹 핑에 이어서 비용을 추산하고 가능한 간소화를 확인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그 밖의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수탁자

수탁자는 이 프로젝트 단계를 관할한다. 실무가와 그 밖의 전문가들 이 수탁자에게 그들의 전문지식을 지원해줄 것을 권고한다(이에 관해 서는 앞의 프로젝트 단계 참조).

## c) 진행방식

그룹핑이 특히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는, 다수의 규제들이 유사한 내 용을 가지고 있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이 하나의 구체적인 과제만 이행하면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종종 발생할 수 있

으며 기업의 과정들을 보다 더 잘 재현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기 업이 새로운 기계 또는 새로운 생산과정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대부분 하나의 유일한 행위의무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다. 추측 컨대, 이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환경관련 규정과 안전관련 규정들이 적용될 것이다.

## 행위의무 그룹핑 사례

스위스 중소기업 10 )에 대한 규제비용의 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생필품법의 분야에서 5 개의 의무그룹(즉, 5 개의 그룹핑된 행위의 무들)을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의무그룹인 '생필품의 재추 적가능성, 의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3 개의 행위의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생필품법 제23a조 제2항).
- "생필품, 생필품생산에 사용되는 동물 및 생필품으로 가공되도록 되어 있거나 생필품으로 가공되도록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원료들은 모든 생 산단계, 가공단계와 판매단계에 걸쳐 재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생필품법 제49조 제2항과 결부된 제23a조 제1항 및 생필품 및 일용품 령 제50조).
- "제1항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Kanton의 관할 집행기관에 대하 여 (a) 당해 제품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b) 당해 제품이 누구에 게 교부되었는지(단, 소비자에게 직접 교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생필품법 제 50 조 제 1 항과 결부 된 제 50 조 제 2 항, 생필품법 제 55 조와 결부된 제 50 조 제 1 항).

행위의무의 그룹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룹의 비용을 추 산한다. 이 비용은 개별적인 행위의무별로 할당할 수 없다. 그러나 가 장 중요한 행위의무 그룹은 전문가추산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행위의 무에 비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추산은 5억 프랑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의무그룹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
10) 출처: BFS, Betriebszählung 2008.

## d) 예상되는 산물

- 관련되는 행위의무의 목록 또는 수탁연구의 또 다른 과정에서 분석될 행위의무그룹의 목록


## 2.5 기업등급의 분류(분할)

## a) 내 용

비용이 추산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기준이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동일한 규제가 다양한 비용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분할(Segmentierung)에 대한 요구사항은 분야마다 많은 차이를 보 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등급으로 분류하여 분야에 특수하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분할을 매우 잘 고려하여 외부에서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추산 또는 기업설문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분할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나 경제관련단체가 참여 하에)수탁자

분할은 수탁자가 행한다. 경제관련단체의 전문가, 정부부처 및 그 밖의 기관의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예컨대, 정부 부처가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 부처는 지원해야 한다.

## c) 진행방식

종종 기업의 규모(즉 직원수에 다른 규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의 미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2 개에서 3 개의 규모등급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얼마나 많은 분할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 등급의 다른 수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직원의 수에 따른 단순 분할 사례

기업의 규모에 따라 3 개로 분할로 분류하기 위한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 }^{11)}$

| 기업의 규모(정규직원의 수) | 기업의 수 | 피고용자 수 |
| :---: | ---: | ---: |
| 분할 1: 초소규모 기업(9명까지) | 272,346 | 869,206 |
| 분할 2: 소규모 기업(10명~49명) | 33,183 | 760,780 |
| 분할 3: 중간규모 기업(50명~249명) <br> 분할 4: 대규모 기업(250명 이상) | 6,178 | 697,816 |
| 계 | 1,154 | $1,166,269$ |

각각의 분야마다 또 다른 지표들이 기업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할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 기업에서 사용된 기술(예컨대, 급여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 특정한 활동을 내부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 전문분야12)
- 기업의 법형식
- 그 밖의 법적 기준13)

각각의 분야마다 상이한 분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목표는 분 야당 3 개에서 5 개의 분할을 행하는 것이다. 더 많은 분할은 비용추산 의 정확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과다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11) 출처: BFS, Betriebszählung 2008.
12) 노동법을 예로 들면, 객관적인 부담은 건축분야가 생필품에 밀접한 산업에서 보 다 더 많지만, 주관적인 부담은 생필품에 밀접한 산업에서 더 높다. 출처: KPMG (Hrsg.), 2010.
13)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구에서는 예컨대, 당기 세율방법(Saldosteuersatzmethode)을 가진 기업과 가지지 않은 기업간을 구분하였다. 출처: Rambøll Management (Hrsg.), 2007.

도 한다. 이에 반해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최소규모 기업의 행정부담을 국제적인 대규모기업의 행정부담과 비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문제제기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범자가 많이 있을 수 있 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범자의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분할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수범자들에 대하여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분할의 수가 늘어나고 아마도 필요한 워크솝과 설문조사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 복잡한 분할 사례

2차 실업보험(2. Säule)에 관한 연구14)에서는 기업들 중에서 아래와 같이 기업의 규모, 법적 형식, 제2차 실업보험과 관련한 과제의 해결, 요양시설 등 4 개의 기준에 따라 분할이 선정되었다.

|  | 분할 1 | 분할 2 | 분할 3 |
| :---: | :---: | :---: | :---: |
| 기업의 규모 | 49명 미만의 직원을 <br> 가진 초소규모 기업 <br> 과 소규모 기업 | 특히 10명의 직원 <br> 을 가진 소규모 기 <br> 업에서부터 대규모 <br> 기업까지 | 특히 50 명의 직 원 <br> 을 가진 중규모 기 <br> 업과 대규모 기업 |
| 법적 형식 | 사법 | 사법 | 사법과 공법 |
| 두 번째 기둥과 <br> 관련한 과제의 <br> 해결 | 기업에서 인사제도 <br> 를 담당하는 사람들 | 수탁자(Träuhänder), <br> 기업의 인사팀 | 기업의 인사팀 |

수탁자의 준비단계의 마지막(프로젝트 단계 3~5)에 수탁자, 정부부 터 및 연방경제사무국간의 회합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확
14) 출처: Hornung et al., 2011, S. 27.

인된 부담을 주는 행위의무와 분할 등 그 때까지의 결과에 대하여 논 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정안을 제출받을 기회를 가진다. 전 문가추산을 함에 있어서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선정된 분할을 담고 있는 표
- 왜 이러한 분할을 선정하였고, 왜 다양한 분할별로 비용에 차이 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


## C) 자료조사(Datenerhebung)

$$
2.6 \text { 사례수의 조사 }
$$

## a) 내 용

전문가추산 또는 보완적인 기업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된 비용은 사례수를 도움으로 모든 기업에 대한 총비용을 계산한다.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례수는 관련되는 수 범자의 수와 매년 당 활동을 하는 빈도를 곱함으로써 도출된다.

행위의무가 매년 1 회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얼 마나 많은 수범자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지 단순하게 조사할 수 있 다. 그렇지만 규제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기업이 연간 수차례 수행해 야 하는 경우 또는 예컨대, 10 년마다 한번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 은 사례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수탁자 (정부부처 참여)

수탁자는 자료의 통합하는 데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부부처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 c) 진행방식

분할이 끝난 이후에는 사례수의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 수 행된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유용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단계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여기서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관련되는 기업의 수는 분할의 기준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된 행위의무와 분할간의 내용이 차이가 난다.

수치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

- 통계자료(연방통계청, 정부부처, Kanton의 행정기관, 각종 단체 등에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이차통계 자료15)
-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 전문가 추산

관련되는 기업의 수에 추가하여 조사해야 할 것으로는 기업에서 하 나의 활동이 1 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행해져야 하는지의 여 부이다. 이것은 전문가추산, 기업설문조사에서의 기업의 응답 또는 정 부부처의 보고내용에 기초하여 찾아내야 한다. 기업의 응답에만 근거 하여 빈도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빈도의 확정을 위한 진행방식은 프로젝트 단계 8.a.에 서술되어 있는 표준치의 산정을 원용할 수 있다.

|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행위의무에서 빈도 사례 |  |
| :--- | :--- |
| 매년 | 빈도 $=1$ |
| 매월 | 빈도 $=12$ |
| 매 10 년 마다 | 빈도 $=0.1$ |

[^2]
##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일정한 행위의무의 경우에는 모든 개별적인 직원을 위한 일정한 활 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전일 제로 근무하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개인보호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러 한 행위의무에서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지 정규직원으로 환산한 고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재정적 비용(수수료, 공과금 등,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추산의 장 참 조) 및 요금비용(Tariffkosten)16)에 관한 정보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 이다.

## d) 예상되는 산물

- 각 행위의무와 분할 당 사례수


## 2.7 전문가추산

## a) 내 용

이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행 위의무에 대한 비용추산을 행한다. 이 전문가추산은 규제비용을 확정 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초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 단계 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좋고 폭넓게 지원된 준비가 요구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정부부처나 연방경제사무국의 지원) 수탁자

수탁자는 이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부부처는 전문적 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연방경제사무국은 방법론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 c) 진행방식

이 프로젝트 단계의 목표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비용범주(인건비, 투자비용, 그 밖의 물적 및 재정적 비용) ${ }^{17)}$ 에 나타난 비용을 추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산을 함에 있어서는 완료된 분할 뿐만 아니 라 다양한 행위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추산은 이 핸드북 첨부 부록에 있는 설문지(부록 A 부)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 무엇을 추산해야 하는가?

매 행위의무와 매 분할마다 4개의 비용범주에 대하여 언급해야 한 다. 인건비, 투자비용 및 그 밖의 물적 비용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비의 점유율에 대한 추산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비용범주의 조사 된 모든 수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표 2 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이 추산은 이 핸드북 첨부부록의 설문지 제 A 부를 도움으로 실시한다.

인건비(Personalkosten)의 경우에는 매 행위의무별로 필요한 시간적 비용을 추산한다. 게다가 매년 얼마나 자주 업무가 수행되는지도 문 의해야 한다. 행위의무 또는 통계적 내용을 기초로 일정한 활동이 예 컨대, 1 년에 2 번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그 행 위의무에 대한 빈도는 문의할 필요가 없다. ${ }^{18)}$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는 시간적 비용과 빈도를 일괄하여 조사한다. 복잡한 업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양한 표준활동19)으로 분류할 수 있 는 이른바 표준절차가 있다. 그렇다면 표준활동에 대해서는 시간적 비
17) 그러나 확인된 행위의무들은 규제비용모델-핸드북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이한 유 형(정보제공의무, 지불의무, 협력의무, 감독의무, 자격의무 및 목표이행의무와 기타 임무이행의무)으로 정렬된다.
18)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인건비의 범주에서 추가적으로 다 양한 자격수준(낮음, 중간, 높음)의 비율을 문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 의 진행단계에서 전문분야에 일반적인 평균급여를 산정한다.
19) 평균활동으로는 예컨대, 의무에 숙달하는 것, 내부 또는 외부의 회의, 자료송부 또는 복사와 문서화 등이다. 이러한 표준활동의 목록은 첨부부록의 설문지에 있다.

용과 빈도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 예컨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송부 가 1 년에 1 회만 행해지지만 계산과 지불은 매월 행하는 경우에는 이 러한 표준활동을 각각 추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표준절차를 표준활동으로 분류하는 사례

새로운 급여증명서20)에 관한 연구에서는 급여증명서의 작성을 여섯 개의 표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 급여증명서 만들기
- 급여증명서 준비하기
- 급여증명서 내용 기재하기
- 급여증명서 내용 사후 수정하기
- 급여증명서 출력/복사, 배포 및 문서화하기
- 급여증명서 관련 문의에 대하여 응답하기

규제비용모델과 상응하게 비용추산에서는 필요비용(영어로는 Business as usual costs)을 고려한다. 여기서 필요비용이란 기업에서 규제가 없 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규제가 종종 기업 에게 또 다른 뭔가를 가져온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예: 식당에서의 생 필품위생). 따라서 규제는 기업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기업이 규제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규제와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정한 환경 또는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는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비용은 일정 한 정도로 규제의 경영상의 편익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러 한 필요비용은 효과적인 규제비용이 아니며 규제비용을 산정함에 있 어서 배제된다. 예컨대, 필요비용만 유발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경우에
20) 출저: KPMG (Hrsg.), 2008, S. 12-13.

는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절감을 가져오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규제 의 필요비용은 $0 \%$ 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고, $100 \%$ 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며 $0 \% \sim 100 \%$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필요비용 사례

사고방지에 관한 법규명령(Verordnung über die Unfallverhütung)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신의 기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들과 자신의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업 소속의 모든 근로자들이 업 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에 관하여 고지하고 그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지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고지와 지도는 근로자들 이 당해 기업에 채용되었을 때 해야 하며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변경된 경우에도 고지와 지도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차 고지와 지도를 해야 한다(제6조 제1항)".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주의 개 인적인 이해관계에서도 이러한 지침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필요비용의 점유율이 $75 \%$ 에 이른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기업에서 이 집행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의 4분의3을 법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4분 의3은 이 집행명령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하지만, 모든 기업의 4분의1은 규제가 없이는 근로자들에게 고지 내지 지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의 미한다.

투자비용(Investitionskosten)은 과거에 행한 투자에 관한 자료를 추산 한다. 이 경우 인건비의 경우보다 더 장기간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한 다. 투자품목들이 수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 에서 투자를 하기 위하여 조달해야 하는 인력투입도 고려한다.

그 밖의 물적 비용(sonstige Sachkosten)의 경우에는 특히 원료, 보조 원료 및 사업장 가동용 원료 또는 연관된 제품들에 대한 비용을 조사 한다. 이와 관련된 제3자급부(예: 자문에 대하여 지급한 자문비)를 위

하여 지출한 경비도 추산한다. 무엇을 위하여 그 밖의 물적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기재해야 한다. 이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 설 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건비, 투자비용 또는 그 밖의 물적 비용이 다수의 행위의무 또는 심지어 다양한 법령분야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례별로 이것 을 비용산정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명백한 해 결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분석된 행위의무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 점유율이 얼마나 많은지 퍼센티지(\%)로 추산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재정적 비용(finanzielle Kosten)에 대한 사항도 전문가에 의하여 추산 한다. 행위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예: 허가신청에 따른 수수료) 만 문의해야 한다. 사회보험 납부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회보험 납부금은 인건비에 속하고 직접 시간당 비용으로 고려한다. 세금은 규제비용이 아니라 기업에서 국가로 이전되는 지불이다. 이 점에서 세금은 재정적 비용에 계산하지 아니한다.21)

수수료의 조사는 무엇보다도 통제목적에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사 례에서는 행정기관이나 국가회계에 정확한 보고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 이다. 수수료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인지의 여부 에 대한 물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수료는 망각해버리고 이러한 수 수료를 관련되는 행위의무와 결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밖에 전문가는 간접적 비용(indirekte Kosten)에 대한 물음에 대해 서도 답을 내 놓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비용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정 서하고 가장 중요한 비용을 설명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간 접적 비용을 수량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주제가 기업에 특히 부 담을 주고 많은 간접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

[^4]에는 이것은 그 추후에 개선방안의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문제로 삼아 논의해야 한다. 워크숍에서는 각종 조치들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렇지 않으면 워크숍 참여자들이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할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최상의 실무(best practice)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문가추 산 또는 기업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효율적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규제를 수정함이 없이 다른 기업에 비 용을 절감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사례연구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서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추산의 진행과정

중요한 것은, 자질을 갖추고 있고 건설적인 전문가들이 협력할 동기 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선정에 관해서는 위 탁자와 수탁자간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6 명의 전문가들이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이 경우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견해가 우선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수용하기 위 해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배경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참여하여 그 참여자들 중 당사자 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정해야 한다. 전문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그룹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 집행기관, 연방, Kanton
- 기업의 관점: 기업, 중소기업포럼, 각종 단체
- 다방면 전문가: 많은 기업의 실무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예: 자 문기관, 신탁관계에서의 수탁자 등)

전문가 후보자들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는 다수의 후보자들이 하나 의 범주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상이한 배경을 존중할 것을 유의해 야 한다. 예컨대, 집행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이한 Kanton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추산의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개별적인 추산이 행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핸드북의 첨부부록에 있는 설문지(제A부)의 비용추산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 우 전문가들은 자신이 행한 추산에 대해 각각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다양한 분할들 사이에 비용 이 어떠한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해명해야 한다.

이후의 기업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추산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전문가들이 하나의 비용유형에서 하나의 행위의무가 아무런 비용을 유발시킬 수 없거나 예컨대, 아무런 필요비용을 적시할 수 없 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기업이 규제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를 할 수 없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설문조사 이후의 산정을 함에 있어 비용이 효과적으 로 0 인 가치와 아무런 보고가 없는 가치를 상호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수범자들에게 큰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비용을 추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표준사례'를 만들어서 이 표준사례에 대한 비용 과 사례수를 찾아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축법 분야의 경 우 표준사례는 예컨대, 전형적인 1 인가정 주택, 다가구 주택, 사무 용 건축물과 산업용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각각 동일한 표준사례에 대하여 추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는 수범자들에게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각각의 분할에 대하여 표준사례/

표준기업을 정의하고 이러한 표준사례/표준기업을 전문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추산을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전문가들과 워크솝을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워크숍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다. 본질적인 것은, 워크숍이 잘 준비되고, 잘 구성되며,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워크숍은 최대 반나절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워크솝 주재자 는 시간계획의 준수를 유의해야 하며 토론을 함에 있어 본질적인 것 에 집중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계획된 워크솝을 실행하기 이전의 일 정한 시간에 워크숍의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게는 문의를 해야 하고 모든 전문가들에게 적정한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 다. 사경제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시간적 비용의 대부분은 보상 되어야 한다. 아마도 워크숍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 다. 이것은 평가를 쉽게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워크숍 이전에 정부부처와 수탁자간의 간단한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 서는 워크솝의 정확한 진행방식과 목표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규제-검토를 실시하는 그 밖의 모든 워크숍에도 적용 된다.

워크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전에 조사한 추산을 기초로 토론 이 행해져야 한다. 이 토론의 목표는 전문가들이 각각 질문받았던 비용범주에 대하여 하나의 수치에 합의를 보는 것에 있다. 추가적 으로 전문가들은 사례수를 검증해야 한다. 연방경제사무국과 연방 주무부처는 관찰자로서 참석해 있어야 하고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개별적인 추산치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의견을 내 놓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설문조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추산치

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단지 일부분만 합의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업무처리 단계, 즉 기업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문가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 지고 있고 또한 심지어 전문가들의 추산치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보다 이러한 행위의무들에 대한 검증 부분을 더 강하게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한다.

## 전문가추산 이후의 진행과정

전문가들이 모든 행위의무, 모든 분할 및 모든 비용범주에 대하여 추산을 보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워크숍의 종료에 이어서 프로젝트 8 단계(기업설문조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설문 조사의 과정에서 전문가추산과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기업설문조사 에서는 전문가추산에 속하지 않는 간소화도 논의하게 된다. 전문가들 은 개선방안의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간소화에 관 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두 워크숍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모든 행위의무, 모든 분할 및 모든 비용범주에 대하여 추산을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흠결된 수치는 추가적인 기업설문조 사(프로젝트 단계 7.a)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해야 하고, 이에 이어서 검증워크솝(프로젝트 단계 8.b)에서 검토해야 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각각의 개별적인 비용구성부분에 대한 추산이 존재한다. 이러한 추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계 7.a(제3장, 대 체적 산정방식)로 간다.


## D) 문제점학인과 검증 (Problemidentifikation und Validierung)

## 2.8 기업설문조사

a) 내 용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것은 기업이다. 따라서 절차진행의 과정 에서 기업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전문가들의 비용추산과 마주치게 된다. 설문조 사에서 핵심적인 것은 규제를 취급함에 있어 현존하는 문제점들에 관 하여 토론하는 것과 특히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수탁자

수탁자가 이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c) 진행방식

비용추산을 검증하고 간소화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10 개에 서 12 개의 기업에 대하여 설문을 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기업을 선 별해야 한다. 이러한 선별을 할 경우에는 모든 분할이 동일한 정도로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업들은 분할기준에 추가하 여 상이한 전문분야와 Kanton에서 선별되어야 한다.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입장이나 경제 단체의 입장에서 프로젝트가 기업 스스로에게 미치는 의미를 간략하 게 작성한 보충서면이 도움이 된다. 설문대상 기업의 선별은 수탁자 가 '중립적으로' 행하며, 특별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왜곡해 서는 아니된다.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기업을 충분하게 발견하고 설문조사 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휴가기간이나 특별하게 부담을 많이 받는 기 간 동안에 더 그러하다. 하나의 설문조사 일정마다 종종 2 개 내지 3 개의 기업설문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행위의무를 상호 병렬적으로 개별적인 고찰을 한다. 이 경우 각각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과 행위의무의 간소화에 대한 질문을 한다(첨부부록에 있는 설문지 제 B 부 참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규제의 이해가능 성, 규제의 이행가능성 및 규제의 수용성 등 세 가지 주제영역을 다 룬다. 조사한 정보들은 그 다음의 조사연구의 진행과정, 특히 개선방 안을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 과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규제의 편익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는 간소 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이것들이 추구하는 목 표는, 기업에 대하여 규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발생하는 문 제점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설명하고, 기업이 설문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다만, 단순히 전체 행위의무를 체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 체적으로 서술하는데 있다. 이 경우 설문조사자는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 주제로부터 많이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이어서 동일한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간접적 비용에 관한 전문가추산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업들은 자신들이 속 하는 분할의 수만 분석해야 한다. 기업들은 그들이 이러한 추산을 실 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개별적 수치에서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자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매긴 수치를 기재해야 한다. 모든 설문조사에 이어서 다수의 기업이 일치하지 않 는 비용추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명확성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이 어서 계속 남아있는 차이가 나는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논의한다. 전문가가 기업이 응답한 수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

업이 응답한 수치는 산정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추산과 기업의 응답간의 변동폭으로써 산정해야 한다. 이 차이는 투 명하게 서술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설명을 부기해야 한다.

## 기업설문조사에 대한 기업의 응답과 전문가추산간의 <br> 차이가 나는 경우의 처리 사례

제2차 실업보험22)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설문조사와 전 문가워크숍간에 상이한 결과를 투명하게 서술하였다.

기업에 의한 결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2009년, 백만 프랑)

| 발생 건 | 분할 1 |  | 분할 2 |  | 분할 3 |  | 계(분할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B | W | B | W | B | W | B | W |
| 취 직 | 3.5 | 3.5 | 2.0 | 2.0 | 5.3 | 3.5 | 10.8 | 9.0 |
| 퇴 직 | 3.1 | 3.1 | 2.6 | 1.7 | 4.7 | 3.1 | 10.5 | 8.0 |
| 급여의 변화/ <br> 고용등급 | 15.9 | 7.9 | 6.6 | 6.6 | 24.0 | 12.0 | 46.5 | 26.6 |

$\mathrm{B}=$ 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른 건당 시간적 비용에 근거한 수치
$\mathrm{W}=$ 전문가워크숍에 따른 건당 시간적 비용에 근거한 수치

비용추산에 관한 질문에 추가하여 기업들은 간접적 비용에 대한 질 문에도 응답해야 한다. 기업들은 그들의 문제점을 표현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지 구체적으로 작 성할 기회를 가진다.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그 중점이 무엇보다도 문제점과 그 해결에 있는 것이지 비용에 더 많은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별적인 행위의무 중에서 각각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비용은 전문가들에게 중점이 설정되어 있음에 반해 문제점과 간소화방안은 기업에게 중점이 설정되어 있다.
22) 출처: Hornung et al. 2011, S. 32.

## d) 예상되는 산물

- 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방안이 조사되었다.
- 전문가추산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었다.
- 간접적 비용에 관하여 기업과 논의하였다.


## E) 규제비응의 산정(Berechnung der Regulierungskosten)

2.9. 비용산정

## a) 내 용

필요한 모든 변수들이 검증된 이후에는 이제 전체비용과 필요비용 의 점유율을 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정에 관련되는 가정이 보고서에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수탁자

수탁자가 이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진행방식

이 프로젝트 단게에서는 다양한 비용범주를 산정해야 한다. 비용범 주의 산정은 각각의 행위의무별로 그리고 각각의 분할별로 실시한다. 게다가 다양한 수범자를 구분해야 하고 필요비용도 공제해야 한다.23) 규제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사례수의 산정
사례수 $=$ 관련되는 수범자의 수 X 빈도

[^5]비용범주별 비용의 산정

인건비 =
기업별 사례당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적 경비 X 사례수 X 시간 요금비용24)

투자비용 $=$
(기업별 매년 투자비용 + 독자적인 인력투입) X 사례수

기타 물적 비용 $=$
기업별 매년 기타 물적 비용 X 사례수

재정적 비용 $=$
기업별 매년 수수료와 그 밖의 공과금 X 사례수

필요비용 =
인건비, 투자비용, 기타 물적비용에서 필요부분의 점유부분의 합계

추산된 비용이 일정한 비용범주에서 기업별로 산정되지 않고 다른 단 위로 산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직원별(개인적인 보호장비, 급여정산)
- 건축물별(화재보호규정, 건축허가신청)
- 전기기구별(에너지 관련 규정)

이러한 사례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개별적인 분할에 있는 비용을 그 에 상응하는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24) 첨부부록 요금(Tarif) 참조.

| 인건비 |
| :--- |
| + 투자비용 |
| + 기타 물적 비용 |
| + 재정적 비용 |
| = 중간합계 |
| 필요비용 |
| $=$ 규제비용 |

위에서 언급한 산정을 실시하면 규제비용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 업에서 유일하게 규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각각의 분할의 결과는 이에 이어서 행위의무에 더해지고 이것은 다시금 법령의 영역 으로 된다. 조사된 수는 의미있게 소수점 이하 자리를 누락시켜야 한 다. 또한 수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산정을 위하여 변동폭을 활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 산정된 비용의 모범작성방식(Musterstruktur für die Darstellung der berechneten Kosten)은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분할당 규제비용
- 행위의무당 규제비용
- 전체 분야에 대한 규제비용


## F) 간소화(Vereinfachungen)

### 2.10 문제점 및 간소화에 대한 질문의 평가

## a) 내 용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간소화에 관한) 질적인 질문의 평가는 구 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고 논의하기 하는 그 다음의 프로젝트 단계 를 위한 준비로서의 의미를 의미한다.

설문지의 질적인 부분에서 기업은 규제의 다양한 관점들(이해가능성, 이행가능성, 수용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가진다. 게다가 기 업들과 간접적 비용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 인 개선방안을 언급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에 이 점에 대하여 어떠 한 행위의무에 특별한 개선조치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 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비용산정과는 반대로 이 프로젝트 단계는 문 제점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특정한 분야에서 기업은 많은 비용과 마주치지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 담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수탁자

수탁자가 이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c) 진행방식

질적인 질문은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경우 분할 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이어서 개선방 안의 작성을 위한 워크솝(Workshop zur Ausarbeitung von Verbesserungsvorschlägen)에서 논의주제로 삼게 된다. 게다가 수탁자는 기업이 제시 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범주화하며 이로부터 워크숍을 위 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한다.

문제점과 간소화방안에 관한 또 다른 지적은 관료주의 기압계25)에 서 찾아볼 수 있다.

## d) 예상되는 산물

- 가장 중요한 문제점(예: 5 개~10개)이 적시된 목록(주제별로 분류)
- 작성된, 주제별로 분류된 간소화방안의 목록


### 2.11 개선방안 작성을 위한 워크솝

## a) 내 용

이 연구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는 것 이다. 이것은 관련 규정의 폐지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변화도 확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은 워크숍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의한다. 이 경우 특히 가장 많은 비용덩어리 와 가장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간 소화가 추구되어야 할 부분은 비용 또는 부담이 높으면서도 편익은 그에 상응하게 높지 않은 규제이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정부부처 또는 경제사무국의 지원) 수탁자

수탁자는 워크솝의 조직과 실행에 책임을 진다.

## c) 진행방식

워크숍 참여자는 전문가추산에 참여한 사람과 동일인일 수 있지만, 새로운 참여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수 준은 동일하다. 그러나 중소기업-포럼의 대표자는 이 워크숍에 출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워크숍에서는 한편으로는 준비된 개선방안을 토 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는
25) 서설 참조

것도 중요하다. 이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첨부부록의 설 문지(제 B 부)이 기재되어 있는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내용이다.

그림 3: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방안의 작성


워크솝에서의 논의는 기업의 진행과정 및 기업의 비용과 관련한 문 제점 해결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 중점은 특히, 편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 간소화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조치의 구체적 인 표현은 이 분석에서는 행하지 않고 추후에 다른 연구위탁에 따라 서 행한다. 워크숍의 마지막에 참여자들은 실용성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목록에 합의한다.

잘 생각해보면 가능한 개선조치들이 종종 법령상의 조문이 아니라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제한됨이 없는 혁신적이거나 심지어 도발 적인 개선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부처의 도움 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그 의미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다. 게다가 모

든 개선방안에는 언제까지 그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는지 부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의 개입은 개선방안이 분명하게 충분하고 이행가능하도록 작동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예컨대, 국제법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 능한 것을 요구하거나 이미 수정 중에 있는 관점들을 지적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용덩어리와 가장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내 놓아야 한다. 몇몇의 개선방안들은 규제의 편익을 변경함이 없이 기업을 위한 개선을 가져온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큰 문제가 없다. 다른 개선방안들은 규제비용을 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규제의 편익 도 줄인다. 이러한 개선방안도 일정한 사례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프로젝트 단계에 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d) 예상되는 산물

- 이행가능한 3 개 $\sim 5$ 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 2.12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 a) 내 용

프로젝트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중점은 규제비용과 바람직한 개 간소화에 있었다. 규제는 기업에 대하여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기업이 나 사회에 대하여 편익도 가져다준다. 규제의 편익은 유발된 비용보 다 더 많아야 할 것이다.

두 개의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 많은 간소화방안들 중에서 규제의 편익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이 조사연구의 범위에서 규제영향평가 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 규제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간소화가능성에 대해서는 간략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편익문제를 가능하면 양적으로 논의하거나 적어도 질적으로 정부부처가 논의해 보아 야 한다(예: 누가 이익을 보고, 편익은 얼마나 크며, 어떠한 부작 용이 존재하는가?).

관할 정부부처가 이미 각각의 규제의 편익에 관한 조사연구나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는 여기서 활용할 수 있 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그 밖에 모든 법령 개정과 법규명령 개정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의 일 반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편익측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정부부처, 연방경제사무국

정부부처는 이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프로젝트 단 계가 프로젝트를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정부부처는 이것을 주의깊게 계획해야 한다(즉, 일정과 필요한 자원을 주의깊게 계획해야 한다). 간 략한 규제영향평가는 늦어도 개선방안에 관한 워크솝이 행해진 이후 4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최종보고서에 삽입될 수 있어야 한다.

연방경제사무국은 보고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 c) 진행방식

주무 정부부처는 규제영향평가의 모범목차(Musterstruktur für die Regulierungsfolgenabschätzung)에 따라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규제영 향평가는 이 연구에 통합된다. 이 경우 편익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지적해야 한다. 정부부처가 규제영향평가의 내용과 동등한 가치를 가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지는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예: 국 민경제적 판단, VOBU).

주된 단계의 마지막과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간소화방안이 작성되 면 수탁자와 정부부처 및 연방경제사무국간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경우 위탁자는 그 때 제출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줄 기회를 가져야 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현존하는 규제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 위탁자와의 미팅


## G) 문서작성(Dokumentation)

2.13 문서작성 및 최종보고서 작성

## a) 내 용

조사연구가 수많은 분야에서 수년을 걸친 프로젝트로 행해지기 때 문에 프로젝트 단계와 비용산정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프로젝트 단계의 지속적인 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정보가 존재한 이후에는 분야마다 간략하 게 종결지우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수탁자

수탁자는 이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부부처는 모든 규제영향평가를 적시에 수탁자에게 송부한다.

## c) 진행방식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수탁자는 프로젝트 단계를 문서로 잘 작성해야 한다. 연방경제사무국과 주무 정부부처는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용(예: 기업의 명칭)을 제외하고는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된 자료를 열람한다. 최종보고서와의 관련하여 수 탁자는 전체 데이터자료들을 정부부처와 연방경제사무국에 송부한다.

최종보고서는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가정 및 산정방법에 관 한 가능한 조정 또는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어려움 등을 투명하게 서 술하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수는 그것을 신빙성있게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수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수탁자는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며, 보고서에는 투명하게 모든 결론과 모든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분석을 담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 논의가 아니다. 정부부처는 최종적 으로 보고서를 출판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최종보고서
- 원자료(로우데이터. 예: 기업설문조사와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을 담고 있는 엑셀데이터)


## 3. 대체적 산정방식

아래의 프로젝트 단계는 전문가들이 모든 행위의무, 분할 및 비용범 주에 대한 추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흠결된 수치는 상세한 기업설문조사(프로젝트 단계 7.a)의 과정에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하며(프로젝트 단계 8.a), 이에 이어서 워 크숍을 진행하는 과정(프로젝트 단계 8.b)에서 검증해야 한다.

## 3.1 프로젝트 단계 7.a: 기업설문조사

## a) 내 용

기업에서의 설문조사는 전문가추산에 대한 보완적 정보원이 된다. 게다가 기업설문조사의 과정에서 간소화의 가능성도 확인된다. 설문 조사는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설문조사(프로젝트 단계 8 내지 7.a)는 전문가추산(프로젝트 단계 7)에서와 동일한 설문지 를 사용한다. 기업들은 비용에 관한 장(첨부부록 제 A 부)과 문제점 및 간소화에 관한 장(첨부부록 제B장)에 대하여 응답해야 한다. 다만, 기 업들은 각각 자신의 분할에 대해서만 응답한다.

설문조사의 목표는 획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각각의 분할에 대한 행 위의무당 표준화된 비용을 추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에서 계산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다시금 인건비, 투자비용, 기타 물적 비용 및 재정적 비용 등 4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간접적 비용 및 간소화가능성의 확인을 위한 질적인 정보를 문의하게 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수탁자

설문조사는 수탁자가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지(첨 부부록의 설문지 참조)는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

하여 하나의 분야에서의 수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치도 비교할 수 있다.

## c) 진행방식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은 프로젝트 단 계 8(기업설문조사)에서 서술된 것과 동일하다.

분할별로 최소한 6 개의 전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야 한 다. 예컨대, 규모와 전문분야에 따라 분할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 개의 분할과 24 개의 설문대상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 2개의 분할기준이 있을 경우 가능한 분할 |  |  |  |
| :---: | :---: | :---: | :---: |
| 발생 건 전문분야 1 전문분야 2 기업 총계 <br> 규모 1 6 6 12 <br> 규모 2 6 6 12 <br> 기업 총계 12 12 24 |  |  |  |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추산을 제시할 수 없었던 각각의 확인된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의무에 대하여 첨부부록에 있는 설문지가 검토된다. 설문조사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 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투입된 설문조사자 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항상 동일한 사람을 설문조사자로 투입시 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의 완전하게 하기 위하거나 예 외적인 경우에는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 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설문조사의 수는 이미 행해진 분할에 기초하 고 다양한 분야들간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

설문지는 비용의 추산, 문제점에 대한 질문 및 가능한 간소화 가능 성에 대한 질문 등 3 개의 주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완하는 비 용추산의 기반이 되는 설문조사 부분에서는 전문가추산에서와 마찬가 지로 직접적 비용을 문의한다. 이 경우 재정적 비용에 관한 질문과 무관하게 필요비용의 점유율도 조사해야 한다. 비용에 관한 장은 기 업에 대하여 간접적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종료된다.

이에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간소화 가 능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 경우 기업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점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그들이 안고 있 는 문제점을 각각 설명해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구체 적인 간소화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개별적인 행위의무의 경우 인건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른 접근방 식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 의 기업에 그 구체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2개의 전일제 일자리가 투입되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와 결부된 비용도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관점들은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가지 고 문의해야 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모든 설문조사는 실시되었고 표준치의 산정과 간소화워크숍을 위 한 필요한 투입들이 존재한다.

이 프로젝트 단계에서 조사된 행위의무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단 계 $8 . a$ (기준치의 산정)에서 계속된다. 이러한 행위의무에 대하여 프로 젝트 단계 8 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

## 3.2 프로젝트 단계 8.a: 표준치의 산정

## a) 내 용

이제 기업설문조사(프로젝트 단계 7.a)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양적인 정보들을 평가한다. 정의된 분할, 각각의 행위의무 및 4 개의 비용범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의 표준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수치는 검증워크숍(프로젝트 단계 8.b)을 거친 이후에 사 례수와 곱함으로써 도출된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수탁자

수탁자는 이 프로젝트 단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c) 진행방식

수탁자는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비용 내지는 기업이 부담 하는 각각의 행위의무의 시간적 경비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응하는 분할범주의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수치를 결정한다. 이러 한 산정은 원칙적으로 단순한 중간치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하여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항상 비판적으로 문의해 보아야 한다.

그림 4: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표준치의 조사26)

| 행위의무 1 |  |  | 행위의무 2 |  |  |
| :---: | :---: | :---: | :---: | :---: | :---: |
| 기업 1 | 10분 |  | 기업 1 | 10분 |  |
| 기업 2 | 10분 |  | 기업 2 | 20분 |  |
| 기업 3 | 8분 | 표준치 | 기업 3 | 10분 | 표준치 |
| 기업 4 | 10분 | 10분 | 기업 4 | 20분 | 15분 |
| 기업 5 | 10분 |  | 기업 5 | 15분 |  |
| 기업 6 | 30분 |  | 기업 6 | 15분 |  |

26) 출처: SCM Network(Hrsg.), 2005, S. 41; 추가적으로 독자적인 조정을 하였다.


많든 적든 일치하는 기업의 응답내용(그림 4 에서 행위의무 1 과 2)의 경우 수치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 업을 위한 수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참여자들이 워크숍을 원하는 경우에만 검증워크솝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행위의무 4 의 예는 고찰의 대상이 된 년도의 설문을 받은 모든 기 업들에게 관련되지 않았던 의무에 관한 사례를 의미한다. 이것은 종 종 소기업에게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기업의 응답내용 은 전문가(예: 신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수탁자 또는 자문가)의 의견을 도움으로 보완해야 한다.
(행위의무 3에서와 같이) 기업의 응답내용들간에 매우 심하게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아무런 표준치를 정의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수 치들은 검증워크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차이를 일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기초하여 표준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수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 문조사의 대상이 된 기업과 다시 한 번 더 만나야 한다. 기업들이 한 편으로는 자신의 기존의 응답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거대한 비용차이에 대한 합리적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에

대하여 특별하게 그 기초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여하튼 이러한 행위의무의 경우에는 분할도 다시 한 번 더 수정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표준치가 조사되어야 한다.

- 인건비의 경우 질문된 활동별로 각각 시간적 경비에 대한 표준 치, 필요비의 점유율에 대한 표준치를 조사해야 하고 통계자료 로부터 활용할 수 없거나 행위의무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빈도를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3 가지 요소들은 검증을 할 때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투자의 경우에도 표준치를 구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양한 투입 시간(공고)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투자가 1,000 프랑이 소요되 고 5 년 동안 그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년 비용의 5 분 1 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산정을 위해서는 200 프랑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아직 공제되 지 아니한 과거 연도의 투자도 고려한다.
- 기타 물적 비용의 경우에는 표준치를 구성한다. 그러나 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기타 물적 비용의 경우뿐만 아니라 투자비용 의 경우에도 필요비용의 점유율은 조사해야 한다.
- 재정적 비용도 동일하게 표준화한다. 재정적 비용은 필요비를 포 함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규제없이는 재정적인 조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d) 예상되는 산물

- 각각의 개별적인 비용구성요소에 대한 표준치
-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워크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호 심각하 게 차이가 나는 수치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기업 설문조사의 모든 수치를 종합한다.

이 프로젝트 단계에서 분석된 행위의무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단 계 $8 . b$ (검증워크숍)에서 계속된다.

## 3.3 프로젝트 단계 8.b: 검증워크숍

## a) 내 용

대체적 산정방식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전문가추산이 불가능했던 행 위의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에 대해서만 설문을 한다. 따라서 결론은 대표성 있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설문을 받은 기업들 이 모두 매우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결론이 날 조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전문가가 분석 하고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검증워크숍(Validerungsworkshop)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다. 그렇지만 전문가에게 검증이 매우 어렵게 다가올 수 있고, 게다 가 전문가가 이전에 추산을 제시할 수 없었던 행위의무만 대체적 산 정방식의 과정에서 분석된다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수치를 평가하는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복잡한 주제분야의 경우에는 수범자의 그룹별로 분리된 검증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b) 책임지는 담당자 : (정부부처, 연방경제사무국의 지원) 수탁자

수탁자는 워크솝의 조직 및 개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부부처는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연방경제사무국은 방법론에 관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c) 진행방식

워크숍의 준비 및 워크숍에 참여할 전문가의 선별에 관해서는 전문 가추산에서 서술한 지침과 동일한 지침이 적용된다. 연방경제사무국

과 주무 정부부처는 관찰자로서 출석할 수 있고 동시에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워크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규제비용의 산정에 기초되는 수치 (행위의무, 분할 및 비용범주로 분류한다)를 신빙성 있게 하고 검증한 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의무들에 중점을 설정해야 한다.

- 기업의 응답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행위의무
- 많은 사례수를 가진 행위의무
- 가끔씩 발생하지만 고비용이 발생하는 행위의무

검증과 관련한 서술방식은 첨부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검증워크 숍을 위한 지침, Anleitung für den Validierungsworkshop 참조).

직접적 비용 이외에 필요비용의 점유율과 사례수도 검증해야 한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워크숍이 끝난 뒤 전문가들이나 기업과 다시 한 번 더 교섭하거나 심지어 워크솝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문가나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능한 입법개선을 제시하는 것은 이 워크숍에 다룰 부분이 아니다. 입법의 개선은 별도로 개선방안의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논의한다.

## d) 예상되는 산물

- 불명확한 수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즉, 하나는 하나의 수치에 의견의 합치를 본 경 우이다. 다른 하나는, 어떠한 수치를 다시 한 번 더 문의하거나 새로운 기업에 대하여 설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 그 밖의 모든 수치는 확증되었다.

이 프로젝트 단계에서 검증된 행위의무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단 계 9(비용산정)에서 계속된다.

## 4. 첨부부록

## 4.1 사항색인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수범자(Durchschnittlich effizienter Normadressat) :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수범자란 과정을 평균적 또는 통상적 방식으로, 즉 다른 수범자보다 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방식으로 실행하는 수 범자로 이해된다. 핵심은 어떠한 개별적인 부분단계가 평균적으로 효 율적인 수범자에 의하여 개별적인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 졌는지에 관한 문제이다"(Handbuch Bertelsmann/KPMG, 2009, S. 57).

행위의무(Handlungspflicht) : "행위의무란 수범자가 규범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수범자에게 지시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예컨대, 정보의 송부, 세금의 지불, 사 용주와 경영협의회간의 협력 또는 직원의 교육훈련 등을 내용으로 한 다"(Handbuch Bertelsmann/KPMG, 2009, S. 19).

수범자(Normadressat) : "규제비용모델에서 말하는 수범자란 개별적 인 법적 의무로부터 '요구된' 법적 주체(자연인, 법인)로 이해된다. 달 리 표현하면 법적인 의무의 ‘목표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Handbuch Bertelsmann/KPMG, 2009, S. 18).

법적 의무(Rechtliche Pflicht) : "법적 의무란 추상적-일반적 당위규범 으로서 수범자에게 일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범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수인해야 하거나 부작위해야 할 것을 명하는 규범을 말 한다"(Handbuch Bertelsmann/KPMG, 2009, S. 18).

규제비용(Regulierungskosten) : "규제비용이란 법적인 의무를 준수 또는 복종함으로써 수범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Handbuch Bertelsmann/

KPMG, 2009, S. 17). 이 경우 규제비용은 필요비용과는 구별해야 한 다(아래의 필요비용 참조).

필요비용(Sowieso-Kosten) : "필요비용이란 수범자가 의무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각각의 과정을 전부 또는 일부 실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 가 없는 경우에도 수범자에게 발생하게 될 비용을 말한다. 필요비용은 인건비와 물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재정적 비용은 필요비용으로 고려 하지 않는다.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은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Handbuch Bertelsmann/ KPMG, 2009, S. 39).

## 4.2 설문지

각각의 행위의무(내지 행위의무의 그룹)별로 설문지를 채워야 한다.
분할들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설문지에서 요구 하는 경우에는 분할과 행위의무당 추산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분할들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 가들은 분할에 관한 영역을 그대로 둘 수 있고 '단일 수치'(Einheitlicher Wert) 영역을 채울 수 있다.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추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는 이것을 횡선(-----)을 그어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반해 아무런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는 ' 0 '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한다.

기업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분할의 수치만을 기입해야 한다.

| 행위의무 |  |
| :--- | :--- |
| 의무의 내용 |  |

## 제 $\mathbf{A}$ 부: 비융에 관한 장

설문지의 제 A 부는 전문가추산(프로젝트 단계 7)과 기업설문조사(프 로젝트 단계 7.a)의 기초가 된다.

질문 1: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나 활동을 하셨습니까?

| 예 $\square$ | 분할마다 다름 $\square$ | 아니오 $\square$ |
| :--- | :--- | :--- |
| $\rightarrow$ 아래의 인건비로 이동 | $\rightarrow$ 아래의 인건비로 이동 | $\rightarrow$ 다음 행위의무로 이동 |

인건비:

질문 2: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당 얼마의 (분으로 환산한) 시간적 경비가 발생하였습니까?

| 단일수치(분) | 분할 1(분) | 분할 2(분) | 분할 3(분) | 분할 4(분) | 분할 5(분) |
| :--- | :--- | :--- | :--- | :--- | :--- |
|  |  |  |  |  |  |

톡잡한 과제에 대해서는 표준활동에 관한 아래의 표에 기입해주 시기 바랍니다.

질문 2 b : 매년 의무를 얼마나 자주 이행하십니까?

| 단일수치 <br> (매년 빈도) | 분할 1 <br> (매년 빈도) | 분할 2 <br> (매년 빈도) | 분할 3 <br> (매년 빈도) | 분할 4 <br> (매년 빈도) | 분할 5 <br> (매년 빈도) |
| :--- | :---: | :---: | :---: | :---: | :---: |
|  |  |  |  |  |  |

■ 복잡한 과제에 대해서는 표준활동에 관한 아래의 표에 기입해주 시기 바랍니다.

|  | 표준활동 <br> $\rightarrow$ 복잡한 <br> 과제에 한하여 | 시간(분) |  |  |  |  |  | 년간 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W | S1 | S2 | S3 | S4 | S5 | EW | S1 | S2 | S3 | S4 | S5 |
| 1 | 의무에 숙달하기 |  |  |  |  |  |  |  |  |  |  |  |  |
| 2 | 자료 또는 정보의 창출 |  |  |  |  |  |  |  |  |  |  |  |  |
| 3 | 산정 실시 |  |  |  |  |  |  |  |  |  |  |  |  |
| 4 | 내용채우기, 문구기입하기, 번호표시하기 |  |  |  |  |  |  |  |  |  |  |  |  |
| 5 | 통제 및 수정 |  |  |  |  |  |  |  |  |  |  |  |  |
| 6 | 내부 회의 |  |  |  |  |  |  |  |  |  |  |  |  |
| 7 | 외부 회의 |  |  |  |  |  |  |  |  |  |  |  |  |
| 8 | $\begin{aligned} & \text { 기타 기능에 } \\ & \text { 특수한 } \\ & \text { 독자적인 } \\ & \text { 급부이행 } \end{aligned}$ |  |  |  |  |  |  |  |  |  |  |  |  |
| 9 | 상품 또는 용역의 창출 |  |  |  |  |  |  |  |  |  |  |  |  |
| 10 | 관할기관에 대한 자료송부 또는 공표 |  |  |  |  |  |  |  |  |  |  |  |  |
| 11 | 지불명령의 실시 |  |  |  |  |  |  |  |  |  |  |  |  |
| 12 | 독자적 심사 <br> 또는 이행의 감독 |  |  |  |  |  |  |  |  |  |  |  |  |
| 13 | 공공기관을 <br> 통한 심사 |  |  |  |  |  |  |  |  |  |  |  |  |
| 14 | 복사, 문서화, <br> 배포 |  |  |  |  |  |  |  |  |  |  |  |  |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질문 2 c : 일부 시간적 경비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 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필요비용 점유율 $=$ business as usual costs; 기업에서 규제가 없는 경 우에도 발생하게 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단일수치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1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2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3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4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5 <br> (필요비 <br> 점유율) |
| :---: | :--- | :--- | :--- | :--- | :---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 $\square 50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 $\square 100 \%$ | $\square 100 \%$ | $\square 100 \%$ | $\square 100 \%$ | $\square 100 \%$ | $\square 100 \%$ |
| $\square$ |  |  |  |  |  |

## 투자비용:

질문 3 a : 해당 년도 이전 또는 중간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 를 해야 합니까?....... (아닌 경우에는 질문 4 a 로 넘어가세요)

투자 1-투자의 유형:

|  | EW | S1 | S2 | S3 | S4 | S5 |
| :--- | :--- | :--- | :--- | :--- | :--- | :--- |
| 투자비용 (프랑) |  |  |  |  |  |  |
| 인건비 (시간 또는 프랑) |  |  |  |  |  |  |
| 수익기간 (년) |  |  |  |  |  |  |
| 기업 선택사항으로서 투 <br> 자년도 |  |  |  |  |  |  |

투자 2 - 투자의 유형: $\qquad$

|  | EW | S1 | S2 | S3 | S4 | S5 |
| :--- | :--- | :--- | :--- | :--- | :--- | :--- |
| 투자비용 (프랑) |  |  |  |  |  |  |
| 인건비 (시간 또는 프링) |  |  |  |  |  |  |
| 수익기간 (년) |  |  |  |  |  |  |
| 기업 선택사항으로서 투 <br> 자년도 |  |  |  |  |  |  |

투자 3-투자의 유형: $\qquad$

|  | EW | S1 | S2 | S3 | S4 | S5 |
| :--- | :--- | :--- | :--- | :--- | :--- | :--- |
| 투자비용 (프랑) |  |  |  |  |  |  |
| 인건비 (시간 또는 프랑) |  |  |  |  |  |  |
| 수익기간 (년) |  |  |  |  |  |  |
| 기업 선택사항으로서 투 <br> 자년도 |  |  |  |  |  |  |

질문 3 b : 질문 3 a 에 기재된 투자비용의 일부가 의무가 없는 경우에 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얼 마나 많습니까?

| 단일수치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1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2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3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4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5 <br> (필요비 <br> 점유율) |
| :---: | :---: | :---: | :---: | :---: | :---: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square 0 \%$ $\square 25 \%$ |
| $\square 50 \% \square 75 \%$ |  |  |  |  |  |
| $\square \square 5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square 50 \% \square 75 \%$ |  |
| $\square 100 \%$ | $\square 100 \%$ | $\square 100 \%$ | $\square 100 \%$ | $\square 100 \%$ | $\square 100 \%$ |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 기타 물적 비용:

질문 4 a : 각종 조치의 실행으로 인하여 물적 비용이 발생합니까?......

| 물적 비용의 유형 | 매년 프랑으로 환산한 수치 |  |  |  |  |  |
| :--- | :--- | :--- | :--- | :--- | :--- | :--- |
|  |  | EW | S 1 | S 2 | S 3 | S 4 |
| 원료, 보조원료 및 사업 <br> 장 가동용 원료를 위한 <br> 비용(재료) |  |  |  |  | S 5 |  |
| 연관된 상품을 위한 비 <br> 용(入荷) |  |  |  |  |  |  |
| 연관된 용역을 위한 비 <br> 용/제3자급부(예: 자문사 <br> 례비) |  |  |  |  |  |  |
|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 <br> (예: 설비를 구매하기 위 <br> 한 신용에 대한 이자) |  |  |  |  |  |  |
| 기타 경영상의 비용(사무 |  |  |  |  |  |  |
| 실비용, 건축물비용, 관 |  |  |  |  |  |  |
| 리비) |  |  |  |  |  |  |$\quad$|  |
| :--- | :--- | :--- | :--- | :--- | :--- |

질문 4b: 물적 비용(질문 4a)의 일부가 의무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 단일수치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1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2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3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4 <br> (필요비 <br> 점유율) | 분할 5 <br> (필요비 <br> 점유율)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square 0 \% \square 25 \% \\ & \square 50 \% \square 75 \% \\ & \square 100 \% \end{aligned}$ | $\begin{aligned} & \square 0 \% \square 25 \% \\ & \square 50 \% \square 75 \% \\ & \square 100 \% \end{aligned}$ | $\begin{aligned} & \square 0 \% \square 25 \% \\ & \square 50 \% \square 75 \% \\ & \square 100 \% \end{aligned}$ | $\begin{aligned} & \square 0 \% \square 25 \% \\ & \square 50 \% \square 75 \% \\ & \square 100 \% \end{aligned}$ | $\begin{aligned} & \square 0 \% \square 25 \% \\ & \square 50 \% \square 75 \% \\ & \square 100 \% \end{aligned}$ | $\begin{aligned} & \square 0 \% \square 25 \% \\ & \square 50 \% \square 75 \% \\ & \square 100 \% \end{aligned}$ |

## 재정적 비용:

질문 5: 행위의무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수수료가 있다면,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이며,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얼마나 비쌉니까?

|  | EW | S1 | S2 | S3 | S4 | S5 |
| :--- | :--- | :--- | :--- | :--- | :--- | :--- |
| 수수료의 유형 |  |  |  |  |  |  |
| 년간 빈도 |  |  |  |  |  |  |
| 건당 비용(프랑) |  |  |  |  |  |  |

간접적 비용:

질문 6a: 직접적 비용(인건비, 투자비용, 기타 물적 비용과 재정적 비용의 합계)과 비교해볼 때 간접적 비용(예: 줄어든 행위 자유로 인한 기회비용 또는 지연비용)은 얼마나 많은 것 으로 추산하십니까?

간접적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매우 적다 | 적 다 | 동일하게 많다 | 많 다 | 매우 많다 |
| :---: | :---: | :---: | :---: | :---: |
|  |  |  |  |  |

질문 6 b : 가장 중요한 간접적 비용 3 개를 언급하고 설명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 경우 다양한 분할들간의 모든 차이도 설명해주 시기 바랍니다.
1.) $\qquad$
2.) $\qquad$

## 제B부: 문제점과 간소화에 관한 장

이 장은 기업설문조사(프로젝트 단게 8 내지 7 a )를 위해서만 필요하다.

## 기업의 현황보고:

전일제근무자의 수:
직원의 수: $\qquad$
$\operatorname{Kanton}($ 복수로 기재하거나 스위스라고 표시할 수 있음): $\qquad$
전문분야27): $\qquad$
설문조사의 상대방(기업에서의 지위): $\qquad$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질문

질문 7: 귀하께서는 행위의무를 이행할 때 문제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범주별로 각각 다수의 문제점에 표시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원 인 | 털 명 |
| :---: | :---: | :---: |
| 한 문제점 없음 |  |  |
| $\square$ | 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의무는 이해할 수 <br>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큰 문제점 없이 이행할 수 있었으며 의무가 <br> 추한 목표는 분명하였고 과도한 경비없이도 달성할 수 있다. |  |
| 의무의 이해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  |  |
| $\square$ | 이 의무를 이해하기 어렵다 |  |
| $\square$ | 이 의무에 관한 정보의 질이 불충분하다 |  |
| $\square$ | 이 의무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다 |  |
| $\square$ | 이 의무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다 |  |


|  | 원 인 | 설 명 |
| :---: | :---: | :---: |
| 의무의 이행시 문제점 |  |  |
| $\square$ | 이 의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  |
| $\square$ | 이 의무에 숙달하는 것이 문제점을 야 기한다 |  |
| $\square$ | 이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 |  |
| $\square$ | 이 의무의 이행시 법적 불안정성이 존 재한다 |  |
| $\square$ | 관할 행정기관간의 조정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
| $\square$ | 이 의무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  |
| $\square$ | 이 의무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더 자 주 조정해야 한다 |  |
| $\square$ | (의무들간 또는 다른 의무들과 비교해 볼때) 요구사항들간에 모순이 있다 |  |
| 의무의 수용과 관련한 문제점 |  |  |
| $\square$ | 이 의무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  |
| $\square$ | 이 의무는 목표달성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
| $\square$ |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  |
| $\square$ |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사회의 편 익간의 관계가 적정하지 않다 |  |
| 기타 문제점 |  |  |
| $\square$ |  |  |
| $\square$ |  |  |
| $\square$ |  |  |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 행위의무의 간소화

질문 8: 귀하께서 이러한 행위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할 기회를 가지신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무엇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질문 9: 귀하께서는 이 행위의무(또는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서)에 대하여 하나 또는 수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 십니까? 이 경우 개선으로 인하여 규제가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편익을 강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범주별로 각각 다수의 개선방안에 표시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개선의 예 | 설 명 |
| :---: | :---: | :---: |
| 요구사항의 간소화 |  |  |
| $\square$ | (비전문가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야 한다 |  |
| $\square$ | 설명을 개선해야 한다(예: 인터넷을 통하거 나 간단한 안내책자를 통하여) |  |
| $\square$ | 행위의무를 폐지, 축소 또는 변경한다 |  |
| $\square$ | 행위의무와 다른 분야의 규정들간을 조정을 하거나 통합한다 |  |
| $\square$ | 행위의무의 이행을 위한 과정을 간소화한다 |  |
| $\square$ | 관련 양식을 간소화한다(예: 질문을 너무 상 세하게 하지 않는 방식) |  |


|  | 개선의 예 | 설 명 |
| :---: | :---: | :---: |
| 온라인 서비스 |  |  |
| $\square$ |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제공, 문서작성과 각종 양식의 기입을 할 수 있게 한다 |  |
| $\square$ | 매체의 중단없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가능하 게 한다 |  |
| $\square$ | 가상의 원스톱 샵을 설치한다 |  |
| 행정기관의 집행실무 |  |  |
| $\square$ | 관할 행정기관의 집행실무를 개선하고 형식 주의를 지양한다 |  |
| $\square$ | 특히 고위험군의 기업을 통제한다(위험에 근 거한 통제) |  |
| $\square$ | 통제를 보다 더 잘 조정한다 |  |
| 절차의 조정 |  |  |
| $\square$ | 동일한 자료를 다양한 기관에 송부하지 않도 록 한다 |  |
| $\square$ | 다양한 동급의 행정기관들과 상하 행정기관 들간의 조정을 개선한다(예: 연방, Kanton, 자 치단체) |  |
| $\square$ | Kanton/자치단체의 집행실무들간의 차이를 줄 인다 |  |
| 다양한 개선방안들 |  |  |
| $\square$ | 차별화된 규정들(예: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 |  |
| $\square$ | 단일화된 규정들(덜 복잡하고, 예외가 적게 있는 규정들) |  |
| $\square$ | 규제의 유연한 접근방식들(예: 국가가 목표 만 확정하는 것, 생태적 도구들) |  |
| 기타 생각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 |  |  |
| $\square$ |  |  |
| $\square$ |  |  |
| $\square$ |  |  |

규제-검토 :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 4.3 요금(Tarif)

인건비는 시간적 경비를 요금과 곱함으로써 산정한다. 이러한 요금 은 연방통계청의 시간당 근로비용에 관한 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의 시간당 근로비용의 구조28)

|  | 프 랑 | $\%$ |
| :--- | :---: | :---: |
| 총임금과 봉급 | 46,94 | $83,4 \%$ |
| 직접보상금, 상여금, 특별수당 40.58 $72.1 \%$ <br>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상금 <br> (휴가와 휴일에 대한 비용) 6.35 $11.3 \%$ <br>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 8.47 $15.0 \%$ <br> 사업주의 실제 사회보장부담금 7.26 $12.9 \%$ <br> 사업주의 가정된 사회보장부담금(보장된 급여지급) 1.21 $2.1 \%$ <br> 기타(직업교육비용, 고용비용 및 작업복 비용) 0.89 $1.6 \%$ <br> 섹트 II와 III 의 합계 56.29 $100.0 \%$ l |  |  |

하나의 분야에 대한 규제들이 모든 경제분과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위의 표(시간당 56.29 프랑)에서 각각 섹터 II(산업, 건축)와 섹터 III (서비스)의 합계에 대한 수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요 소들로 인하여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모든 경제분과의 합계가 총 인건비에 대한 시간적 경비를 계산하기 위한 최적의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단지 개별적인 경제분과에만 관련되 는 분야에서는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당 근로비용이 심하게 차
http://www.bfs.admin.ch/bfs/portal/de/index/themen/06/04/blank/key/01.html; 13.12.2011

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분과에 관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획득 할 수 있다.29) 게다가 시간당 근로시간은 특히 기업의 규모나 큰 지 역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심사하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30)

공통비용 ${ }^{31 \text { )(gemeinsame Kosten)은 규제-검토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하 }}$ 지 않는다. 공통비용은 물적 비용에서 고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비용이 물적 비용에서 완전히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비용을 일부분만 파악한 경우에는 추산된 전체 규제비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 단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 규제비용이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일괄적인 공통비용가 산금이 활용되지 않는지에 관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 통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믿을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 이다(따라서 예컨대, 국제적으로 매우 상이한 명제들이 적용되고 있 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전문분야들간에 공통비용이 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4.4 검증워크솝을 위한 지침

보완작용을 하는 기업설문조사(프로젝트 단계 7.a)를 실시함으로써 획득한 결론들을 아래와 같이 대치시켜서 검증워크숍을 실시하는 과 정에서 논의해보는 것(이와 관련한 예로는 인건비에 관한 질문 2 a 참 조)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례수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 이 것은 이미 전문가추산의 과정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29) 출처: BFS. Struktur der Arbeitskosten pro Stunde nach Wirtschaftszweigen(je-d-06.04.02). http://www.bfs.admin.ch/bfs/portal/de/index/themen/06/04/blank/data.Document.91832.xls; 13.12.2011
30) 그 밖의 문제에 관해서는 연방통계청(BFS, Sektion Löhne und Arbeitsbedingungen, Tel.: +41‘32‘713‘64‘29, E-Mail: lohn@bfs.admin.ch)에 문의할 수 있다.
31) 공통비용이란 어떠한 비용부담자에게도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일반적인 건축물 비용이나 메니지먼트 비용이 공통비용이다.

표 1: 검증워크솝에서 결론의 기재 방식

|  |  | 분할 1 | 분할 2 | 분할 3 |
| :---: | :---: | :---: | :---: | :---: |
| 사례당 분으로 환산한 시간적 경비 |  |  |  |  |
| 행위의무 1 | a | 10,12,15,15,18,20 | 등등... |  |
|  | b | 15 |  |  |
|  | c | 4,000 |  |  |
|  | d |  |  |  |
| 행위의무 2 | a |  |  |  |
|  | b |  |  |  |
|  | c |  |  |  |
|  | d |  |  |  |
| 행위의무 3 | a |  |  |  |
|  | b |  |  |  |
|  | c |  |  |  |
|  | d |  |  |  |

## 설명:

a: 설문조사의 결과(많은 수에 따라 분류)
b : 제안된 표준치(대부분 중간치)
c: 제안된 표준치가 확증되는가? 그밖에 전문가의 수치(워크솝에서 기입) d : 사례 수

## 4.5 산정된 비용의 모범작성방식

비용산정의 과정에서는 분할당 비용에 관한 내용, 행위의무당 비용 에 관한 내용과 전체분야에 대한 비용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 에 아래와 같은 작성방식을 추천한다. 표 2 는 각각의 재량에 따라 보

고서의 주된 텍스트 또는 부록에서 서술할 수 있는 반면, 표 3은 주 된 텍스트에서 비용산정의 주된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비용의 유형을 합산함에 있어 공제해야 하는 필요비의 점유부분도 조사해야 한다. 필요비는 규제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2: 행위의무당 규제비용의 결론에 대한 서술

| 행위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상의 조문 : |  |  |  |  |  |  |  |  |  |  |
| 분 할 | 인건비 | 필요비 <br> 점유율 | 투자 <br> 비용 | $\begin{aligned} & \text { 필요비 } \\ & \text { 점유율 } \end{aligned}$ | 기타 <br> 물적 <br> 비용 | $\begin{aligned} & \text { 필요비 } \\ & \text { 점유율 } \end{aligned}$ | 재정적 <br> 비용 | 시례당 <br> 규제 <br> 비용 | 시례수 | $\begin{aligned} & \text { 총 } \\ & \text { 규제 } \\ & \text { 비용 } \end{aligned}$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표 3: 분야당 전체 규제비용의 결론에 대한 서술

|  | 분할 1 | 분할 2 | 분할 3 | 규제비용 |
| :---: | :--- | :--- | :--- | :--- |
| 행위의무 1 |  |  |  |  |
| 행위의무 2 |  |  |  |  |
| 행위의무 3 |  |  |  |  |
| 규제비용 |  |  |  |  |

## 4.6 규제영향평가의 모범목차

규제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모범목차를 권고한다. 이 모 범목차는 연방경제부의 핸드북과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른 5 개의 규제

영향평가-검토쟁점을 담고 있다. ${ }^{32)}$ 그 하위의 검토쟁점들은 추가적으 로 특히 유의해야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A. 제목, 조치의 내용
B. 검토쟁점 1 : 국가적 행위의 필요성과 가능성

- 문제점(예: 기업들의 불만)
- 조치들의 목표
C. 검토쟁점 2 : 사회의 개별적 그룹에 대한 영향
- 관련자의 유형(어떠한 그룹이 관련되어 있는가?, 환경, 사회적 인 것, 기업, 소비자, 국가, 시민, 근로자 등을 포함)
- 관련자의 수(예: 보호된 대상물이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관 련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 관련성의 유형(관련자들은 조치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D. 검토쟁점 3: 국가적 행위의 필요성과 가능성
- 조치의 비용(예: 문제가 제기될 보호의 목표들)
- 조치의 편익(예: 기업에 대한 이점)
- 그 밖의 영향(부수적 영향 또는 간접적 영향)
E. 검토쟁점 4: 대안적 규율
F. 검토쟁점 5: 집행의 합목적성


## 4.7 최종보고서 작성의 모범목차

최종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분명한 목차구성을 위 하여 하위목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4장의 경우 각각 수범자와 분 할의 수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2) http://www.seco.admin.ch/rfa; 15.4.2011

1. 요약
2. 서론
2.1. 분야의 정의
2.2. 방법론과 절차(핸드북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서술)
3. 사전결과
3.1. 가장 부담을 많이 주는 행위의무들
3.2. 분할실시
3.3. 사례수
4. 비용추산의 결과
4.1. 비용수치
4.2. 비용산정
5. 기업의 문제점
6. 개선방안
6.1. 현존하는 정보에 대한 평가
6.2. 구체적인 개선방안
6.3. 각종 조치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7. 결론
8. 부록

## 4.8 참고문헌

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en(BSV)(Hrsg.), Schweizerische Sozialversicherungsstatistik 2010, Bern, 2010.

Handbuch Bertelsmann/KPMG: Schatz, Matthias; Schiebold, Markus; Kiefer, Sabine und Riedel, Henrik, Handbuch zur Messung von Regulierungskosten. Im Auftrag der Bertelsmann Stiftung, Berlin, 2009.

Hornung, Daniel; Beer-Toth, Krisztina; Bernhard, Thomas; Gardiol, Lucien und Röthlisberger, Thomas, Verwaltungskosten der 2. Säule in Vorsorgeeinrichtungen und Unternehmen. Studie im Auftrag des Bundesamts für Sozialversicherungen und des Staatsekretariats für Wirtschaft. Hrsg., Hornung Wirtschafts- und Sozialstudien; IC Infraconsult AG und Büro für arbeits- und sozialpolitische Studien BASS, Bern, 2011.

KPMG(Hrsg.), Studie über den neuen Lohnausweis. Messung der administrativen Belastung durch den Lohnausweis mit Hilfe des Standard-Kosten- Modell(SKM). Studie im Auftrag des Staatssekretariats für Wirtschaft(SECO). Zürich/Bern, 2008.

KPMG(Hrsg.), Messung von Regulierungskosten für Schweizerische KMU. Studie im Auftrag des Schweizerischen Gewerbeverbandes sgv, Berlin, 2010.

Rambøll Management(Hrsg.), Messung der Bürokratiekosten der MWSTGesetzgebung auf Basis des Standard-Kosten-Modells. Studie im Auftrag des SECO. Hamburg, 2007.

Regulatory Reform Group(Hrsg.), Standard Cost Model for Substantive Compliance Costs. Measurement of substantive compliance costs for existing regulations, 2008.

Schatz, Matthias; Schiebold, Markus; Kiefer, Sabine und Riedel, Henrik, Handbuch zur Messung von Regulierungskosten. Im Auftrag der Bertelsmann Stiftung. KPMG(Hrsg.), Berlin, 2009.

SCM Network(Hrsg.),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 Measuring and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for businesses., 2005.

Statistisches Bundesamt(Hrsg.), Leitfaden zur Darstellung des Erfüllungsaufwands in Regelungsvorhaben der Bundesregierung, Im Auftrag der ndesregierung und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Wiesbaden, 2011.

##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Regilierungskosten Baurecht

Schätzung der Kosten von Regulierungen und Identifizierung von Potenzialen für die Vereinfachung und Kostenreduktion im Baurecht

2013.10.24.

## 연방지역개발청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ARE)

## 목 차

요 약 ..... 149

1. 서 론 ..... 153
1.1 문제상황 ..... 153
1.2 전체프로젝트와 목표들 ..... 154
1.3 연구조사 위탁 및 일반조건 ..... 155
1.4 건축법에 대한 ‘규제-검토’의 부분프로젝트 ..... 158
1.4.1 개 요 ..... 158
1.4.2 관련되는 법적 근거 ..... 159
1.4.3 환경법과의 차이점 ..... 160
1.5 규제비용 대 기타 비용 ..... 161
2. 분석의 방법 ..... 163
2.1 개 요 ..... 163
2.2 행위의무의 확정과 그룹화 ..... 166
2.3 분 할 ..... 168
2.3.1 분할 I ..... 168
2.3.2 분할 ㅍ ..... 169
2.4 사례수의 조사 ..... 172
2.5 다양한 건축유형에 따른 규제비용의 조사 ..... 173
2.5.1 모델계획에 대한 비용추산 ..... 173
2.5.2 규제비용 대 필요비용 ..... 179
2.5.3 관리비용 ..... 181
2.6 스위스의 규제비용의 계산 ..... 182
2.7 규제비용의 감축을 위한 제안서 작성 작업 ..... 186
3. 건축허가절차 ..... 187
3.1 서설, 개요 및 목표 ..... 187
3.2 규제비용의 추산 ..... 188
3.3 규제비용에 관한 논의 ..... 191
3.4 개선을 위한 제안 ..... 196
3.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196
3.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197
4. 화재보호 ..... 201
4.1 서설, 개요 및 목표 ..... 201
4.2 규제비용의 추산 ..... 202
4.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09
4.4 개선을 위한 제안 ..... 211
4.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211
4.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14
5. 에너지 조치 ..... 219
5.1 서설, 개요 및 목표 ..... 219
5.2. 규제비용의 추산 ..... 220
5.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25
5.4 개선을 위한 제안 ..... 229
5.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229
5.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31
6. 장애없는 건축 ..... 235
6.1 서설, 개요 및 목표 ..... 235
6.2 규제비용의 추산 ..... 237
6.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44
6.4 개선을 위한 제안 ..... 246
6.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246
6.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46
7. 주 차 ..... 249
7.1 서설, 개요 및 목표 ..... 249
7.2 규제비용의 추산 ..... 250
7.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55
7.4 개선을 위한 제안 ..... 255
7.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255
7.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56
8. 시민보호 ..... 257
8.1 서설, 개요 및 목표 ..... 257
8.2 규제비용의 추산 ..... 257
8.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61
8.4 개선을 위한 제안 ..... 261
8.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261
8.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62
9. 지진보호 ..... 263
9.1 서설, 개요 및 목표 ..... 263
9.2 규제비용의 추산 ..... 264
9.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68
9.3.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269
9.3.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69
10. 보건/위 생 ..... 271
10.1 서설, 개요 및 목표 ..... 271
10.2 규제비용의 추산 ..... 272
10.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75
10.4 개선을 위한 제안 ..... 276
10.4.1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76
11. 소음보호 ..... 277
11.1 서설, 개요 및 목표 ..... 277
11.2 규제비용의 추산 ..... 280
11.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84
11.4 개선을 위한 제안 ..... 286
11.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286
11.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86
12. 근로안전 ..... 287
12.1 서설, 개요 및 목표 ..... 287
12.2 규제비용의 추산 ..... 289
12.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292
12.4 개선을 위한 제안 ..... 294
12.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294
12.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294
13. 공공조달제도 ..... 295
13.1 서설, 개요 및 목표 ..... 295
13.2 규제비용의 추산 ..... 296
13.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302
13.4 개선을 위한 제안 ..... 303
13.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 303
13.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 305
14. 조사연구 결과의 요약 ..... 307
부록 A - Kanton과 자치단체의 관련 법령 ..... 315
부록 B - 사례수 ..... 323
설문조사 색인 ..... 333
참 고 문 헌 ..... 337

## 요 약

## 조사연구 보고서의 진행과정 및 연구범위

이 보고서는 건축법 분야에서 규제비용을 추산하고 규제비용을 감 축하기 위한 접근방식들을 서술하였다. 규제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접 근방식들은 규제비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규제의 편익을 좁 혀서는 안된다.

규제비용에는 오로지 경제계가 부담하고, 따라서 스위스 현 경제상 황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비용만 고려하였다. 규제비용은 주거분야 (신축과 재건축), 공공건축물 분야(신축과 재건축) 및 사무용 건축물 분야(신축과 재건축) 등 6 개의 대표적인 사례 예시를 통하여 산정되었 다. 조사된 비용의 계산은 경제계의 지상건축규모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다. 전체적으로 건축규모에 대한 비용이 약 300 억 스위스 프랑(CHF)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수치는 스위스 전체 건축규모의 $2 / 3$ 에 상응 하는 것이다. ${ }^{1}$ ) 지하건축은 고려하지 않았다. 스위스의 경우 지하건축 은 거의 완전히 국가에 의하여 위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행과정 을 통하여 비록 추산이기는 하지만, 규제비용의 거대한 차원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 밖에 방법론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은 이 조 사연구보고서에서 서술한 상세한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 경제계의 지상건축의 규제비용

이 조사연구보고서의 결론 중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스위스 경제계에서 지상건축의 규제비용은 조사대상 년도인 2011 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160 억 스위스 프랑 내지 고찰된 지상 건축규모의 약 $6 \%$ 에 해당하였다.

[^6]- 신축건축물의 경우 규제비용은 건축비의 약 $2 \sim 5 \%$ 로써 적게 나 타났다. 이에 반해 재건축 및 개축 프로젝트의 경우 규제비용은 약 $32 \%$ 까지 달했다.
- 규제비용은 대부분 건축주 내지 부동산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건축경제는 일반적으로 규제로부터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건축 주의 비용은 대부분 동시에 건축경제의 추가수익으로 되기 때문 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스위스의 건축경제가 일반적으로 규제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지만, 건축경제 이외의 나머지 경제계 (수출주도적 경제를 포함)와 소비자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신축건축물의 경우 (고찰의 대상이 된 11 개의 행위분야들간의 중복 을 제거한 이후에 계산된) 규제비용은 일차적으로 화재보호 분야에서 2 억 3700 만 프랑, 시민보호 분야에서 1 억 1900 만 프랑, 건축허가신청 분 야에서 1 억 3700 만 프랑에 달했다.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특 히 건축허가신청 분야(5억100만 프랑), 화재보호 분야(1억1700만 프 랑), 에너지 분야(1억6700만 프랑) 및 보건/위생 분야(9000만 프랑)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 규제비용의 최적화를 위한 접근방식

이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분석된 건축분야에서의 규제비용의 최적화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상세 하게 접근해보아야 한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전환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비용을 야기함이 없이 어떻게 증가된 요건 내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대규모 건축물 과 복잡한 건축물의 경우 향후 계속적으로 건축상의 조치나 계산

상의 가치에 관한 지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측정된 소비목표치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 특히, 화재보호 분야의 경우 노동법에 관한 중첩되는 규정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상이한 법령에서 나타나는 모순점들을 제거해야 한다.
- 건축 행정기관의 활동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하고, 조화시키며 자 동화(즉, 디지털화)시킴으로써 집행의 질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건축허가신청, 화재보호, 에너지 조치 및 공공조달제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 화재보호 분야에서는 해석의 여지 내지 변화되는 입법이 하나의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획의 안전을 증대시킬 바람직한 조치 로는, 한번 제출된 - 특히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 화재보호구상 만으로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축허가의 유 효성을 건축물의 검사시까지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 현재 전체적인 건축행정의 집행은 행정기관이 강력하게 수행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것은, 이러한 집행을 - 승용차 의 경우 배기가스 검사나 회계제도와 관련한 수정활동에서와 같 이 - 승인된 전문가에게 이양하여 효율성증대와 중앙행정화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여지를 창설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복잡한 대규모 건축대상물의 경우 구체적인 조치들 을 이행하게 하는 규제 보다는 보호목표들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옵션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화재보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성에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Opting-out' 조항을 통하여 개별 사례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비용이 발생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공공조달제도의 분야에서 이 조사연구는 사용된 개념정의에 따라 규제비용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분명한

것은, 기업들이 공개입찰 작업의 형식으로 당해 프로젝트에 선정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와 관련하여 이 조사연구는 특히 공공조달제도를 이행함에 있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별적 절차나 디지털 절차 등 법령 에 규정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보다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문자와 제공자의 편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이미 잘 기능하고 있는 - 현재의 simap.com 플랫폼을 분명하게 개편하여 보다 더 매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최적화의 접근방식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조사 연구의 관련되는 장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의 편익을 제한함이 없이 단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접근방식들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최적화의 이념들 은 절차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로부터 규제비용의 본질적인 직접적 감축은 기대할 수 없다. 스위스의 경우 건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주제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화, 건축주와 건축경제계 및 규제기구로서의 국가간의 절차의 자동화 및 표준화를 통하여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주어진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 건축법 의 이러한 절차가 보다 전문화되고 표준화되면 될수록, 건축경제계는 보다 더 간편하게 지역을 초월하여 조직하고, 따라서 보다 효율화된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이 조사연구의 내용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가들이 참여하여 수행되었다.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과 문제제기들 및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 조사연구는 ‘개요연구'(Übersichtstudie)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가 모든 중요한 주제영역들을 내용에 맞 게 다루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모든 면을 분명하게 해명 하지는 못했다.

## 1. 서 론

## 1.1 문제상항

스위스의 현 경제상황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주위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 한 매력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요건은 바로 국가 적 규제로 인하여 기업이 떠안게 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비교적 능률적인 행정은 스위스의 현 상황에서 중요한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상 부담완화는 지속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행정상의 부담완화에 관한 주제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양한 방법들과 제도들이 개발되었다(중소기업포럼, 규제비용추산, 중 소기업테스트). 이와 관련하여 순수한 질적 방법론에서 양적 방법론과 비용측정의 발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SKM)2)을 사용하였다. 이 표준비용 모델은 행정비용의 측정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 한 프로그램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다수의 규제분야 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원용하여 행정비용이 측정되었다. 그렇지만 표 준비용모델은 좁은 의미의 행정비용(기업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비용)의 측정에 국한되어 있다.

전체 규제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9년에 Bertelsmann 재단의 위 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기반을 둔 규제비용모델(Regulierungskostenmodell, RKM)3)이 개발되었다. 스위스에서는 경제사무국(Staatssekretariat für
2) SCM Network (Hrsg.), 2005,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http://www. oecd.org/dataoecd/32/54/34227698.pdf) 참조.
3) Bertelsmann Stiftung(Hrsg.), 2009, Handbuch zur Messung von Regulierungskosten (http://www.bertelsmann-stiftung.de/bst/de/media/xcms_best_dms_29012_2.pdf) 참조.

Wirtschaft; SECO)이 규제비용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 다(규제-검토, Regulierungs-Checkup). 스위스에서 이 연구조사는 규제 검사 방법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 1.2 전체프로젝트와 목표들

규제비용의 추산과 간소화 및 비용감축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전 체 프로젝트는 Fournier(10.3429 - 규제비용의 조사)4)와 Zuppiger(10.3592 - 규제비용의 측정(5)가 설정한 명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명제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2011년 말까지 스위스 기업들에게 존재하 는 모든 규제의 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다음의 3 가지 고려사항과 함께 이들 명제의 가정을 신 청하였다.

- 첫째, 비용측정의 종료를 2013년까지 미룬다.
- 둘째, 모든 규제비용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되는 15 개 분야에서의 규제비용만 측정하되, 각각 가장 중요한 법규정에 서 발생하는 비용효과만 측정한다.
- 셋째,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편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비용을 감축시킬 목표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비용측정은 스위스 기업들에게 특히 관련되어 있는 15 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별 분야별로 진행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연방기관들의 주도하에 부분프로젝트로 실시한다. 15 개 분야들 중 2012년 가을에 8개 분야에 대한 부분프로젝트가 공고되었다. '건축법' 분야도 바로 이러한 8 개 분야 중의 하나이다.

[^7]이 프로젝트는 분석된 분야들과 상관없이 2가지의 핵심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규제에 기반하여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규제-검토'의 방법 을 활용하여 추산한다.
- 기업을 위하여 비용절감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제안 내지 권고사항을 만들어낸다(다만, 이 제안 내지 권고사 항의 이행은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아니다).


## 1.3 연구조사 위탁 및 일반조거

## 연구조사 위탁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는 연방지역개발청(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ARE)으로부터 건축법 분야에서 규제비용을 추산하 고 규제비용의 감축 조치를 위한 접근방식을 확인해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

이 '건축법' 프로젝트는 내용적으로 다양한 담당자들에 의하여 결정 되었다. 따라서 연방지역개발청의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조사해야 할 관점들을 가급적이면 넓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방지역개발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지역개발청 전담팀'(Spiegelgruppe ARE)을 설치하여 건축법상 각종 의무를 찾아내거나 연구에 병행하여 협력하도록 하였다. ‘연방지역개발청 전담팀’에는 연방, Kanton 및 자치 단체의 대표자들, 입법관련 단체들, 이익단체들 및 그 밖의 기관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 일반조건

아래의 2.1.에 열거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위스 연방경제사무국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이 마련한 ‘규제-검토'(Regulierungs-

Checkup) 핸드북의 방법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15 개의 다 양한 분야별로 그 분석이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그 진행과정이 결과의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검토' 핸드북 의 방법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연방경제사무국은 '건축법’ 분야에서 행한 연구조사의 결과들을 전체프로젝트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에 활용할 것이다.
‘규제-검토’의 방법은 질적이고 양적인 부분분석을 결합시키는 것이 다. 하나의 기업에게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일차적으로 전문 가에 의하여 추산되어야 한다. 비용감축에 관한 제안들은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뿐 아니라 전문가의 인식에도 그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규제-검토'에서 어떠한 관점과 효과를 조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개관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할 점은 다음 과 같다.

- 표준비용모델과는 달리 이 프로젝트에서는 정보제공의무에 기초 한 행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무(요구사항들)의 비용도 분석한다([그림 1]의 상단 좌측 참조).
- 한계치간극의 준수 또는 사용번호의 준수 등과 같은 수인의무 또는 각종 금지는 건축법상 종종 나타나지만, 이들은 명시적으 로 이 연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그림 1]의 상단 우측 참조).
- 의회의 법률안에서 출발해보면, 이 연구조사의 관심은 경제계가 부담하는 규제비용에 있다. 따라서 국가에 발생하거나 일반 가 계에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이 연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그 림 1]의 중간 참조)

그림 1: 규제검토에서 고려된 규제비용


출처: SECO, Regulierungs-Checkup, S.10.

## 1.4 건죽법에 대한 ‘규제-검토’의 부분프로젝트

### 1.4.1 개 요

‘건축법’ 분야에서 다양한 법규정이 있는데, 이들 법규정은 연방차 원에서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Kanton과 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것 도 있다. 이 연구조사에서는 연방, Kanton 및 자치단체 등 3가지 차원에 모두 관련되는 법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해 Kanton과 자치단체 차원의 법규정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예시만을 선택하여 연구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연방지역개발청 전담팀'(Spiegelgruppe ARE) 의 설문조사 결과 Zürich, Bern, St.Gallen, Wallis, Genf 등 5 개 Kanton 만 이 연구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규제비용을 추산 하기 위하여 이들 Kanton에서 각각 최대 3 개의 자치단체(이들 각각의 자치단체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를 선정하였다. 이들 자치단체 의 자치규정들은 개별적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연구조사에서 고려된 Kanton과 자치단체

| Kanton | 자치단체(Gemeinde) |
| :---: | :--- |
| Zürich | • Zürich(대도시) <br> • Basserdorf(집단 자치단체) <br> • Hausen am Albis(시골형식의 자치단체) |
| Bern | • Bern(대도시) <br> • Brügg(집 단 자치단체) <br> • Hasliberg(시골형식의 자치단체) |
| St. Gallen | • Wil(지역센터) <br> • Wittenbach(집단 자치단체) <br> • Benken(시골형식의 자치단체) |


| Kanton | 자치단체(Gemeinde) |
| :---: | :--- |
| Wallis | 건축법 분야가 Kanton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br> 개별 자치단체에 대한 분석 불필요 |
| Genf | • $\operatorname{Sion(ㅈㅣㅇㅕㄱㅅㅔㄴㅌㅓ)~}$ <br> • Zermatt(여행센터) <br> • Fully(시골형식의 자치단체) |

출처: BHP-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1.4.2 관련되는 법적 근거

‘건축법'(Baurecht) 분야의 연구조사는 Kanton의 계획법령과 건축법 령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뿐만 아니라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규 제들을 포함한다. 지하공사는 이 연구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지하공사 에서는 대부분 건축주의 경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제(도로, 철도, 수도 및 하수도 연결 등의 분야에서 기반공사, 자연재해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건축공사 등)에 속하기 때문이다.
‘규제-검토’ 핸드북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비용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법규정들이 분석의 출발점이 된다. 아래의 표에 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연방의 법적 근거들이 나열되어 있다.

표 2: 국내 차원의 건축법 분야에서 관련되는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1979년 6월 22일자 연방지역계획법(RPG, SR 700) 및 이에 부속되는 2000년 7월 28일자 지역계획명령(RPV, SR 700.1)

- 1996년 7월 1일자 연방자연 및 경관보호법(NHG, SR 451) 및 이에 부속 되는 1991년 1월 16일자 자연 및 경관보호명령(NHV, SR 451.1)
- 1988년 10월 19 일자 환경영향평가명령(UVPV, SR 814.011)


## 법적 근거

| •1998년 6월 26일자 에너지법(EnG, SR 730.0) 및 이에 부속되는 1998년 <br> 12월 7일자 에너지명령(SR 730.01) |
| :--- |
| $\cdot 2004$ 년 1월 1일자 연방장애인불이익방지법(BehiG, SR 151.3) |
| •2002년 10월 4일자 연방국민보호 및 시민보호법(BZG, SR 520.1) 및 이 <br> 에 부속되는 시민보호명령(ZSV, SR 520.11) |
| $\cdot 2009$ 년 6월 12일자 연방제품안전법(PrSG, 930.11) |
| $\cdot 1999$ 년 10월 8일자 연방건축제품법(BauPG, 933.0) |
| 1994년 12월 16일자 연방공공조달법(BöB, SR 172.056.1) 및 이에 부속 <br> 되는 1995년 12월 11일자 공공조달명령(VöB, SR 172.056.11) |
| •1994년 11월 25일자 공공조달에 관한 Kanton간 협약(IVöB) 및 공공조달 <br> 분야에서의 Kanton법과 명령 |

출처: $\operatorname{ARE}(2012)$

관련되는 법적 근거들의 많은 부분이 연방차원이 아니라 Kanton과 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 때문에 심도있는 분석을 위하여 분석 대상 Kanton과 자치단체의 법령을 원용하였다. 관련되는 법령은 ‘부록 A - Kanton과 자치단체의 법규정’에 기재하였다.

### 1.4.3 환경법과의 차이점

건축법에 관한 ‘규제-검토’에 병행하여 환경법에 관한 ‘규제-검토'도 실시하였다. 건축법 분야와 환경법 분야간에는 일정한 연결점이 있다. 이 두 가지 법 분야에서 동시에 실시된 '규제-검토의 중복산정을 피하 기 위하여 연구위탁자와 ‘환경법’ 부분영역을 관할하는 연구팀인 Infras/ Ecosens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환경법 '규제-검토'를 위한 각종 의무사항들이 기재된 책자에는 연 방환경청(BAFU)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행위의무들이 한정적으로 열거

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의무들은 - Infras/Ecosens 주식회사의 심사에 따라서 - 분석의 대상이 된다.

- 대기보존 : 중점을 연소에 둔다.
- 폐기물관리 : 첫 번째 중점을 건축폐기물에 둔다.
- 폐기물관리 : 두 번째 중점을 특수폐기물의 운송에 둔다.
- 수질보호 : 중점을 산업폐수에 둔다.

특수폐기물과 산업폐수의 두 행위의무는 건축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 다. 나머지 두 개의 행위의무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다.

대기보존:

- 환경법 ‘규제-검토' : (주거기술의 일부로서) 난방 분야에서 규제들
- 건축법 ‘규제-검토' : 보온 분야에서 규제들

건축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 :

- 환경법 ‘규제-검토’ : 건축폐기물 분야에서 규제들
- 건축법 ‘규제-검토’ : 파낸 흙은 건축폐기물 분야에서 제외


## 1.5 규제비응 대 기타 비응

건축 분야에서 규제비용의 분석은 스위스의 현 상황이 국제경쟁력 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위스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 용을 경감한다는 목표하에 실시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스위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비 용이 발생하는 경향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규제비용 이외에도 특히, 스위스의 일반적인 가격수준과 급여수준 및 소비자 내지 건축주의 건 축 분야에서 요구수준도 매우 결정적이다.

2004년에 수행된 연구6)에서는, 스위스 Zürich, 오스트리아 Wien, 독 일 München의 호텔건축을 사례(객실 1 개당 비용을 환산하여)로 들어 투자비용의 경우 이들 세 도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위스 프랑과 유로화의 환율차이를 1.54 로 할 때 München의 경우 $39 \%$ 의 비용상의 이익이 남았고, Wien에서는 $32 \%$ 의 비용상의 이 익이 남았다(그림 2 참조).

- Wien과 Müchen의 경우 약 $22 \%$ 는 스위스에서 기업구조가 덜 효 율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예: 기반시설에 비하여 더 적은 객실, 더 비싼 물적 비용, 더 넓은 평면).
- München의 경우 약 $7 \%$, Wien의 경우 $13 \%$ 는 다양한 건축가격수 준에 기인한다.
- 단지 Müchen의 경우 $3 \%$, Wien의 경우 $4 \%$ 만 다양한 국가적 규 제에 기인한다.

그림 2: Zütich, München 및 Wien간의 건축비용의 차이(호텔 객실 당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화의 환율은 1.54)

한 호텔의 객실당 유 로화 대비 스위스 프 랑의 환율 을 1.54 로 할 경우 Zürich시와 비 교해 본 비 용절감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2004)
6) BHP-Hanser und Partner AG, 2004.

## 2. 분석의 방법

## 2.1 개 요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연방 경제사무국 $(\mathrm{SECO})$ 의 핸드북7)은 다음의 조사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핸드북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과정

7) $\mathrm{SECO}, 2011$.


출처: $\operatorname{SECO}(2011)$

그림 3 에 제시하고 있듯이, 연방 경제사무국 $(\mathrm{SECO})$ 핸드북상의 진 행계획은 분석디자인(예: 분할, 사례수의 조사)에 관한 지침뿐만 아니 라 정보창출(예: 기업설문조사 실시, 전문가워크솝)시의 진행과정도 포 함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분석디자인에 관한 핸드북상의 모든 지침을 완 전하게 이행하였다. 아래의 [그림 4]는 가장 중요한 분석부분을 제시 하면서 방법론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해당 서술부분을 지 적하고 있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그림 4: ‘건축법, 규제-검토의 분석디자인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

개별적인 분석부분에 대한 정보창출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핸드북에서 권고하는 진행과정을 약간 수정하였다. 건축법 분야에서 행위의무는 수없이 많고, 나아가 각각의 자치단체와 건축계획마다 다 양하게 나타난다. 이 절에서의 진행과정에서 제시하였듯이 규제비용 이 발생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10,000 개 8 )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계량 화되었다. 핸드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그림 3] 참조), 개별 기업 내 지 전문가들을 통하여 모든 주제 영역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불가 능하다. 이것은 규제비용을 조사할 때뿐만 아니라 규제비용의 감축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발주자 내지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을 선 택하였다.
8) 13 개의 분석대상 자치단체에서 건축계획을 6 개로 범주화하여 각각 약 15 개의 개 별적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의무들을 10 개로 그룹핑하였다.

-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 건축기술연구소는 관련되는 모 든 행위의무에 대한 규제비용을 추산한다. 이 경우 핵심적인 기 초는 이러한 전문화된 건축기술연구소의 광범위한 전문지식이다. 상세한 사항을 해명하기 위하여 건축기술연구소의 전문가들은 한 편으로는 전문문헌과 고유치수집을 참고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기업, Kanton 및 자치단체 대표자들 및 전문가들과 각각 좁게 구분된 부분관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대화를 진행하였다(첨 부부록에 기재된 설문조사표 참조).
- 건축기술연구소의 추산 결과는 전문가들과의 워크솝에서 보다 신 빙성있게 하였다.
- 2013년 6월 5일에 개최된 건축 분야 및 계획 분야 전문가들 과의 워크숍(첨부부록에 기재된 설문조사표 참조)
- 2013년 6월 13일에 개최된 발주자 및 연방 경제사무국(SECO) 과의 워크숍
- 2013년 7월 4일에 개최된 프로젝트에 관한 ‘연방지역개발청 전담팀'(Spiegelgruppe ARE)과의 워크숍(1.4.절 참조)

이 워크솝은 규제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성안된 제안서를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2.2절부터 2.7 절까지에는 각각 개별적인 분석부분에 대한 정보창출 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2.2 행위의무의 학정과 그룹화

## 분석방법

건축법 분야는 수많은 행위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연방지역개발청 전담팀'(Spiegelgruppe ARE)의 사전분석9)과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8]Zürich) 건축기술연구소의 스크린에 따라서 '규제-검토'에 포함된 행위 의무의 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 건축허가(Baubewilligung)
- 화재보호(Brandschutz)
- 에너지(Energie)
- 장애없는 건축(Hindernisfreies Bauen)
- 주차(Parkierung)
- 시민보호(Zivilschutz)
- 지진안전(Erdbebensicherheit)
- 보건 및 위생(Hygiene- und Gesundheit)
- 소음보호(Lärmschutz)
- 근로안전(Arbeitssicherheit)
- 공공조달(Öffentliches Beschaffungswesen)

각각의 주제분야에서 각각의 분석대상이 된 자치단체별로 연방, Kanton 및 자치단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무를 조사 하였다. 예컨대, Zürich시에서 화재보호 분야에서는 사무용 건물의 경 우 다음과 같은 행위의무를 확인하였다.

-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문과 방화벽의 설치
-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건물의 피난로
- 화재신고설비 및 진화설비의 설치
- 진화에 가장 적합한 물이용의 확보
- 내화물질의 설치(심사규정)

[^9]
## 정보창출

행위의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방차원 및 분석의 대상이 된 Kanton 과 자치단체의 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행하였다. 실무에서 개별적 인 요구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하여 분석의 대상이 된 Kanton 과 자치단체에서 건축행정을 책임지는 담당자 등과 심도있는 대화를 행하였다.

## 2.3 분 할

건축법에서 규제를 통하여 경제에 관련되는 것은 다양하다. 이 연구 조사의 분석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분할(Segmentierung)에 기초하고 있다.

### 2.3.1 분할 I

건축법상 규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 건축주로서 경제계(Wirtschaft als Bauherr) : 건축주로서 경제계는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유발하는 수많은 행위의무와 관련되어 있 다(예: 화재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의 이행 또는 난방을 위한 조치 의 실현 등). 3 절부터 12절까지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규제비 용을 제시하고 있다.
- 건축자재생산자로서 경제계(Wirtschaft als Bauproduktehersteller) : 건축자재생산자도 규제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규제비용은 시 장상황이 허용하는 한 건축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연구진은 행 위의무를 분석한 결과, 극소수의 부분만 규제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본 연구조사에서 무시할 수 있다 는 결론에 이르렀다. 규제가 추가적인 투자의 결과를 낳는 경우

에는 건축자재생산자는 추가적 내지 광범위한 주문을 받게 되는 이익을 가지게 된다.

- 계획영업과 건축영업으로서 경제계(Wirtschaft als Planungs- und Baugewerbe) : 계획영업과 건축영업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건축자 재생산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계획영업과 건축영업 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관련성은 단지 공공조달을 위한 공시절 차에서 특별한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예: 정보제공의 무). 13절은 부담해야 할 규제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는 일차적으로 건축주로서 경제계가 부담해야 할 규제비용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밖에 계획영업과 건축 영업이 공공조달제도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하는 규제비용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2.3.2 분할 ㅍ

## 분석방법

규제비용의 크기는 본질적으로 건축물의 종류에 의존한다(예: 주거 용주택 대 사무용건물 대 공용건물). 다양한 규제들은 특정한 건물의 범주에 대해서만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 맞추기 위 하여 조사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분할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그림 5]에서는 23개의 대상유형들을 구분하고 있다.

건축에서는 목초지에 건축을 계획 내지 건축할 수 있는지, 기존의 건물을 - 현존하는 건축물의 기초에 기반하여 다양한 강제사항을 유 의하면서 - 개축 내지 재건축할 것인지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 이 점에서 이 조사연구에서는 규제비용분석을 행함에 있어 한편으로 는 신축, 다른 한편으로는 재건축과 개축(SIA 469)을 구분하였다.

그림 5: 2011년 경제의 건축활동

|  | 건축주로서 경제계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재건축/개축 | 계 |  |  |
|  | 건축 <br> 계획수 | 스위스 <br> 프랑 <br> (CHF) | 건축 <br> 계획수 | 스위스 <br> 프랑 | 건축 <br> 계획수 | 스위스 <br> 프랑 |
|  | 19 | 98,693 | 96 | 77,359 | 115 | 176,052 |
| 고등교육제도 및 연구 | 6 | 257,795 | 20 | 16,498 | 26 | 274,293 |
| 급성(또는 일반)입원 <br> 환자 | 4 | 23,994 | 46 | 175,198 | 50 | 199,192 |
| 요양원, 간호 또는 요양 | 24 | 286,418 | 118 | 229,887 | 142 | 516,305 |
| 기타 특수 보건제도 | 8 | 31,568 | 39 | 62,394 | 47 | 93,962 |
| 휴가, 여행시설 | 183 | 207,915 | 266 | 154,645 | 449 | 362,560 |
| 박물관, 도서관 등 문 <br> 화시설 건축물 | 17 | 29,212 | 52 | 41,810 | 69 | 71,022 |
| 체육관과 운동장 | 12 | 31,103 | 17 | 5,312 | 29 | 36,415 |
| 다가족 주택 | 3,053 | $12,172,127$ | 7,239 | $2,616,341$ | 10,292 | $14,788,468$ |
| 부속시설을 갖춘 주 <br> 거용 주택 | 381 | $2,654,857$ | 3,445 | $1,330,633$ | 3,826 | $3,985,490$ |
| 간호서비스 또 는 요 <br> 양없는 요양용 주택 | 11 | 128,799 | 29 | 51,303 | 40 | 180,102 |
| 주차장, 주차시설, 주 <br> 택과 관련한 주차장 | 1,657 | 199,460 | 1,622 | 74,797 | 3,279 | 274,257 |
| 기타 주거용건물 관련 <br> 건축물 | 1,709 | 84,220 | 3,061 | 131,229 | 4,770 | 215,449 |
| 농업용건축물 | 1,121 | 317,185 | 1,661 | 238,471 | 2,782 | 555,656 |
| 산림용건축물 | 17 | 1,975 | 21 | 2,886 | 38 | 4,861 |
| 개량 | 3,752 | 73 | 5,877 | 92 | 9,629 |  |
| 공장, 공장용건물 | 365 | $1,206,420$ | 1,120 | 744,026 | 1,485 | $1,950,446$ |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 건축주로서 경제계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재건축/개축 |  | 계 |  |
|  | 건축 <br> 계획수 | 스위스 <br> 프랑 <br> (CHF) | 건축 <br> 계획수 | 스위스 <br> 프랑 | 건축 <br> 계획수 | 스위스 <br> 프랑 |
|  | 396 | 526,042 | 470 | 232,460 | 866 | 758,502 |
| 사무용건물, 행정용건물 | 142 | $1,790,135$ | 787 | $1,055,492$ | 929 | $2,845,627$ |
| 백화점, 상점건물 | 144 | 742,800 | 805 | 660,163 | 949 | $1,402,963$ |
| 식당, 호텔 | 60 | 272,021 | 762 | 434,821 | 822 | 706,842 |
| 기타 숙박시설 | 11 | 30,897 | 50 | 18,758 | 61 | 49,655 |
| 경제적 목적을 위한 기 <br> 타 사용 | 203 | 40,759 | 586 | 74,670 | 789 | 115,429 |
| 계 | $\mathbf{9 , 5 6 2}$ | $\mathbf{2 1 , 1 3 8 , 1 4 7}$ | $\mathbf{2 2 , 3 8 5}$ | $\mathbf{8 , 4 3 5 , 0 3 0}$ | $\mathbf{3 1 , 9 4 7}$ | $\mathbf{2 9 , 5 7 3 , 1 7 7}$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 auf Basis Bausausgabenstatistik BFS

## 정보창출

연방통계청은 매년 스위스에서의 건축활동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는 건축활동을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상건축물의 종류 여부, 신축 또는 개축 여부, 건축위탁자가 개 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2011년의 자료들을 활용한다. 2006년 이후의 경제의 건축규모의 추이 를 보면, 건축규모가 매년 $4 \%$ 정도 증가하였지만, 해를 거치면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규제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 조 사연구에서 활용한 2001년의 자료들은 가장 현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자료들이며, 그 이전의 년도들까지 포함한 시간적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6: 2006년~2011년까지 건축주로서 경제계의 지상건축 추이 (범주화)에 관해서는 그림 7 참조)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 auf Basis Bausausgabenstatistik BFS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 auf Basis Bausausgabenstatistik BFS

## 2.4 사례수의 조사

## 분석방법

고찰의 대상년도인 2011년의 건축계획의 수에 관해서는 연방통계청 의 전수조사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는 이에 관한 사례수를 보여주 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의 건축계획은 31,947 건이다(신축 9,562 건, 재 건축•개축 22,385 건). 이를 스위스 프랑화로 환산해보면, 총 29 조5,730 억 스위스 프랑이다(신축 21 조 1,380 억 스위스 프랑, 재건축•개축 8 조 4,350억 스위스 프링). 전체적으로는, 스위스에서 2011년 지상건축의 경 우 약 46 조 5,350 억 스위스 프랑의 건축규모를 가진 50,108 건의 건축계 획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에서 고찰된 건축규모는 매년

계획 내지 전체 지상건축 규모의 약 3 분의 2 에 상응하는 것이다. 지하 건축에서 $(13,686$ 건의 계획, 건축규모는 13 조 160 억 스위스 프랑) 매년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이 조사연구에서 고찰된 건축규모가 스위스에서의 전체 건축규모의 의미있는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건축지출통계는 매 년말마다 공개된 공사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일 뿐 2011년에 개시된 건축공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통계 청과 합의하여 2011년에 종료된 건축공사를 사례수로 활용하였다.10) 대규모 공사의 경우 1 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따라서 1 년만을 사례 로 볼 수는 없다. 규모가 적은 공사는 다시금 1 년 이하 공사가 진행 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볼 때 만약 그 공사가 1 년 이내에 종료 된 경우에는 사례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정보창출

연방통계청의 전수조사를 활용한다. 이러한 자료가 있으므로 사례 수의 분야에서는 추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 2.5 다양한 건축유형에 따른 규제비용의 조사

### 2.5.1 모델계획에 대한 비용추산

## 분석방법

조사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무의 비용효과를 현실에 근접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행위의무를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반드시 적용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용계산(SN 506 511 eBKP-H 2012)의 개별적인 위치와 그 규제와 관련된 변화를 조사 해 보아야 한다. ${ }^{11)}$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들(1.4.1. 참
10) 2011년에 개시된 건축공사의 수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11) 건축계획 설계자의 작업비용은 중간정도의 시간요금인 120 스위스 프랑으로 계

조)에게 상이한 행위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행방식을 선택하였다.

- 세 개의 신축계획에 대한 고찰 : 행위의무의 비용을 추산할 수 있기 위하여 Zürich시에서 3 개의 대상물 - 1 개의 다가구 생활용 주거주택, 1 개의 사무용 건물, 공용건물로서 1 개의 학교건물)에 대한 건축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이 3 개의 대상물은 그들의 범주를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가구 생활용 주거주택은 Zürich시의 건축가격표에서 사용하는 모델건축물에 상응하는 것이다. 3 개의 모델대상물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표 3: 활용된 모델대상물들 개요

| 관련내용 | 주거용주택 | 사무용건축물 | 학 교 |
| :--- | :---: | :---: | :---: |
| 부지면적(GSF) | $3,062 \mathrm{~m}^{2}$ | $6,355 \mathrm{~m}^{2}$ | $28,289 \mathrm{~m}^{2}$ |
| 연면적(GF) | $5,036 \mathrm{~m}^{2}$ | $27,318 \mathrm{~m}^{2}$ | $3,713 \mathrm{~m}^{2}$ |
| 건축무ㄹㅠㅠㅁㅗ(GV) | $13,595 \mathrm{~m}^{3}$ | $97,066 \mathrm{~m}^{3}$ | $15,817 \mathrm{~m}^{3}$ |
| 건축비용 | $9,584,733$ | $60,398,960$ | $16,254,896$ |
| 건축비용계획-지상 |  |  |  |
| 건축12)에 따른 연면 |  |  |  |
| 적 제곱미터당 건축 <br> 비용 | 1,903 | CHF | CHF |
| 건축비용계획-지상 <br> 건축에 따른 건축물 <br> 규모 세제곱미터당 <br> 건축비용 | CHF | 2,211 | 4,378 |

산한다. 건축주는 작업시간별로 자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산정한 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12) Baukosten und Kostenelement nach SN 506511 Baukostenplan Hochbau eBKP-H, 2012.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관련내용 | 주거용주택 | 사무용건축물 | 학 교 |
| :---: | :---: | :---: | :---: |
| 모델대상물은 다음 <br> 의 건축물범주에서 <br> 규제비용의 추산에 <br> 활용된다. | 주거13) | 근로14) | 일반공중의 <br> 이용15)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3 개의 신축계획과 재건축•개축계획에 대한 고찰 : 3 개의 신축계획 이외에 3 개의 재건축•개축계획도 분석하였다. 재건축계획과 개축계 획을 각각 분리하여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규제비용 추산의 신빙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신축의 경우 대부 분의 행위의무가 비교적 적은 규제비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볼 수 있다. 요구된 건축상의 요소들이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낡은 건물에 일정한 건축상의 조치를 실행해 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재건축계획과 개축계획에서 규제비용의 추산에 관해서는 약 30 년 전에 완성된 주택, 사무용건축물 및 학교의 경우에는 신축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동일하게 많다는 점이 고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약 20년 내지 35년이 지난 경우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13) 연방통계청의 건축통계에 의하면, 다가구용 주택, 부가적 이용시설을 갖춘 주거 용주택, 간호서비스 또는 요양 설비없는 주택이 포함된다.
14) 연방통계청의 건축통계에 의하면, 공장, 공장용건물, 창고, 사무용건축물, 행정용 건축물, 백화점, 사무용건물, 식당, 호텔, 기타 숙박시설이 포함된다. 공장용 건물은 사무용건축물과 엄격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조사 된 내용과 관련지워보면, 사무용건축물에서 도출된 인식자료들을 공장용 건물과 유 사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
15) 연방통계청의 건축통계에 의하면, 학교, 교육제도(고졸시험까지), 고등교육제도 및 연구, 휴가 및 관광시설이 포함된다.

- 규제비용의 지역적 편차에 대한 조사 : 3 개에 대해 분석한 신축 계획과 3 개에 대해 분석한 재건축 및 개축계획들에 대하여 규제 비용의 지역적 편차를 조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산정의 출발점 은 항상 Zürich시의 예시사례이다. 그 밖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존재하는 한 - Zürich시의 예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사한다.

선택된 대상물그룹을 통하여 경제의 건축규모(29조5,730억 스위스 프랑)의 약 $93 \%$ (27조 4,810 스위스 프랑)가 이 조사연구에서 제기한 문 제에 적합한 추산의 정확성을 보였다(아래의 그림 7 참조). ${ }^{16)}$ 제시되 지 않은 것으로는 특히, 농업건축물, 주차장, 체육시설 및 입원시설 및 요양시설들로서, 이들은 건축규모의 나머지 $7 \%$ 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 결과의 유효성은 이 조사연구에서 제시한 규제비용이 - 산출을 위하여 투입된 절차에 근거하여(2.6.절 참조) - 실제의 규제비용보다 약 간 낮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산출을 위한 사례예시에 대한 연방통계청의 대상물범주 지정

|  | 건축주로서 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재건축/개축 |  | 계 |  |
|  | $\begin{aligned} & \text { 건축 } \\ & \text { 계획수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스위스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건축 } \\ & \text { 계획수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스위스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건축 } \\ & \text { 계획수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스위스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 학교, 교육제도(고졸시 험까지) | 19 | 98,693 | 96 | 77,359 | 115 | 176,052 |
| 고등교육제도 및 연구 | 6 | 257,795 | 20 | 16,498 | 26 | 274,293 |
| 급성(또는 일반)입원환자 | 4 | 23,994 | 46 | 175,198 | 50 | 199,192 |
| 요양원, 간호 또는 요양 | 24 | 286,418 | 118 | 229,887 | 142 | 516,305 |
| 기타 특수 보건제도 | 8 | 31,568 | 39 | 62,394 | 47 | 93,962 |

16) 산출에 관련되는 건축계획의 수 내지 관련되는 건축규모는 상이한 특별 지침(개 별적인 행위영역에 관한 절 참조)과 가정(침해의 정도에 관한 2.6.절 참조)에 근거 하여 각각의 행위영역마다 달리 나타난다. 개별적인 행위영역의 산출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계획의 수 내지 관련되는 건축규모는 이 보고서의 보충자료인 ‘최종보고서 에 관한 상세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 건축주로서 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재건축/개축 |  | 계 |  |
|  | $\begin{aligned} & \text { 건축 } \\ & \text { 계획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스위스 } \\ & \text { 프랑 } \end{aligned}$ | 건축 <br> 계획수 | $\begin{gathered} \text { 스위스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건축 계획수 | $\begin{gathered} \text { 스위스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 휴가, 여행시설 | 183 | 207,915 | 266 | 154,645 | 449 | 362,560 |
| 박물관, 도서관 등 문 화시설 건축물 | 17 | 29,212 | 52 | 41,810 | 69 | 71,022 |
| 체육관과 운동장 | 12 | 31,103 | 17 | 5,312 | 29 | 36,415 |
| 다가족 주택 | 3,053 | 12,172,127 | 7,239 | 2,616,341 | 10,292 | 14,788,468 |
| 부속시설을 갖춘 주거 용 주택 | 381 | 2,654,857 | 3,445 | 1,330,633 | 3,826 | 3,985,490 |
| 간호서비스 또는 요양 없는 요양용 주택 | 11 | 128,799 | 29 | 51,303 | 40 | 180,102 |
| 주차장, 주차시설, 주 택과 관련한 주차장 | 1,657 | 199,460 | 1,622 | 74,797 | 3,279 | 274,257 |
| 기타 주거용건물 관련 건축물 | 1,709 | 84,220 | 3,061 | 131,229 | 4,770 | 215,449 |
| 농업용건축물 | 1,121 | 317,185 | 1,661 | 238,471 | 2,782 | 555,656 |
| 산림용건축물 | 17 | 1,975 | 21 | 2,886 | 38 | 4,861 |
| 개량 | 19 | 3,752 | 73 | 5,877 | 92 | 9,629 |
| 공장, 공장용건물 | 365 | 1,206,420 | 1,120 | 744,026 | 1,485 | 1,950,446 |
| 창고, 보관소, 저장탑, 빗물통 | 396 | 526,042 | 470 | 232,460 | 866 | 758,502 |
| 사무용건물, 행정용건물 | 142 | 1,790,135 | 787 | 1,055,492 | 929 | 2,845,627 |
| 백화점, 상점건물 | 144 | 742,800 | 805 | 660,163 | 949 | 1,402,963 |
| 식당, 호텔 | 60 | 272,021 | 762 | 434,821 | 822 | 706,842 |
| 기타 숙박시설 | 11 | 30,897 | 50 | 18,758 | 61 | 49,655 |
| 경제적 목적을 위한 기 타 사용 | 203 | 40,759 | 586 | 74,670 | 789 | 115,429 |
| 계 | 9,562 | 21,138,147 | 22,385 | 8,435,030 | 31,947 | 29,573,177 |


| 학교는 건축물을 대표 <br> 한다. | 208 | 564,403 | 382 | 248,502 | 590 | 812,905 |
| :--- | ---: | ---: | ---: | ---: | ---: | ---: |
| 다가정 주택은 건축물 <br> 을 대표한다. | 3,445 | $14,955,743$ | 10,713 | $3,998,277$ | 14,158 | $18,954,060$ |
| 사무용건축물은 건축물 <br> 을 대표한다. | 1,118 | $4,568,315$ | 3,994 | $3,145,720$ | 5,112 | $7,714,035$ |
| 계 | 4,771 | $20,088,501$ | 15,089 | $7,392,499$ | 19,860 | $27,481,000$ |
| 건축주로서 경제의 대 <br> 표성(\%) | 50 | 95 | 67 | 88 | 62 | 93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실행된 산출은 스위스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기본적인 설명은 Kanton 차원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 [그림 8]은 경제의 지상건축 규모의 표본의 수가 스위스 전체와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개별적인 범주(주택, 사무, 공공의 접근)를 통하여 도출된 비용의 의미는 각각의 Kanton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상건축 규모의 구조가 Kanton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Basel시는 현 저하게 차이가 나는 도시라고 부를 수 있다. Basel시에서의 비용 산출 은 ‘사무’ 범주(즉, 사무용건축물과 공장)를 통하여 도출된 비용이 스 위스의 평균보다 분명하게 높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산출을 위하여 파악된 건축규모의 점유율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auf Basis von BFS(Bauausgabenstatistik)

## 정보창출

앞에서 언급한 6 개의 모델대상물에 대한 비용분석은 스위스 연방공 과대학(ETH Zürich) 건축기술연구소가 수행하였다. 여기서 조사된 것 은 이행해야 할 행위의무에 근거한 다양한 건축비용의 지점의 변화였 다. 상세한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찰의 대상 이 된 행위의무들 중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다시 문의하였다.
개별 자치단체에서 실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각각의 Kanton에서 하 나의 심화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자치단체와 Kanton의 대표자 들과 함께 - 고찰의 대상이 된 모든 Kanton과 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에 대하여 데스크 조사를 하면서 이에 보충하여 - 설문조사(인터뷰)도 수행하였다. 여기서 특히 서면에 의한 문건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 는 관점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2.5.2 규제비용 대 필요비용

## 분석방법

규제-검토 핸드북의 지침17)에 따르면, 규제비용의 추산함에 있어서 는 ‘필요비용'(Sowieso-Kosten)을 제외시켜야 한다. 여기서 필요비용이 란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경제계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건 축물 신축의 경우 예컨대, 장애물없는 건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무엇이 주행할 수 없는지 가능한 한 수준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이것은 건축물을 세울 때 외부로부터 시작하고 수직적 건 축(승강기)에서부터 계단과 문에서 적은 간격을 두지 않도록 피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목표는 건축물에서 물건과 사람의 이동을 편이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

[^10]물없는 건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실현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유형의 비용은 필요비용으로 평가되고-2.5.1.절에 따라 조사된 - 건축비용 내지 절차비용에서 감해진다. 따라서 필요비용은 규제비용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9]는 필요비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진행방식을 제시하 고 있다. 건축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필요비용으 로 분류된다.

- 오늘날의 건축기술의 상황과 건축예술의 규칙(이에 상응하는 규 범과 기준 참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발생하는 비용
- 오늘날 일반적으로 규제없이도 실현할 수 있을 건축요소들을 실 현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위의 장애없는 건축에 관한 예 참조)

공공조달의 분야에서 필요비용을 조사함에 있어서 규제비용과 필요 비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추천사례로서 대규모의 사적인 건축계획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진행과정이 도움이 된다. 그 밖에 필요비용을 확정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은 행위의무의 개별적인 그룹에 대한 결과 를 다룬 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9: 필요비용의 결정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

## 정보창출

필요비용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건축서류(실무)의 규칙과 현행 규범 및 표준(기준)이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 규제없이도 현행 규범과 표준 에 추가하여 실현될 건축요소들의 비용에 대한 추산은 경험과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 건축기술연구소의 고유치 및 고찰대상이 된 행위의무 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 문가의 평가에 기초한다(첨부부록에 있는 설문조사표 참조).

### 2.5.3 관리비용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건축요소들(예: 승강기, 열펌프, 주차시설, 성 별에 따라 분리된 화장실 시설)은 추가적인 관리비용(Betriebskost)을 발생시킨다. 관련되는 투자요소들에 대한 비용을 필요비용으로 분류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비용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 도출되는 관 리비용도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결론을 담은 절에 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물에 특수한 비용을 두고 전체 스위스에 대 한 양적인 판단을 하기란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11년 도 스위스의 전체 건축물현황 내지 스위스에서 경제와 관련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와 건축물현황에서 필요한 특수성의 요소들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예: 승강기를 갖춘 건물의 수)가 흠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보험회사들의 업무보고서에 기초한 스위스에서의 건축물의 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스위스에 약 230 만개 의 건축물이 있고 이 중에서 약 $500,000 \sim 700,000$ 개의 건축물이 건축물 보험회사들의 업무보고서에서 사용한 경제분야의 개념정의에 포함된 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스위스 연방통계청의 주거건물통계에서는,
$1,656,864$ 개의 건축물이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라고 기 재되어 있다.

## 2.6 스위스의 규제비응의 계산

## 분석방법

6 개의 특징적인 건축계획에 대하여 6개의 구체적인 건축물을 수단 으로 하여 규제비용을 조사하였다(2.5.절 참조). 경제계에서 실현된 건 축계획의 수치와 스위스의 2011년의 투자규모는 이미 알려져 있다 (2.4.절 참조). 이 두 가지의 기초에서 출발하여 스위스의 규제비용을 추산하였다.

분석된 6개의 모델건축계획은 2011년에 건축주로서 경제계가 실현 한 건축규모의 약 $93 \%$ 를 대표한다. 따라서 결론을 서술한 절에서 경 제계가 부담하게 되는 실제적인 규제비용이 오히려 약간 과소평가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각 규제비용이 건축규모에 비례되게 발생하는지 아니면 각 건축프로젝트 별(예: 건축심사절차 또는 건축허 가절차를 실시할 때마다)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 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각의 행위의무와 각각의 모델-건축계획별로 조사된 규제비용을 건축프로젝트의 수에 근거하거나(절대적 고찰방식) 아니면 스위스에서의 건축규모에 근거하여 (비례적 고찰방식) 계산하 였다.

재건축과 개축의 영역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개 축건물이 규제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추가적인 요청이 있다. 많은 행위의무들이 모든 재건축계획이나 개축계획에서 이행되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지침을 충족해야 하는 재건축계획 내지 개축계획에만 이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애없는 건축의 영역에서

는 전체 재건축비용과 합리적인 관계에 있는 부담사항만 이행할 의무 가 있다. 게다가 행위의무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치나 개축조치들은 일정한 '침해의 강도'(Eingriffstiefe)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예컨대,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관여 내 지 침해하지 않고, 따라서 행위의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통 계에 잡힌 모든 재건축사례나 개축사례가 규제를 낳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 건축기술연구소의 경험에 따라, 재건축계획과 개축계획에 있어서 30 년 동안의 사용기간이 지난 이후 에 재건축조치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위의무를 적용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침해의 강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사례에 대한 예 시를 근거로 해서 출발해보면, 시설비용이 $20 \%$ 를 넘는 경우에는 재건 축프로젝트와 개축프로젝트에 행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주제마다 논리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의 침해강도부터 행위의무가 발생하는지 가정을 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2011년의 평균적인 신축비용에 대비된 평균 적인 개축비용에 기초하여 현 시점에서 중간적인 침해강도가 무엇인 지 추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평균적인 침해강도에 대비된 비용가치 를 계산하였다. 이에 관한 방법론적인 진행과정을 나타낸 그림은 4.2. 절에 제시되어 있으며, 화재보호에서의 규제비용의 추산은 표 5.에 제 시되어 있다.

표 4: 행위영역에 따른 최소한의 침해강도에 관한 개요

| 행위영역 | 최소한의 <br> 침해강도 | 행위영역 | 최소한의 <br> 침해강도 |
| ---: | ---: | ---: | ---: |
| 건축허가절차 | - | 지진보호 | $30 \%$ |
| 화재보호 | $20 \%$ | 보건/위생 | $20 \%$ |


| 행위영역 | 최소한의 <br> 침해강도 | 행위영역 | 최소한의 <br> 침해강도 |
| ---: | ---: | ---: | ---: |
| 에너지 관련 조치 | $20 \%$ | 소음보호 | $20 \%$ |
| 장애없는 건축 | $20 \%$ | 근로안전 | $20 \%$ |
| 주차 | $20 \%$ | 공공조달제도 |  |
| 시민보호 | - |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조사대상 자치단체에서는 단지 중요한 차이가 없는 규제비용만 조사 되었기 때문에 스위스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간소하게 취리 히의 사례예시에서 출발하였다. 모든 주제별로 규제비용 계산의 관점 에서 중요하지 않은 차이점들은 개별적인 결론의 절에 제시되어 있다.

일정한 투자요소들은 다양한 행위의무들의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특히 지진, 시민보호, 소음보호, 화재보호 및 에너지 분야에서 이행될 수 있는 지지물과 외부덮개이다. 이것이 의 미하는 것은, 경제계가 건축법의 규제에 기초하여 부담해야 하는 잔 체적인 규제비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행위의무마다 조사한 규제비용들을 심도있는 검토없이 더하기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에 관한 또 다른 내용들은 14 절의 결론의 개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대표성

모델계획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고려가 결정적이었다.

- 첫째,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건축물에 대한 모든 규제들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차적으로 경제계(이와 반대되는 것이 국가 예산)가 건립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히려 큰

건축물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계획들은 스위스에서의 중간 치18)에 대비해볼 때 중간정도 이상의 큰 건축물들이다. 비용추 산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 문에 각각 추산의 대표성은 고유가치를 도움으로 한 소규모 건 축물에도 비교되었고 그 근거가 문의되었다.

- 비용추산의 중요 부분은 건축물규모와 관련한 안정적인 상대적 가치를 통하여 산정되었으며 또 다른 중요 부분은 사례별 고정 비용(Fixkost)을 통하여 산정되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경우 소 규모 건축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결과의 대 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한 비교수치가 바뀌어 지는 사례에서의 계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가치를 1 인가족 주택건축에 이전시키는 것을 비판적으로 문의해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조사연구에서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에 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조사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은 결국 단지 일반적인 범위를 알 수 있게 하는 추산이다. 바로 그 때문에 사용된 건축물을 도움으로 한 계산은 이 조사연구의 목적을 적합한 것이다. 개별적인 건축물범주에 따른 상세한 추산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건축물의 유형과 건축물의 크기를 선정함으로써 추산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 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조사연구의 결과와 본질적으로 다르 지 않을 것이다.
18) 스위스에서 건축된 건축물들의 중간치는 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로 소 계산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미 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한 초기에는 이러한 기준 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2.7 규제비응의 감축을 위한 제안서 작성 작업

진행과정에 관한 구상
건축법의 분야에 등장하는 주제별 범위를 고려해보면 모든 주제영 역에서 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상세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법의 분야에서는 단지 선별된 문제영역 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만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할 정도로 이행 내지 전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정책영역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초사항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 문헌조사(예: 이 조사연구 부록에 기재된 참고문헌 참조)
- 전문가/감정인 및 프로젝트수행자의 경험지식: 전문가워크숍(2.1. 절 참조)과 약 30 명의 감정인에 대한 인터뷰(부록에 기재된 설문 조사표 참조)를 통하여 개선조치를 위한 접근점들을 확인, 논의 하였다.
- 이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인 식자료들


## 3. 건축허가절차

## 3.1 서설, 개요 및 목표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의 법적 정합성을 건축허가절차를 통하여 공 적으로 심사되고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관련 그룹들에게 계획의 실행 전에 심사와 대화의 가능성이 보장된다.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는 건축허가는 건축주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건축허가의 원칙은 '공간계획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Raumplanung)'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건축물과 시설물 은 오로지 행정관청의 허가로써 지을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 로부터 건축허가절차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이러한 절차를 실행하는 기구는 Kanton과 자치단체들이며, 따라서 Kanton과 자치단체의 개별적 인 규정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스위스는 26 개 Kanton의 건축법과 이를 보완하는 자치단체의 규정 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건축법규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Bern의 경우 연방입법 이외에 '건축허가절차에 관한 훈령(Dekret über das Baubewilligungsverfahren)', '건축법(Baugesetz)' 및 '건축명령(Bauverordnung)'이 시 행되고 있다. Bern에서 이러한 법규들은 Bern의 '건축조례(Bauordnung)', '사용지역계획(Nutzungszonenplan)', '건축분류계획(Bauklassenplan)', '소음 영향단계계획(Lärmempfindlichkeitsstufenplan)'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고 Bern의 일정한 지역에서는 다수의 특별한 건축규정들에 의하여 보완 된다.

개별적인 법규들은 건축허가절차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 는지 지시하고 있다. 예컨대, 건축주가 건축물의 상층부를 수직으로 증축하기 위해서는 산정공식에 따라 수직증축의 숫자를 산정해야 하 고 그 수치와 내용을 관청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자치단체와

Kanton에 따라서는 건축척도의 숫자와 이용 숫자를 다양하게 산정해 야 한다.

또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신청을 함에 있어 오늘날 종종 에너지증명서, 화재보호증명서 및 지진안전증명서 등 또 다른 보충 서 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 3.2 규제비응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사항

필요비용(Sowieso-Kosten)이란 형식적인 건축허가절차 없이도 발생하 게 될 비용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필요비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특히, 건축주가 자신의 독자적인 고려를 위해 어차피 필요하게 될 계 획과 모델의 작성에 따른 비용이다. 규제비용은 특정한 절차규정을 준 수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에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특히, 신청서 작 성 비용과 양식의 작성 비용 및 공무원의 수중에 들어갈 요금 등이다.

## 비용의 계산

우리는 비용고유가치(Kostenkennwerte)를 원칙적으로 제2절에서 서술 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 건축신청의 행위영역에서 규제비 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델계획의 비용은 각각 2011년의 계획의 수에 비례되게 계산하였다.

대상물별 규제비용 및 전체 규제비용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규제비용은 관련되는 건축규모 의 $0.1 \% \sim 0.5 \%$ 에 달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재건축 내지 개축시 $(0.5 \%)$ 에 규제비용이 비교적 더 많아 발생한다. 가장 많은 규제비용은 건축신 청-요금( $0.03 \sim 0.3 \%$ )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그림 10: 대상물별 건축허가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 <br> 재건축 |  | 신 축 |  | 개축/ <br> 재건축 |  | 신 축 |  | 개축/ <br> 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 \% | 프 랑 | \% | 프 랑 | \% |
|  | 축비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8,960 | 100 | 47,688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9 | 100 |
|  |  |  |  |  |  |  |  |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  |  |  |  |  |  |
| A | 대 지 | 132 | 0.0 | 72 | 0.0 | 480 | 0.0 | 360 | 0.0 | 132 | 0.0 | 132 | 0.0 |
| B | 준 비 | 1,296 | 0.0 | 1,200 | 0.0 | 1,320 | 0.0 | 1,320 | 0.0 | 1,440 | 0.0 | 120 | 0.0 |
| C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구 성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D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 | 0.0 | - | 0.0 | 24 | 0.0 | 24 | 0.0 | - | 0.0 | - | 0.0 |
| E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외 벽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증 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H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특 수 } \\ & \text { 설 비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J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시 내 } \\ & \text { 설 비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V | 계 획 <br> 비 용 | 5,592 | 0.1 | 10,800 | 0.2 | 23,012 | 0.0 | 27,900 | 0.1 | 6,312 | 0.0 | 10.920 | 0.1 |
| W | $\begin{aligned} & \text { 건 축 } \\ & \text { 부 대 } \\ & \text { 비 용 } \end{aligned}$ | 16,546 | 0.2 | 15,372 | 0.3 | 23,924 | 0.0 | 23,284 | 0.0 | 17,841 | 0.1 | 17,241 | 0.2 |
|  | 계 | 23,566 | 0.2 | 27,444 | 0.3 | 48,760 | 0.1 | 52,888 | 0.1 | 25,725 | 0.2 | 28,413 | 0.3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br>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사례해결에 따른 비용의 계산은 건축허가절차의 영역에서 매년 규 제비용인 6억57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한다. 여기서 대부분의 비용은 프로젝트 문건의 처리와 그 복사비(2억7700만 스위스 프랑) 및 지불해 야 할 건축허가신청요금(3억200만 스위스 프랑)에서 발생한 것이다. 건축허가는 물론 개별사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비용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모든 건축계획에서 침해강도나 각각의 건축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례수를 통하 여 비용을 계산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의미있는 금액이 도출된다.

그림 11: 건축허가 분야에서 규제비용의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 9,584,733 | 5,153,113 | 60,398,960 | 47,688,748 | 16,254,896 | 8,187,439 |  |  |  |
| 규제비용 | 23,566 | 26,444 | 48,760 | 52,888 | 25,725 | 28,413 |  |  |  |
| 건축비용 대비 규 제비용 | 0.2\% | 0.5\% | 0.1\% | 0.1\% | 0.2\% | 0.3\% |  |  |  |
| 규제비용계산 건축주로서 경제 계의 비용 | 81 | 294 | 55 | 211 | 5 | 11 | 141 | 516 | 657 |
| 2011년 사례예 시를 통하여 대 표된 건축규모 (백만 프랑) 스위스기 업 의 건축규모 2011년 스위스 기 업의 건축규모 중 사례예시를 통해 대표된 건축규모 의 점유율 | 14,956 | 3,998 | 4,568 | 3,146 | 564 | 249 | $\begin{array}{r} 20,089 \\ 21,138 \\ \\ 95 \% \end{array}$ | $8,435$ | $\begin{aligned} & 27,481 \\ & 29,573 \end{aligned}$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br>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다수의 위탁형식으로 프로젝트 문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특히 건축가나 계획가에서 다시금 경제계로 환류되는 반면 건축허가신청요 금은 국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 지역적 차이

건축허가의 영역에서 각종 지침들은 Kanton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 을 받고 있으며 그 집행은 대부분 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의 집행 그 자체는 스위스 전역에서 통일적이라고 볼 수 있 다. Zürich시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특히, 사무용 건축물의 건축에서 발생한 건축허가신청요금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이러한 비용 을 비교해보면 부분적으로 87,108 스위스 프랑까지 발생한다(St. Gallen Kanton의 경우). 나아가 Wipf \& Partner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절차진 행 기간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간 소요된다 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더 많은 규제비용의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도출 할 수는 없다. 다만, 장기간 동안 건축부지와 계획에서 사전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 3.3 규제비용에 관한 논의

규제비용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

- 계획된 건축계획에서 투명성의 창출
- 건축주의 권리와 의무의 동등화
- 사후에 지속적으로 비싼 건물철거 또는 변경조치로 이어지게 되 는 불법적인 건축물 신축 또는 변경의 예방
- 건축주에 대한 계획의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의 창출
- 공간계획의 이행
- 건축가능성의 확보 및 건축비용에 대한 재정조달을 위한 규율(요금)

건축허가절차는 그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 허가절차가 건축 물 또는 재건축/개축 건축물에서 투자에를 위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을 도움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절차의 소요기간과 절차의 복잡성에 유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절차의 소요기관과 절차 의 복잡성 등 2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 건축허가절차의 소요기간

앞에서 언급한 건축허가절차의 계량화된 효과적인 비용 이외에 국 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절차의 소요기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방직업교육및기술청(Bundesamts für Berufsbildung und Technologie) ${ }^{19)}$ 의 위탁에 따라 수행된 연구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절차의 소요기 간은 특히 복잡한 프로젝트나 산업적-영업적 계획에서 그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복잡한 프로젝트나 산업적-영업적 계획의 경우 시간이라는 요소는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절차의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써 건축허가절차는 스위스 건축물에서 투자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요소로 된다.

경제사무국(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의 위탁에 따라 건 축주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20)에 의하면, 개별 Kanton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아래의 그래프[생략]는 Kanton들간의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 그림 12: Kanton별 건축허가절차의 소요기간 [생략]

대다수의 사례(70\%)에서는 건축허가절차가 1 월~3월 내에 종료된다. 특히 Glaus(약 2.2월)과 Thurgau(약 2.5월)에서는 건축허가가 효율적으 로 처리되고 있는 반면, $\operatorname{Genf}($ 약 5.6월)과 $\operatorname{Schwyz}($ 약 4.6월)에서는 대기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된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19) Ott, 1998.
20) Peters \& Wapf, 2007.

의 하나는 Genf와 같은 밀집지역에서는 그보다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서 보다 건축허가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건축허가절차의 소요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위 스 전체를 고찰해보면 건축허가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건축허가절차는 최초감정인의 기각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절차가 지 연될 수 있다. Peters \& Wapf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건축허가신청의 약 $2 \%$ 정도는 최초감정인의 기각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새롭게 신청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율은 매우 심각한 것이지만, 건축허가신 청이 최초로 기각된 이후에 포기해버린 건축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 다. 기각률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절차의 진행과정 관련 : 절차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고 그 진행 괴정이 일관될수록 절차상의 실수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건축허 가신청의 기각이 적어진다.
- 법률상 해석의 여지 :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적은 경우, 즉 개별 화를 위한 판단의 여지가 좁으면, 건축허가관청과 건축주의 서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기각된 건축허가도 줄어든다. 특히, 시 지 역에서는 광범위한 규정들이 확산되어 있는데, 이들 규정은 개별 적으로 해결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효율적인 절차로 이끌게 된다.
- 관할 : 관할 문제는 건축주와 건축허가관청의 입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건축허가신청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 움을 받도록 하면 된다(예: Vaud시, Neuchâtel시 및 Genève시에서 는 건축가를 위한 규정이 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관청의 경우 에는 관청 내부에서의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적용하여 Kanton에 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핵심적 업무처리를 하게 하면 된다.
- 조정 : 건축허가절차가 Kanton의 중앙처리부서 차원에서 조정되 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절차는 성공적이다. 이것은 건축계획의 허 가를 목표로 건축주와 협력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규제관련 규정에 직접 관련되 지 않은 사인을 개입시킴으로써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공기 관은 효율적인 절차진행과정을 통하여 건축허가절차의 신속화에 기여 할 수 있다. $\mathrm{Ott}^{211}$ 가 설명하듯이, 건축이의신청의 대부분은 6개월 이 내에 해결된다. 단지 사례의 약 $10 \%$ 정도만 1 년 이상의 절차기간이 소요된다.

건축계획들 중 적은 부분( $2 \%$ 미만)에서는 건축허가절차에 1 년 이상 이 소요된다. 이러한 예는 예컨대, Kanton의 개발계획의 내부 또는 외 부에서 구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나타날 수 있다.22) 일반적인 건축허가절차가 아닌 모든 프로젝트들은 정치적인 절차들로 서, 건축허가절차를 뛰어넘어(예컨대, 구획설정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 진행의 기간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복잡한 수준을 가진 프로젝트들 은 특히, 관광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예로는 Mollens 에 있는 고급 리조트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고급 리조트의 경우에 는 상이한 구획설정, 정부의 결정과 법원의 재판 등 건축허가절차가 5년이나 소요된 예가 있다.

## 건축허가절차의 복잡성

건축허가절차의 비용이나 소요기간 이외에 건축허가절차의 복잡성 도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Peters \& Wapf의 설문조사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로 인한 난점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러한 중요성
21) Ott, 1998, S. 59.
22) 예컨대, Beco Berner Wirtschaft, 2010 참조.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은 건축주들의 지속적인 건축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낮게 평가된 것이었다.

Kanton의 관련 규정들간에 차이가 난다는 점은 건축허가절차의 복 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축주 들은 이와 거의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1998년에 econcept의 조사연구23)에 의거하여 다른 Kanton의 입법을 처 리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으로 전체 프로젝트계획비용의 $5 \% \sim 10 \%$ 로 추산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는 차이가 나는 관련규정들의 추가비용을 1995년의 건축규모와 관련하여 건축계획에서 4 억 2 백만 스위스 프랑에 서 8 억 4 백만 스위스 프랑까지 추산하고 있으며, 건축시장과 건축자재 산업에서의 합리화와 표준화의 가능성이 흠결된 것을 이유로 약 23 억 스위스 프랑에서 57 억 스위스 프랑까지 증가된 건축비용수준을 추산 하고 있다.24)
23) Ott, 1998, S. 6.
24) 1998 년의 Ott 의 조사연구결과와 이 조사연구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각각의 조사연구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방법론적인 기본가정과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98 년의 Ott 의 조사연구는 건축비 용수준과 비용절감의 잠재력을 판단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식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조사연구의 결과는 규제비용을 판단함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예컨대, 1998년의 Ott 의 조사연구는 설문조사에 기재된 건축계획의 추가비용이 스 위스에서의 모든 건축대상물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는 대부분의 건축대상물이 지역의 건축계획사무실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 건축계획사무실에서는 건축계획의 추가비용이 방법론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축계획사무실은 지역의 실태를 모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Ott 의 설문조사결과는 이 조사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규제비용에 대한 개념정의 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문의할 것이다. 지역의 건축법상의 상이한 개념정의들은 예컨대, 건축계획사무실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건축법을 상세하게 읽고 해석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개념의 경우에도 필요하다. 건축 에 요구되는 사항 내지 요건들은 그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 역개발계획상의 고려에 따라서 각각의 구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 학적인 상황 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관련 지침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건 물들은 명시된 개념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단순히 임의의 장소에 건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령들간의 상이성은 스위스 전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최적화 잠재력을 제한한다. 법령들간의 상이성은 효율성을 증대시키 는 조치들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법령들간의 상이성은 증가된 실행비용과 조정비용을 발생시키고, 덜 표준화된 경과과정을 유발하며, 기업영역을 보다 덜 집중화시키는 방 향으로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 게 되는데, 특히 지역의 시장진입장벽을 통하여 저하된 경쟁과 결합 하여 일반적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보다 많은 비용을 유발시키는 경향 을 보일 수 있다.

Kanton과 자치단체간의 상이한 규정들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요구사 항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 례들, 예컨대 개념들은 통일적이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범제정 의 표준이 흠결된 결과일 수 있다.

## 3.4 개선을 위한 제안

### 3.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학계와 실무에서는 건축허가절차의 간소화와 단일화의 구상에 관하 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복잡성의 감소인데, 이러한 복잡성의 감소는 비싼 업무처 리비용이나 보다 짧아진 절차소요기간뿐 아니라 경쟁의 활성화에 기 여한다. 참고로 인접국가인 독일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이 행해 지고 있다.

Kanton의 건축법을 단일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은 몇 년 전 부터 논의되고 있다. Kanton들간의 협약 이외에 연방건축법의 제정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Kanton들의 건축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첫 번 째 단계로서 2010년에 '건축개념의 조화에 관한 Kanton들간의 협약
(interkantonalen Vereinbarung über die Harmonisierung der Baubegriffe), 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른 발전 단계들이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25)}$

법령상의 단일화보다 더 간단한 것은 더 나은 조정을 통한 기술적 인 간소화이다. 이것은 예컨대, 개별 Kanton들이 중앙시스템(건축허가 신청플렛폼)에 기속되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플렛폼은 단일한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일한 개념사용과 투명성은 건축회사로 하여금 Kanton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Kanton들간의 협약은 이러한 방향으로 첫 번째 단계를 개시하였다.

### 3.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건축허가절차에서 규제비용은 본질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축허가 절차의 효과적인 비용은 스위스 전역에서 약 6억5천7백만 스위스 프 랑에 달한다.
(건축허가요금에 대한 고찰을 함이 없이) 원래의 건축허가절차에 소 요되는 비용이 비교적 많다는 사실은 e-정부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효 율적인 절차의 결과이기도 하다(예: 전자적 문서송부, 양식기재시 자 동화된 질체크 등). 이러한 최적화제안은 건축법상 거의 모든 규제분 야에 적용된다.

3,000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자치단체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26 개 Kanton의 건축법령의 다양성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축경제의 견실 성도 저해한다. 직접적인 규제비용은 수많은 잠재적인 장소에서 건축
25) Arnold, E./Petermann, H. 2012.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추가비용을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사분석에서는 잠정적으로 높은 추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 가비용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절차의 소요기간은 특히, 개별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예컨대, 경기장 등 스타디움 공사)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절차의 소요기간이 위험요소로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것도 규제의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건축주가 느끼는 감정적인 비용 이다. 최적화를 위한 접근방식은 건축허가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정 치적인 참여권에 있다(예: 단체소송권).

많은 다른 분야(예: 장애없는 건축)의 규제조치들은 건축허가절차와 결부되어 있고, 이 경우 모든 종류의 신청양식에 대한 규제비용은 이 러한 행위분야에서만 파악된다.

문헌연구,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 및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에 기초하여 우리는 법률의 차원에서 건축허가절차의 행위그룹에서 최적 화를 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조사하였다.

- 지역단위의 결합을 통한 전문화(Professionalisierung durch Zusammenzug von Gebietseinheiten)
- 입법의 표준화(Standardisierung der Gesetzgebungen)
- 절차의 자동화. e-정부 시스템(Automatisierung des Verfahrens. eGovernance)

아래의 3 개의 표는 이러한 조치의 핵심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 건축허가 1: 지역단위의 결합을 통한 전문화 |  |
| :---: | :---: |
| 취 지 | 적은 지역단위를 결합시킴으로써(예: 자치단체를 일정한 행 <br> 정구역으로 결합) 건축신청시 전문화를 증대시킬 수 있다. <br> 건축허가신청시 전문인력을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많 <br> 은 사례를 통한 최대한의 활용)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적음: 비용절감은 규제비용과 상관이 없고 계획자의 측면에서 <br> 고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 :---: | :--- |
| 제3자에 <br> 대한 비용 | 일회성의 구조개편비용 |
| 규제의 <br> 효용에 대한 <br> 영향 | 전문화는 과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용이 오히려 <br> 것이다. <br> 이 행자치단체의 권한에 있고 Kanton에는 간접적으로(예: 재정상 <br> 의 동기부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건축허가 2: 입법의 표준화 |  |
| :---: | :--- |
| 취 지 | (자치단체와 Kanton의) 건축법령들은 그 구조와 내용 및 집 <br> 행에 관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투명성을 개 <br> 선하고 다양한 법령의 취급이 간소화된다.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많음: 비용절감은 규제비용과 상관이 없고 건축가격의 수준 <br> 을 낮춤으로써 비용절감을 추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 제3자에 <br> 대한 비용 | 입법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br> 규제의 <br> 효용에 대한 <br> 영향규제의 편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일 가지고 아씼다. <br> 아는 행 간소화와 |


| 건축허가 3: 절차의 자동화(e-정부 시스템) |  |
| :---: | :---: |
|  | 건축허가신청자는 필요한 양식을 직접 온라인으로 기재하 <br> 여 관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로써 정보교환이 간소화 <br> 취 지 |
| 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언 <br> 제든지 관련 문건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떠한 기관에서 현재 <br> 당해 건축허가신청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br> 예: Luzern Kanton은 이와 관련하여 'eBAGEplus' 프로젝트 <br> 를 발표하였다. 2014년에는 전체 건축허가신청절차가 <br>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중간정도 |
| :---: | :--- |
| 제3자에 <br> 대한 비용 | 국가에게 발생하는 투자비용, 절차의 재구축화 |
| 규제의 <br> 효용에 대한 <br> 영향 | 규제의 편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간소화와 관 <br> 러 있다. <br> 이 행 규제는 Kanton과 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다. |

## 4. 화재보호

## 4.1 서설, 개요 및 목표

화재보호규정들은 사람과 물건의 보호에 기여한다. 한편으로는 화재 를 가능한 한 예방하는 것이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가 발생 한 경우 사람, 동물 및 건축물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문제 이다. 스위스에서 화재보호는 연방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상품보호에 관한 연방법률(Bundesgesetz zur Produktesicherheit)'과 '건축제품에 관한 연방법률(Bundesgesetz über Bauprodukte)'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다.

건축과 관련한 중요한 의무사항들은 Kanton(예컨대, Bern에서는 화 재보호 및 소방법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다)과 건축물보험26)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다.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은 예컨대, Kanton의 건축물보험(Gebäudeversicherungen)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성되어야 하고, 운영 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 한다.

-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할 것
- 화재와 폭발의 발생을 예방할 것
- 화재, 열, 연기의 확산을 방지할 것
- 화재가 인접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것
- 일정한 시간동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 실효성있는 진화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하고 구조팀의 안전을 보 장할 것

26) Kanton의 건축물보험은 19개 Kanton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Genf, Uri, Tessin, Appenzell, Innerhoden, Wallis, Obwalden에서는 건축물보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상 의 조치가 문제로 된다.

- 물확보/소화전 : 이것은 예컨대, 소화전의 작동 및 소방관의 투입 을 위하여 충분할 정도의 압력을 가지는 수도의 준비를 의미한다.
- 대피로 : 이에는 추가적인 비상탈출구 및 비상계단과 대피로의 길이가 포함된다.
- 화재신고설비와 화재진압설비 : 이에는 우선 화재를 인식할 수 있는 화재경보기 및 연기인식 설비와 열기배출설비 또는 화재진 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등이 포함된다.
- 방화문과 방화벽 : 이에는 방화벽을 구성하고 화재의 확산을 방 지하는 추가적인 방화진압용 내화성 문과 벽이 포함된다.
- 방화제품의 심사규정(Prüfungsvorschriften) : 방화제품들은 한편으 로는 일정한 화재호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이러한 방화제품들이 재물들과 관련하여 심사되었다는 점을 나타내야 한다. 제품의 심사를 포함한 활용될 (내화)물질들 은 건축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할 수 있다.


## 4.2 규제비응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필요비용으로 화재보호의 비용 중 건축주에게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될 부분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화재보호 이외에 다른 목적에 이바지하거나 건축주의 독자적인 이해 관계로 인하여 화재보호조치로서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시설과 건축 의 일부일 수 있다.

- 화재보호조치가 동시에 다른 목적에도 기여하고 건축주의 관점 에서 볼 때 화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경

우에는 내화성 물질화에 대한 추가비용은 규제비용으로 고찰되 었다(예컨대, 일반적인 문 대신 내화성 방화문).

- 건축주가 어차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규제에 의하여 예 상되는 것과 동일한 화재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개념상 규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건축주가 국가가 규정한 요건 보다 더 많이 화재보호의 요건을 충 족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조치는 규제비용으로 보았 다(예컨대, 2 개의 방화벽 대신 3 개의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 건축 물의 내부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만 수행된 건물벽 보수 등).

그 밖에 국제적인 이용자와 투자자들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 제적인 보험의 기준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컨대, 호텔이 미국 의 호텔체인점인 경우에는 사적인 화재보호의 수준이 스위스에서의 법적인 지침을 뛰어넘는다.

## 고려되지 아니한 비용

예컨대, 건축물의 구입시 원래의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적인 요구가 설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비용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대표자들과 대화를 행한 결 과, 이러한 상황들은 항상 다시금 발생27)하고 개별 사안별로 현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비용의 계산

신축의 경우 비용기준가치에 대한 계산은 제2절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서 실시하였다. 화재보호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 어서는 모델계획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
27) 이러한 상황은 프로젝트개발자(예: 잘못된 계획 또는 일부 흠결된 계획)의 관점 뿐만 아니라 집행관청(예: 해석의 여지를 상이하게 활용하는 경우 또는 프로젝트의 개시시 분명하지 않은 지침 등)의 관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였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화재보호 부담사항들이 일정한 침해강 도28) 이상부터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기준가치를 계산함 에 있어 상응하는 건축규모를 고려했어야만 했다. 여기서 기초가 된 재건축규모와 개축규모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하여 수정되었다.

- 원칙적으로 완성비용의 $20 \%$ 에 해당하는 침해부터 화재보호의 부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 건축물의 범주별로 2011년의 평균적인 신축 프로젝트 대비 평균 적인 재건축/개축 프로젝트를 관련지었다. 이로써 재건축과 개축 의 평균적인 침해강도를 표현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하였다.
- 평균적인 침해에 대한 경험적으로 도출된 가정은 $20 \%$ 의 한계치 와 관련시켰다. 이로써 도출되는 비교수치로써 재건축/개축 규모 를 비용계산을 함에 있어 고려하였다.

표 5: 재건축/개축 규모별 계산의 예

| 다가정 주택의 경우 계산의 예 |  |
| :--- | :---: |
| 2011년의 재건축/개축 건축물의 수, 사적인 위탁자 <br> $2011 ㄴ ㅕ ㄴ ㅇ ㅢ ~ ㅈ ㅐ ㄱ ㅓ ㄴ ㅊ ㅜ ㄱ / ㄱ ㅐ ㅊ ㅜ ㄱ ㅇ ㅢ ~ ㄱ ㅠ ㅁ ㅗ, ~ ㅅ ㅏ ㅈ ㅓ ㄱ ㅇ ㅣ ㄴ ~ ㅇ ㅟ ㅌ ㅏ ㄱ ㅈ ㅏ ~$ | 7,239 개 건축대상물 <br> 26 억 1600 백만 프랑 |
| 2011년의 신축 프로젝트당 평균비용 <br> 2011 년의 재건축/개축 프로젝트당 평균비용 <br> 신축 대비 재건축/개축( $\rightarrow$ 스위스에서 재건축/개축 <br> 건축물에서 전형적인 침해강도별로 사용된 기준치 $)$ | 390 만 프랑 <br> 36 만 1,000 프랑 <br> $9 \%$ |
| 화재보호에서 침해강도에 대하여 가정된 한계치 | $20 \%$ |

28) 이 조사연구에서 침해강도는 건축물의 완성비용과의 관계에서 재건축의 비용으 로 측정된다.

| 다가정 주택의 경우 계산의 예 |
| :--- |
| 기본가정: |
| 기준치가 한계치와 같다면, 가정된 통계상의 통상적인 분포의 경우 그에 |
| 상응하는 범주에 속하는 대상물의 $50 \%$ 는 한계치 위에 있고, 따라서 재건 |
| 축/개축 프로젝트의 $50 \%$ 가 계산에서 사용될 것이다. |
| 위 사례의 경우 기준치는 $20 \%$ 대신 9\%에 달하기 때문에 가정된 통상적 |
| 인 분포의 경우에는 대상물의 $50 \%$ 보다 적은 수치가 한계치 위에 있게 |
| 된다. 또 다른 접근점으로 대상물의 수를 기준치와 한계치 간의 관계를 |
| 곱하여 수정된다. |
|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식이 도출된다. |
| 기준치 $9 \% /$ 한계치 $20 \%=$ 한계치에 대한 관계에서 $45 \%$ |
| 한계치의 차이 $45 \% \times$ 한계치를 넘는 대상물의 $50 \%=22.5 \%$ 의 평균치 |
| 재건축/개축 규모의 $22.5 \%$ 의 평균치 $\times 26$ 억 1600 백만 스위스 프랑 $=5$ 억 |
| 8900 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평균 재건축/개축 규모 |
| 결 론 |
| 이러한 평균치에 기초하여 사적인 위탁자의 다가정 주택의 경우 재건축/ |
| 개축 프로젝트의 $22.5 \%$ 가 한계치 위에 있고, 따라서 대상물의 $22.5 \%$ 에 대 |
| 하여 화재보호의 부담사항이 부과된다는 점이 암묵적으로 가정된다.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위의 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축의 경우 화재보호의 규 제비용이 각각의 대상물에 따라 $0.5 \%$ 에서 $2.7 \%$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화재보호의 규제비용이 분명하게 더 높은데, 그것은 $4.1 \%$ 에서 $6.2 \%$ 사이에 있다.

신축의 경우 본질적인 규제비용은 추가적인 방화벽과 연기배출설비 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한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 물에 따라 본질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학교의 경우에는 예컨대, 건축물의 증축과 외부의 벽을 새롭게 할 경우에 추가비용이 발생하

고, 사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화재보호설비를 설치할 때 추 가비용이 발생한다.

신축의 경우 추가비용은 범주를 통하여 일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반해 재건축과 신축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매우 강력하게 대상물과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리 발생한다. 따라서 가치를 규모와 가능한 넓이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13: 대상물별 화재보호의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 <br> 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 거축비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8,960 | 100 | 47,688, 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39 | 100 |
|  |  |  |  |  |  |  |  |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2,000 | 0.0 | - | 0.0 | 2,000 | 0.0 | - | 0.0 | - | 0.0 | - | 0.0 |
| C | 건 물 구 | 2,800 | 0.0 | 52,598 | 1.0 | 7,000 | 0.0 | 181,449 | 0.4 | 5,353 | 0.0 | 39,934 | 0.5 |
| D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4,500 | 0.0 | 6,084 | 0.1 | 1,263,488 | 2.1 | 1,676,914 | 3.5 | 45,576 | 0.3 | 44,276 | 0.5 |
| E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외 북 } \end{aligned}$ | 15,300 | 0.2 | 97,366 | 1.9 | 31,200 | 0.1 | 406,873 | 0.9 | 3,200 | 0.0 | 87,875 | 1.1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 \end{aligned}$ |  | 0.0 | - | 0.0 | 12,252 | 0.0 | 14,702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층 } \end{aligned}$ | 9,985 | 0.1 | 22,344 | 0.4 | 73,730 | 0.1 | 162,212 | 0.3 | 41,480 | 0.3 | 197,035 | 2.4 |
| H | $\begin{aligned} & \text { ㄱㅓㅓ물의 } \\ & \text { 특수설비 } \end{aligned}$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추 변 } \end{aligned}$ | 8,800 | 0.1 | - | 0.0 | 8,000 | 0.0 | - | 0.0 | - | 0.0 | - | 0.0 |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 <br> 재건축 |  | 신 축 |  | 개축/ <br> 재건축 |  | 신 축 |  | 개축/ <br> 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J | 건 물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V | 계획비용 | 7,442 | 0.1 | 31,814 | 0.6 | 241,348 | 0.4 | 492,294 | 1.0 | 18,009 | 0.1 | 75,792 | 0.9 |
| W | $\begin{aligned} & \text { 건축부대 } \\ & \text { 비용 } \end{aligned}$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계 | 50,827 | 0.5 | 210,216 | 4.13 | 1,639,018 | 2.7 | 2,934,445 | 6.2 | 113,617 | 0.7 | 444,912 | 5.4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관리 | 31 | 31 | 19 | 19 | 14 | 29 |
| :---: | ---: | ---: | ---: | ---: | ---: | ---: | ---: | ---: | ---: |
| 계 | 31 | 31 | 19 | 19 | 14 | 29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situt fui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물론 화재보호는 개별사안에서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본질적인 규 제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화재보호와 관련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용을 상대화되어 무시해도 된다. 사례수 와 건축규모가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과 비교해볼 때 모자라기 때문이다.
투자비용 이외에 기술적 설비의 정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회 귀하는 규제비용도 발생한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건축대상물별 규제 비용은 미소하다.

사례별 비용의 계산은 고찰된 건축물 범주에 대하여 화재보호와 관 련한 매년 약 3 억 7600 만 스위스 프랑에 달한다. 이 중에서 약 3 분의 1 이 재건축과 개축 프로젝트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 계산은 일차적으 로 2011년의 건축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비용은 거의 전체적으로 화재보호, 화재를 막거나 불에 타지 않는 물질 또는 방화벽 내지 보다 강력한 구성을 위한 기술적 설비의 설치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보다 더 많은 이윤 의 형식으로 건축영업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건축제품생산자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림 14: 화재보호의 규제비용의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br> 규제비용 | $\begin{array}{r} 9,584,733 \\ 50,827 \end{array}$ | $\begin{array}{r} 5,153,113 \\ 210,216 \end{array}$ | $\begin{array}{r} 60,398,960 \\ 1,639,018 \end{array}$ | $\begin{array}{\|r\|} \hline 47,688,748 \\ 2,934,445 \\ \hline \end{array}$ | $\begin{array}{r} 16,254,896 \\ 113,617 \end{array}$ | $\begin{array}{r} 8,187,439 \\ 444,912 \end{array}$ |  |  |  |
| 건축비용 대비 규제비용 | 0.5\% | 4.1\% | 2.7\% | 6.2\% | 0.7\% | 5.4\% |  |  |  |
| 규제비용계산 건축주로서 경 제계의 비용 | 98 | 35 | 134 | 93 | 5 | 10 | 237 | 139 | 378 |
| 2011년 사례예 시를 통하여 대 표된 건축규모 (백만 프랑) 스위스기업의 건축규모 2011년 스위스 기업의 건축규 모 중 사례예 시를 통해 대 표된 건축규모 의 점유율 | 14,956 | 3,998 | 4,568 | 3,146 | 564 | 249 | $\begin{gathered} 20,089 \\ 21,138 \\ \\ 95 \% \end{gathered}$ | 7,392 $8,435$ $88 \%$ | $\begin{array}{r} 27,481 \\ 29,573 \\ \\ 93 \% \end{array}$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br>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 지역적 차이

화재보호 분야에서의 지침들은 Kanton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그 집행은 종종 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집행 그 자체는 관련 규정과 부담사항과 같이 도처에서 정확하게 같이 결손된다는 점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사항들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에도 관련 규정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하다. 규제비용에서 나타나 는 차이점들은 미세한 것이며, 요금이나 추가적인 양식 또는 관리에 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 4.3 규제비응에 관한 토의

화재보호에서 규제비용의 효용은 일차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적 손 해와 물적 손해를 줄이는 것이다. 건축상의 화재보호조치와 진화조치 들 이외에 당연하게 화재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들(예컨대, 소방대 의 반응시간과 기술적 가능성)과 건축물의 종류가 건축물화재와 관련 한 인적 및 물적 손해의 추이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Finland는 지 상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85 \% 29$ )인데, 일반적으로 긴 소방도로를 가지고 있어서 신축의 경우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 30$ )인 좁은 공간의 스위스와는 또 다른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유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언급하는 통계자료는 규제비용 의 차원을 효용(물적 및 인적피해를 덜 가져다 주는 효용)의 차원과 관련을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두 통계자료는, 화재의 손해발생작용을 제한하고 국제적 비교를 통 하여 맞은 손해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성공했다는 점을 제시 해준다.

- 스위스에서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인구 100,000명당 0.55 명)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인구 100,000 명당 0.33 명) 사이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40 \%$ 줄었다.
- 연간 인구 100,000 명당 0.33 명의 사망자라는 통계를 통하여 스위 스는 국제적 비교에서 매우 낮은 통계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9) Technische Universitaet Wien
30) Schweizerischer Baummeisterverbund

그림 15: 인구 100,000 명당 건축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1992~1994년과 비교해 본 2007~2009년의 사망자 수


출처: The Geneva Association, World Fire Statistics 2013(1992~1994년의 기 간 동안 싱가포르, 이탈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음)

또한 손해율31)도 1950년 이후로 약 $50 \%$ 줄었다. 2011 년의 경우 1950 년과 마찬가지로 총손해와 보험가치간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오늘날 매년 약 7억3,800만 스위스 프랑이 화재손해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2011년의 실제 총손해액인 2억7,680만 스위스 프랑에
31) 총손해의 부분들을 총 보험가치로 나누면 비교수치가 도출되는데, 이 비교수치가 바로 손해율이다. 매우 적은 수를 보다 잘 취급하기 위하여 총 손해는 라펜(Rappen) 으로 하고, 보험가치는 1,000 스위스 프랑켄으로 계산에 산입한다. 따라서 손해율은 라펜/1,000 스위스 프랑켄이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비하여 약 4 억 6,100 만 스위스 프랑이 증가된 것과 맞먹는 것이다. 동 시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은 약 $40 \%$ 내지 매년 12 명 정도의 사람들 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피해의 경우 그 개선에 관한 추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16: 1950년 이후 스위스32)에서 화재손해의 손해율의 추이


출처: Schadensstatistik VKF

## 4.4 개선을 위한 제안

4.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화재보호의 주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3 개의 관련되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
32) 이 수치들은 스위스 건축물 현황의 약 $80 \%$ 를 차지하는 Kanton의 건축물보험을 가지고 있는 19 개 Kanton에서 도출된 것이다. 몇몇 Kanton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화재보호 분야에서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 im Bereich Brandschutz) - EDV와 SECO의 위탁에 의한 2009년의 비용최적 화 잠재력33) : 이 조사연구의 목표는 Argau, Luzern 및 St. Gallen 등 3 개 Kanton에서 화재보호법을 통하여 야기된 행정상의 부담 을 측정하고, Kanton들간의 정보제공의무, 절차 및 비용을 비교 하며 최적화를 위한 제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측정결과에 의 하면, 화재보호법을 통하여 유발되는 행정상의 부담이 3개 Kanton에서 특별하게 많은 것이 아니었으며 관련자들이 부담으로 느 끼지 않는다고 나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모든 Kanton 에 적용되는 Kanton 화재보험협회의 지침(VFK-Richtlinien)과 안 전설비에 대한 스위스 조사자연맹34)의 지침(SES-Richtlinien)에 대 한 통일적이지 못한 해석이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의무들을 알 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웹포털의 설치가 제안되었다.
- 2012년의 스위스 공과대학 건축통계 및 구성연구소의 예방적 화 재보호에서 경제적 최적화(Wirtschaftliche Optimierung im vorbeugenden Brandschutz vom Institut für Baustatik und Konstruktion ETH Zürich) ${ }^{35)}$ : 이 조사연구에서는 Kanton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화재 보호규정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연구자들은 관련 규정의 유연성을 증 대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이 조사연구의 주된 내용은 입법자가 설정한 보호목표를 논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다른 조치들(예컨대, 화재경보)을 통하여 입법자가 설정한 보호 목표를 동일하게 잘 달성할 수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방화벽 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3) Romøll Management Consulting GmbH, 2009.
34) Verband Schweizerischer Ermittler von Sicherheitsanlagen
35) Institut für Baustatistik und Konstruktion ETH Zürich, 2012.

- 근로보호의 문제점에 관한 Kanton 화재보험협회의 입장표명서 (Positionspapier der VKF zur Problematik Arbeitsschutz) - 2011년 3 월의 건축허가신청시 화재보호 ${ }^{36)}$ : 이 문건은, 건축허가절차에서 근로보호와 화재보호 분야에서의 상호 중첩되는 부분을 제시하 고 있다. 일부 규정들이 연방 노동법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과 Kanton의 화재보호 관련 규정들에서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 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피로의 길 이, 계단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넓이, 긴급신호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대피로의 표시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다름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시행되는 법률상의 중첩된 규정들을 개선해야 한다.
- 연방노동법의 규정들 중에서 화재보호규정들에 이미 포함되 어 있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주제 분야를 삭제해야 한다. 법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방노동법을 보호목표의 개념정의에 제한시켜야 한다.
- 근로감독관의 이해에 따라 스위스의 화재보호규정들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의 독자적인 이해와 전문가들과의 자문에 따라서 특히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화재보호의 집행에서 준공검사시 어려움에 이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규정을 상이하게 해석하고 적용하 기 때문이다. 특히, 대상물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유발시킨다.

[^11]- 대규모의 대상물 또는 복잡한 대상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화재보 호조치 보다는 이른바 화재보호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건축물의 설계자나 건축시행자는 화재보호구 상이 담긴 화재보호목표의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이로써 최적의 비용으로써 화재보호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4.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화재보호에서 규제비용은 본질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물적 손해의 지속적인 감소는 스위스에서의 화재보호가 원칙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 및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행한 결과 우리는 화재보호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최적화를 위한 접근방식이 있다고 보았다.

- 화재보호구상과 건축허가절차의 결합
- 연방노동법과 그 밖의 화재보호규정들간의 중복의 제거
- 화재보호검사의 승인된 화재보호공학자에의 위임
- 집행의 조화를 간소화하기 위한 Kanton 차원의 화재보호의 중앙 집중화(집행의 전문화)
- 대규모 또는 복잡한 건축프로젝트의 경우 조치에 관한 지침을 대신하는 보호목표이행

아래의 표는 이러한 조치들의 핵심내용들을 담고 있다.

| 취지 | 준공검사를 할 때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건축 허가시의 상황과는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 보호구상을 건축허가와 결합시켜야 한다. |
| :---: | :---: |
| 비용감축의 잠재성 |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특히 개별 건축물의 경우 새롭게 설정 된 요구 내지 계획에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비용은 우리의 방법론을 통하 여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비용절감의 잠재성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제 3 자에 <br> 대한 비용 | -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아무런 영향이 없음: 규제의 편익을 줄이지 않는 집행에서의 절차간소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
| 이 행 | 원칙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규제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의미있게 정의하 고,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화재보호부담사항 을 상이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응하는 조 치를 검사함에 있어 일정한 역할도 담당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

화재 2: 연방노동법과 그 밖의 화재보호규정들간의 중복의 제거
연방노동법은 대상물과 관련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화재보 호의 지침을 제공한다. 다른 법령에서는 대상물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법원(法源)은 중 복을 담고 있고, 일부는 화재보호에 대한 상이한 요건을 설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순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양한 법 령에서 나오는 이러한 요건들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거나 적 절한 조치(예: 법률의 보충적 적용)를 통하여 모순을 방지해 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Kanton화재보험협회의 입장 참조.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중간 정도 |
| :---: | :--- |
| 제3자에 <br> 대한 비용 | -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 |
| 이 행 | 법령들간의 충돌점을 분석해야 하고 조화를 위야 한 메커니즘을 <br> 의 대응이 가장 븽과 Kanton있다. |

화재 3: 화재보호검사의 승인된 화재보호공학자에의 위임

|  | 관청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적화의 여지와 해석의 여지를 <br> 최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민간영역에 <br> 서 승인된 화재보호공학자들이 준공검사와 같은 제출시 화재 <br> 보호구상의 준수를 심사해야 한다. |
| :---: | :---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중간정도: 전문적인 화재보호공학자들이 해석의 여지가 익응 <br> 긍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 제3자에 <br> 대한 비용 | -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 |
| 이 행 | 규제는 일차적으로 Kanton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Kanton에서 <br> 시작해야 한다. |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화재 4: 집행의 조화를 간소화하기 위한 Kanton 차원의 화재보호의 중앙 집중화(집행의 전문화) |  |
| :---: | :---: |
| 취 지 | 화재보호의 집행을 중앙집중화함으로써 요건에 대한 단일한 해석을 할 수 있다. |
| 비용감축의 잠재성 | 없음 |
| 제 3 자에 <br> 대한 비용 | - |
| 규제의 <br> 효용에 대한 영향 | 집행의 전문화는 - 실수를 최소화함으로써 - 편익을 오히려 증대시킨다. |
| 이 행 | 규제는 일차적으로 Kanton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Kanton에서 시작해야 한다. |


| 화재 5: 대규모 또는 복잡한 건축프로젝트의 경우 조치에 관한 지침을 대 신하는 보호목표이행 |  |
| :---: | :---: |
| 취 지 | 표준부담사항이 건축시에 추가적인 편익을 유발함이 없이 명 백히 추가비용을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표준부담사 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션(즉, 차선 의 방법으로)으로서 기준이 되는 법령에 있는 화재보호와 관 련한 보호목표를 이행할 가능성을 확정한다. |
| 비용감축의 <br> 잠재성 | 중간정도: 특히 대규모의 건축물과 복잡한 건축물의 경우에 는 최적의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
| 제 3 자에 대한 비용 | 모든 경우에 구체적인 건축상의 조치의 이행을 심사하는 것 보다 화재보호구상을 심사하는 것이 관청에게 더 어렵다. 그 에 상응하는 관청의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만 한다. 관 청의 활동이 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집중화되는 경우에 는 이러한 비용은 결손이 덜 발생한다. |


| 규제의 <br> 효용에 <br> 대한 영향 | - |
| :---: | :--- |
|  |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법령에서 옵션의 형식 <br> 으로 건축주가 법령상에 명시된 조치를 대신하여 독자적인 <br> 화재보호구상을 입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br> 이 행 <br> 규정함으로써 간단하게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무 <br> 에서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회재보호의 목표 <br> 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관청이 화재보호구상을 판단할 수 <br>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5. 에너지 조치

## 5.1 서설, 개요 및 목표

에너지 조치 분야에서 규제는 연방의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 지한다. 에너지 조치는 에너지를 환경친화적이고, 절감하며 합리적으 로 이용하도록 노력하며, 자연상태에 있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조치에 관한 규정들의 법령상의 근거는 연방차원에서는 '에 너지법(Energiegesetz)'과 부속된 '에너지집행명령(Energieverordnung)'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법은 Kanton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보완된다. 이것은 예컨대, Zürich의 경우 ‘에너지법(Energiegesetz)',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Raumplanung und das öffentliche Baurecht)' 및 '건축물, 시설, 부속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규적인 기술 및 기타 요건에 관한 집행명령(Verordnung über die ordentlichen technischen und übrigen Anforderungen an Bauten, Anlagen, Ausstatungen und Ausrüstungen; Besondere Bauverordnung I: BBV I)'이 있다.

다양한 에너지 조치들은 기업과 가계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적 분야에 대한 규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 난방/통풍
- 온수준비
- 보온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규정들은 건물외벽에 대한 온열치 지침과 관련되어 있고, 난방/통풍과 온수준비 분야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의 점유비율과 관련한 모든 규정들이다.

이러한 부분적인 분야에 대한 목표는 ‘에너지법’ 제1조 제 5 항에 명 시되어 있는 것처럼 에너지소비의 안정화의 핵심목표에 따르게 된다. 주택에서의 설비에 대한 에너지 관련 규정들은 '건축법'의 일부로서 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예컨대, 연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에너지법 제8조) 주택용 기기의 전기사용에 대한 규정들 은 건축법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거주자들이 이러한 기기를 사용 하는 태도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Kanton의 입법은 '에너지법'의 일반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예컨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진흥에 기여하는 건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요 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Kanton은 일부 또는 전부 Kanton의 에너 지 관련 최고담당자들간의 회의에서 수립된 '에너지 분야에서의 Kanton 모범규정(Mustervorschriften der Kantone im Energiebereich)'이 정하 는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 Zürich에서는 예컨대, 에너지 분야에서의 Kanton의 모범규정을 수용하여 신축건축물의 경우 난방과 온수를 위 한 에너지의 최대 $80 \%$ 를 재생불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에너지법 제 10 a 조).

## 5.2. 규제빙ㅇㅇㅇㅢ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조치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 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필요비용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사연구에서는 건축주가 손해없는 건축물과 경제적인 이유에서 절감된 에너지사용(SIA 180에 따른 충분한 온열보호 및 습 기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을 뛰어넘어 에너지 조치에 대한 필요비용의 개념정의는 무엇보다도 선정된 대상년도에 의존한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예컨대, 1998년에는 제곱미터당 0.4 와트의 차이치를 보였고, 2001년 부터는 제곱미터당 0.3 와트의 차이치, 2008년부터는 제곱미터당 0.2 와트의 차이치를 보였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2001년의 스위스의 건축 상황을 대상연도로 선정하였다. 2011년의 스위스 건축상황은 이 조사 연구의 분석에 있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법령상의 규제가 없는 경 우에도 건축주가 노력했을 최소한의 표준으로 볼 수 있다.37)

우리는 이러한 가정 하에서 건축주로서 경제계가 현 시점에서 제곱 미터당 0.3 와트의 가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독자적인 계기로(마케팅과 장기간의 고려로 인하여) 현재 국가가 제시하는 지침 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따르고 있다. 산정된 규제비용은 이러한 배경 에서 가치가 부여된다.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중요한 비용유발원인은 난방과 온수준비를 위하여 에너지의 $20 \%$ 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거나 그에 상 응하는 절감을 통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사항 내지 행위의무이다. 고찰의 대상이 된 건축물들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미 이행38)했기 때 문에, 규제비용을 추산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기름난방장치를 보유하 고 있고 따라서 재건축시 에너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 }^{39)}$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조치가 행위의무를 비용이 가장 적
37) 대안적인 대상년도-표준으로서 외국에서의 건축표준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그 러나 그림 18 과 19 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스위스와 인접국가(에: 오스트리아)간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2000년도의 경우 대상년도-표준 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예컨대, 1980 년대와 같이 과거의 스위스의 건축상황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특히 건축물의 보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은 등급상의 효과를 통한 보다 현대화된 제품들이 가격상 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건축주들이 열에너지사용에서 장기간의 절감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이 있다.
38) 고찰의 대상이 된 주거용 건축물들은 원거리 난방장치를 사용한다.
39)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 축물의 약 $66 \%$ 가 화석에너지원(기름, 가스, 석탄)에 기초한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게 드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산정하였다. 사례예시에서 제시 하는 것처럼, 이것은 추가적인 보온을 통하여 가장 간단하게 이행할 수 있다.

## 비용의 계산

신축의 경우 비용기준가치에 대한 계산은 제2절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서 실시하였다. 에너지 조치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 에 있어서는 모델계획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였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에너지효율성과 관련한 부담사항 내지 의무 사항들이 일정한 침해강도 이상부터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기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상응하는 건축규모를 고려했어야만 했 다. 비용계산은 제4장의 화재보호에서 서술한 방법론에 따랐다. 에너 지 조치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40 ) $20 \%$ 의 침해강도부터 부담사항을 이 행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위의 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축의 경우 에너지 조치의 규제비용이 각각의 대상물에 따라 $0 \%$ 에서 $1.3 \%$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에너지 조치의 규제비용이 분명하 게 더 높은데, 그것은 $5 \%$ 에서 $8.5 \%$ 사이에 있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본질적인 규제비용은 보온을 이행할 경우에 발생한다.

것으로 나타났다.
40) $20 \%$ 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또는 추가적인 보온)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은 최소 한 50 제곱미터로 확장하거나 에너지 관련 면적을 $20 \%$ 이상 확장할 경우에 이행 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구성물체들을 순수하게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용계산은 일반적으로 규제비용을 과대평가한 것을 것이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그림 17: 대상물별 에너지 조치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건축비 |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8,900 | 100 | 47,608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9 | 100 |
| 투 자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례별 } \\ & \text { 규제비용 } \end{aligned}$ |  |  |  |  |  |  |  |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C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구 성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803,419 | 1.7 | - | 0.0 | - | 0.0 |
| D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 | 0.0 | 68,972 | 1.3 | 800 | 0.0 | 1,360,446 | 2.9 | 206,645 | 1.3 | 316,746 | 3.9 |
| E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외 벽 } \end{aligned}$ | 400 | 0.0 | 318,378 | 6.2 | - | 0.0 | 191,999 | 0.4 | - | 0.0 | 356,188 | 4.4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증 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H | 건물의 <br> 특 수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J | 건 물 시 내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V | 계 획 <br> 비 용 | - | 0.0 | 6,585 | 0.1 | - | 0.0 | 37,694 | 0.1 | 2,459 | 0.0 | 20,188 | 0.2 |
| W | 건 축 부 대 비 용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계 | 400 | 0.0 | 393,935 | 7.6 | 800 | 0.0 | 2,393,558 | 5.0 | 209,104 | 1.3 | 693,123 | 8.5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br> 관리 | 24 | 5 | 60 | 60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계 | 24 | 5 | 60 | 60 | 5 | 5 |

투자비용 이외에 기술적 설비의 정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회 귀하는 규제비용도 발생한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건축대상물별 규제 비용은 미미하다.
사례별 비용의 계산은 고찰된 건축물 범주에 대하여 에너지 조치와 관련한 매년 약 1 억 7700 만 스위스 프랑에 달한다. 이 중에서 거의 모 두다 재건축과 개축 프로젝트의 몫으로 돌아간다. 규제비용의 계산은 일차적으로 2011년의 건축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술적 조치는 개별사안에서 본질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 소한의 침해강도가 $20 \%$ 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건축 계획의 일부분만 에너지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재건축 과 개축의 경우 계산의 예시에 대해서는 화재보호의 절에서 참조).

그림 18: 에너지 조치에 대한 규제비용의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br> 규제비용 | $\begin{array}{r} 9,584,733 \\ 400 \\ \hline \end{array}$ | $\begin{array}{r} 5,153,113 \\ 393,935 \end{array}$ | $\begin{array}{\|r\|} \hline 60,398,960 \\ 800 \\ \hline \end{array}$ | $\begin{array}{\|r\|} \hline 47,688,748 \\ 2,393,558 \\ \hline \end{array}$ | $\begin{array}{r} 16,254,896 \\ 209,104 \\ \hline \end{array}$ | $\begin{array}{r} 8,187,439 \\ 693,123 \\ \hline \end{array}$ |  |  |  |
| 건축비용 대비 규 제비용 | 0.0\% | 7.6\% | 0.0\% | 5.0\% | 1.3\% | 8.5\% |  |  |  |
| 규제비용계산 건축주로서 경제계 의 비용(투자비용) | - | 67 | - | 91 | 7 | 13 | 7 | 170 | 177 |
| 2011년 사례예시 <br> 를 통하여 대표된 <br> 건 축 규 모 (백 만 프랑) <br> 스 위스 기 업 의 건축규모 <br> 2011년 스위스 기 업의 건축규모 중 <br> 사례예시를 통해 <br> 대표된 건축규모 <br> 의 점유율 | 14,956 | 3,998 | 4,568 | 3,146 | 564 | 249 | $\begin{array}{r} 20,089 \\ 21,138 \\ 95 \% \end{array}$ | $8,435$ 88\% | $\begin{gathered} 27,481 \\ 29,573 \\ \\ 93 \% \end{gathered}$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br>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 지역적 차이

특히 에너지 증명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상이한 절차(예컨대, 국가적 통제조직 대신 사적인 통제조직을 가진 Kanton이 있다)를 가지고 있고 비용과 요금에서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미 소한 것이며,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게 고찰할 필요는 없다.

## 5.3 규제비응에 관한 토의

에너지 조치에 대한 규제비용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효용 내지 편익이 있다.

- 절감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진흥 및 $\mathrm{CO}^{2}$-할당량의 감소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자연상태적 생산의 장려
- 건축에 있어서 기술도약
- 불충분한 시스템에 기초한 건축손해의 감소
- 건축물의 가치지속성의 증대
- 국민경제적 효용 내지 편익(화석에너지원의 수입 대신 건물 외 벽에 대한 근로에 효과적인 지출, 에너지가격으로부터의 독립성, 외국의 에너지공급자로부터의 독립성)

에너지와 관련한 건축조치에 대한 규제가 가계의 에너지소비에 대 한 직접적인 판단근거는 되지 못한다. 열에너지에 대한 스위스 가계 의 (기후수정적) 소비는 1 인당 6,181 킬로와트에 달한다. 이것은 유럽 전체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높은 것이다. 비교대상 국가의 리스트에서 는 스위스가 상위의 절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9: 유럽에서 가계의 1 인당 및 평방미터당 열에너지 사용[생략] 스위스에서 비교적 큰 사람당 주거면적은 이러한 사정을 일부 해명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0]은 주거면적 제곱미터당 열에너지의 킬로 와트 사용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을 고찰해보면, 스위스의 위치가 약 간 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유럽(특히 핀란드와 덴마크)에서의 건 축물들이 스위스의 건축물보다 더 에너지효율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유럽에서 가계의 주거면적 제곱미터당 열에너지 사용


출처: Bundesamt für Energie (2007. 11.)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그곳에서 지배적인 에너지표준을 가진 건축물 들의 높은 에너지효율성을 설명할 수 있다. 덴마크의 에너지효율성은 유럽과 비교해볼 때 가장 강하다. 그 밖의 해명으로는 효율적인 집행 구조 및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레벨의 조기 도입 등을 들 수 있다.41)

비록 스위스가 유럽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1 인당 열에너지사용시 상 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제비용에 관한 정치적 논의에서는 종종 스위스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분야에서는 최상위의 표준을 가 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부 의미있는 에 너지 조치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는 명백하게 사실상의 규제비용과 체감상의 규제비용간의 차이가 있 다. 우리는 이것이 현재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 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표준(예: MINERGIE)이 건축비용에 미치는 영향
- 2050년의 에너지전략의 효과

따라서 우리는 다음 절에서 이 두 주제와 이 두 주제가 규제비용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을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 표준(예: MINERGIE)이 건축비용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연구들42)은 에너지 표준이 건축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MINERGIE-표준과 그 지속적 발전(예: MINERGIE-P)이다. 광범위한 경험자료에 기초해볼 때, 오늘날 MINERGIE와 MINERGIE-P-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신축과 개축시 비용효과에 대한 대표성있는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Stoker + Partner AG의 최신연구(2010)에 따르면, MINERGIE-P-표준의 경우
41) Bundesamt für Energie, 2005. 3.
42) Bundesamt für Energie, 2003; Meins, 2008; Stokar+Partner AG, 2010; Zeyer, 2008.

비용효과는 약 $5 \% \sim 10 \%$ (순고찰)이고, MINERGE-표준의 경우 비용효과 는 약 $7 \%$ 이다(Meins, 2008).

MINERGIE-표준은 그 요건에 있어서 신축건축물과 건축물보수간에 차이를 두면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보수만 행하고 신축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MINERGIE-표준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는 종종 새로운 도전 (특히 통풍시설의 설치)을 의미한다. 따라서 MINERGIE-건축물보수는 대부분 건축물의 상태가 높은 침해강도를 요구할 때, 다시 말해서 일 반적으로 건축물의 내부공간도 보수되는 경우에 고려된다.43)

MINERGIE-표준이 그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법령상의 규제와 유사함 에도 불구하고 MINERGIE-표준을 준수한 효과로서의 비용은 규제비 용이 아니다.44) 건축주들은 통상적인 표준에 따라서 건축 여부를 임 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건축주들의 이러한 결정의 기초는 비용과 편익의 관계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 또는 예컨대, MINERGIE-표준을 적용할 경우 보다 높은 활용수치를 허용해 주는 Kanton과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해진 유인책 등이다. 또한 이러한 유인책과 관련해서는 표 준의 적용은 규제비용이 아니다. 건축물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활용 수치로써 건축할 것인지는 건축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 2050년의 에너지전략의 효과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이후에 개정된 2050년 에너지전략에 따르면, 연방은 국내 에너지소비의 $46 \%$ 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건축물 분야에
43) Bundeministerium der Ernergie, 2008. 11.
44) MINERGIE-표준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다. 이 연구에서 고찰되었던 해당 장소에서도 임의적이었다. 그러나 스위스의 특정한 자치단체나 시에서는 MINERGIE표준을 보너스규 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을 준수하는 사람은 그 활용, 정도, 사용유형 등과 관련하여 장점을 누릴 수 있다. MINERGIE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에너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 로 정하고 있다.

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 중점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45）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은 더 많은 세수（稅收）로서 에너지 보수（補修）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분야에서 이산화탄 소 세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두 번째 조치로서 Kanton의 에 너지 담당 최고책임자 회의는 에너지분야에서 Kanton의 모범규정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논의의 대상으로 되는 부분은，예컨대，재생가 능한 에너지로부터 난방열의 증가와 건축물기술에 대한 에너지 효율 성의 요건의 강화이다．이 두 조치는 에너지 최적화에 관한 조세상의 유인책을 통하여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050년 에너지전략은 결국 에너지 조치의 행위그룹에 대한 또 다른 규제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다．이러한 규제비용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 Kanton의 모범규정의 강화이다．어쨌든 이 모범 규정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난방열의 점유율을 $60 \%$ 로 줄이도록 규 정할 것이다（지금까지 $80 \%$ ）．그러나 신축건축물의 경우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100 \%$ 열에너지가 되도록 하는 또 다른 조치의 이행이 나타나고 있다．46）

## 5.4 개선을 위한 제안

## 5．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학계와 실무에서는 재건축／개축의 분야에서 현재의 에너지 조치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논의의 대상으로 되는 부분은，예컨대， 난방기를 새로 설치할 경우 에너지분야에서 Kanton의 모범규정이 난 방에너지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최소점유율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지만，

45）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2012．9． 28.
46）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2012．9． 19.

연방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신축건물 프로젝트에서의 강화된 조치와 동일한 정도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 은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 이에 관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증대하는 대체 에너지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진흥하는 조치들은 프 로젝트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특히 대규모의 복잡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더 그러한 상황이다. 여기서 에너지 조치들을 항상 개별적 으로 고찰하는 현재의 규정들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학 계에서는 전체건물의 전체에너지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효율성 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건축주 스스로에게 넘기는 접근방식이 논 의되고 있다.47) 이로써 더 이상 조치들이 중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 라 증대된 목표치들이 중점에 위치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혁신에 긍 정적인 효과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지침을 처리하는 것이 모 든 건축주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써 복잡성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전문적인 건축주는 얻을 것이 없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되어야 한 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건축 규정들의 준수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 입해야 한다.

현행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세 번째 접근방식은 계산된 표준의 준수(이것은 예컨대,, MINERGIE-표준에서 적용된다)와 효과적으로 측 정한 현상태가치(개축의 경우 이전과 이후)간의 차이에 있다. 현상태 가치는 현실의 효율성증대에 대한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전 에 명시되어 있는 규범의 준수와는 무관하다. 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이 충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현실의 측정가치에 기반을 둔, 입증된 에 너지 감축으로써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 효과적인 작용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보다 더 많이 기후목표에 기여 할 수 있다.
47) Bundesamt für Energie, 2005. 3.

네 번째 논의사항은 현장에서의 실제이행을 대신한 대체조세의 이 념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사항을 가지고 건축주는 - 이산화 탄소 거래에서의 절차를 유추하여 - 국내 또는 외국에서의 가장 적절 한 장소에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에 너지 조치의 이행이 건축계획을 매우 비싸게 만들어 버리는 개축의 경우에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사항이 된다. 이와 관련한 비판적인 관 점은 현장에서의 공기위생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때 발생하지 않는 모 든 네트워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개선을 위한 마지막 접근방식으로 실무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 한 에너지증명의 이분화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의 하면, 장래에는 건축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단지 에너지증명에 대 한 개괄적인 구상만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건축이 개시된 이후에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 이로써 건축계획을 기각할 경 우 잃어버렸거나 그 이후의 계획변경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높은 계획비용이 조기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 5.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매년 약 1 억 7700 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규제비용은 본질적인 것 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고찰해야 할 것으로는, 첫째, 계산상으로 입 증되었고 비용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명백하게 에너지 정책적인 편익 내지 효용성이 발생한다는 점, 둘째, 돈이 충분하게 경제계로 다 시 흘러들어간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에너지에 기초한 건축물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 들과 비교해볼 때 중간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문헌연구와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 및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행한 결과 우리는 에너지 조치의 행위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최적화가 능성의 접근방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운영단계의 포함(명령을 대신하는 측정) ${ }^{48)}$
-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증명의 이분화

아래의 두 개의 표는 이러한 조치들의 핵심내용들을 담고 있다.

| 에너지 1: 운영단계의 포함(명령을 대신하는 측정) |  |
| :---: | :--- |
|  | 건축물 소유자는 운영시 에너지관련 면적당 특정한 <br> 에너지소비를 초과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한다. 이 <br> 를 통하여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건축될 뿐만 아니라 <br> 운영도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확보하게 된다. 목표치 <br>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목표치에 도 <br> 달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br> 이러한 모델은 예컨대, Genf시에서 재건축 건축물에 <br> 대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다. 최초의 시험은 Basel시 <br> 의 Novartis캠퍼스에서 시행된다. |
| 비용감축의 잠재성 | 중간정도: 수단들은 건축물 소유자의 관점에서 목표 <br> 러들어간다(혁신의 헐ㅇㅇ). 또한 계획단계가 진행되는 <br> 동안 에너지증명을 작성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속적 <br> 이고 막대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
| 제3자에 대한 비용 | - 잔 |
| 규제의 효용에 |  |
| 대한 영향 |  | | 설정된 목표가 이행되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음 |
| :--- |

48) 이에 관해서는 Ménard, M. 2013 참조.

| 에너지 2: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증명의 이분화 |  |
| :---: | :--- |
|  | 건축주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을 <br> 위하여 에너지증명에 관한 개괄적인 구상만 제출해 <br> 야 하는 반면, 그에 관한 상세한 구상은 건축이 개시 <br> 된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br> 동일한 요건이 설정된다. <br> 두 단계에 걸쳐서 제출하게 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첫 <br> 번째 단계에서 계획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 <br> 다. 이것은 특히 전문적인 건축주에 의한 복잡한 프 <br> 로젝트인 경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 <br> 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국한시킬 수 있다. |
| 취 지 | 없음: 건축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예: 제공자가 <br> 활동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개시할 때) 또는 건 <br> 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훔엑의 새로운 굼상 또는 에 <br> ㄴ지증명의 수정이 요구되는 기존의 건축계획의 변 <br> 경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비용은 절감된다. |
| 이 행 | 제 자에 대한 비용 <br> 는 증명을 시점별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br> 나 이에 대한 권한은 개별 Kanton에 있고, 따라서 <br> Kanton의 다수의 절차규정들이 관련되어 있다. |
| 규제의 효용에 |  |
| 대한 영향 |  |$\quad$| 아무런 영향 없음: 규제의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 집 |
| :--- |
| 행에 있어서의 절차간소화에 관한 것이다. |

## 6. 장애없는 건축

## 6.1 서설, 개요 및 목표

장애없는 건축이 의도하는 것은 장애인평등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건축물이나 부속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다. '장애인평등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은 건축물소유자에 게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과 대규모의 주거용 건축물(8개 주거 이상) 또는 상업용 건축물(직원 50 명 이상)을 장애인에게 건축하 거나 조응시켜야 한다고 의무지우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란, 건축상의 이유에서 접근을 불 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고 예컨대, 우회로 및 기업 또는 조직상 의 조치가 접근을 지체시키거나 제3자에 의한 도움을 받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접근(Zugang)의 개념에 관해서는 '장애인 평등명령(Behindertengleichstellungsverordnung)'에 따라서 각각의 건축물 의 범주에 따라 구분된다.

- 대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나 사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의 문 내지 사무실까지의 접근만을 의미한다.
- 이에 반해, 일반공중이 왕래하는 건축물과 부속시설의 경우(예: 백화점, 은행, 목욕장, 학교, 교회, 병원, 변호사사무실) 원래의 접근개념 이외에 완전한 이용가능성(화장실, 엘리베이트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일반인이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스 위스에서는 규범 SIA 500 을 통하여 장애없는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평등법은 Kanton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 축계획에 적용된다. 장애인평등법의 요건은 경제적인 비용(건축물보험 가치의 최대 $5 \%$ 내지 재건축비용의 $20 \%$ ), 환경보호와 경관보호 및 교통안전과 운영상의 안전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에게 맞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최상위의 최저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다. 실제로 모든 Kanton은 현재 Kanton의 건축법에서 장애인에게 맞 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들을 열거해두고 있으며, 적지 않은 Kanton에서 는 장애인평등법상의 최저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장애인에게 맞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의 지침과 규범들로부터 강조해보면, 건축주에게는 본질 적으로 아래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과다비용이 발생한다.

- 외부개발 및 주차장 : 이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는 건축물입구와 건축물출입문 및 도로와 보도간의 구분, 장애인용 주차장(건축물 의 내부와 외부)과 관련된 비용이다.
- 엘리베이트 시설 : 이에 포한되는 것으로는 설계비용과 감리비용 및 발생하는 정비비용 등이다.
- 내부 개발 및 실내 설비 : 이것은 출입구의 넓이, 교통에 필요한 면적과 전등, 특수문과 창문, 특수한 취향을 위한 바닥재료에 이 르기까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요건들에 관한 것이다.
- 인식의 보조: 인식의 보조란 한편으로는 장애에 관한 정보제공과 장애표시(시각, 더듬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 다른 한편 으로는 특별한 수준을 가진 공간에서 특수한 빛발산설비 또는 음향효과설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 위생분야 : 위생 분야에서는 위생적인 건축물시설에 대한 규제비 용을 포함한다. 이 위생분야는 예컨대, 특별한 수준을 충족시켜 야 하는 화장실 또는 분리된 휠체어화장실을 포함한다.

물론 장애없는 건축의 행위분야는 법적으로 장애인평등법에서 출발 한다. 그러나 '장애인(Behinderte)'의 개념은 규제비용의 논의에서 상대 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개념은 암묵적으로, 장애인 관련 조치들이 사 람들의 매우 적은 그룹(예: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 대해서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없는 조치들 중 많은 부분들(예: 엘리베이트, 전등, 문의 경우 중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장애없는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물건운송(예: 고삐, 호텔에서의 짐, 사무용부동산에서 거래제품과 소비 제품)과 관련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과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에는 피해자, 고령자, 유모차를 가진 부모도 포함된다. 이렿게 보면, 장애없는 건축을 위한 조치들은 절대로 소수 의 집단이 아니라 건축물의 이용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관 점은 특히 장애없는 건축의 효용성 내지 편익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한다.

## 6.2 규제비용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필요비용이란 장애없는 건축의 비용(Kosten des hindernisfreien Bauen)에서 건축주에게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장애없는 건축물접근 이외에 다 른 목적에도 기여하거나 건축주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서 어차피 행 하는 시설과 건축물의 일부일 수 있다.

## 비용의 계산

비용기준가치에 대한 계산은 제2절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서 실시 하였다. 장애없는 건축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는 모델계획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비용의 계산은 제 4 장의 화재보호에서 재건축 과 개축의 경우에 대해서만 행한 고려들을 원용하여 $20 \%$ 의 침해강도 부터 비용을 계산할 때 고려하였다.

규제비용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8 개의 주거를 가진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50 명 이상의 직원이 있 는 건축물만 법령상의 규정과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추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침해강도에 추가하여 8 개 의 주거(투자비용 최소 330 만 스위스 프랑) 또는 최소한 50 명 이상의 직원(투자비용 최소 220만 스위스 프랑)이 있는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만 계산에 넣었다.

관련되는 프로젝트가 범주 속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는 비율은 관련 자료가 흠결되어 추정해야 한다. 추산을 위한 출발점 으로 프로젝트당 중간정도의 투자규모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 간정도의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분포되었다고 가정하 였다.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위의 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축의 경우 장애없는 건축 의 규제비용이 각각의 대상물에 따라 $0.1 \%$ 에서 $0.8 \%$ 사이에서 움직인 다는 점이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장애없는 건축의 규제비용이 분명하게 더 높은데, 그것은 $1.3 \%$ 에서 $4.1 \%$ 사이에 있다.

본질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곳은 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확장(문, 통행로, 공지, 문턱, 바닥재료 등)과 장애인에게 맞춘 주차장의 건축이 었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했던 곳은 건축물의 내 부 확장, 건축물의 기술, 건축물의 외벽 및 건축계획의 입안이었다.

재건축과 개축에 대한 비용은 장애없는 건축방식이 이미 계획 단계 에서 고려될 경우에는 몇 배나 많아지게 된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그림 21: 대상물별 장애없는 건축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건축비 |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8,960 | 100 | 47,688,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39 | 100 |
| 투 자 |  |  |  |  |  |  |  |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C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구 성 } \end{aligned}$ | 5,600 | 0.1 | 31,392 | 0.6 | 22,400 | 0.0 | 31,200 | 0.1 | - | 0.0 | 20,736 | 0.3 |
| D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 | 0.0 | 39,600 | 0.8 | - | 0.0 | 191,707 | 0.4 | 4,600 | 0.0 | 17,040 | 0.2 |
| E | 건 물 <br> 외 벽 | - | 0.0 | 3,096 | 0.1 | - | 0.0 | 5,160 | 0.0 | - | 0.0 | 2,064 | 0.0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증 축 } \end{aligned}$ | - | 0.0 | 20,066 | 0.4 | 168,395 | 0.3 | 345,565 | 0.7 | 115,741 | 0.7 | 286,313 | 3.5 |
| H | 건물의 <br> 특 수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4,000 | 0.0 | 5,520 | 0.1 | - | 0.0 | 26,880 | 0.1 | 2,400 | 0.1 | 4,032 | 0.0 |
| J | 건 물 <br> 시 내 <br> 설 비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V | $\begin{aligned} & \text { 계 획 } \\ & \text { 비 용 } \end{aligned}$ | - | 0.0 | 2,546 | 0.0 | 1,622 | 0.0 | 8,425 | 0.0 | 2,087 | 0.0 | 7,928 | 0.1 |
| W | 건 축 부 대 비 용 | - | 0.0 | 160 | 0.0 | - | 0.0 | 1,280 | 0.0 | - | 0.0 | 160 | 0.0 |
|  | 계 | 9,600 | 0.1 | 102,379 | 2.0 | 192,417 | 0.3 | 610,217 | 1.3 | 124,828 | 0.8 | 338,274 | 4.1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br> 관리 | - |  |  | 700 |  | 2,616 |  | - | 8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700 | - | 2,616 | - | - | - | 872 |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물론 장애없는 건축은 개별 사안에서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현저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의 건축규모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비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건축규모가 특히 주거용건축의 경우 신축건축물의 건축규모와 비교해볼 때 적기 때문 이다.

투자비용 이외에 기술적 설비의 정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회 귀하는 규제비용도 발생한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건축대상물별 규제 비용은 미소하다.

사례별 비용의 계산은 고찰된 건축물 범주에 대하여 장애없는 건축 과 관련한 매년 약 52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한다. 규제비용의 계산은 일차적으로 2011년의 건축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22: 장애없는 건축의 규제비용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계 |
| 건축비용 규제비용 | $\begin{array}{r} 9,584,733 \\ 9,600 \end{array}$ | $\begin{array}{r} 5,153,113 \\ 102,379 \end{array}$ | $\begin{array}{r} 60,398,960 \\ 192,417 \end{array}$ | $\begin{array}{\|r\|} 47,688,748 \\ 610,217 \end{array}$ | $\begin{array}{r} 16,254,896 \\ 124,828 \end{array}$ | $\left\|\begin{array}{c} 8,187,439 \\ 338,274 \end{array}\right\|$ |  |  |  |
| 건축비용 대비 규 제비용 | 0.1\% | 2\% | 0.3\% | 1.3\% | 0.8\% | 4.1\% |  |  |  |
| 규제비용계산 <br> 건축주로서 경제계 <br> 의 비용(투자비용) | 10 | 9 | 11 | 11 | 4 | 6 | 25 | 26 | 52 |
| 2011년 사례예시를 통하여 대표된 건 축규모(백만 프랑) <br> 스 위스 기 업 의 건축규모 <br> 2011년 스위스 기 업의 건축규모 중 사례예시를 통해 대표된 건축규모 의 점유율 | 14,956 | 3,998 | 4,568 | 3,146 | 564 | 249 | $\begin{array}{r} 20,089 \\ 21,138 \\ \\ 95 \% \end{array}$ | $\begin{aligned} & 7,392 \\ & 8,435 \end{aligned}$ $88 \%$ | $\begin{aligned} & 27,481 \\ & 29,573 \end{aligned}$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 <br>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장애없는 건축을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이미 장애인맞춤형 건축 - 계획과정에서의 집행문제 - 에 관한 연구49) 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맞춤형 건축 - 계획과정에서의 집행문제 - 에 관한 연구에서 나 온 결론을 도움으로 보다 신빙성있게 하고 보완되었다.

Zürich 공과대학의 장애인맞춤형 건축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위스 전 역에서 140 개의 건축물들에 대하여 표준화된 조사방식과 모델계산방 식을 도움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표는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된 규제비용에 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표에서는 위 Zürich 공과대학 연구보 고서에 따라서 총비용의 $70 \%$ 에 달하는 필요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신축과 개축의 경우 잠재적인 규제비용의 산정에 추가하여 위 Zürich 공과대학 연구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현상태 비용)을 파악 하였다.

그림 23: 건축물의 유형과 가치에 따른 규제비용에 대한 연구결과의 개요

| 대상물가치 <br> (백만 프랑) | 50만 프랑 미만 | $\begin{gathered} 50 \text { 만 } \\ \text { 프랑~2 백만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2백 만 <br> 프랑~5백만 프랑 | $\begin{gathered} 5 \text { 백만 } \\ \text { 프랑~천5백만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천5백만 프랑 <br> 미 만 | 중간치 |
| :---: | :---: | :---: | :---: | :---: | :---: | :---: |
| 현상 태 비용 |  |  |  |  |  |  |
| 중간치 | - | - | 0.74\% | 0.80\% | 0.92\% | 0.81\% |
| 공공건물 | 1.70\% | 1.24\% | 1.07\% | 1.07\% | 0.67\% | 1.09\% |
| 주거용건물 | - | - | 0.48\% | 0.59\% | 1.20\% | 0.72\% |
| 사무용건물 | - | - | 1.00\% | 1.01\% | 0.58\% | 0.88\% |
| 추가비용 현실화 |  |  |  |  |  |  |
| 중간치 | - | - | 4.45\% | 3.55\% | 2.24\% | 3.56\% |
| 공공건물 | 14.90\% | 2.97\% | 1.69\% | 0.58\% | 0.25\% | 2.63\% |
| 주거용건물 | - | - | 6.99\% | 6.17\% | 3.96\% | 5.89\% |
| 사무용건물 | - | - | 1.29\% | 0.39\% | 0.20\% | 0.72\% |

49) ETH Zürich \& Schweizerische Fachstelle für behindertengerechtes Bauen, 2004; Behindertengerechtes Bauen - Vollzugsprobleme im Planungsprozess

| 대상물가치 <br> (백만 프랑) | 50만 프랑 미만 | $\begin{gathered} 50 \text { 만 } \\ \text { 프랑~2 백만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begin{gathered} 2 \text { 백 만 } \\ \text { 프랑~5백만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begin{gathered} 5 \text { 백만 } \\ \text { 프랑~천5백만 } \\ \text { 프랑 } \end{gathered}$ | 천5백만 프랑 <br> 미만 | 중간치 |
| :---: | :---: | :---: | :---: | :---: | :---: | :---: |
| 추가비용 신축 |  |  |  |  |  |  |
| 중간치 | - | - | 2.53\% | 1.51\% | 0.94\% | 1.78\% |
| 공공건물 | 3.92\% | 3.29\% | 1.47\% | 0.44\% | 0.12\% | 1.73\% |
| 주거용건물 | - | - | 3.40\% | 2.49\% | 1.65\% | 2.64\% |
| 사무용건물 | - | - | 1.58\% | 0.30\% | 0.11\% | 0.79\% |

출처: ETH Zürich \& Schweizerische Fachstelle für behindertengerechtes Bauen, 2004; Behindertengerechtes Bauen - Vollzugsprobleme im Planungsprozess; Abstract S. 3

Zürich 공과대학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 건축물의 규모(대상물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장애없는 건축에 더 유리하다. 이 경우에는 규모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처음부터 장애없는 건축을 계획한 것보다 더 비싸게 존재하는 장애물들은 사후적으로 철거(리노베이션)해야 한다. 사후적인 조 정은 1.5 배나 많은 비용이 든다.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장애없는 건축은 비교적 비싸다. 하나의 엘리베이트로써 층당 각각 두 개 또는 세 개의 주거까지만 연결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상업용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는 보다 더 큰 면적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서 문턱없는 사워시설이나 낮은 발코니 문턱시설 같은 특수한 시설에는 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 건축물보험가치의 $20 \%$ 로써 가장 비싼 것은 비교적 적은 건축물 가치를 가진 건축물로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 우 개축계획이다(50만 프랑 미만).
- 하나의 대상물이 5 백만 프랑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은 평균 $1 \%$ 미만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제 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장애인평등법에서 유발되는 규제비용의 계산은 2004년의 경우 총 약 2 억 3000 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고, 이 중에서 필요비용 $(70 \%)$ 을 제 외하면 약 6900 만 스위스 프랑에 달한다. 수년간에 걸쳐서 보면, 매년 추가비용이 아마도 거의 $0 \%$ 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건축물 상태의 조정이 완료되었다는 점과 지능적인 건축예술상의 해결책을 선택했다는 점 및 증가하는 안락함의 요청일 것이다.

개별적인 건축물 범주와 계획과 관련한 Zürich 공과대학 연구보고서 의 결론은 우리가 내린 결론과는 일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분석에서 고려되었던 건축물들의 기본적인 차이점 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고서는 오로지 사례대상물에 초점을 설정한 반면, Zürich 공과대학 연구보고서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공공 건축물 및 사무용 건축물을 예시로 한 다양한 건축물들을 활용하였 다. 그러나 Zürich 공과대학 연구보고서에서 강조한 규제비용추산의 총계는 우리가 분석한 결과와 1700 만 스위스 프랑의 차이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 지역적 차이

특히 장애없는 건축과 관련한 지침은 Kanton에 의하여 강하게 각인 되어 있고 장애인평등법의 집행은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 법령상 의 규정들과 실무에서의 그 규정의 집행의 다양성은 크지만 전체적으 로 보면 대부분 유사하다. 고찰의 대상이 된 비교대상 지역들에서 규 제비용과 관련한 차이점은 제네바(Stadt Genf)를 제외하고는 미소하며, 요금과 추가적인 양식 및 통제와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 중에서 요금은 건축허가신청 행위분야의 구성요소이므로 여기 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네바 시에서는 과거 장애없는 건축과 관련한 지침을 강화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보다 많은 규제비용이 도출되었다.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Waadt Kanton만 제네바 시와 유사한 강력한 규제규정을 가지 고 있다(Genf 참조). 간소화를 위하여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Zürich 시의 사례에서 출발하였다.

## 6.3 규제비응에 관한 토의

우리의 산정에 기초하여 장애없는 건축의 규제비용이 건축규모의 약 $0.1 \% \sim 4.1 \%$ 가 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장애없는 건축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특수한 기준을 고려해 볼 때 2011년의 건축물의 규 모와 관련해서는 약 5200만 스위스 프랑에 상응하는 것이다.

규제비용은 일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다 나은 통합과 대치되는 관계에 있다. 이 절의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취해진 조치들의 대부분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노령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피해를 입은 사람, 물건운송)에게도 유용하게 된다.

## 스위스의 최근 상황

장애인맞춤형 건축 - 계획과정에서의 집행문제 - 에 관한 연구50)의 결론으로부터 장애인 정의와 관련한 2004년의 스위스의 상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실태가 도출된다.

-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과 공간의 $70 \%$ 은 현재 휠 체어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다. 프로젝트팀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30 년 동안 이러한 비율은 재건축과 개축으로 인하여 지속 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 2004년의 경우 건축비용의 $0.8 \%$ 가 장애없는 건축으로 지출되었 다. 장애인의 요구에 최적으로 조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용의 $2 \%$ 가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로젝트팀의 의견이다.

50) ETH Zürich \& Schweizerische Fachstelle für behindertengerechtes Bauen, 2004; Behindertengerechtes Bauen - Vollzugsprobleme im Planungsprozess

- 현존하는 모든 건축물을 사후적으로 장애인 맞춤형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용의 $4.4 \%$ 가 필요하다.
- 5 천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건축물의 대부분은 건 축비용의 $5 \%$ 미만으로 장애없는 건축을 할 수 있다.
- 건축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장애인 정의를 확보하기에 더 어려워 진다.
- 장애인맞춤형 건축의 목표와 수준이 1970년대 이후로 거의 모든 Kanton의 법령과 연방의 건축물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발견되었 지만 2004년에는 모든 건축프로젝트의 당연한 구성요소가 아니 었다. 장애없는 건축의 실현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대부분 기술적인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판단은 큰 의미가 없 다. 증가하는 공적인 논의로 인하여 지침의 이행이 매우 많이 개 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경영상의 이유와 사용과 관련 된 이유에서 지침을 이행할 표준이 되었다. 물론 법령상의 지침 의 실행과 통제는 지역적으로 항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 양한 대상물의 유형과 관련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의 유효성 확인은 오늘날 스위스의 장애없는 건축 전문기관(Fachstelle für Hindernisfreies Bauen Schweiz)의 정보에 따르면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흠결되어 현재 불가능하다. 또 한 본 조사연구도 다양한 문제제기와 가정으로 인하여 2004년의 연구 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조사연구의 연구자들은 특 히 현존하는 건축물 상황의 재건축과 이 문제에 대한 증가된 논의로 인하여 장애없는 접근이 가능한 건축물의 수가 일정하게 개선되었다 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Kanton간의 많은 차이와 건축물의 종류들간 의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추측된다. 유일하게 건축규모의 $5 \%$

보다 적은 범위에 속하는 50 만 스위스 프랑 미만의 건축규모를 가진 건축물에 대한 과다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통하 여 입증할 수 있거나 적어도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맞다.

## 6.4 개선을 위한 제안

### 6.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장애인 맞춤용 건축기술에 관하여 현존하는 문헌들은 우리의 조사 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법령상의 규정들의 실행 내지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장애없는 건축의 분야에서 규제비용 을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식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건축법의 분야에서 규제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아래의 3 개의 유형이 있다.

1. 주어진 한계치의 조정을 통하여 규제비용을 낮추는 방안
2. 이행시 비용절감을 통하여 규제비용을 낮추는 방안
3.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규제비용을 낮추는 방안

### 6.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장애없는 건축에 대한 규제비용의 산정에 근거하고,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한 관련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스위스 전체에서 매년 약 520만 스위스 프랑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비용은 각각의 건축물의 유형 내지 종류와 건축계획(신축 EH 는 재건 축이나 개축)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나게 발생한다.

규제비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스위스 국민의 대부 분이 - 장애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장애없는 건축으로부터 편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를 제거하거나 엘리베이트를 설치함으로 써 예컨대, 노인,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 또는 물품운송을 하는 사람들 의 일상이 매우 간편해지게 되었다.

문헌연구와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 및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행한 결과 우리는 장애없는 건축의 행위분야에서 법령의 차원에서 규 제비용의 감축에 대한 접근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7. 주 차

## 7.1 서설, 개요 및 목표

주차와 관련한 행위그룹에서는 주차장의 수, 주차장의 규모와 주차 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사항과 관련하여 행위의무를 근거지우를 규제 들이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주차 분야에서 규제들은 자치단체의 교통구상을 이행하 는 데 기여한다. 원칙적으로 보면, 방문자를 맞이하는 건축물(예: 상점 이나 호텔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주차장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 로 된다. 그러나 특정한 숙박지에서 현존하는 주차장의 감축을 통하 여 도보교통의 이익을 위한 차의 교통을 억제하거나 특별한 규정을 통하여 교통의 흐름을 조종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주차 분야에서의 규제들은 특히 Kanton과 자치단체 차원에서 나타 난다. Zürich 시에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규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 Kanton의 계획법과 건축법, 지역개발 및 공공건축법에 관한 법률 (Kantonales Planungs- und Baugesetz, Gesetz über die Raumplanung und das öffentliche Baurecht : Planungs- und Baugesetz)
- 주차장 소요에 관한 자치단체 지도 규정(Wegleitung zur Regelung des Parkplatz-Bedarfs in kommunalen Erlassen)
- 인화물질 거치장소 명령(Verordnung über Fahrzeugabstellplätze :


## Parkplatzverordnung)

주차와 관련한 규정들은 대부분 상업성에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일 반의 접근이 가능한 건축물과 상업시설 또는 스포츠와 공연시설을 위 한 시설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주차와 관련한 지침들 은 지역과 구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주차와 관련된 규제들은 일차적으로 건축하는 주치장의 수를 확정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한 수이거나 최대한의 허용된 수일 수 있 다. 또한 주차장과 관련한 법령들은 필요하지만 건축하지 않아도 되 는 주차장에 대하여 대체조세를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이러한 주차장들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공주차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고려가 깔려있다. 그러나 예컨대, 주차장에 대한 비용의무나 최대한의 주차시간을 규정하는 주차장운영을 위한 규정도 제정할 수 있다.

## 7.2 규제비용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필요비용이란 주차지침의 비용의 일부로서 건축 주에게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실제로 건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조세 의 형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와는 별개로 건축할 주차장의 수 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으로 본다.

- 우선 방문자와 고객의 도달가능성을 보장하고 일반적인 편안함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의 수를 건축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에서는 현재의 규범상태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정차시설을 필요비용으로 간주한다.
- 이에 따라 규제비용은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규범이 규정하고 계 획과 관련되어 있는 형식적 증명보다 더 많은 수의 주차장을 건 축할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건축주가 일반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포기하고, 따라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규제비용으로 보기로 하였다.
- 대규모 프로젝트(예: 백화점, 축구경기장)를 건축함에 있어서 정 치시설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차는 공적으로 논의된다. 이렇게 한정시키는 목표는 일반적으로 차의 교통을 제지하기 위함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방문자의 동향과 그와 관련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차시설의 제한 은 특별한 위험요소가 된다. 그러나 정차시설의 제한은 행위의 무가 아니라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 조사연구 에서 말하는 규제비용이 아니다.


## 비융의 계산

신축 건축물의 경우 비용기준가치에 대한 계산은 제2절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서 실시하였다. 주차와 관련된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 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델계획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이나 개축의 경우 비용가 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차의 행위분야에 관한 규정들을 일정한 침 해강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분석에 중요한 2011년의 건축규모의 결정은 제 4 장의 화재보호의 행위분야를 유추하여 $20 \%$ 의 침해강도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 용하여 규제비용은 강하게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주 차에 대한 규제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 지 건축물과는 무관하다. 지하 주차장 대신 지상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분명히 적은 건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12]건축규모에 비례되게 실행한 계산이 최선의 계산방식인 것으로 보았 다. 따라서 계산은 간소한 추산으로 볼 수 있다.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축의 경우 주차와 관련한 규제 적 규정을 통하여 건축주에게 전체 건축규모의 최대 $0.2 \%$ 의 추가비용 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신축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그 대부분이 건 축주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준수한 필요비용으로 분류된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규제비용은 $1.1 \%$ 까지 약간 높게 나타난다.

비용발생처는 매우 다양하다. 즉, 계획비용과 준비비용에서부터 국 가적으로 요구된 증명을 넘어 주차장의 현실적 건축과 고유번호 매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무실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고찰된 사례들로부터 분명하게 드 러나고 주차시설에 대한 높아진 수요로 인하여 보다 많은 규제비용을 나타낸다.

그림 24: 대상물별 주차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1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 축비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300 | 100 | 47,688748 | 100 | 1625,896 | 100 | 8,187,499 | 100 |
|  | 투 자 |  |  |  |  |  |  |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6,068 | 0.1 | - | 0.0 | 10,900 | 0.0 | - | 0.0 | - | 0.0 |
| C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구 성 } \end{aligned}$ | - | 0.0 | 20,422 | 0.4 | - | 0.0 | 243,398 | 0.5 | - | 0.0 | - | 0.0 |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D | 건 물 기 술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E | 건 물 외 벽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증 축 } \end{aligned}$ | 450 | 0.0 | 450 | 0.0 | 825 | 0.0 | 825 | 0.0 | - | 0.0 | - | 0.0 |
| H | 건물의 <br> 특 수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 | 0.0 | - | 0.0 | 132,990 | 0.2 | 235,169 | 0.5 | - | 0.0 | - | 0.0 |
| J | 건 물 <br> 시 내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V | 계 획 비 용 | - | 0.0 | 1,374 | 0.0 | 1,137 | 0.0 | 19,612 | 0.0 | - | 0.0 | - | 0.0 |
| W | $\begin{aligned} & \text { 건 축 } \\ & \text { 부 대 } \\ & \text { 비 용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1,280 | 0.0 | - | 0.0 | - | 0.0 |
|  | 계 | 450 | 0.0 | 28,314 | 0.5 | 134,952 | 0.2 | 509,905 | 1.1 | - | 0.0 | - | 0.0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br>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123,000 | - | 147,600 | - | - | - | - |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사례별 비용의 계산은 고찰된 건축물 범주에 대하여 주차의 분야에 서 매년 약 3200 만 스위스 프랑에 달한다. 규제비용의 계산은 일차적 으로 2011년의 건축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규제비용의 일부는 수익의 형식으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 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림 25: 주차의 규제비용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규제비용 | $\begin{array}{r} 9,584,733 \\ 450 \end{array}$ | $\begin{array}{r} 5,153,113 \\ 28,314 \end{array}$ | $\begin{array}{\|r\|} \hline 60,398,960 \\ 134,952 \end{array}$ | $\begin{array}{\|r\|} 47,688,748 \\ 509,905 \end{array}$ | $16,254,896$ | $8,187,439$ |  |  |  |
| 건축비용 대비 규 제비용 | 0.0\% | 0.5\% | 0.2\% | 1.1\% | 0.0\% | 0.0\% |  |  |  |
| 규제비용계산 건축주로서 경제계 의 비용(투자비용) | 1 | 5 | 10 | 16 | - |  | 11 | 21 | 32 |
| 2011년 사례예시를 통하여 대표된 건 축규모(백만 프랑) <br> 스위스기업의 건 축규모 <br> 2011년 스위스 기 업의 건축규모 중 사례예시를 통해 대표된 건축규모 의 점유율 | 14,956 | 3,998 | 4,568 | 3,146 | 564 | 249 | $\begin{array}{r} 20,089 \\ 21,138 \\ \\ 95 \% \end{array}$ | $\begin{gathered} 7,392 \\ 8,435 \\ \\ 88 \% \end{gathered}$ | $\begin{array}{r} 27,481 \\ 29,573 \\ \\ 93 \% \end{array}$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 <br>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 지역적 차이

다양한 Kanton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우리가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이미 앞의 서두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위스에서 주차와 관련한 규제적 지침에서 많은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선정된 지역을 고찰한 결과, 개별적인 규정들이 강하게 일반인의 접 근이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전체 투자액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관한 예를 들면,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자전거 주차시설의 필요성 또는 건축하지 아니한 주차장에 대한 대체

조세 등에서 나타난다. 전수조사를 함이 없이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적 차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 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Zürich 시를 대표 사례로 삼았다. 위에서 언급한 수치들은 규제비용의 대략적 차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치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각각 의 가정에 따라 특히 지역적인 특별규정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산치 들이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 7.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규제비용을 산정한 결과, 규제비용이 일차적으로 상업적으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물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나왔다.

규제로부터의 편익 내지 효용은 일차적으로 최적의 교통해소와 대 상물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제3자의 비용으로 주차되는 주차장이 사 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서 나타난다. 이 조사연구에서 편익을 수량화 하고 비용을 대조시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 7.4 개선을 위한 제안

### 7.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우리의 조사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주제들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과의 논의에서도 동시에 주차에 대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면 서 편익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을 수 없었다.

주차의 규제는 일차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상황적으로 조종하는 도 구이고, 따라서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 7.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주차의 행위그룹에서 규제비용은 건축비용의 약 $0 \% \sim 1.1 \%$ 에 달한다. 주차의 규제는 일차적으로 상점, 사무실과 공연장소 등과 같은 상업 적으로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다.

공개된 논의에서는 주차 분야에서 규제비용의 감축과 관련한 구체 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 8. 시민보호

## 8.1 서설, 개요 및 목표

시민보호(Zivilschutz)란 건축법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보호공간을 충 분하게 갖추도록 건축할 의무로 이해된다. 원칙적으로 스위스에서는 모든 거주민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보호시설이 주어진다.

보호공간은 일차적으로 무장된 분쟁 사례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기 능을 담당하지만, 재난시(예컨대, 원자력에서 GAU할 경우) 긴급대피 소로 이용될 수 있다.
'국민보호 및 시민보호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en Bevölkerungsschutz und den Zivilschutz)'은 연방에 대하여 주거용 주택, 요양소 와 구호시설의 소유자에게 보호공간을 건축하고, 그 설비를 갖추어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무는 현재 38개 이 상의 객실을 가지거나 25 개 이상의 보호공간을 가진 대규모 지상건축 물에 적용되고 있다. 그 이외의 모든 유형의 주택소유자는 보호공간 설치를 대체하는 대체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호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특히 거대한 건설, 기술(예: 엘리베이 터) 및 방공설비에 대한 비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8.2 규제비응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필요비용이란 예컨대, 지반공사에 드는 비용 처 럼, 건축주에게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 다. 이에 반해 보호공간의 건축(예: 견고한 문)에 드는 비용과 예컨대,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기술적 설비에 드는 비용은 순수한 규제비용

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그 어떤 다른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비용의 계산

원칙적으로 보호공간의 건축의무는 주거용 주택, 요양시설과 구호시 설에 국한된다. 그 밖의 모든 건축물에는 보호공간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

-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전체 사례 수의 약 $10 \%$ 가 재건축 또는 개축 조치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경험칙에 의하면, 재 건축에 대한 이론상의 행위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재 건축의 이행에 대한 일정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재건축 건축물및 개축 건축물과 관련하여 경험칙상 일 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새로운 작업은 하지 않는다.
- 구호시설과 요양시설 등은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이 건축한 것이 고, 따라서 규제비용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시민보호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델계획 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였다.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아래의 표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 재건축 및 개축 계획에 대 한 시민보호의 규제비용이 $0.8 \%$ 정도에 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규제비용은 보호공간의 구성과 기술적 설비의 설치시에 발생한다. 그 이유는 충족되어야 할 높은 안전표준에 있다. 예컨대, ‘시민보호명령(Zivilschutzverordnung)' 제37조에 의거하여 보호공간은 그 직접적인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격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총 발생비용은 거의 모두 일차적으로 특수제품의 판매와 생산(특히 두꺼운 문, 기술적 설비 등)에 대한 추가수익의 형식으로 - 일차적으 로 스위스에 소재한 - 기업들로 흘러들어간다.

그림 26: 대상물별 시민보호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  |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 투 자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72 | 0.1 |
| C | 건물 구성 | 46,410 | 0.5 | 18,564 | 0.4 |
| D | 건물 기술 | 15,000 | 0.2 | 18,000 | 0.3 |
| E | 건물 외벽 | - | 0.0 | - | 0.0 |
| F | 건물 지붕 | - | 0.0 | - | 0.0 |
| G | 건물 증축 | 15,000 | 0.2 | 4,500 | 0.1 |
| H | 건물 특수설비 | - | 0.0 | - | 0.0 |
| I | 건물 주변 | - | 0.0 | - | 0.0 |
| J | 건물 시내설비 | - | 0.0 | - | 0.0 |
| V | 계획비용 | - | 0.0 | 1,403 | 0.0 |
| W | 건축부대비용 | 120 | 0.0 | 120 | 0.0 |
|  | 계 | 76,530 | 0.8 | 42,659 | 0.8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관리 | 24 | 24 |  |  |
| :---: | ---: | ---: | ---: | ---: |
| 계 | 24 |  | 24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사례별 비용의 계산은 고찰된 건축물 범주에 대하여 주차의 분야에 서 매년 약 1 억 2300 만 스위스 프랑에 달한다. 규제비용의 계산은 일 차적으로 2011년의 건축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규제비용은 거의 모

두 다 기술적 설비의 설치 내지 보다 강력한 보호공간의 구성에서 발 생한다. 따라서 규제비용은 추가수익의 형식으로 건축영업을 담당하 는 기업과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림 27: 시민보호의 규제비용 계산

|  | 주거용 주택 |  | 계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br> 규제비용 | $\begin{array}{r} 9,584,733 \\ 76,530 \end{array}$ | $\begin{array}{r} 5,153,113 \\ 42,659 \end{array}$ |  |  |  |
| 건축비용 대비 규제비용 | 0.8\% | 0.8\% |  |  |  |
| 규제비용계산 <br> 건축주로서 경 <br> 제계의 비용(투 자비용) | 120 | 3 | 120 | 3 | 123 |
| 2011년 사례예 시를 통하여 대 표된 건축규모 (백만 프랑) <br> 스위스기업의 건축규모 <br> 2011년 스위스 <br> 기업의 건축규 모 중 사례예시 를 통해 대표된 건축규모의 점 유율 | 14,956 | 3,998 | $\begin{array}{r} 14,956 \\ 21,138 \\ 71 \% \end{array}$ | $3,998$ $8,435$ $47 \%$ | $\begin{array}{r} 18,954 \\ 29,573 \\ \\ 64 \% \end{array}$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br>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지역적 차이

시민보호는 연방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Kanton과 자치단 체간에 관련되는 비용상의 차이가 없다.

## 8.3 규제비응에 관한 토의

규제비용은 예컨대, 무장한 분쟁, 원자력 사고 또는 푹풍우 사례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민보호의 형식에 의한 규제로부터의 편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스위스는 1963년에 보호공간 설치의무를 도입 한 이후로 보호공간에서 시민을 대규모로 대피시킨 사례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보호건축물의 편익을 수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제의 편익 을 감소시킨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호공간 설치의무 에 관하여 논쟁이 벌어졌고, 그 때마다 그 당시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52)

## 8.4 개선을 위한 제안

### 8.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우리의 조사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주제들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과의 논의에서도 동시에 시민보호에 대한 규제비용을 감축하 면서 편익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을 수 없었다.
52) 특히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된 국민보호 및 시민보호에 관한 연방법의 최근의 일부 개정 내용 참조.

규제비용을 본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보호건축물의 건축에 어떠한 한계치가 올바른 것인지, 어떠한 건축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지 및 여전히 보호공간을 건축해야 하는 것인지를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침들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비 용의 본질적인 최적화는 불가능하다.
8.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시민보호의 분야에서 규제비용의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9. 지진보호

## 9.1 서설, 개요 및 목표

지진맞춤형 건축은 의도적인 예방적 건축조치를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지진위험을 피하고 이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 건축물의 붕괴에 대한 사람의 보호
- 건축물의 손해의 저감
- 사태발생시 중요한 건축물의 기능효율성의 보장
- (화재, 제품고장 등으로 인한) 후속손해의 저감

스위스 의회가 2003년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규정의 제정을 거부한 이후로 지진맞춤형 건축물에 대한 규정의 제정권한은 Kanton에 있게 되었다. 스위스 국민의회는 2013년 5월에 지진안전을 위한 국가건축규정의 거부를 통하여 이러한 권한분배를 확인하였다 (발의 11.3152 의 거부).

Kanton은 지진맞춤형 건축을 위한 조치를 취급함에 있어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이 Kanton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특히 현실태상의 이유로 지진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도 Kanton별 로 매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Kanton의 절반 정도는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지진안전에 관 한 규정을 알고 있음에 반해(예컨대, 학교를 건축할 경우에 지진안전 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다), 6개 Kanton(특히 Basel시와 Wallis Kanton) 에서는 지진에 특수한 건축부담사항을 건축허가절차에서 규정하고 있 고, 이러한 건축부담사항은 사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의 사례에서 Kanton들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위하여 SIA-규범(SIA 260 ff .)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 건축, 계획 및 환경 최고담당자 회

의(Schweizerische Bau-, Planungs- und Umweltdirektoren-Konferenz)도 Kanton에서 SIA-규범을 지진예방을 위한 승인된 규칙으로 느끼고 있다.

## 9.2 규제비용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필요비용이란 지진안전의 비용의 일부로서 건축 주에게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계획자와 건축회사가 건축물의 건축시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준수(OR 제398조 및 제364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 용은 규제비용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이 사안은 지진안전의 사례에 서 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진에 안전한 건축에 관한 SIA-규범은 기술의 승인된 규칙의 준수로서 평가되고, 따라서 주의의무 준수를 위하여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축의 경 우 건축물의 지진안전을 위한 표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결국 지진에 안전한 건축을 할 경우 규제비용은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필요비용을 추산해보면 지진과 건축대상물의 현존하는 건축물질을 통한 지역적 위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 면,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물의 경우 규제의 요건 내지 요구사항 이 지진에 덜 위험한 지역과 대상물에서 보다 덜 필요비용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에서의 규제비용의 추산은 단순화시킨 스위스의 중간치로 보고, 따라서 각각 의 지역적 지진위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53)
53) 이 조사연구에서 건축물질(Bausubstanz)의 내구성(강도/유연성)은 구별하여 고려하 지 않을 수 있다. 내구성은 상세한 데이터의 높은 수를 요구하고 이 조사연구의 범 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예컨대, 2 차 대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들은 그 기초와 건축물을 지탱하는 수직적 및 수평적 구성요소들과 관련하여 건축자재들을 매우 절감한 것들이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비용의 계산

지진안전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델계획 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였다. 화재보호 조치에 대한 규제비용의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 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일정한 침해강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침해강도는 지진안전의 사례에서 건축비용의 $30 \%$ 로 추산한다. 그 밖에 방법론적인 상세한 설 명은 제 4 장의 화재보호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지진에 안 전한 건축에 대한 규제비용이 각각의 대상물에 따라 $1.6 \%$ 에서 $3.5 \%$ 에 달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축의 경우 규제비용이 발생하 지 아니한다.

규제비용은 일차적으로 건축물을 구성할 때 발생한다. 건축물의 구 성은 건축물의 지진안전을 위한 핵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건축상의 조치를 계획하기 위한 미소한 비용들이 발생한다. 건 축물의 구성과 건축상의 조치에 대한 계획 등 이 두 가지 비용발생처 는 건축시 한번 만 발생하고 매년 회귀하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 한다.

그림 28: 대상물별 지진안전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건축비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8,900 | 100 | 4,608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9 | 100 |
| 투 자 |  |  |  |  |  |  |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  |  |  |  |  |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C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구 성 } \end{aligned}$ | - | 0.0 | 181,296 | 3.5 | - | 0.0 | 983,448 | 2.1 | - | 0.0 | 133,668 | 1.6 |
| D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E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외 벽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증 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H | $\begin{aligned} & \text { 건물의 } \\ & \text { 특 수 } \\ & \text { 설 비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5 | - | 0.0 | - | 0.0 |
| J | 건 물 <br> 시 내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V | 계 획 <br> 비 용 | - | 0.0 | 360 | 0.0 | - | 0.0 | 720 | 0.0 | - | 0.0 | 360 | 0.0 |
| W | 건 축 <br> 부 대 <br> 비 용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계 | - | 0.0 | 181,656 | 3.5 | - | 0.0 | 984,168 | 21 | - | 0.0 | 134,028 | 1.6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br>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로서 경제계에 대한 매년 투자규모에 대한 사례당 발생비용의 계산을 한 결과 규제비용이 약 4400 만 스위스 프랑이 발생하였고, 이에는 재건축 및 개축계획에 국 한된 높은 침해강도로 인하여 지진안전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규제비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용의 계산은 일차적으로 2011년의 건축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제4장 의 화재보호 분야에서 재건축 및 개축계획에 대한 계산의 예시 참조).

그림 29: 지진안전의 규제비용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br> 규제비용 | $9,584,733$ | $\begin{array}{r} 5,153,113 \\ 181,656 \end{array}$ | $60,398,960$ | $\begin{array}{r} 47,688,748 \\ 984,168 \end{array}$ | $16,254,896$ | $\left\lvert\, \begin{gathered} 8,187,439 \\ 134,028 \end{gathered}\right.$ |  |  |  |
| 건축비용 대비 규 제비용 | 0.0\% | 3.5\% | 0.0\% | 2.1\% | 0.0\% | 1.6\% |  |  |  |
| 규제비용계산 건축주로서 경제계 의 비용(투자비용) | - | 21 | - | 22 | - | 2 | - | 44 | 44 |
| 2011년 사례예시 를 통하여 대표 된 건축규모(백만 프랑) <br> 스 위 스기 업 의 건축규모 <br> 2011년 스위스 기 업의 건축규모 중 사례예시를 통해 대표된 건축규모 의 점유율 | 14,956 | 3,998 | 4,568 | 3,146 | 564 | 249 | $\begin{array}{r} 20,089 \\ 21,138 \\ \\ 95 \% \end{array}$ | $\begin{aligned} & 7,392 \\ & 8,435 \end{aligned}$ | $\begin{array}{r} 27,481 \\ 29,573 \\ \\ 93 \% \end{array}$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 지역적 차이

지진에 안전한 건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Kanton에 있기 때 문에 규제비용에 관해서는 개별 Kanton마다 차이가 있다. 전수조사를 함이 없이는 지역적 차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편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Zürich

시를 대표사례로 삼았다. 위에서 언급한 수치들은 규제비용의 대략적 차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치로 이해하면 된다.

고찰의 대상이 된 Kanton들 중 특별한 사례로 Willis Kanton을 들 수 있다. Willis Kanton은 지진안전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두 고 있다. 그 이유는 Willis Kanton이 스위스 안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 은 지진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Willis Kanton에서는 지진에 안전한 건축에 관한 증명이 건축허가절차로 되어 있다(건축법 제27조). 이를 통하여 필요한 건축상의 조치들은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비용 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Willis Kanton에서의 규제비용은 다 른 Kanton들(예: Bern)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이 추산된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지진위험지역에서는 건축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재 건축과 개축시 지진에 안전하게 건축할 것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부 담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필요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9.3 규제비응에 관한 토의

지진안전을 위한 규제비용의 편익은 지진 발생시 사람과 건축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 스위스에서는 위험한 정도의 지진 이 발생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지진안전조치로 인한 편익을 통계적 으로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재의 스위스의 건축물상황에서 보면 건축물들의 약 $90 \%$ 정도가 지진 관련 규정을 고려함이 없이 건축된 것들이다.54) 이러한 비율은 유효한 조정요소를 도움으로 해서 보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비 율이 스위스에서 지배적인 '중도적 내지 중간적인 지진위험'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것인지는 위험에 대한 계산을 고려하여 답변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54) Motion Leutenegger Oberholzer Susanne(11.3152): Erdbebenprävention. Bauvorschriften.~

### 9.3.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다양한 정치권력들이 과거 지진에 안전한 건축에 관한 규정의 제정 권을 Kanton에서 연방으로 이전할 것을 시도하였다.55) 이러한 제안들 의 핵심은 연방이 스위스 전역에서 지진에 안전한 건축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모든 Kanton에 대 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지진위험은 각각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게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연방입법도 각각의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정들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9.3.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매년 약 4,400 만 스위스 프랑으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에 대한 규제 비용은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에서 매년 투자의 적은 부분을 결정한 다. 신축건축물의 경우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입법의 중앙집중화에 관한 논의 이외에 현재 또 다른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는 없고, 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진안전에 대한 규제와 이로 인한 편익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규제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대응방안을 찾아볼 수 없 었다.
55) 2002: Parlarmentsrische Initiative UREK-NR-02.401; Motion Müller Philipp Nr. 08.3524; Motion Leutenegger Oberholzer Susanne Nr. 11.3152.

## 10. 보건/위생

## 10.1 서설, 개요 및 목표

입법자는 보건/위생에 관한 규정들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건축물이용 자가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예: 공기청정기 미설치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물사용자가 합목적 적인 휴양공간과 위생공간을 가지게 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래의 법령들이 건강상의 배려에 관한 중요한 규정 들을 담고 있다.

- 1993년 6월 1일자 (산업기업, 계획허가 및 기업인가 관련) 노동 법에 관한 집행명령 3(Verordnung 3 zum Arbeitsgesetz (ArGV 4) (Industrielle Betriebe, Plangenehmigung und Betriebsbewilligung) vom 18. August 1993. 2009.6.1 시행)
- 1999 년 10 월 8 일자 건축자재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Bauprodukte(Bauproduktegesetz, BauPG) vom 8. Oktober 1999. 2010. 7.1 시행)
- 2009년 6월 12 일자 제품안전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sicherheit (PrSG) vom 12. Juni 2009)
- 2005년 11월 23일자 EDI 위생집행명령(Hygieneverordnung des EDI (HyV) vom 23.11.2005. 2010.11.1 시행)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담당기관들(예: 스위스 위생 및 난방전문가 협회), Kanton 및 자치단체는 권고사항과 지도사항들을 발간하여 공표 하고 있다.

건강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은 특히 근로장소로 제공되는 건축물의 경우 관련된다. 주거용 건축물들은 보건/위생과 관련한 규제에서 근로

장소로 제공되는 건축물들 보다 덜 관련되어 있다. 보건/위생에서는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56)

- 위생적인 설비와 보관소(성별간 분리된 화장실의 수, 합목적적인 보관소)
- 직원에 대한 식사기회와 체류기회(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조명과 공간기후(가능한 경우에는 도처에 일상조명을 설치하고 충분한 자연 또는 인공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기상상황의 흐름에 대비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한 건축물의 구성

보건/위생 분야와 관련한 지침들은 특히 이 조사연구에서 다룬 주제 분야인 소음보호, 근로안전 및 장애없는 건축의 분야와 일부 중첩된 다. 모든 행위분야를 중첩적으로 종합하여 보건/위생 분야를 고찰할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보건/위생 행위분야에 대한 고찰은 모든 관련되는 규제비용을 포함한다.

## 10.2 규제비용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필요비용이란 고용주가 현재의 사회적인 지배적 관념과 직원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고용주로서 장래에도 매력적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차피 이행해야 할 조치를 의미한다.

## 비용의 계산

보건/위생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델계획 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관
56) 근로안전 행위분야와 보건/위생 행위분야에서는 건축물의 영역에서 각종 요건 내 지 요구사항들이 Ecoplan이 수행한 규제검토(Regulierungscheckup)에서의 요건 내지 요구사항들과 중첩된다. 그러나 이중계산을 해보면 최대 200만 스위스 프랑으로서, 전체 규제비용을 고려해보면 매우 적고 따라서 무시할 수 있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련하여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제 4 장의 화재보호에 기재된 방 식에 따라서 $20 \%$ 의 침해강도에도 출발하였다.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아래의 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보건/위생의 경우 규제비용 은 각각의 건축 대상물에 따라 건축규모의 $0 \%$ 에서 $9.2 \%$ 에 달한다. 주 거용 건축물의 경우 규제비용이 적게 발생함에 반해, 사무용 건축물 과 학교 건축물 - 특히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 에서는 매우 많은 규 제비용이 발생한다. 보건/위생에서는 비용이 다양한 주제영역에서의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유발된다(습기, 공기의 질, 건축환경적인 관점들, 조명 등). 이들 주제영역들은 암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물의 구성과 체계(사용된 자재들, 예컨대, 창문과 내부뜰을 이용한 조명 등 과 같은 건축의 구상), 기술의 범위(통풍)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많은 작업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여기서는 사무실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중첩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림 30: 대상물별 보건과 위생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건축비 |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8,960 | 100 | 47,688,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39 | 100 |
| 투 자 |  |  |  |  |  |  |  |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C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구 성 } \end{aligned}$ | - | 0.0 | 23,552 | 0.5 | - | 0.0 | 1,288,439 | 2.7 | - | 0.0 | 285,861 | 3.2 |
| D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 | 0.0 | - | 0.0 | 34,000 | 0.1 | 324,565 | 0.7 | 10,000 | 0.1 | 120,570 | 1.5 |
| E | 건 물 외 벽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증 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522,983 | 1.1 | - | 0.0 | 173,319 | 2.1 |
| H | 건물의 <br> 특 수 <br> 설 비 | - | 0.0 | - | 0.0 | 30,000 | 0.0 | 25,020 | 0.1 | 42,000 | 0.3 | 50,400 | 0.6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5 | - | 0.0 | - | 0.0 |
| J | 건 물 <br> 시 내 <br> 설 비 | - | 0.0 | - | 0.0 | 147,025 | 0.2 | 117,960 | 0.2 | 132,216 | 0.8 | 132,216 | 1.6 |
| V | $\begin{aligned} & \text { 계 획 } \\ & \text { 비 용 } \end{aligned}$ | - | 0.0 | 801 | 0.0 | - | 0.0 | 22,793 | 0.0 | 1,566 | 0.0 | 14,830 | 0.2 |
| W | $\begin{aligned} & \text { 건 축 } \\ & \text { 부 대 } \\ & \text { 비 용 } \end{aligned}$ | - | 0.0 | - | 0.0 | 300 | 0.0 | 360 | 0.0 | - | 0.0 | - | 0.0 |
|  | 계 | - | 0.0 | 24,353 | 0.5 | 211,325 | 0.3 | 2,302,120 | 4.8 | 185,782 | 1.1 | 750,196 | 9.2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br>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496 |  | 2,496 |  | 2,496 | 2,496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추가로 건축한 시설(특히 성별 에 따른 분리된 화장실)의 청소에 대한 비용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청소비용은 일차적으로 사용빈도에 의존하는 것이지 화장실의 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필요비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산을 해보면, 보건/위생 분야에서 규제비용은 매년 약 1150 만 스 위스 프랑이 발생한다. 규제비용의 계산은 일차적으로 2011년의 건축 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31: 보건/위생의 규제비용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규제비용 | 9,584,733 | $\begin{array}{r\|} \hline 5,153,113 \\ 24,353 \end{array}$ | $\begin{array}{\|r\|} \hline 60,398,960 \\ 211,325 \end{array}$ | $\begin{array}{\|r\|} \hline 47,688,748 \\ 2,302,120 \\ \hline \end{array}$ | $\begin{array}{r} 16,254,896 \\ 185,782 \end{array}$ | $\begin{array}{r} 8,187,439 \\ 750,196 \end{array}$ |  |  |  |
| 건축비용 대비 규 제비용 | 0.0\% | 0.5\% | 0.3\% | 4,8\% | 1.1\% | 9.2\% |  |  |  |
| 규제비용계산 건축주로서 경제계 의 비용(투자비용) |  | 4 | 15 | 75 | 6 | 14 | 23 | 82 | 115 |
| 2011년 사례예시 를 통하여 대표 된 건축규모(백만 프랑) <br> 스 위 스 기 업 의 건축규모 <br> 2011년 스위스 기 업의 건축규모 중 사례예시를 통해 대표된 건축규모 의 점유율 | 14,956 | 3,998 | 4,568 | 3,146 | 564 | 249 | $\begin{gathered} 20,089 \\ 21,138 \\ \\ 95 \% \end{gathered}$ | $8,435$ | $27,481$ <br> 29,573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br>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 지역적 차이

다양한 Kanton과 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Kanton들간 내지 자치단 체들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규정들은 연방차원의 노 동법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 10.3 규제비응에 관한 토의

보건/위생 분야에서 규제들은 건축물이용자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연구57)에서도 도출되었듯이, 몇몇 건
57) $\mathrm{SECO}, 2010$.

강상의 문제와 이와 결부된 생산성의 저하는 적절하지 않은 근로장소 의 상황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다(소음으로 인한 고통, 부적절한 통 풍, 밝지 않은 조명). 규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0.4 개선을 위한 제안

### 10.4.1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전문문헌,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토의 및 연구진의 독자적인 조사 등 에 의하면,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법령의 차원에서 보건/위생에 대한 규제와 이로 인한 편익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규제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권고할만한 접근방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11. 소음보호

## 11.1 서설, 개요 및 목표

스위스에서는 1980년대에 소음보호가 공공정책의 과제로 되었다. 1983년의 '환경보호법(Umweltschutzgesetz)'에서는 유해하거나 불편한 소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조기에 소음을 차단하는 배려를 위하 여 소음보호가 명시되었다. 소음보호에 대한 권한을 Kanton에 위임하 고 있는 1986년의 '소음보호명령(Lärmschutzverordnung)'에서 연방정부 는 소음보호에 관한 규정을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다. 건축물의 방음 에 대하여 1986년의 소음보호명령은 건축서류의 승인된 규칙, 특히 지상건축에 있어서 SIA-규범 181의 방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상건축에 있어서 SIA-규범 181(방음)은 소음보호 분야에서 규제비용산정의 기초 가 된다. SIA-규범 181(방음)에는 건축물 외부 부분, 건축물 분리 부 분, 계단과 주택기술적인 설비에 있어서 방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음보호는 예컨대, 노동관계법이나 보건관계법 또는 지역개발과 공 공건축법에 관한 법 등과 같이 국내 입법에서 적용되고 있다. Kanton 차원에서는 결정(Beschlüss)과 법규명령(Verordnung)을 통하여 소음보호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상 행위분야인 소음보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국한된다.

- 대상물의 외부 소음공해로부터의 소음보호
- 대상물의 내부에서의 소음보호
- 평균적인 기준장소에 대한 건축지역지침에 따른 외부소음으로부 터의 소음보호

이에 반해 과도한 외부소음(예: 도로교통, 철도교통 및 항공교통)으 로부터의 건축물의 소음보호는 이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58)

이미 자치단체의 지역계획들과 지침들은 소음보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계획들과 지침들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구역(주거구역, 상 업구역 등)에서는 1986년의 '소음보호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음-민 감성단계를 준수해야 한다. 소음민감성단계는 소음에 대하여 거의 참 을 수 없는 I지역(회복구역)에서부터 소음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운영 이 허용되는 IV구역(산업구역)에 까지 이른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은 이른바 소음에 민감한 공간 에서 부담한계치와 관련한 지침들을 준수해야 한다(1986년의 소음보 호명령 제31조).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주거지에서의 공간들(부억, 위생공간, 창고의 경우에는 제외)
- 사무실, 이 - 미용실 공간, 호텔 객실, 학교공간 또는 구호시설 공 간, 교회, 식당 내에서의 놀이공간 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장시 간 동안 체류하는 기업체에서의 공간들

그러나 건축허가에서 소음민감성의 부담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적정한 소음보호조치를 함께 계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 에는 새롭게 발생할 소음공해(건축물의 외부에 대한 소음부담)도 한계 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치는 기술적 • 경영상으로 가능하고 경 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해야 한다(1986년의 소음보호 명령 제7조 제 1 a 항). 그러나 명시된 사용구역의 소음-부담한계를 초과 해서는 아니된다(1986년의 소음보호명령 제7조 제1b항).
58) 외부소음에 관한 주제는 건축법 규제검토(Regulierungscheckup Baurecht)의 구성요 소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찰의 대상이 된 사례예시들은 소음이 노출되지 아 니한 상황을 지시하고 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외부소음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상 응하는 건축상의 조치가 뒤따르는 건축물들이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연구보고서에서 적용된 방법론에 따르면 외부소음의 결과로서 규제비용의 추산은 불가능하다.

소음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구분할 수 있다.

- 소음원에 대한 조치: 입법에 따르면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저감시키는 것이 분명히 우선적이다. 이것은 예컨대, 모터에 캡 슐을 씌우는 것, 방음재, 기업의 가동 제한 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 소리확산방법 내지 수신자대상물59)에 대한 조치들로는 다음과 같다.
- 외부의 건축 조치들(예: 방음벽): 이것은 소음원가 건축대상물 사이에 있는 건축물 앞에 있는 방어장치들이다. 소음보호건축 물들이 그 소음원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소음보호건축물 들의 실효성은 더 높아진다.
- 조형적인 조치들(부동산에서의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형식, 공간배치): 조형적인 조치들의 배후에 깔린 기본이념들은 소 음부담에 맞춘 공간의 이용이다. 예컨대, 건축물이 쓸모있게 자리잡고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덜 민감한 이용을 통하여(예: 업무) 소음에 민감한 사용(예: 주거)을 보호할 수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물의 외형이나 공간 재배치로써 소 음부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창문 앞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 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적인 면은 소음보호에 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13]
## 11.2 규제비응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필요비용이란 소음안전 비용의 일부로서 건축주 에게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소음보호 이외에 다른 목적에 이바지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의 일부일 수 있고, 건축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차피 소음보호 조치로 실시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일부일 수 있다.

- 소음보호가 동시에 다른 목적에 이바지하고 건축주의 관점에서 도 소음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 일반적인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방음용 창문을 설치한 경 우)에는 방음에 사용된 자재들에 소요된 과다비용은 규제비용으 로 보았다.
- 건축주가 어차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동일한 소음보호 조치를 행하는 경우에는 개념 그 자체로부터 규제비용이 발생하 지 아니한다.
- 건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건축계획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보다 소음보호조치가 덜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추 가적인 조치는 규제비용으로 보고, 따라서 이 조사연구의 분석 에서 고려한다.


## 비용의 계산

신축의 경우 비용단위가치의 계산은 제2장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랐 다. 소음보호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델계 획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제4장의 화재보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서 $20 \%$ 의 침해강도에도 출발하였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아래의 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음보 호로 인한 규제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신축시 발생하는 비 용들은 필요비용으로 분류하였다. 이 비용은 현행 SAI-규범에 명시되 어 있고 건축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준수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에 반해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규제비용은 $0.1 \% \sim 0.3 \%$ 에 달하 고, 이 경우 건축물의 구성과 증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과 개축에 관한 사례예시는 그 밖의 고 찰의 대상이 된 사례들 중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변경된 소음보호지 침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 곳으로는 특히 소음보호 요건에 따른 벽과 천정의 구성 및 미닫이식으로 구분된 벽과 보조소음바닥재 등이다.
재건축과 개축 계획의 경우 규제비용은 건축물의 범주에 매우 강하 게 의존한다. 이에 상응하게 가치는 규모와 넓이로 이해된다.

그림 32: 대상물별 소음보호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건축비 |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8,960 | 100 | 47,688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9 | 100 |
| 투 자 |  |  |  |  |  |  |  |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C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구 성 } \end{aligned}$ | - | 0.0 | 6,043 | 0.1 | - | 0.0 | 491,724 | 1.0 | - | 0.0 | 347,240 | 4.2 |
| D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E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외 벽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증 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81,954 | 0.2 | - | 0.0 | 482,046 | 5.9 |
| H | 건 물의 <br> 특 수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J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시 내 } \\ & \text { 설 비 } \\ & \hline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V | 계 획 <br> 비 용 | - | 0.0 | 205 | 0.0 | - | 0.0 | 5,737 | 0.0 | - | 0.0 | 16,586 | 0.2 |
| W | 건 축 <br> 부 대 <br> 비 용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계 | - | 0.0 | 6,240 | 0.1 | - | 0.0 | 579,415 | 1.2 | - | 0.0 | 845,872 | 10.3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br>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물론 소음보호는 개별사례에서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중요한 규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용 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사례수와 건축규모가 주거용 주택의 건 축과 비교해볼 때 미소하기 때문이다.

사례비용을 계산해 보면, 소음보호 분야에서 규제비용은 매년 약 3400 만 스위스 프랑이 발생한다. 이 규제비용의 계산은 일차적으로 2011년의 건축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비용이 발생하는 곳은, 소음보호요건에 따른 벽구성과 천정구성, 미 닫이식으로 구분된 벽의 설치, 보조소음바닥재와 음향전문가를 통한 건축계획 등이다. 따라서 규제비용은 수익의 형태로 건축영업을 하는 기업이나 건축자재생산자에게 흘러들어간다.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그림 33: 소음보호의 규제비용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 건축비용 | $9,584,733$ | $5,153,113$ | $60,398,960$ | $47,688,748$ | $16,254,896$ | $8,187,439$ |  |  |  |  |

## 지역적 차이

다양한 Kanton과 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소음보호의 의미와 관련 하여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전역에서는 원칙적 으로 국내 차원에서 사례예시에 대한 규제비용의 계산이 인정되는 동 일한 기술적인 규범이 적용되고 있다.

## 11.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 스위스의 현상황

점증하는 이동성으로 인하여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다 강력한 소음 부담을 겪고 있다. 연방환경청의 국가소음모니터링 SonBase60)가 실시 한 '스위스에서의 소음부담에 관한 연구(Die Studie Lärmbelastung in der Schweiz)'의 결과는 처음으로 스위스 전역에서의 도로교통, 철도교 통 및 항공교통으로 인한 소음부담에 관한 광범위한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국민의 $60 \%$ 내지 120 만명이 대낮에 유해하고 불편한 소음공해 에 노출되어 있다.
- 도로교통소음이 스위스에서의 지배적인 소음원이다. 장애를 일으 키는 도로교통소음의 $90 \%$ 는 도시와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철도교통소음은 선로에 따른 소음통로로서 선로망에 따라 확산 된다. 대낮에 약 70,000 명이 스위스에서 과도한 철도소음을 겪 고, 밤에 과도한 철도소음을 격은 사람들은 이 보다 두배 이상 많다.
- 과도한 항공교통소음은 스위스에서 비교적 적은 도시에서 대낮 에 약 65,000 명이 부담을 격고 있다. 항공소음은 일차적으로 Zürich와 Genf에 소재한 두 개의 공항 및 이들 도시에 속한 밀집지 역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스위스에서는 주로 외부소음부담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있다. 대상물의 내부에서 소음부담 또는 건축물의 소음오
60) 출처: Ziele der Lärmbekämpfung gemäss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Bundesamt für Umwelt BAFU, Lärmbelastung in der Schweiz - Ergebnisse des nationalen Lärmmonitorings SonBase, 2009.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염과 관련한 스위스 전역에 대한 분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교통소음이 현재 소음보호조치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 국민들의 강한 소음부담은 사회에 대한 비용과 함께 발생한 다(그림 34 왼쪽 참조). 어느 연구에서는 소음이 수십억 규모의 비용 을 유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 하는 원인은 한편으로는 건강위해비용이다. 즉, 과도하고 연속적인 소 음은 신체를 병들게 한다. 그 결과는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터 고혈압과 심장발작에까지 이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된 소음 공해는, 아래의 표 34 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소유권의 의미 있는 가치상실을 가져오게 된다(그림 34 오른쪽 참조).

그림 34: 부동산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가치저하(소음비용, 백만 프랑)


출처: Magazin Umwelt 1/2013, 2013: Natürliche Umwelt in der Schweiz:
Dossier Ruhe schützen; Volkswirtschaftliche Auswirkungen des Lärms S.
20/21. Gemäss Angaben ARE 2010/ZKB

## 11.4 개선을 위한 제안

### 11.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소음보호의 분야에서는 건축제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개선방안을 제 한하는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02년에 발간된 '스위스에서의 소 음투쟁 - 스위스 연방 환경, 숲 및 풍경부의 현상과 전망(Lärmbekämpfung in der Schweiz - Stand und Perspektiven des Bundeamtes für Umwelt, Wald und Landschaft, 2002)'과 같은 연구보고서나 2001에 발간된 ‘스 위스에서의 소음투쟁: 그 원칙과 비교(Lärmbekämpfung in der Schweiz: Grundzüge und Bilanz, 2001)' 연구보고서 등 현존하는 연구보고서들은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의 구성부분이 아닌 소음보호와 관련된 규범적 인 측면과 정책적 대안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 11.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건축물과 공해제한 및 이 주제에 관하여 제공된 연구보고서 안에서 소음보호 분야에서 규제비용을 산정해본 경과 스위스 전역에서 매년 3,400 만 스위스 프랑의 과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소음보호라는 20 세기 말 보다는 지난 수년 동안에 모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주제였다. 지난 수년 동안에 비로소 국민의 소음부담의 실태에 대 한 광범위한 분석(주제어: 국가소음데이터베이스 Sonbas)과 이와 결부된 국민경제적 비용이 파악되었다. 원칙적인 규정들은 보완되었고(예: 소음 보호명령) 개정되었다(예: 지상건축에서 소음보호에 관한 SIA-규범 181).
문헌조사,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와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진 행한 결과 소음보호 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추천할 만 한 대응방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 12. 근로안전

## 12.1 서설, 개요 및 목표

건축물과 관련한 근로안전의 주제에서는 일차적으로 건축물에서의 직원과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로 된다. 한편으로 근로안전의 지침은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안전의 제고를 목표 로 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추후에 건축물의 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특별한 규정들은 특히 건축 관련 활동(산업상의 활동) 으 로 인하여 직원의 높아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필 요하다.
스위스에서는 - 건축분야와 관련된 - 근로안전에 관한 중요한 규정 들이 다음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 1993년 8월 18 일자(산업기업, 계획승인과 기업인가와 관련된) 노 동법에 관한 집행명령 4(2009년 6월 1일 기준)[Verordnung 4 zum Arbeitsgesetz(ArGV 4)(Industrielle Betriebe, Plangenehmigung und Betriebsbewilligung) vom 18. August 1993 (Stand am 1. Juni 2009)]
- 1999 년 10 월 8 일자 건축제품에 관한 연방법(2010년 7월 1 일 기 준)[Bundesgesetz über Bauprodukte(Bauproduktegesetz, BauPG) vom 8. Oktober 1999 (Stand am 1. Juli 2010)]
- 2009년 6월 21일자 제품안전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sicherheit (PrSG) vom 12. Juni 2009]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들, Kanton 및 자치단체들이 제정한 권 고와 지시사항이 공표되어 있고, 이러한 권고와 지시사항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예컨대, Zürich 시의 경우

신축건축물이나 작업공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공간을 건축상 변경할 경우 영업활동과 기업운영에서 Kanton의 양식이 2 배로 든다). 근로안 전의 분야에서 규제와 그에 속하는 규범을 통하여 관련되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61)}$

-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 특수성(예컨대, 특정한 사례수 이상부터는 계단에 손잡이 설치)
- 시설 및 건축현장에서의 태도와 관련한 규범들(예컨대, 작업시설 에 대한 지침, 직원을 위한 작업모착용의무)
- 건축제품에 대한 기술적 특수성(예: 바닥과 바닥면적에서 미끄러 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 색깔에 대한 화학적 내용물)
- 건축제품에 대한 기술적 허가절차(예: 건축제품이 입법자의 요구 에 맞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 건축제품의 가격과 내용 및 사용과 관련한 지침

근로보호 분야에서 규제비용은 특히 스위스의 규범들이 외국의 규 범들과 차이가 나고 생산자로 하여금 스위스에 대하여 특별한 두 번 째 생산라인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스위스 지역에서 생산자들은 국제 가격경쟁에서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특별규범들은 스위 스에 대해서만 충족된다. 이것이 건축주에게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 로 스위스의 특별규범에 따른 제품의 가격수준이 국제적 제품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양한 규범에 대한 분석은 이 조사연구의 범
61) 건축물의 분야에서 근로안전과 보건/위생 행위분야에서는 그 요건 내지 요구사항 들이 Ecoplan이 수행한 규제검토(Regulierungscheckup)에서의 요건 내지 요구사항들 과 중첩된다. 그러나 이중계산을 해보면 최대 200 만 스위스 프랑으로서, 전체 규제 비용을 고려해보면 매우 적고 따라서 무시할 수 있다.

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스위스의 특별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규 제비용은 이 조사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근로안전 분야에서 규제비용은 부분적으로 다른 행위분야, 예컨대, 화재보호와 소음보호의 행위분야와 중첩된다. 모든 행위분야를 중첩 적으로 고찰하여 고려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근로안전의 행위분야에 대한 고찰은 관련되는 모든 규제비용들을 포함한다.

## 12.2 규제비용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이 조사연구에서는 필요비용이란 근로안전 비용의 일부로서 건축주 에게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가정하였다. 근로안전 분야에서 관련 법령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그에 상응하는 규 범들과 신용장 부여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전체 건축제품산업은 규범 들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범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들 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현행 규범상의 기준들을 준수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비용으로 본다.

## 비용의 계산

신축의 경우 비용단위가치의 계산은 제2장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랐 다. 근로보호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델계 획의 비용을 각각 2011년의 건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제4장의 화재보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서 $20 \%$ 의 침해강도에도 출발하였다.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에게는 오 로지 학교건축물의 사례에서만 규제비용(5\%)이 발생한다. 재건축과 개

축의 분야에서도 비용이 최대 $1 \%$ 로써 비교적 적다. 규제비용은 일차 적으로 특별한 공간의 공간설비(예: 학교사례의 경우 실험실습실, 실 내체육관)를 통하여 결정된다. 또한 건축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예: 재건축과 개축 계획의 경우 석면함유 물질을 제거하기 위 한 건축)을 통해서도 규제비용이 결정된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들은 규모와 가능한 넓이로 이해할 수 있는 추산치들이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안전과 관련한 각각의 특별한 건축물의 요구사항 내지 공간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거나 많은 규제비 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림 35: 대상물별 근로안전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398,90 | 100 | 47,688,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9 | 100 |
|  |  |  |  |  |  |  |  |  |  |  |  |  |  |
| 사례별 <br> 규제비용 |  |  |  |  |  |  |  |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 | 0.0 | - | 0.0 | 25,000 | 0.1 | - | 0.0 | - | 0.0 |
| C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구 성 } \end{aligned}$ | - | 0.0 | 5,000 | 0.1 | - | 0.0 | - | 1.0 | - | 0.0 | - | 0.0 |
| D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E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외 벽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F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지 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증 축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H | 건물의 <br> 특 수 <br> 설 비 | - | 0.0 | - | 0.0 | 5,000 | 0.0 | 5,000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J | 건 물 <br> 시 내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82,635 | 0.5 | 82,635 | 1.0 |
| V | 계 획 <br> 비 용 | - | 0.0 | - | 0.0 | - | 0.0 | 5,737 | 0.0 | 3,224 | 0.0 | 2,846 | 0.0 |
| W | $\begin{aligned} & \text { 건 축 } \\ & \text { 부 대 } \\ & \text { 비 용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계 | - | 0.0 | 5,000 | 0.1 | 5,000 | 0.0 | 30,000 | 0.1 | 85,859 | 0.5 | 85,481 | 1.0 |

매년 회귀하는 비용

| 정비 및 <br>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근로보호과 관련한 지침들은 개별사례에서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중요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되는 매년 건축규 모에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용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사례비용을 계산해 보면, 매년 규제비용은 고찰의 대상이 된 건축물 의 범주에 대하여 약 6,600 만 스위스 프랑이 발생하고, 이 계산은 일 차적으로 2011년의 건축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약 6,600 만 스위스 프랑의 규제비용은 수익의 형태로 건축영업을 하 는 기업이나 건축자재생산자에게 흘러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6: 근로안전의 규제비용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 9,584,733 | 5,153,113 | 60,398,960 | 47,688,748 | 16,254,896 | 8,187,439 |  |  |  |
| 규제비용 | - | 5,000 | 5,000 | 30,000 | 85,859 | 85,481 |  |  |  |
| 건축비용 대비 규 제비용 | 0.0\% | 0.1\% | 0.0\% | 0.1\% | 0.5\% | 1.0\% |  |  |  |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규제비용계산 건축주로서 경제계 의 바용(투자비용) | - | 12 | 0 | 48 | 3 | 2 | 4 | 62 | 66 |
| 2011년 사례예시 를 통하여 대표 된 건축규모(백만 프랑) <br> 스 위 스 기 업 의 건축규모 <br> 2011년 스위스 기 업의 건축규모 중 사례예시를 통해 대표된 건축규모 의 점유율 | 14,956 | 3,998 | 4,568 | 3,146 | 564 | 249 | $\begin{gathered} 20,089 \\ 21,138 \\ \\ 95 \% \end{gathered}$ | 7,392 $8,435$ $88 \%$ | $\begin{array}{r} 27,481 \\ 29,573 \\ \\ 93 \% \end{array}$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br> ※ 구체적 계산과정은 부록에 있는 표로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 지역적 차이

다양한 Kanton과 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법령상의 지침에 대한 해 석과 그 집행(예: 통제)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스위 스 전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차원에서 사례예시에 대한 규제비용의 계산을 인정하는 동일한 연방법상의 지침과 기술적인 규범들이 적용 되고 있다.

## 12.3 규제비용에 관한 토의

근로안전을 위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인사사고를 방지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에 특수한 조치들은 건축 물의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작업도구들의 사용과 관련한 안전조치들이다.62)
62) Ecoplan, 2013.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2011년의 경우 지상건축, 지하건축 및 건축현장에서의 준비작업에서 52,337건의 근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수치는 스위스에서 보험기술적 으로 승인된 모든 산재사고의 약 $20 \%$ 에 맞먹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현 장 부분 및 건축현장에서의 태도와 관련된 규제들이 큰 의미를 가진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보면, 근로사고가 스위스에서 10 년 전 이 후의 피고용자의 수와 비교해볼 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근로안전이 일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현장에서의 조치들은 근로안전과 관련한 조치들의 일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성공은 규제비용과 직접 적으로 관련지울 수 없다. 그러나 근로사고 저감의 목표가 건축영업 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건축현장 분야와 건축현장 에서의 태도와 관련된 조치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 37: 스위스에서 모든 분야와 건축영업 분야에서의 산재사고의 추이


출처: Statistik der Unfallversicherung

## 12.4 개선을 위한 제안

### 12.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은, 근로안전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 규제비용과 개선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63)의 결과들은 ASA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이행되었다. ‘규제비용 검토'(Regulierungs-Checkup)에서는 Ecoplan이 수행한 비건축적 관점들 을 고려하여 근로안전의 행위분야에서 규제비용과 개선방안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64)}$
그러나 근로안전 분야에서는 건축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 12.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근로안전에 관한 주제는 스위스에서 높은 논의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발생시킨다. 그러나 모든 건축상의 안전조치들 의 대부분은 이미 건축주 내지 그 이후의 건축물 점유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행되고, 따라서 규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 하게 될 비용들이 존재한다.
전문문헌,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토의 및 연구진의 독자적인 조사 등 에 의하면, 근로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안전을 위한 규제와 이로 인한 편익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규제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권고할만한 접근방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63) SECO, 2007.
64) Ecoplan, Regulierungs-Checkup Arbeitssicherheit, Gesundheitsschutz und Unfallversicherung im Auftrag des SECO, 2013.

## 13. 공공조달제도

## 13.1 서설, 개요 및 목표

공공조달제도의 규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급부를 조달함에 있어 가 능한 한 잘 기능하는 경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조달제 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관세 및 무역협정(GATT)와 국제무 역기구(WTO)를 통하여 스위스와 같은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규범이 설정되어 있다.

스위스에서는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 BöB)'과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Kanton 간 협정(Interkantonalen Vereinbarung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 IVöB)'을 통하여 공공조달제도의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 고 있다. 건축법은 조달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건축대상물당 870 만 스 위스 프랑 이상의 건축규모 내지 230,000 스위스 프랑 이상의 건축규 모65)부터는 연방, Kanton 및 자치단체의 건축프로젝트들은 개별적인 물품제공과 용역에 대한 공개입찰을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축제도에서 공공기관은 매년 건축규모의 약 $25 \%$ 내지 지상건축의 $12 \%$ 를 차지하여 시장에서 중요한 주체로 되어 있다.
'조달법(Beschaffungsrecht)'은 위탁절차의 선택에 대한 한계치 이외에 특히 공공조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연방법(BöB)'과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Kanton간 협정(IVöB)'은 이에 대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다(예: 공공기관 의 상업적 및 산업적 활동, 국방과 군대의 전투인프라와 지휘인프라 건축물의 건축, 복지시설물에 대한 위탁 실시).
65) http://www.bbl.admin.ch/bkb/00389/00397/index.html?lang=2-13.6.10. 접속

## 13.2 규제비응의 추산

## 필요비용에 대한 보충적 내용

공공조달의 분야에서는 규제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두 종류의 비용에 관심이 간다.

- 형식화 비용: 형식화 비용이란 공공조달이 특정한 지침(예: 기한, 자료요건 등)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그 경향으로 보면 유사한 사법상의 조달에서 보다 더 높은 형식화의 정도를 가지기 때문 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응찰자의 업무처리를 위한 국민경제적 비용: 우리는 응찰자가 입 찰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위하여 이행하는 비용을 국민경제적 비용으로 이해한다.

형식화 비용은 한편으로는 조달자 스스로에게 발생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응찰자에게 발생한다. 조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예컨 대, 입찰에 대한 광고비용, 제2외국어로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 소요되 는 비용, 입찰절차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에 소요되는 비용, 입찰서류 공개시 정확한 진행방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응찰자에게 입찰결과를 통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응찰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상업등기부 또는 경영장부의 일부 발췌 도는 다양한 양해 각서의 교부 등과 같이 증명서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조달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은 공공기관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 비용은 이 조사연구에서 사용한 규제비용의 개념정의에 따라서 규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국민경제적 비용은 공개입찰을 할 경우 사법상의 입찰에서 보다 더 많은 응찰자들이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조사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개념정의에 따라서 규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고찰에 의하면, 건축 대상물당 응찰자의 수는 일차적으로 건 축경제의 한계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지 입찰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공개입찰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법상의 입찰에서 보다 더 많은 응찰자들이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66) 또한 건축경쟁도 사경제 뿐만 아니라 연방에서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부터 도출되는 국민경제적 비용은 이 조사연구에서 규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조사연구에서 산정된 조달제도의 규제비용은 단지 엄격한 형식화의 요건으로 인하여 입찰자에게 발생 하는 국민경제적 비용만을 말한다.

## 비용의 계산

공개입찰의 의무가 건축대상물당 870 만 스위스 프랑 이상 내지 개 별 위탁별 230,000 스위스 프랑 이상의 건축규모에서만 공개입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사례수에 대한 비용의 계산은 상응하는 한계치로써 수정했어야 했다. 이러한 수정에 있어서는 제 4 장의 화재보호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평균적인 건축대상물의 비용이 870만 스위스 프랑 보다 많고, 모든 건축대상물들이 전체 또는 일부 (230,000 스위스 프랑의 위탁)만 공개입찰의무가 있다고 단순하게 가 정하였다. 평균적인 건축대상물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고려된 사례수 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줄였다. 이것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 는 대상물의 중간정도의 비용이 예컨대, 435만 스위스 프랑에 해당할 경우 사례수가 $50 \%$ 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6) 이 조사연구는 입찰대상물당 평균 6 개의 응찰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 연구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약간 과대평가된 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정들을 민감하게 고려해 보면, 그 결과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실시한 추산들은 이 조사연 구의 목적을 위하여 대표성을 가진다.

이 보고서에서 경제계를 통하여 각인된 건축대상물의 계획의 수와 건축규모의 수에 기초하여 계산이 이루어졌던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공공조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사례수와 건축규모를 기초수치로 활 용하였다.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하여 지하건축규모는 이 계산에서 고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연구진의 논의 결과, 지하건축의 분야에서 도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지상건축에서와 유사한 사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상물별 규제비용과 총 규제비용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조달의 규제비용은 건축비용의 $0 \% \sim 0.2 \%$ 까지 달한다.

그림 38: 대상물별 공공조달 분야에서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건축비 |  | 9,584,733 | 100 | 5.153,113 | 100 | 60,398,960 | 100 | 47,688,748 | 100 | 16,254,896 | 100 | 8,187,439 | 100 |
| 투 자 |  |  |  |  |  |  |  |  |  |  |  |  |  |
| 사례별 규제비용 |  |  |  |  |  |  |  |  |  |  |  |  |  |
| A | 대 지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B | 준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C | 건 물 구 성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  |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신 축 |  | 개축/재건축 |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D | 건 물 기 술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E | 건 물 외 벽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F | 건 물 <br> 지 붕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G | 건 물 <br> 증 축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H | 건물의 <br> 특 수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I | $\begin{aligned} & \text { 건 물 } \\ & \text { 주 변 } \end{aligned}$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J | 건 물 <br> 시 내 <br> 설 비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V | 계 획 <br> 비 용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W | 건 축 <br> 부 대 <br> 비 용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소 계 |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X | 국민 <br> 경제적 <br> 비용 | 9,600 | 0.1 | 9,600 | 0.2 | 13,440 | 0.0 | 9,600 | 0.0 | 9,600 | 0.1 | 9,600 | 0.1 |
| 계 |  | 9,600 | 0.1 | 9,600 | 0.2 | 13,440 | 0.0 | 9,600 | 0.0 | 9,600 | 0.1 | 9,600 | 0.1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입찰자에게 발생하는 형식화비용만 규제비용으로 개념정의했기 때 문에 이러한 형식화비용을 건축대상물과 그 규모에 따라 구별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2011년의 관련되는 건축규모에 따른 규제비용의 계산을 한 결과 매 년 약 6 백만 스위스 프랑의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공공조달의 규제비용 계산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비용 규제비용 | $\begin{gathered} 9,584,733 \\ 9,600 \end{gathered}$ | $\begin{gathered} 5,153,113 \\ 9,600 \end{gathered}$ | $\begin{gathered} 60,398,960 \\ 13,440 \end{gathered}$ | $\begin{gathered} 47,688,748 \\ 9,600 \end{gathered}$ | $\begin{gathered} 16,254,896 \\ 9,600 \end{gathered}$ | $\begin{gathered} 8,187,439 \\ 9,600 \end{gathered}$ |  |  |  |
| 건축비용 대비 규 제비용 | 0.1\% | 0.2\% | 0.0\% | 0.0\% | 0.1\% | 0.1\% |  |  |  |
| 규제비용계산 경제계의 국민경 제적 비용 | 0 | 0 | 1 | 1 | 1 | 2 | 2 | 4 | 6 |
| ※ 이 결과는 사례수와 그 밖의 규모에 따른 개별적인 행위의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br>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 지역적 차이

물론 스위스에서는 공공조달에서 절차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한계 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찰하고 계산함에 있어서 이러 한 차이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했다.

## SPOT 1: 계획자급부의 국민경제적 비용

건축을 주로 하거나 부수적으로 하는 영업에서 영업의 입찰에 있어서는 엄밀하게 표준화된 절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입찰서류의 작성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며 일차적으로 가격과 양해증명서의 교부에 국한되 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보이는 것은 용역조달(계획자급부) 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이다. 특히 건축경쟁을 실시하고 입찰 관련서류에 구상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국민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입찰관련서류들은 가격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 축기술적인 해결을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건축경쟁에 있어서 국민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 경제적 비용은 이 조사연구에서 규제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 조사연구에 서 계산한 규제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이러한 국민경제적 비용의 추산을 해보기로 한다.
3각비교의 의미에서 건축경쟁의 국민경제적 비용은 두 가지 방법론에 따 라 추산한다.

추산방법론 1: 경쟁의 수

- 프로젝트연구의 완성을 위한 비용: 프로젝트 연구 완성에 소요되는 400 시간 X 시간당 120 프랑 $=48,000$ 프랑(가정)
- 건축경쟁당 참가자의 수(건축경쟁에서 사전자격절차와 기타 절차의 혼 합): 5(가정)
- 계산: 48,000 프랑 X 4 X 790 경쟁 $=1$ 억 5200 만 프랑

추산방법론 2: 경쟁에 참가하는 건축가의 수

- 스위스에서 건축사무소의 수: 9,836(2008년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른 일자리 수)
- 경쟁에 참가하는 사무실: $20 \%$
- (경쟁에 참가하는) 사무실 당 년간 경쟁의 수: 2(가정)
- 9,836 X $20 \%$ X $2=3,934$ 건의 경쟁 X 48,000 프랑 $=1$ 억 8800 만 프랑 앞에서 서술한 계산은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 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20개 또는 그 이상의 건축가팀이 응모하는 것도 가 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19 개의 프로젝트에 48,000 프랑을 곱하여 총 912,000 프랑의 국민경제적 비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규모를 정당화키 기 위해서는 이미 개별적 건축대상물에 대한 상당한 건축규모가 필요하다. 단순한 가정에 기초한 추산을 해보면, 스위스에서 건축경쟁을 통한 국민 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2 억 프랑에 이른다는 것이 납득할 만하다. 특히 입찰응모자를 기분나쁘게 하는 것은, 입찰응모자에게 가산금이 부여되지 만, 정치적, 법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행할 수 없 는 프로젝트들이다.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


## 13.3 규제비응에 관한 토의

앞에서 언급한 규제비용은 특히 다음과 같은 편익과 대비된다.

- 보다 더 잘 기능하는 경쟁을 통한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가격
- 공적 조달에 관한 투명성
- 모든 기업들에게 공적인 위탁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기회균등)
- 공공기관의 경우 '후견주의'의 위험이 많이 줄어든다.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조사 연구의 임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규모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조사연구에서 추산한 6 백만 프랑의 규제비용과 스위스 연방 경제사무국(SECO)의 위탁에 따라 수행된 연구보고서67)가 추산 한 스위스에서의 공공조달제도의 조화와 자유화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게 나타나는 절감이다. 스위스 연방 경제사무국(SECO)의 위탁에 따라 수행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연방법(BöB)'과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Kanton간 협정(IVÖB)'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엇 보다도 건축제도에서 (비교가능한) 입찰가격이 1980년대 가격수준에 비하여 중간수준으로 약 $2.5 \%$ 하락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 한 하락을 2011년의 지상건축에서 관련되는 공적 입찰규모인 약 610 억 스위스 프랑과 관련지워보면, 조세부담자들의 관점에서는 매년 약 1 억 5000 만 스위스 프랑을 절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연구의 연구진은 공공기관의 조달제도에 서 가격수준은 항상 $3.8 \%$ 로서 완전한 경쟁의 상황에서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 적어도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볼 때 - 조달제도에서 각종 개선조치들이 이 조사연구에서 산정된 좁은 의
67) Felder. S./Podgorski, C., 2009.

미의 규제비용과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달제도에서 각종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 13.4 개선을 위한 제안

### 13.4.1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주제들

공공 조달에 근거한 비용수준의 변화와 관련한 Felder와 Podgorskio 의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특히 입찰 기준에서 가격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 방식과 Kanton과 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Kanton간 협정(IVöB)'에 규정된 것 보다 더 낮은 한계치를 자유롭게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68)
또한 의회사무처가 2002년에 발표한 보고서69)에서는 국가적 과제를 점증적으로 행정의 외부에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따라서 누가 공공 조달제도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물음이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Felder와 Podgorskio가 말하는 공공 조달제도의 자유화가 보다 강력하게 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관점에도 의미를 부여 해야 할 것이다.
Peter Balastèr70)는 경제지(Volkswirtschaft)에 발표한 글에서 경쟁중심 적인 조달제도가 왜 경제계에도 이로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첫 번째 논증에 따르면, 국가가 과도하게 비싼 제품을 구입하면 이것은 조세납부자들에게 부담으로 되고, 따라 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주체들에게도 부담으로 되기 때문이라 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부터 이익을 보는 자들은 효율성이 떨어
68) Felder. S./Podgorski, C., 2010.
69) Zogg, S./Dupprut, J., 2002.
70) Balastèr, P., 2010.

지고 따라서 경쟁능력을 덜 갖춘 기업들로서 효율적인 기업의 비용으 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 또한 Balastèr는 특히 건축제도 와 관련되는 조달제도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주제영역을 언 급하고 있다.

- 이의신청 가능성의 제한은 위탁의 규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연비용에 따라 서 행해져야 한다.
- 행정비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계치를 높여서는 안된다.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입찰의 경우 효율적인 절차(예: 전자정부에 의한 해결)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 조달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표준화된 급부의 조달이 잘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제도에서 대부분의 급부들은 높은 규범밀도로 인하여 표준화된 급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 입찰관련서류에 대한 국민경제적으로 의미있는 비용들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찰관련서류들은 표준화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건축경쟁이나 계획자급부와 같이 조달이 표 준화되지 않은 급부인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입찰관련서류의 작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비용이 서열이 낮은 기업들에게는 비관적이 라는 점이다. 예컨대, 계획자위탁에 관한 공공조달의 경우 국민경제적 비용을 다루면서 경험적 데이터를 원용하여 그 비용을 추산한 St. Gallen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71), "공개된 절차에서는 놀랍게도 국민경 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 적은 가치를 가지는 위탁의 경우 에도 국민경제적 비용이 100,000 프랑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드물고 따라서 대부분의 적은 사례에서는 실제 조달가격의 $50 \%$ 이상이 된다.
71) Jaeger, F./Höppli, T./Atzenweiler, O., 2006.

선별적 절차에서 낙찰된 위탁들과 비교해보면, 절차의 두 단계가 진행 되는 동안에는 국민경제적 비용이 공개된 절차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규모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입찰공고절차에서 나타난 경험적 데이터 를 보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참가한 모든 계획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공개된(그리고 선별된) 절차의 경우 보다 분명하게 더 적다".
St. Gallen 대학 연구보고서의 연구진은 개선조치로서 특히 입찰공고 를 통하여 유발되는 국민경제적 비용의 한계치를 최적화(일반적으로 한계치의 증대)와 절차에서의 효율성 증대 및 적용된 도구의 효율성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

### 13.4.2 BHP-Hanser und Partner 주식회사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의 결론

6백만 스위스 프랑의 규제비용은 건축법에서의 총 규제비용의 맥락 에서 보면 본질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추산 에서는 ‘잃어버린 입찰관련서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국민경제적 비용을 규제비용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연구 진의 대략적인 산정에 기초해보면, 이러한 비용은 건축사무소에만 발 생하고 그것도 2 억 스위스 프랑까지 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공공조달에도에서 국민경제적 편익은 발생한 규제비용보다 몇 배나 더 많다. 이러한 편익은 일차적으로 입찰을 공고하는 국가에게 낮은 가격의 형식으로 돌아가는 반면, 기업들은 보다 엄격화된 가격경쟁과 보다 강력한 효율성지향에 놓이게 된다.

원래의 규제비용인 6 백만 스위스 프랑은 무시해도 좋은 정도로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공공조달제도에서 최적화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국 민경제적 비용의 저감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전문문헌, 참여한 전문 가들과의 토의 및 연구진의 독자적인 조사 등에 의하면, 최적화가능성 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접근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실제로 적정한 공급자의 조기 제한(예: 다이얼로그 절차의 활용, 결과중심적인 입찰공고, 입찰서류의 질 개선, 한계치에 관한 Kanton간의 조화 및 이렇게 조화된 한계치의 최대한의 활용)
- 입찰플랫폼인 SIMAP의 가능성의 개편


## 14. 조사연구 결과의 요약

제 3 장부터 제 13 장에서는 행의의무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룹에 대 한 규제비용을 개별적으로 추산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전체적 건축대상물당 이행되고 있다. 행위의무에 근 거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개별적인 조치들은 부분적으로는 다른 주제 분야에서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성의 이유에서 점증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동시에 소음보호의 부담사항의 일부도 충 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보고서에 서술된 모든 규제비용을 더하는 경우 에는 모든 비용의 총계가 일반적으로 현실태를 과도평가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래의 표에서는 첫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건축물 당 규제비용과 모든 규제비용의 계산을 종합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 는 어느 정도까지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세번째 단계 에서는 개관하기 위하여 이러한 잉여를 소거하였다. ${ }^{72)}$

잉여를 가진 아래의 개요표를 보면, 신축의 사례예시의 경우 총 규 제비용은 $1.7 \% \sim 4.4 \%$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17.8 \% \sim 32.3 \%$ 의 규제비용이 예상된다. 특히 학교개축의 사례 예시의 경우 잉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계산을 함 에 있어 이러한 사례예시가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므로 추산된 규제비 용이 왜곡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 불명확하다.
72) 소거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의무가 잉여인지를 검토하였다. 예컨대, 두개의 행위의무가 잉여이라고 인식된 경우에는 전제고찰에서 적은 비용을 가지는 행위의 무를 소거하였다. 세 개의 행위의무가 잉여인 경우에는 보다 적은 비용을 가지는 두 개의 행위의무를 소거하였다.
그림 40: 대상물별 건축법상 규제비용에 대한 개요

| 대상물당 규제비용 | 주거용 주택 |  |  |  | 사무용 건축물 |  |  |  | 학교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프 랑 | \% |
| 건축허가 신청 | 23,566 | 0.2 | 27,444 | 0.5 | 48,760 | 0.1 | 52,888 | $0 . .1$ | 25,725 | 0.2 | 28,413 | 0.3 |
| 화재보호 | 50,827 | 0.5 | 210,216 | 4.1 | 1,639,018 | 2.7 | 2,934,445 | 6.2 | 113,617 | 0.7 | 444,912 | 5.4 |
| 에너지조치 | 400 | 0.0 | 393,935 | 7.6 | 800 | 0.0 | 2,393,558 | 5.0 | 209,104 | 1.3 | 693,123 | 8.5 |
| 장애없는 <br> 건축 | 9,600 | 0.1 | 102,379 | 2.0 | 192,417 | 0.3 | 610,227 | 1.3 | 124,828 | 0.8 | 338,274 | 4.1 |
| 주차 | 450 | 0.0 | 28,314 | 0.5 | 134,952 | 0.2 | 509,905 | 1.1 | - | 0.0 | - | 0.0 |
| 시민보호 | 76,530 | 0.8 | 42,659 | 0.8 | - | 0.0 | - | 0.0 | - | 0.0 | - | 0.0 |
| 지진보호 | - | 0.0 | 181,656 | 3.5 | - | 0.0 | 984,168 | 2.1 | - | 0.0 | 134,028 | 1.6 |
| 보건/위생 | - | 0.0 | 24,353 | 0.5 | 211,325 | 0.3 | 2,302,120 | 4.8 | 185,782 | 1.1 | 750,196 | 9.2 |
| 소음보호 | - | 0.0 | 6,249 | 0.1 | - | 0.0 | 579,415 | 1.2 | - | 0.0 | 845,872 | 10.3 |
| 근로보호 | - | 0.0 | 5,000 | 0.1 | 5,000 | 0.0 | 30,000 | 0.1 | 85,859 | 0.5 | 85,481 | 1.0 |
| 규제비용 <br> (B-W) | 161,373 | 1.7 | 1,022,205 | 19.8 | 2,232,272 | 3.7 | 10,396,716 | 21.8 | 744,915 | 4.6 | 3,320,298 | 40.6 |
| 잉여 | -1,050 | 0.0 | -105,273 | -2.0 | -930 | 0.0 | -659,196 | -1.5 | -29,393 | -0.2 | -672,140 | -8.2 |
| 잉여를 포함 한 규제비용 | 160,323 | 1.7 | 918,933 | 17.8 | 2,231,342 | 3.7 | 9,701,520 | 20.3 | 715,522 | 4.4 | 2,648,158 | 32.3 |
|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  |  |  |  |  |  |  |  |  |  |  |  |

재건축과 신축의 규제비용의 경우 비교적 높은 비율은 동일한 재건 축과 개축의 경우 모든 부담사항들은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는 본 조 사연구의 가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개축하는 건 축물은 단지 특정한 부담사항만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여기서 서 술한 총계를 극단적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이해한다. 게다가 실무에서 는 재건축과 개축의 경우 규제비용이 일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치 를 초과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달리 행동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건축 주의 입장에서는 규제비용을 취급함에 있어 두 개의 전략이 있다. 하 나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전체적 개축을 포기하고 건축물을 외부적인 상대로만 두는 것이다(이른바 허위 리노베이션). 이를 통하여 건축주 는 또 다른 부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한계치 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규제비용의 형식으로 대규모의 과다비용이 발생하는 건축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수선이나 재건축이 적정한 방식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규제비용에 대한 본 조사연구의 연구진의 계산은 재건축과 개축 규 모의 각각 일부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스위스에서의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평균적인 침해강도를 함께 포함함으로써 건축주의 이 러한 행위양식에 맞추었다.
아래의 그림은 기업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2011년 지상건축규모와 관련하여 건축법상 추산된 매년 절대적인 규제비용의 개요를 제시하 고 있다.
그림 41: 2011년 경제계의 지상건축규모와 관련한 규제비용의 개요(고려된 지상건축규모: 296억 스위스 프랑)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허가신청 | 81 | 294 | 55 | 211 | 5 | 11 | 141 | 516 | 657 |
| 화재보호 | 98 | 35 | 134 | 93 | 5 | 10 | 237 | 139 | 376 |
| 에너지조치 |  | 67 | - | 91 | 7 | 13 | 7 | 170 | 177 |
| 장애없는 건축 | 10 | 9 | 11 | 11 | 4 | 6 | 25 | 26 | 52 |
| 주차 | 1 | 5 | 10 | 16 | - | - | 11 | 21 | 32 |
| 시민보호 | 120 | 3 | - | - | - | - | 120 | 3 | 123 |
| 지진보호 | - | 21 | - | 22 | - | 2 | - | 44 | 44 |
| 보건/위생 | - | 4 | 16 | 75 | 6 | 14 | 23 | 92 | 115 |
| 소음보호 | - | 1 | - | 18 | - | 14 | - | 34 | 34 |
| 근로보호 | - | 12 | 0 | 48 | 3 | 2 | 4 | 62 | 66 |
| 규제비용(B-W) | 310 | 450 | 227 | 586 | 31 | 71 | 568 | 1,107 | 1,675 |
| 공공조달 | 0 | 0 | 1 | 1 | 1 | 2 | 2 | 4 | 6 |
| 공공조달의 국민 경제적 비용을 포 함한 규제비용 | 310 | 450 | 227 | 587 | 32 | 74 | 570 | 1,111 | 1,681 |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허가신청 | 3 | 11 | 1 | 4 | 0 | 0 | 4 | 15 | 20 |
| 화재보호 | - | 16 | - | 4 | - | 2 | - | 22 | 22 |
| 에너지조치 | - | - | - | 3 | - | - | - | 3 | 3 |
| 장애없는 건축 | - | - | - | - | 1 | 2 | 1 | 2 | 3 |
| 주차 | - | - | - | - | - | - | - | - | - |
| 시민보호 | 0 | 0 | - | - | - | - | 0 | 0 | 1 |
| 지진보호 | - | - | - | - | - | - | - | - | - |
| 보건/위생 | - | - | - | - | - | 2 | - | 2 | 2 |
| 소음보호 | - | 1 | - | 16 | - | 6 | - | 23 | 23 |
| 근로보호 | - | - | - | - | - | - | - | - | - |
| 규제비용(B-W) 공공조달 | 4 | 28 | 1 | 26 | 1 | 13 | 6 | 67 | 73 |
| 공공조달의 국민 경제적 비용을 포 함한 규제비용 | 4 | 28 | 1 | 26 | 1 | 13 | 6 | 67 | 73 |


|  | 주거용 주택 |  | 사무용건축물 |  | 학교용건축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신 축 | 개 축 | 총 계 |
| 건축허가신청 | 78 | 283 | 53 | 207 | 5 | 10 | 137 | 501 | 637 |
| 화재보호 | 98 | 19 | 134 | 90 | 5 | 9 | 237 | 117 | 354 |
| 에너지조치 | - | 67 | - | 88 | 7 | 13 | 7 | 167 | 175 |
| 장애없는 건축 | 10 | 9 | 11 | 11 | 3 | 4 | 24 | 24 | 48 |
| 주차 | 1 | 5 | 10 | 16 | - | - | 11 | 21 | 32 |
| 시민보호 | 119 | 3 | - | - | - | - | 119 | 3 | 123 |
| 지진보호 | - | 21 | - | 22 | - | 2 | - | 44 | 44 |
| 보건/위생 | - | 4 | 16 | 75 | 6 | 12 | 23 | 90 | 113 |
| 소음보호 | - | 0 | - | 3 | - | 8 | - | 11 | 11 |
| 근로보호 | - | 12 | 0 | 48 | 3 | 2 | 4 | 62 | 66 |
| 규제비용(B-W) | 306 | 422 | 226 | 560 | 30 | 59 | 562 | 1,040 | 1,602 |
| 공공조달 | 0 | 0 | 1 | 1 | 1 | 2 | 2 | 4 | 6 |
| 공공조달의 국민 경제적 비용을 포 함한 규제비용 | 307 | 422 | 226 | 561 | 31 | 61 | 564 | 1,044 | 1,608 |

[^1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잉여없는) 규제비용이 약 10 억 6 천만 스위스 프랑이 도출된다는 점이다. 잉여는 $4 \%$ 에 달하 고, 따라서 제 3 장에서부터 제 13 장에 이르기까지 규제비용에 대한 개 별주제별 논의를 할 경우에 이를 무시할 수 있다.

규제비용의 3 분의 2 는 재건축분야와 개축분야에서 발생한다. 재건축 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보다 많은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편익 과 관련된 요구사항 내지 요건의 변경이나 법령상의 규정의 변경때문 이다. 30 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그 당시와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따라서 현재 건축물에 대한 건축상의 변경을 해야 하 는 경우에는 현재의 요건에 상응하는 재건축 또는 개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축의 경우 규제비용은 일차적으로 화재보호, 시민보호 및 건축허 가신청 분야에서 발생한다. 재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경우 특히 건축 허가신청, 화재보호, 에너지 조치 및 보건/위생 분야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분석의 결과들은 법령상의 조치로써 주어진 건축물의 상태를 지속 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시키기 어려운 점을 반영 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부록 A - Kanton과 자치단체의 관련 법령 } \\
& \text { 아래의 관련 법령들은 이 조사연구보고서와 관련된 법령들이거나 } \\
& \text { 이 조사연구에서 원용한 법령들이다. }
\end{aligned}
$$

## Zürich Kanton

Allgemeine Bauverordnung vom 22. Juni 1987 (ABV)
Bauverfahrensverordnung vom 3. Dezember 1997 (BVV)
Besondere Bauverordnung I vom 6. Mai 1981 (BBV I)
Besondere Bauverordnung II vom 26. August 1981 (BBV II)
Einführungsverordnung zu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vom 16. April 1997

Energiegesetz (EnerG) vom 19. Juni 1983; Version in Kraft seit 1. Juli 2010 (730.1).

Gesetz über den Betritt des Kantons Zürich zur Interkantonalen Vereinbarung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vom 15. März 2001 (Beitrittsgesetz; vom 15. September 2003; in Kraft seit 1. Januar 2004); LS 720.1.

Gesetz über die Raumplanung und das öffentliche Baurecht (Planungsund Baugesetz) vom 7. September 1975.

Gesetz über die Raumplanung und das öffentliche Baurecht (Planungsund Baugesetz) vom 7. September 1975; Version in Kraft seit 1. Januar 2007.

Submissionsverordnung (vom 23. Juli 2003; in Kraft seit 1. Januar 2004) ; LS 720.11.

Verordnung über den allgemeinen Brandschutz vom 8. Dezember 2004 (VVB)

Verordnung über die ordentlichen technischen und übrigen Anforderungenan Bauten, Anlagen, Ausstattungen und Ausrüstungen (Besondere Bauverordnung I: BBV I) vom 6. Mai 1981; Version in Kraft seit 1. Juli 2005 (700.21)

Wegleitung zur Regelung des Parkplatz-Bedarfs in kommunalen Erlassen Oktober 1997, gemäss Massnahme PV2 des Luft-Programms 1996.

## Zürich 시(Zürich Kanton)

Absturzsicherung am Hochbau, Richtlinie vom 1. September 2011
Allgemeine Polizeiverordnung vom 6. April 2011 (APV)
Bau- und Zonenordnung vom 23. Oktober 1991
Gebürenordnung für das Baubewilligungsverfahren vom 4. Dezember 2002 Parkplatzverordnung vom 11. Dezember 1996

Reglement Ausführungsbestimmungen zu den Tarifen des Elektrizitätswerks der Stadt Zürich(ewz 2)

Reglement über den Betrieb des Verteilnetzes und die Energielieferung des Elektrizitätswerks der Stadt Zürich(ewz)

## Basserdorf 시(Zürich Kanton)

Bau- und Zonenordnung (inkl. Änderungen der Bau und Zonenordnung) Gebührenreglement vom 1. Juli 2009

Abfallverordnung vom 22. Oktober 2009
Parkierungsreglement vom 15.03.2004
Polizeiverordnung vom 23. März 2010

## Hausen am Albis 시(Zürich Kanton)

Allgemeine Bedingungen und Auflagen der Baukommission vom 3. Februar 2010

Bau und Zonenordnung (inkl. Revisionen)
Polizeiverordnung vom 11. Juni 2012
Gebührenreglement über die Abfallbewirtschaftung 2012
Auflagen Grabenarbeiten

## Bern Kanton

Energiegesetz vom 14. Mai 1981 (ENG)
Feuerschutz- und Feuerwehrgesetz vom 20. Januar 1994 (FFG)
Feuerschutz- und Feuerwehrverordnung vom 11. Mai 1994 (FFV)
Dekret über das Baubewilligungsverfahren vom 22. März 1994 (BewD) Baugesetz vom 9. Juni 1985 (BauG)

Bauordnung der Stadt Bern (BO) vom 24. September 2006 (Fassung vom 23.11.2009)

Bauverordnung vom 6. März 1985 (BauV)
Strassengesetz vom 4. Juni 2008 (SG) und zugehörige Strassenverordnung vom 29. Oktober 2008 (SV)

Gesetz über die Erhaltung von Wohnraum vom 9. September 1975 (WErG)
Verordnung über die Erhaltung von Wohnraum vom 2. Juni 1976 (WErV)
Koordinationsgesetz vom 21. März 1994 (KOG)
Gesetz über Gewässerunterhalt und Wasserbau vom 14. Februar 1989 (Wasserbaugesetz, WBG)

## Bern 시(Bern Kanton)

Tarif für die Direktanlieferung von Kehrichtabfällen
Abfallreglement vom 25. September 2005
Tarif über die Abfallentsorgung vom 8.November 2006
Abfallverordnung vom 8. November 2006
Reglement zur Bekämpfung des Baulärms vom 15. Mai 1970

Bauordnung der Stadt Bern vom 24. September 2006
Reglement Energie Wasser Bern vom 15. März 2001
Gebührenreglement
Reglement zur Bekämpfung des Betriebs- und Wohnlärms vom 4. Juni 1961

Verfahrensoptimierungsverordnung vom 23. Januar 2008
Reglement über die Verhütung von Unfällen bei Bauarbeiten

## Brügg 시(Bern Kanton)

Abfallreglement
Abfallverordnung
Baureglement (inkl. öffentliche Auflage vom 27. November 2012)
Elektrizitätsreglement vom 6. Dezember 2012
Elektrizitätsverordnung vom 14. Dezember 2012
Gebührenverordnung vom 7. Dezember 2009
Gemeindepolizeireglement vom 27. November 2008

## Hasliberg 시(Bern Kanton)

Abfallreglement
Baureglement vom Juli 2010
Gebührentarif zum Abfallreglement

## St. Gallen Kanton

Baugesetz vom 6. Juni 1972
Einführungsverordnung zum ZGB vom 14. Dezember 1945
Energiegesetz vom 26. Mai 2000
Energieverordnung vom 27. März 2001
Gesetz über die Verwaltungsrechtspflege vom 16. Mai 1965

Koordinationsgesetz in Bausachen vom 18. Juni 1998
Koordinationsverordnung in Bausachen vom 24. November 1998
Raumplanungsverordnung vom 2. April 1974
Regierungsbeschluss über den Vollzug von Art. 77 Abs. 2 und Art. 87bis des Baugesetzes vom 25. Juni 1996

Strassengesetz vom 12. Juni 1988
Strassenverordnung vom 22. November 1988
Vollzu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en Feuerschutz vom 9. Dezember 1969

Wasserbaugesetz vom 17. Mai 2009
Wasserbauverordnung vom 10. November 2009
Verordnung zum Gesetz über Wohnbau und Eigentumsförderung vom 18.Januar 1993

Gesetz über Wohnbau und Eigentumsförderung vom 9. Januar 1992

## Will 시(St. Gallen Kanton)

Abfallreglement (inkl. Nachtrag I)
Baureglement (inkl. Nachträge I-IV)
Feuerschutzreglement
Lärmschutzverordnung vom 29. Dezember 1947
Polizeireglement vom 3. Juli 2008
Reglement Elektrizitätsversorgung vom 11. Dezember 1991 (inkl. Nachträge I-II)

Reglement för das Architektenkollegium der Stadt Will vom 2. März 2011

## Wittenbach 시(St. Gallen Kanton)

Reglement über die Abfallentsorgung vom 15. August 2001
Baureglement am 7. März 2012

Reglement über die Abgabe elektrischer Energie vom 8. April 1986
Allgemeine Schutzverordnung vom 12. Dezember 1986

## Benken 시(St. Gallen Kanton)

Baureglement
Reglement für die Elektrizitätsversorgung der Gemeinde Benken vom 14. November 2008

Schutzverordnung

## Genf Kanton

Loi sur les constructions et les installations diverses (LCI).
Loi sur l'énergie (LEn)
Loi sur les routes (LRoutes)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s démolitions, transformations et rénovations de maisons d'habitation (RDTR).

Règlement concernant les ascenseurs et monte-charge (RAsc).
Règlement concernant les mesures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dans le domaine de la construction (RMPHC)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s constructions et les installations diverses (RCI).

Règlement relatif aux places de stationnement sur fonds privés (RPSFP).
Règlement sur les chantiers (RChant)
Règlement concernant les mesures de préservation et de lutte contre l'incendie ainsi que l'emploi de certains objets (RMPLI)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a prévention des sinistres, l'organisation et l'intervention des sapeurs-pompiers (RPSSP)

## Wallis Kanton

Gesetz über den Wasserbau vom 15. März 2007
Verordnung über den Wasserbau vom 5. Dezember 2007
Verordnung betreffend die Fördermassnahmen im Energiebereich (VFöEn) vom 27. Oktober 2004

Reglement zur Festlegung des Tarifs der kantonalen Leistungen in Sachen Baulandumlegungen vom 19. Dezember 2008

Strassengesetz vom 3. September 1965
Ausführungsreglement der Bundesverordnung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RUVPV) vom 29. November 2011

Reglement betreffend die Förderungsmassnahmen in Sachen Raumplanung vom 20. Juni 1990

Beschluss über die Raumplanungsziele vom 2. Oktober 1992
Verordnung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vom 11. Juni 2003
Gesetz über die Landumlegung und die Grenzregulierung vom 16. November 1989

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kUSG) vom 18. November 2010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GZS) vom 10. September 2010
Gesetz zum Schutz gegen Feuer und Naturelemente vom 18. November 1977

Beschluss über die Erhaltung der Bausubstanz ausserhalb der Bauzonen vom 22. Dezember 1993

Energiegesetz vom 15. Januar 2004
Energieverordnung vom 9. Februar 2001
Verordnung betreffend Brandverhütungsmassnahmen vom 12. Dezember 2001

Beschluss betreffend die Kriterien zur Festlegung der Prioritäten für den Bau, die Korrektion und Wiederinstandstellung der Strassen und öffentlichen Verkehrswege vom 29. September 1993

Bauverordnung vom 2. Oktober 1996
Gesetz zur Ausfüh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Raumplanung vom 23. Januar 1987

Aus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AZV) vom 26. Januar 2011

Baugesetz vom 8. Februar 1996

## Sion 시(Wallis Kanton)

Réglement de construction et de zones
Règlement communal de police
Règlement communal pour la fondation d'une société régionale d'approvisionnement et de distribution d'énergie électrique

## Zermatt 시(Wallis Kanton)

Bau-und Zonenreglement
Ableitung und Behandlung der Abwasser
Reglement über den Erst- und Zweitwohnungsbau/Reglement über die Kontingentierung von Zweitwohnungen

Lärmbekämpfungsreglement

## Fully 시(Wallis Kanton)

Règlement sur la Gestion des Déchets
Règlement de construction (incl. la modification partielle)

|  | 공공위탁자 |  |  |  | 민간위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물공급시설 | 132 | 135877 | 182 | 128052 | 25 | 4500 | 33 | 12760 |
| 전기시설 및 전기공급망 | 79 | 82070 | 95 | 202517 | 140 | 576168 | 110 | 231883 |
| 가스시설 및 가스공급망, 화학설비 | 23 | 71378 | 10 | 16084 | 16 | 29233 | 26 | 9151 |
| 원거리난방시설 | 16 | 61346 | 17 | 30478 | 30 | 63817 | 15 | 6463 |
| 기타 공급시설 | 11 | 17273 | 27 | 14707 | 59 | 10719 | 74 | 24578 |
| 오수처리시설 | 126 | 114496 | 192 | 190291 | 46 | 5578 | 23 | 12066 |
| 오물처리시설 | 75 | 196096 | 23 | 16383 | 8 | 484 | 11 | 2302 |
| 기타 오물처리시설 | 36 | 23335 | 43 | 18816 | 21 | 18085 | 50 | 7359 |
| 국가도로 | 8 | 713369 | 19 | 1078709 | - | - | - | - |

[부록-2]

|  | 공공위탁자 |  |  |  | 민간위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Kanton도로 | 130 | 565096 | 169 | 467916 | - | - | 1 | - |
| 자치단체도로 | 156 | 93721 | 398 | 420272 | - | - | 1 | 15 |
| 기타 도로시설, 주차시설 | 137 | 58842 | 168 | 98961 | 234 | 80195 | 322 | 42690 |
| 주차건물 | 11 | 12015 | 5 | 1975 | 26 | 82987 | 24 | 41935 |
| 기차시설 | 32 | 1635617 | 214 | 1203537 | 42 | 136193 | 208 | 336508 |
| 버스 및 트람시설 | 35 | 248850 | 15 | 34435 | 3 | 262 | - | - |
| 배교통시설 | 3 | 781 | 4 | 26712 | 10 | 1194 | 12 | 1971 |
| 항공교통시설 | 2 | 575 | 7 | 16798 | 1 | 161540 | 12 | 121124 |
| 전화시설 | 133 | 594671 | 245 | 73310 | 55 | 9514 | 113 | 5743 |
| 기타 교통시설 | 20 | 7353 | 16 | 10636 | 16 | 4784 | 23 | 2282 |
| 학교, 교육제도(고졸까지) | 82 | 344226 | 413 | 600707 | 19 | 98693 | 96 | 77359 |
| 고등교육시설 및 연구 | 4 | 328350 | 60 | 263358 | 6 | 257795 | 20 | 16498 |
| 응급구호시설, 일반구호 시설 | 6 | 121451 | 68 | 286553 | 4 | 23994 | 46 | 175198 |


|  | 공공위탁자 |  |  |  | 민간위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숙박, 간호 또는 상담기능 을 가진 요양원 | 10 | 95609 | 57 | 187059 | 24 | 286418 | 118 | 229887 |
| 기타 특수화된 보건시설 | 4 | 8117 | 17 | 21359 | 8 | 31568 | 39 | 62394 |
| 휴양시설, 관광시설 | 121 | 145218 | 210 | 158096 | 183 | 207915 | 266 | 154645 |
| 교회 및 종교 건축물 | 15 | 8096 | 64 | 40638 | 12 | 14384 | 73 | 40704 |
| 박물관, 도서관 및 동상을 포함한 문화건축물 | 8 | 67214 | 77 | 125558 | 17 | 29212 | 52 | 41810 |
| 체육관 및 운동장 | 18 | 73546 | 35 | 50401 | 12 | 31103 | 17 | 5312 |
| 도랑가, 강가 및 바낫가 벽 설치 | 41 | 53697 | 101 | 119767 | 6 | 1460 | 45 | 5416 |
| 국방용도 축물 | 20 | 34301 | 183 | 202476 | 2 | 399 | 13 | 485 |
| 기타 기반시설 | 106 | 99200 | 170 | 71922 | 216 | 50803 | 476 | 46156 |
| 비어있는 단독주택 | 4 | 4482 | 51 | 8987 | 7028 | 5354463 | 13039 | 1783264 |
| 입주된 단독주택 | - | 4978 | 7 | 1790 | 901 | 1106926 | 2289 | 308610 |

[부록-2]

|  | 공공위탁자 |  |  |  | 민간위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다가구주택(다수의 거주 지를 가진 순수한 주택) | 31 | 191609 | 105 | 67157 | 3053 | 12172127 | 7239 | 2616341 |
| 부수시설을 가진 주거용 건축물(농가포함) | 6 | 63637 | 120 | 90224 | 381 | 2654857 | 3445 | 1330633 |
| 간호 내지 상담기능을 가 지지 않은 요양시설 | 4 | 75618 | 14 | 50664 | 11 | 128799 | 29 | 51303 |
| 주거용건축물과 관련한 주차장, 주차시설 및 주 차공간 | 41 | 17702 | 27 | 9564 | 1657 | 199460 | 1622 | 74797 |
| 기타 주거용건축물과 관 련한 건축시설 | 18 | 783 | 20 | 1964 | 1709 | 84220 | 3061 | 131229 |
| 농업용건축물 | 30 | 8930 | 77 | 19827 | 1121 | 317185 | 1661 | 238471 |
| 산림용건축물 | 86 | 41708 | 69 | 15739 | 17 | 1875 | 21 | 2886 |
| 토지개량 | 31 | 14314 | 24 | 12701 | 19 | 3752 | 73 | 5877 |
| 공장시설 | 23 | 75153 | 99 | 92230 | 365 | 1206420 | 1120 | 744026 |



|  |  | 공공 |  |  |  | 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창고, 보관소 등 | 44 | 46302 | 58 | 28054 | 396 | 526042 | 470 | 232460 |
| 사무용건축물, 행정건축물 | 22 | 435338 | 376 | 476650 | 142 | 1790135 | 787 | 1055492 |
| 백화점, 상업용건축물 | 14 | 71730 | 627 | 93008 | 144 | 742800 | 805 | 660163 |
| 식당, 호텔 | 4 | 9124 | 49 | 51394 | 6 - | 272021 | 762 | 434821 |
| 기타 숙박시설 | 4 | 3973 | 15 | 9344 | 11 | 30897 | 50 | 18758 |
| 기타 경제적 목적의 사용 | 29 | 5316 | 61 | 13070 | 203 | 40759 | 586 | 74670 |
| 계 | 1993 | 7082483 | 5103 | 7220850 | 18459 | 28851736 | 39378 | 11478495 |
| 2011년의 건축지출과 2011년에 완료된 프로젝트 수 <br> 출처: BFS-Baustatistik(Bearbeitet von BHP-Hanser und Partner AG) |  |  |  |  |  |  |  |  |

[부록-2]

|  | 총 계 |  |  |  | 사례당 비용(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물공급시설 | 157 | 140377 | 215 | 140812 | 1029 | 704 | 180 | 387 |
| 전기시설 및 전기공급망 | 219 | 658238 | 205 | 434400 | 1039 | 2132 | 4115 | 2108 |
| 가스시설 및 가스공급망, 화학설비 | 39 | 100611 | 36 | 25235 | 3103 | 1608 | 1827 | 352 |
| 원거리난방시설 | 48 | 125163 | 32 | 36941 | 3408 | 1793 | 2127 | 431 |
| 기타 공급시설 | 70 | 27992 | 101 | 39285 | 1570 | 545 | 182 | 332 |
| 오수처리시설 | 172 | 120074 | 215 | 202357 | 909 | 991 | 121 | 525 |
| 오물처리시설 | 83 | 196580 | 34 | 18685 | 2615 | 712 | 61 | 209 |
| 기타 오물처리시설 | 57 | 41420 | 93 | 26175 | 648 | 438 | 661 | 147 |
| 국가도로 | 8 | 713369 | 19 | 1078709 | 89171 | 56774 | - | - |
| Kanton도로 | 130 | 565096 | 170 | 467916 | 4347 | 2769 | - | - |
| 자치단체도로 | 156 | 93721 | 399 | 420287 | 601 | 1056 | - | 15 |
| 기타 도로시설, 주차시설 | 371 | 139037 | 490 | 141651 | 430 | 589 | 343 | 133 |



|  | 총 계 |  |  |  | 사례당 비용(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주차건물 | 37 | 95002 | 29 | 43910 | 1092 | 395 | 3192 | 1747 |
| 기차시설 | 74 | 1771810 | 422 | 1540045 | 51113 | 5624 | 3243 | 1618 |
| 버스 및 트람시설 | 38 | 249112 | 15 | 34435 | 7110 | 2296 | 87 | - |
| 배교통시설 | 13 | 1975 | 16 | 28683 | 260 | 6678 | 119 | 164 |
| 항공교통시설 | 3 | 162115 | 19 | 137922 | 288 | 2400 | 161540 | 10094 |
| 전화시설 | 188 | 604185 | 358 | 79053 | 4471 | 299 | 173 | 51 |
| 기타 교통시설 | 36 | 12137 | 39 | 12918 | 368 | 665 | 299 | 99 |
| 학교, 교육제도(고졸까지) | 101 | 442919 | 509 | 678066 | 4198 | 1454 | 5194 | 806 |
| 고등교육시설 및 연구 | 10 | 586145 | 80 | 279856 | 82088 | 4389 | 42966 | 825 |
| 응급구호시설, 일반구호 시설 | 10 | 145445 | 114 | 461751 | 20242 | 4214 | 5999 | 3809 |
| 숙박, 간호 또는 상담기능 을 가진 요양원 | 34 | 382027 | 175 | 416946 | 9561 | 3282 | 11934 | 1948 |

[부록-2]

|  | 총 계 |  |  |  | 사례당 비용(프링)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기타 특수화된 보건시설 | 12 | 39685 | 56 | 83753 | 2029 | 1256 | 3946 | 1600 |
| 휴양시설, 관광시설 | 304 | 353133 | 476 | 312741 | 1200 | 753 | 1136 | 581 |
| 교회 및 종교 건축물 | 27 | 22480 | 137 | 81342 | 540 | 635 | 1199 | 558 |
| 박물관, 도서관 및 동상을 포함한 문화건축물 | 25 | 96426 | 129 | 167368 | 8402 | 1631 | 1718 | 804 |
| 체육관 및 운동장 | 30 | 104549 | 52 | 55713 | 4086 | 1440 | 2592 | 312 |
| 도랑가, 강가 및 바낫가 벽 설치 | 47 | 55157 | 146 | 125183 | 1310 | 1186 | 243 | 120 |
| 국방용도 축물 | 22 | 34601 | 196 | 202961 | 1715 | 1106 | 150 | 37 |
| 기타 기반시설 | 322 | 150003 | 646 | 118078 | 936 | 423 | 235 | 97 |
| 비어있는 단독주택 | 7032 | 5358945 | 13090 | 1792251 | 1121 | 176 | 762 | 137 |
| 입주된 단독주택 | 901 | 1111904 | 2296 | 310400 | - | 256 | 1229 | 135 |



|  | 총 계 |  |  |  | 사례당 비용(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축 |  | 개 축 |  | 신 축 |  | 개 축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다가구주택(다수의 거주 지를 가진 순수한 주택) | 3084 | 12363736 | 7344 | 2683498 | 6181 | 640 | 3987 | 361 |
| 부수시설을 가진 주거용 건축물(농가포함) | 387 | 2718494 | 3565 | 1420857 | 10606 | 752 | 6968 | 386 |
| 간호 내지 상담기능을 가 지지 않은 요양시설 | 15 | 204417 | 43 | 101967 | 18905 | 3619 | 11709 | 1769 |
| 주거용건축물과 관련한 주차장, 주차시설 및 주 차공간 | 1698 | 217182 | 1649 | 84361 | 432 | 354 | 120 | 46 |
| 기타 주거용건축물과 관 련한 건축시설 | 1727 | 85003 | 3081 | 133193 | 44 | 98 | 49 | 43 |
| 농업용건축물 | 1151 | 326115 | 1738 | 258298 | 298 | 257 | 283 | 144 |
| 산림용건축물 | 103 | 43683 | 90 | 18825 | 485 | 228 | 116 | 137 |
| 토지개량 | 50 | 18066 | 97 | 18578 | 462 | 529 | 197 | 81 |

[부록-2]

|  | 총 계 |  |  |  | 사례당 비용(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수 | 프 랑 |
| 공장시설 | 388 | 1281573 | 1219 | 836256 | 3268 | 932 | 3305 | 664 |
| 창고, 보관소 등 | 440 | 572344 | 528 | 260514 | 1052 | 484 | 1328 | 495 |
| 사무용건축물, 행정건축물 | 164 | 2225473 | 1163 | 1532142 | 19788 | 1268 | 12607 | 1341 |
| 백화점, 상업용건축물 | 158 | 814530 | 1432 | 753171 | 5124 | 148 | 5158 | 820 |
| 식당, 호텔 | 64 | 281145 | 811 | 486215 | 2281 | 1049 | 4534 | 571 |
| 기타 숙박시설 | 15 | 34879 | 65 | 28102 | 993 | 623 | 2809 | 375 |
| 기타 경제적 목적의 사용 | 232 | 46075 | 647 | 87740 | 183 | 214 | 201 | 127 |
| 계 | 20452 | 35934219 | 44481 | 18699345 | 3554 | 1415 | 1563 | 291 |
| 2011년의 건축지출과 2011년에 완료된 프로젝트 출처: BFS-Baustatistik(Bearbeitet von BHP-Hanser un |  |  | Partner AG) |  |  |  |  |  |

설문조사 색인

## 설문조사 대상자

Baumann Martin, Stadtbauinspektor, Stadt Bern
Benz Peter B., Dipl. Ing. ETHZ/SIA, Dipl. Ing. FH, Delegierter für Forschung und Normierung, VSS Schweizerischer Verband der Strassenund Verkehrsfachleute

Bühlmann Ramón, Projektleiter, Rosenthaler + Partner AG, Management und Informatik, Zürich

Dohmen Philipp, Dipl.-Ing. Architekt, Drees \& Sommer, Zürich
Ettlin Markus, dipl. Architekt ETH/SIA, Assistent Professur für Bauphysik, ETH Zürich, Institut für Hochbautechnik ITA

Gasser Caroline, dipl. Architektin ETH/SIA, Baudepartementsvorsteherin Ilanz

Graven Reto, Leiter Tiefbau, vormals Leiter Bauabteilung, Zermatt
Hellrigl Jürg, Dr. iur., Abteilungsleiter Dienste, Amt für Baubewilligungen, Stadt Zürich

Hohl Walter, Programmleiter Umsetzung BehiG, Infrastruktur - Anlagen und Technologie, SBB AG

Huterer Andreas, Bereichsleiter/Mitglied Geschäftsleitung, Bauherren-und Immobilienberatung, Nachhaltigkeit, AMSTEIN + ALTHERT AG

Jung Marcel, Baudirektion Kanton Zürich, BAKU/Leitstelle für Baubewilligungen

Kägi Harald, Fachspezialist Database, Technische Direktion, Steiner AG Total- und Generalunternehmung

Kaufmann Alfons P., Zentralpräsident, SMGV Schweizerischer Maler-und Gipserunternehmer-Verband

Lichtensteiger Hans, Bausekretär/IT-Leiter, Gemeinde Wittenbach
Mathez Alain, Attaché de direction Office de l'urbanisme du canton de Genève

Maurer Marco, Leiter Projekteinkauf Region Ost, SBB AG Infrastruktur, Schweizerische Bundesbahnen SBB AG

Perrin Jean-Luc, Direktionsstab, Felix Platter Spital
Rüegger Werner K., dipl. Arch. SIA AIA SWB, GeschäftsleiterSchweizer Baumuster-Centrale Zürich

Schärer Christian A., Dr., Direktor VSS Schweizerischer Verband der Strassen- und Verkehrsfachleute

Schmitt Rainer, Projektleiter, Halter AG Entwicklungen
Senn Patrick, Projektleiter, Halter AG Entwicklungen
Stoffel Philipp, Dr., Geschäftsleiter, Partner, Helbling Beratung + Bauplanung AG

Studer Max, dipl. Ing. ETH, Direktor CRB
Stüdle René, Geschäftsbereichsleiter Brandschutz, Vereinigung Kantonaler Feuerversicherungen, Bern, Amsteinwalter

Szeidl Steffen, Dipl.-Ing. Architekt SIA, Geschäftsführer, Drees \& Sommer, Zürich

Thomas Rubi, Abschnittsleiter IBN und BT, Infrastruktur-Projekte- urchmesserlinie

Tichy Herbert, Geschäftsleiter der KBOB
Tobler Aline, juristische Projektleiterin, Baudepartement Kanton St.Gallen
Von Büren Walter, lic. iur. Rechtsanwalt und dipl. Arch. ETH, Baudirektion Kanton Zürich, Generalsekretariat Stab

Werlen Christian, Leiter Bauabteilung, Einwohnergemeinde Zermatt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2013년 6월 5일에 개최된 워크솝 참가자
Benz Peter B., Dipl. Ing. ETHZ/SIA, Dipl. Ing. FH, Delegierter für Forschung und Normierung, VSS Schweizerischer Verband der Strassenund Verkehrsfachleute

Huterer Andreas, Bereichsleiter/Mitglied Geschäftsleitung, Bauherren-und Immobilienberatung, Nachhaltigkeit, AMSTEIN + WALTHERT AG

Schärer Christian A., Dr., Direktor, VSS Schweizerischer Verband der Strassen- und Verkehrsfachleute

Senn Patrick, Projektleiter, Halter AG Entwicklungen
Stoffel Philipp, Dr., Geschäftsleiter, Partner, Helbling Beratung+Bauplanung AG

Szeidl Steffen, Dipl.-Ing. Architekt SIA, Geschäftsführer, Drees \& Sommer, Zürich

Tichy Herbert, Geschäftsleiter der KBOB

## 참 고 문 헌

## 연구보고서

ARE (2012): Pflichtenheft zum Projekt Schätzung der Kosten von regulierungen und Identifizierung von Potenzialen für die Vereinfachung und Kostenreduktion, Bereich „Baurecht".

Arnold, E./ Petermann, H. (2012): 26 Sonderzüglein, 3000 Waggons, Die Harmonisierung des Baurechts als Herausforderung für Kantone und Gemeinden, in: NZZ vom 27. Januar 2012.

Balastèr, P. (2010): Gründe für ein wettbewerbsorientiertes Vergabewesen, in: Die Volkswirtschaft 3-2010.

BBT/KTI (1998): Programm Effizienzpotentiale der Schweizer Bauwirtschaft (Effi-Bau BFK/KTI), Kostensenkungen bei Planungs-, Erschlies-sungs- und Bewilligungsverfahren, 10. August 1998.

Beco Berner Wirtschaft et al. (2010): Ansiedlung von Feriendörfern und Hotels: Leitfaden für Gemeinden, Behörden und Tourismuspromotoren.

BHP- Hanser und Partner AG (2004): Preise und Kosten der Züricher Hotelleri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Bundesamt für Energie (2003): Neubauen und Sanieren von Hotels im Minergie-Standard: Fördermöglichkeiten im Umfeld der staatlichen Hotellerieförderung. Bern: Bundesamt för Energie BFE.

Bundesamt für Energie (Mär 2005): Internationaler Vergleich von Energiestandards im Baubereich. Bern: Bundesamt für Energie BFE.

Bundesamt für Energie(November 2007): Indikatoren für den internationalen Vergleich des Energieverbrauchs und der Treibhausemissionen. Bern: Bundesamt für Energie BFE.

Bundesamt für Energie (November 2008): Praxistest Minergie- Modernisierung. Bern: Bundesamt für Energie BFE.

Econcept (2007): Befragung von Schweizer Baugesuchstellern, Untersuchung im Auftrag des SECO.

Ecoplan (2013): Regulierungs-Checkup Arbeitssicherheit, Gesundheitsschutz und Unfallversicherung im Auftrag des SECO.

ETH Zürich \& Schweizerische Fachstelle für behindertengerechtes Bauen (2004): Behindertengerechtes Bauen-Vollzugsprobleme im Planungsprozess, Studie im Auftrag von NFP 45 Sozialstaat.

Felder, S./Podgorski, C. (2009): Die Harmonisierung des öffentlichen Beschaffungswesens in der Schweiz: Auswirkungen auf die Bauwirtschaft, Gutachten im Auftrag des Staatssekretariats für Wirtschaft (SECO).

Felder, S./Podgorski, C. (2010): Liberalisierung des öffentlichen Beschaffungswesens in der Schweiz: Auswirkungen auf die Bauwirtschaft. In: Die Volkswirtschaft 3-2010.

Hertig, Heinz (2012): Normung im Baubereich: Situationsanalyse, Handlungsbedarf und Massnahmen, im Auftrag des SECO.

Jaeger, F./Höppli, T./Atzenweiler, O. (vermutlich 2006): Volkswirtschaftliche Kosten bei öffentlichen Ausschreibungen von Planeraufträgen.

Meins, E. (2008): Minergie macht sich bezahlt: Der Nachhaltigkeit von Immobilien einen finanziellen Wert geben. Zürich: Center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der Universität Zürich.

Ménard, M. (2013): Energievollzug im Gebäudebetrieb, in: SIA TEC21 Ausgabe 25/2013.

Ott, W. et al. (1998): Kostensenkungen bei Planungs-, Erschliessungsund Bewilligungsverfahren. Zürich: Econcept.

Peters, M. \& Wapf, B. (2007): Befragung von Schweizer Baugesuchstellern: Untersuchung im Problematik Arbeitsschutz - Brandschutz bei der Baubewilligung (März 2011: Vereinigung Kantonaler Feuerversicherungen VFK).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28. September 2012): Erläuternder Bericht zur Energiestrategie 2050 (Vernehmlassungsvorlage).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19. September 2012): vOlkswirtschaftliche Massnahmenanalyse zur Energiestrategie 2050: teil II - Faktenblätter zu den einzelnen Massnahmen.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Bundesamt für Umwelt BFU (2009): Lärmbelastung in der Schweiz - Ergebnisse des nationalen Lärmmonitorings SonBase.

SECO (2007): Regulierungsfolgeabschätzung zur Revision der ASARichtlinie.

SECO (2010): SBiB-Studie, Schweizerische Befragung in Büros
SECO (2011): Handbuch zum Regulierungs-Checkup zur Schätzung der Kosten von Regulierungen sowie zur Identifizierung von Potenzialen für die Vereinfachung und Kostenreduktion.

SECO Aussenwirtschaftliche Fachdienste (2012): Normung Schweiz: Situationsanalyse, Handlungsbedarf und Massnahmen.

SECO Regulierungsanalyse (2010): Baurecht, Notiz.
SECO Regulierungsanalyse (2011): Droit de la construction: Concept pour l'estimation des coûs et la simplification de la réglementation, notice.

Standardkostenmodell im Bereich Brandschutz - Kostenoptimierungspotenzial (2009: Rombøll Management Consulting GmbH Studie im Auftrag des EVD und SECO).

Stokar + Partner AG (2010): Untersuchung von Mehrkosten von MINERGIE-P - Bauten. Studie in Zusammenarbeit mit der FHNW im Auftrag der Kantone BL und BS. Muttenz: Institut Energie am Bau FHNW.

Urbaplan (2005): Planification et projets de construction, Démarche d'êtude intégrant les préoccupations des milieux de la construction et de l'améagement du territoire, Studie im Auftrag des SECO.

VCS (2013): Fall Hardturm-Stadion-Einkaufszentrum (Quelle im Internet angesehen am 21.05.2013, http://www.verbandsbeschwerde.ch/uploads/ media/-Hardtturm_Einkaufszentrum_ZH_.pdf).

Wirtschaftliche Optimierung im vorbeugenden Brandschutz (2012): Institut für Baustatik und Konstruktion ETH Zürich).

Zeyer, C. (2008): Die Auswirkungen von Standards Minergie, Minergie 08 und Minergie-P auf die Erstellungskosten von Bauten. konferenzbeitrag zum 15. Schweizerischen Status-Seminar „Energie- und Umweltforschung im Bauwesen" vom 11.-12. September 2008 und der ETH Zürich.

Zogg, S./Duperrut, J. (2002): Die Liberalisierung des öffentlichen Beschaffungswesens in der Schweiz in juristischer und ökonomischer Hinsicht, Parlamentsdienste, Parlamentarische Verwaltungskontrollstelle.

## 건축물보험사의 사업보고서

Aargauische Gebäudeversicherungen (2013): Geschäftsbericht 2012 AGV Aargauische Gebäudeversicherung.

Assekuranz AR (2013): Geschäftsbericht 2012 Assekuranz AR.
Assemblée interjurassienne (AIJ) 2013: Rapport annuel d'activité de l'Assemblée interjurassienne(AIJ).

Basellandschaftliche Gebäudeversicherung (2013): Geschäftsbericht 2012 Basellandschaftliche Gebäudeversicherung BGV.

Gebäudeversicherung Bern (2013): Geschäft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 Bern GVB.

Gebäudeversicherung Graubünden (2013): Jahre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sanstalten Graubäuden GVG.

Gebäudeversicherung Kanton Zürich (2013): Geschäft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 Kanton Zürich GVZ.

Gebäudeversicherung Luzern (2013): Geschäft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 Luzern GVL.

Gebäudeversicherung Thurgau (2013): Geschäft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 Thurgau GVTG.

Gebäudeversicherung Zug (2013): Geschäft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 Zug GVZG.

Gebäudeversicherung des Kantons Basel Stadt (2013): Geschäft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 des Kantons Basel Stadt GVBS.

Gebäudeversicherung des Kantons Schaffhausen (2013): Geschäftsbericht 2012 der Gebäudeversicherung des Kantons Schaffhausen.

Gebäudeversicherungsanstalt des Kantons St.Gallen (2013): Geschäft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sanstalt

GVASG und Amt für Feuerschutz des Kantons St.Gallen. Gebäudeversicherungsanstalt des Kantons St.Gallen (2013): Geschäft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sanstalt und Amt für Feuerschutz des Kantons St.Gallen.

Kantonale Gebäudeversicherung Freiburg (2013): Jahresbericht 2012 Gebäudeversicherung Freiburg KGV.

Neuchâtel Etablissement cantonal d'assurance et de prévention (2013): Rapport 2012.

Solothurnische Gebäudeversicherungen (2013): Geschäftsbericht 2012 der Solothurnischen Gebäudeversicherung SGV.

## 통계자료

Statistik der Unfallversicherung (2013): http://www.unfallstatistik.ch/ eingesehen am 23.05.2013

Schadenstatistik 1950-2011 der Vereinigung kantonaler Feuerversicherungen (2013)

Statistik der „Geneva Association" (2013): www.genevaassociation.org (2013) (2013.5.14. 접속)

## 인터넷자료

Bundesamt für Bauten und Logistik (2013): Schwellenwerte fü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http://www.bbl.admin.ch/bkb/2013.6.10. 접속)


[^0]:    10) http://www.bertelsmann-stiftung.de/bst/de/media/xcms_bst_dms_29011_29012_2.pdf
    11) 이와 관련한 자세한 것은 박영도/홍의표, 법령에서의 이행비용측정을 위한 기법 연구-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참조.
    12) 자세한 것은 박영도(역),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 한국법제연구원 2009 참조.
    13) 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 SECO, Regulierungs-Checkup. Handbuch zur Schätzung der Kosten von Regulierungen sowie zur Identifizierung von Potenzialen für die Vereinfachung und Kostenreduktion, Bern 2011.
[^1]:    27)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 Regulierungskosten Baurecht. Schätzung der Kosten von Regulierungen und Identifizierung von Potenzialen für die Vereinfachung und Kostenreduktion im Baurecht. Schlussbericht, Zürich 2013.10.24, S.18f.
[^2]:    15) 원래는 통계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자료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16) 하나의 기업에서 직원 1 인당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적 근로시간당 비용을 말 한다(총임금 + 사업주부담액). 휴가와 질병은 생산적 근로시간당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내용들은 첨부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21) 규제비용모델-핸드북과는 반대로 세금, 수수료와 기타 공과금의 경우 기업에서 조사한다.
[^5]:    23) 규제비용모델-핸드북(Bertelsmann/KPMG, 2009, S. 38)에 따라서 공통비용은 고려하 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첨부부록의 요금(Tarif)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1) 나머지 $1 / 3$ 은 사가계(특히 가정주택)과 공공기관의 건축계획의 몫에 해당한다.
[^7]:    4) http://www.parlament.ch/suche/seiten/geschaefte.aspx?gesch_id=20103429 참조.
    5) http://www.parlament.ch/suche/seiten/geschaefte.aspx?gesch_id=20103592 참조.
[^8]:    9) 다만, 문화재보호에 근거한 행위의무만은 깊이 분석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에서
[^9]:    는 개축계획과 재건축계획의 수가 이러한 규제와 관련성을 가지는 예가 적고 하나 또는 다수의 예시사례의 추가비용을 일반화시키서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0]:    17) SECO, Regulierungs-Checkup, S. 26.
[^11]:    36) Vereinigung Kantonaler Feuerversichrungen VFK, 2011.
[^12]:    51) 이 연구와 평가에서 기초로 원용된 대상목적물들은 예시적으로 스위스에서 핵심 중앙부에서 주변으로 통과하는 지점(덜 빽빽하게 건축된 시의 일부지역)에 위치하 고 있고, 따라서 특별규정과는 덜 관련되는 지역에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지상주 차와 지하주차 내지 천전이 있는 주차와 천정이 없는 주차들이 점하는 비율은 던 체 스위스를 대표한다.
[^13]:    59) 확산방법 또는 수신자대상물에 대한 조치의 범주화는 Basel Kanton-풍경 지역개발 청 소음보호과(Amt für Raumplanung Kanton Basel-Landschaft Abteilung Lärmschutz) 의 Nutzungsplan Siedlung Grunlagen 'Bau im Lärm' - Eine Wegleitung für Baubewilligungen in lärmbelasteten Gebieten, 2013. 3.에 명시된 기준을 원용한 것이다.
[^14]:    출처: BHP - Hanser und Partner AG/ETHZ Institut für Technologie in der Architektur

